

발 간 등 록 번 호

11-1400000-000623-14



산림청 민원  
FAQ사례집

FAQ

2018. 12.

K O R E A F O R E S T S E R V I C E



# Contents

## 국제산림협력 분야

- 01. 임산물 수출지원 ..... 3
- 02.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 12

## 산림산업정책 분야

- 03. 산림탄소 상쇄제도 ..... 19
- 04. 경제림 조성사업(조림) ..... 22
- 05. 숲가꾸기사업 ..... 25
- 06. 선도산림경영단지 선정 ..... 30
- 07.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 ..... 34
- 08. 입목벌채·굴취 ..... 39
- 09. 산림사업법인 등록 ..... 59
- 10.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 63
- 11. 임도시설 사업 ..... 66
- 12. 산림경영계획 ..... 71
- 13. 대리경영 안내 ..... 76
- 14. 산림사업종합자금(산림사업종합자금, 귀산촌인창업자금) 안내 ..... 79
- 15. 임업인 관련 세제 지원현황 ..... 83
- 16. 독립가·임업후계자 ..... 86
- 17. 입목등록 ..... 96
- 18. 임업재해 보험 ..... 102
- 19. FTA 직접피해보전대책 ..... 107
- 20.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품질관리 ..... 109
- 21. 산림복합경영 ..... 113
- 22. 밤재배 지원사업 ..... 116
- 23. 호두나무 재배기술 ..... 118

24. 표고재배 지원사업 .....	131
25. 조경수 생산기반 조성사업 .....	134
26.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	136
27. 산림경영지도 .....	139
28. 특화품목 전문지도 .....	142
29. Cyber 산림경영지원시스템 운영 .....	145
30. 산림버섯 종균 및 배지 생산·공급 .....	147
31. 조합원 가입 .....	151
32. 임업인콜센터 안내 .....	154
33. '산림정보 다드림(林)'시스템 서비스 .....	160
34. 사유림 매수 .....	170
35. 국유림 임대 .....	176

### 산림복지 분야

36.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181
37. 사립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및 사설수목장림 시설 조성 안내 .....	183
38. 산촌공동체 활성화(舊 산촌6차산업화) .....	189
39. 산림치유지도사 제도 안내 .....	195
40. 유아숲체험원 조성·등록 .....	203
41. 산림교육전문가 제도 안내 .....	206
42. 도시숲 등의 조성, 무궁화 진흥, 정원 조성 사업 사설수목장림 시설 조성 안내 ..	215
43. 산지전용허가 .....	218
44. 토석채취허가 .....	339
45. 보전산지의 지정·변경지정·해제 .....	359

### 산림보호 분야

46. 산림분야 과태료 부과 .....	367
47. 산불예방 안내 .....	377
48. 사망사업 .....	388
49.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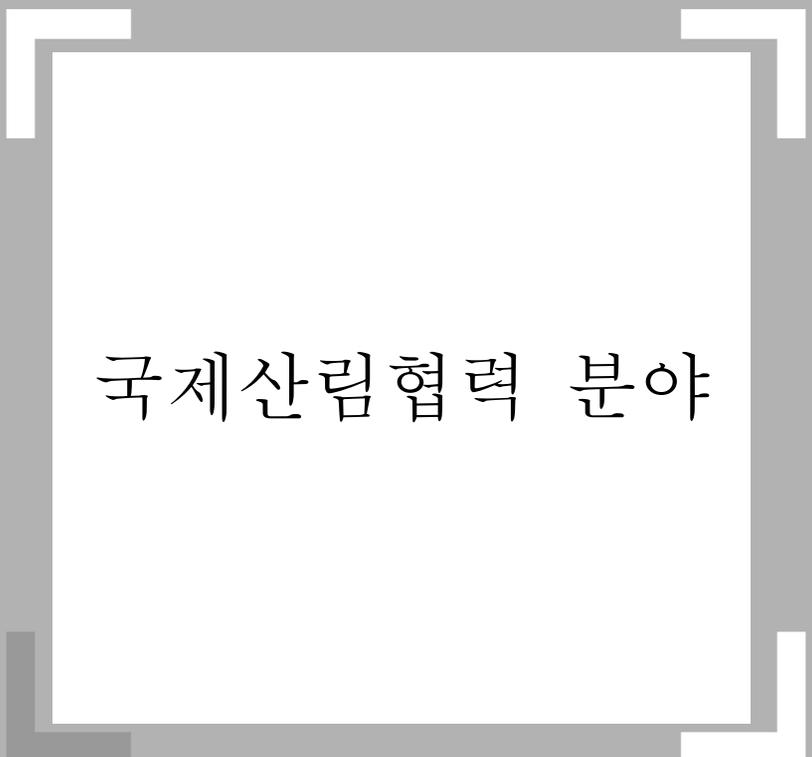
## 기타 분야

50. 스마트 산림재해 앱 .....	409
51.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련 Q&A .....	413
52. 국립산림치유원 관련 Q&A .....	415
53. 기타사항 .....	417

## 부 록

1. 산림교육 과정 안내 .....	431
① 산림교육원 일반인 대상, 주요 교육과정 .....	431
② 한국임업진흥원 교육과정 .....	433
③ 산림청 지정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	436
2. 산림청 규제개선 사례 .....	439
3. 전국 산림조합 전화번호 .....	443





국제산림협력 분야





## 01. 임산물 수출지원

<p><b>목 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기반마련,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및 홍보로 임산물 수출활성화</li> </ul>															
<p><b>지원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생산자, 수출관련 법인·단체</li> </ul>															
<p><b>지원되는 임산물 종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산림청 소관 임산물로서 분류되는 품목</li> </ul>															
<p><b>지원조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 30~100%</li> </ul>															
<p><b>신청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사업별로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업추진계획 공고 <table border="1" data-bbox="477 1299 1349 1754"> <thead> <tr> <th>기관명</th> <th>담당부서</th> <th>홈페이지</th> </tr> </thead> <tbody> <tr> <td>산림조합중앙회</td> <td>유통지원부 생산지원팀 02-3434-7330</td> <td>www.nfcf.or.kr</td> </tr> <tr> <td>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td> <td>농산수출부 061-931-0831</td> <td>www.at.or.kr</td> </tr> <tr> <td>한국임업진흥원</td> <td>임업소득본부 국제협력팀 02-6393-2777</td> <td>www.kofpi.or.kr</td> </tr> <tr> <td>지방자치단체</td> <td>시·군·구 산림부서</td> <td>지자체홈페이지</td> </tr> </tbody> </table> </li> <li>●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출계획서 등 각종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세부사업별 집행기관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서는 시행기관별 사업공고 또는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 지침서 참조</li> </ul> </li> </ul>	기관명	담당부서	홈페이지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생산지원팀 02-3434-7330	www.nfcf.or.kr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산수출부 061-931-0831	www.at.or.kr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소득본부 국제협력팀 02-6393-2777	www.kofpi.or.kr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산림부서	지자체홈페이지
기관명	담당부서	홈페이지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생산지원팀 02-3434-7330	www.nfcf.or.kr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산수출부 061-931-0831	www.at.or.kr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소득본부 국제협력팀 02-6393-2777	www.kofpi.or.kr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산림부서	지자체홈페이지														

지원내용

1. 시작단계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신 청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 국고 70~100% ·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 국고 100% · 수출유망 목재제품 및 청정 임산물 발굴	한국임업진흥원
수출포장 디자인 개발비 지원	· 국고 70% · 외국어 카달로그, 외국어 포장용품 디자인 개발	산림조합중앙회
수출상품화 지원	· 국고 80% · 신규 또는 유망 상품의 상품화와 해외시장 진출에 소요되는 비용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2. 시행단계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신 청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	· 표준물류비의 일부 지원 · 임산물 HSK 품목 한정	산림조합중앙회
수출안전성 관리	· 국고 90~100% · 해외 검역관 초청(밤) · 수출 이력관리비 지원, 수출보험지원, 해외인증지원,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산림조합중앙회
관상식물용 인공용토 및 용기 지원	· 국고 80% · 수출용 관상식물의 인공용토 및 용기 지원	산림조합중앙회
해외공동물류 센터 지원	· 국고 80%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료 지원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임산물 수출 OK지원팀 현장컨설팅	· 국고 100% · 수출 전문가로 구성된 OK지원팀이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 실시	한국임업진흥원
임산물 수출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 국고 30%이내 ·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에 수출에 필요한 장비 지원	산림조합중앙회
수출원재료 구입자금 지원(용자)	· 국고 용자 80% · 연 3%, 2년거치 3년 상환 · 목재류 및 단기소득임산물 (임산물 HSK 품목 한정)	산림조합중앙회

3. 확대단계		
사업명	지원내용	신청
해외판촉 행사지원	· 국고 80% · 현지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등 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간담회/바이어초청	· 국고 70% · 해외수입업체와의 간담회 · 유망바이어 초청 상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임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	· 국고 80% · 수출농가와 연계된 대표 수출업체 육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사업 지원	· 국고 80~100% · 품목별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상품 개발, 수출용 공동브랜드 육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시장 정보조사	· 국고 100% · 해외 시장동향 정보 제공 · 품목별 해외심층조사 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안테나숍 운영지원	· 국고 80% · 해외 안테나숍 마케팅 등 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마켓테스트	· 국고 100% · 미개척 시장진출에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 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 국고 50%, 지방비 20% · 공동 수출·선별장비 지원	지자체 산림부서
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	●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임업통상팀 수출 담당 · 042-481-4086~7	

1. 임산물 수출 HS코드가 있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Q.질의** 임산물 수출 HS코드가 있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A.답변** HSK(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는 관세·통계·운송 등 모든 분야에 공용하기 위해 제정한 다목적·다용도 품목 분류표로서, 6단위까지는 세계관세 기구(WCO)에서 공용된 분류번호를 결정하고 그 이하 분류는 각국 사정에 따라 분류, 우리나라는 10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역통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코드로서 통관시 HS품목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됩니다. HS 품목번호를 알면 관세청, 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입 통관 실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FTA 통상협상시 HS품목번호별로 협상을 하게 되므로 관세철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통상협상 타결 결과에 따른 HS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임산물은 관세·통합품목분류표(HSK)에 전체 55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산물 HS코드 현황〉

분 류	품 명	HS 코드
단기임산물	밤, 표고, 송이, 잣, 호두 등	1류, 5~8류, 11~14류, 17류, 20~23류, 33류, 38류
목재류	원목, 제재목, 합판, 단판, 섬유판 등	38류, 44~48류, 94류
석재류	원석, 가공석 등	25류, 68류

▶ 담당부서 :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임업통상팀(042-481-4086~7)

## 2. 임산물 수출을 위해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Q.질의** 임산물 수출을 위해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A.답변** 밤, 표고, 감, 대추 등 대부분의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 상대 수입국의 검역 요건상 문제가 없으면 자유로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멸종위기 생물종 보호 등의 사유로 수출입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에서 수출을 위해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한 품목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수출입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멸종위기 생물종의 경우에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고, 허가 및 승인은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신선 임산물의 경우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서 수입국에서 까다로운 검역요건을 갖춘 경우가 많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수입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분재 등 검역이 까다로운 품목의 경우 국가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재배시설에서 국립식물검역원에서 관리된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을 수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립식물검역원에 문의하여 요건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임업통상팀(042-481-4086~7)

### 3.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Q.질의**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A.답변**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반 구축 강화, 수출유망품목 마케팅 강화, 수출장애요인 해소 및 원스톱 임산물 수출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기반 구축 강화** : 임산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품목별 수출협의회 조직화를 통한 타겟시장별 공동마케팅 강화, 수출선도조직 육성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등 지역거점 및 수출조직을 집중 육성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출유망품목 마케팅 강화** : 임산물 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를 통해 발굴된 유망품목을 해외시장 진출에서 시장정착단계까지 밀착지원하고, 국가별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해외의 고급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우리나라의 고품질 청정 임산물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수출장애요인 해소 및 원스톱 임산물 수출지원** : 콜드체인 유통지원 및 수출품 안전성 관리 강화 등 수출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수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임산물 수출 OK 지원팀'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 및 임산물 수출지원 플랫폼(임산물 수출한마당, '18년 런칭 예정) 등 원스톱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임업통상팀(042-481-4086~7)

4. 임산물 수출 지원을 받고 싶는데,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어요.

**Q.질의** 임산물 수출 지원을 받고 싶는데,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어요.

**A.답변** 산림청에서는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시작단계부터 확대단계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수출지원 사업〉

단 계	수출지원 사업	
시작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li> <li>· 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li> <li>· 수출포장 디자인 개발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상품화 지원</li> </ul>
시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li> <li>· 수출안전성 관리</li> <li>* 해외 검역관 초청(밤), 수출이력관리, 수출보험, 해외인증, 식품위생 검사비</li> <li>· 관상식물용 인공용토 및 용기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li> <li>· 임산물 수출 OK지원팀 컨설팅</li> <li>· 임산물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li> <li>· 수출원재료 구입자금 지원(융자)</li> </ul>
확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관촉행사 지원</li> <li>· 수출간담회 및 바이어초청</li> <li>· 임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li> <li>·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사업 지원</li> <li>· 해외시장 정보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안테나숍 운영지원</li> <li>· 마켓테스트</li> <li>·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li> </ul>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로 전문성을 확보한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를 통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업별로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등에 사업추진계획이 공고되므로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관별 수출지원 사업〉

사업시행 기관	수출지원 사업	담당부서 및 홈페이지
산림조합 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포장 디자인 개발비 지원</li> <li>·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li> <li>· 관상식물용 인공용토 및 용기 지원</li> <li>· 임산물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li> <li>· 수출원재료 구입자금 지원(융자)</li> <li>· 수출안전성 관리</li> <li>* 해외 검역관 초청(밤), 수출이력관리, 수출보험, 해외인증, 식품위생 검사비</li> </ul>	유통지원부 생산지원팀 02-3434-7330 www.nfcf.or.kr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li> <li>· 해외관측행사 지원</li> <li>· 수출간담회 및 바이어초청</li> <li>·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li> <li>·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사업 지원</li> <li>· 해외 안테나숍 운영지원</li> <li>· 마켓테스트</li> <li>· 해외시장 정보조사</li> <li>· 수출상품화 지원</li> <li>· 임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li> </ul>	농산수출부 061-931-0831 www.at.or.kr
한국임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li> <li>· 임산물 수출 OK지원팀 컨설팅</li> <li>·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공모 및 컨설팅 등 육성</li> </ul>	임업소득본부 국제협력팀 02-6393-2777 www.kofpi.or.kr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li> <li>* 수출특화지역 신청관련 사항은 심사·평가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문의</li> </ul>	시·군·구 산림부서

※ 사업시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신청(수출업체 등)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대상자 선정(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수출업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수출업체 등) → 확인 및 보조금 교부(사업시행기관)

또한 임산물 수출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는 〈임산물 수출 종합가이드 핸드북〉을 발간하여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산림정보〉 → 〈통합자료실〉 → 〈전자북〉 메뉴에서 '임산물 수출 종합가이드 핸드북' 검색

▶ 담당부서 :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임업통상팀(042-481-4086~7)

5. 임산물 수출국, 품목 실적 등 수출 통계 자료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Q.질의** 임산물 수출국, 품목 실적 등 수출 통계 자료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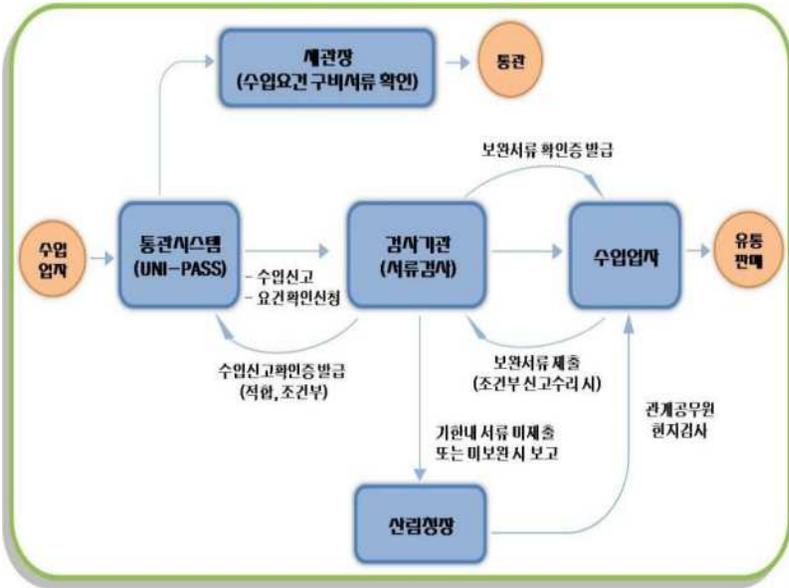
**A.답변** 임산물 수출입 통계 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산림정보> → <산림 통계> → <임산물 수출입통계> 메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물 수출입통계 메뉴에서는 품목별, 국가별, 월별, 연도별 임산물 수출입 통계 자료 및 임산물 남북교역 분석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물 품목별·국가별 수출입 순위, 전년 대비 수출입 증감내역, 주요품목에 대한 국가별 수출입 실적, 주요국가에 대한 품목별 수출입 실적, HS 코드별 실적조회 등 다양하게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임업통상팀(042-481-4086~7)

## 02.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p><b>목 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체계적 운영으로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및 범지구적 산림보전 노력에 동참</li> </ul>
<p><b>내 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업체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을 제한</li> </ul>
<p><b>관련 법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17.3.21. 공포)</li> </ul>
<p><b>수입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신고제 흐름도</li> </ul> 
<p><b>첨부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수입 검사 등)에 따른 목재합법성 증명서류 1부</li> </ul>
<p><b>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임업통상팀 통상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4085</li> <li>• 042-481-4261</li> </ul> </li> </ul>

## 1.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일은 어떻게 되나요?

**Q.질의**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일을 알려주세요.

**A.답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개정안(17.3.21. 공포)에 따라서 2018.3.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일을 2018. 10.1.로 변경하는 내용의 목재이용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상정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시행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임업통상팀(042-481-4261)

## 2.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Q.질의** 제도 도입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고,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서류는 수입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나요?

**A.답변** 목재이용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①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②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는 적용대상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임업통상팀(042-481-4261)

### 3. 목재이용법 주요 개정내용은 무엇인가요?

**Q.질의** 목재이용법 주요 개정내용은 무엇인가요?

**A.답변** '17.3.21일에 공포된 목재이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산림청장 및 목재생산업자의 책무(제4조)
- √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신고제 도입(제19조의2)
  - 수입업자가 목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
- √ 산림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수입검사 대행(제19조의3 제1항)
- √ 목재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서류 검사(제19조의3 제2항)
- √ 목재의 합법성 미 증명 시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제19조의3 제3항)
- √ 증명서류 미 보관시 목재생산업 등록 취소(제26조 제6호)
  - 합법벌채 서류를 갖추지 않는 경우 목재생산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목재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감독(제27조 제1항)
  - 관련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최소 5년간 합법벌채 증명서류 보관
- √ 포상금 및 벌칙 적용(제41조, 제45조 제1항 제4호)
  -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 행정기관의 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담당부서 : 임업통상팀 (042-481-4261)

#### 4. 모든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대상인가요?

**Q.질의**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대상품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답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선 7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2020년 이후에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7개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이며, HS 코드로는 4403, 4407, 4408, 4409, 4412, 4401.31 입니다.

▶ 담당부서 : 임업통상팀 (042-481-4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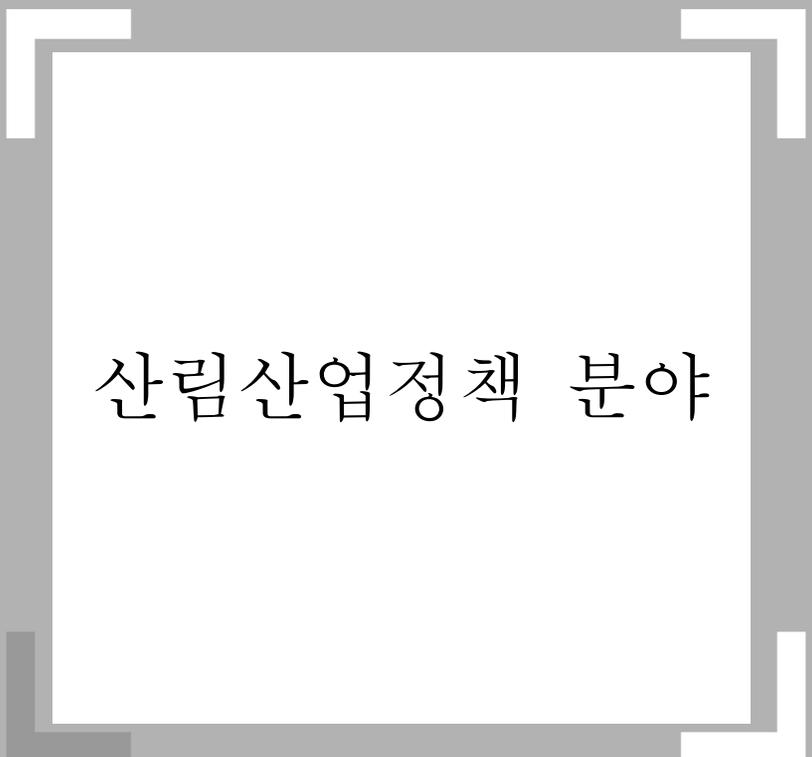
#### 5. 서류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못하나요?

**Q.질의** 목재합법성을 증명할 서류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못하나요?

**A.답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목재합법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일부 부족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지 못합니다.

▶ 담당부서 : 임업통상팀 (042-481-4261)





산림산업정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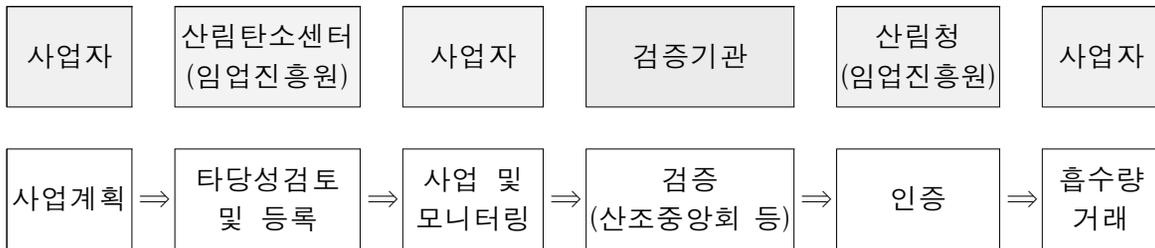
### 03. 산림탄소 상쇄제도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li> </ul>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산림을 활용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이용, 식생복구 등</li> </ul> </li> </ul>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최대 10백만원, 법인 최대 50백만원(공모)</li> <li>※ 등록된 산림탄소 상쇄사업의 변경 및 중단 또는 취소 시에는 지원금 환수 가능</li> </ul>
선정기준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거래형 사업 지원</li> <li>● 자부담 계획이 10% 이상인 사업 지원</li> <li>● 사회 공헌 활동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이 뚜렷한 사업</li> <li>● 산림경영의 지속성이 입증된 사업</li> <li>● 기후변화와 산림탄소과정 등 관련교육 이수 여부(계획 포함) 등</li> </ul>
신청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사업자) → 선정 등 심사·결정(산림탄소센터) → 개별통보(선정된 자에 한함) →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당해년도 6월까지)</li> <li>* 심사결과는 산림탄소등록부 홈페이지(산림탄소센터)에 일괄 게시</li> <li>* 국고보조 없이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산림탄소센터의 산림탄소등록부(<a href="http://carbonregistry.forest.go.kr">http://carbonregistry.forest.go.kr</a>)을 통하여 언제든지 사업 접수 가능</li> </ul>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사업 신청서 1부(산림탄소센터 홈페이지 게재)</li> <li>●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li> <li>● 자동계산프로그램(게재)에 따라 계산된 행정비용 지원액 스크린샷 1부</li> <li>●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 입증 서류 1부</li> <li>● 사회공헌 활동 수행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1부</li> </ul>
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 담당</li> <li>• 02-6393-2745, 02-6393-2743</li> </ul>

1.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질의** 산림청의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따른 추진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거래가능 여부에 따라 크게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나뉩니다. 거래형 상쇄사업에 따른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에서 흡수량 인증을 최종 결정
- \* 거래형은 검증절차가 추가되어 있으나 비거래형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 생략

2.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발생한 흡수량 거래가 궁금합니다.

**Q.질의**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발생한 흡수량 거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참여유형 중 거래형에 한해 자발적 시장에서 상쇄사업을 통해 발생한 산림탄소 흡수량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평창올림픽 시 탄소중립 행사와 소니 코리아 기업 등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CSR) 이행 등을 통해 사업자가 확보한 흡수량을 실제 구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 또는 개인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통해 최종 인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자발적으로 사고파는 시장을 말하며 법적 의무를 가진 주체(배출권거래제에서의 할당기업 등)가 활용하는 의무감축시장과는 구분됩니다. 참고로,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는 타부처에서 관장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산림부문)도 산림탄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 (042-481-4132)

## 04. 경제림 조성사업(조림)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확벌채지, 불량림 등에 경제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산주소득 증대, 지역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li> </ul>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나무, 낙엽송 등 목재생산을 위한 용재수종과 음나무, 윗나무, 두릅나무 등 소득이 유망한 수종으로 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자원조림 등</li> </ul> </li> </ul>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고 60%, 지방비 30%, 자부담 10%</li> </ul>
선정기준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확벌채지 등에 대한 조림</li> <li>리기다소나무, 불량 활엽수 등 수종갱신 조림</li> <li>한계농지, 산림내 공한지 등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li> <li>산주가 요청하는 산림소득수종의 식재 조림 등</li> </ul>
신청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신청(산주) → 대상지 선정 등 심사·결정(시·군·구) → 확정·배정(시·도) → 준공 및 사후관리(시·군·구)</li> </ul>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신청서 1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li> </ul>
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청 산림자원과 조림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4185</li> <li>• 042-481-4183</li> </ul> </li> </ul>

## 1.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Q.질의**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다면, 참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그런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A.답변** 산림청에서는 매년 4월 5일 식목일을 전후하여 국민들이 나무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유림관리소가 주관하는 국민참여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 나무심기 행사는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국유림관리소로부터 행사 지역, 일자, 식재면적, 수종, 참여방법,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에 대한 행사 정보 등을 종합하여 2월중순이후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를 원할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사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042-481-4183)

## 2. 임야에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정해져 있나요?

**Q.질의** 임야에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정해져있나요? 임야에 심을 수 있는 수종이 따로 정해진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A.답변** 조림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벌채를 한 자는 벌채지에 의무 조림을 하여야 합니다.

조림사업의 주목적은 목재생산 및 임산물단기소득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산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산림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심을 수 있도록 조림 권장수종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림 권장수종(78개 수종) 확인 : 산림청 홈페이지-분야별산림정보-산림자원-산림자원-조림-조림수종-조림권장수종(78개 수종)

▶▶▶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042-481-4183)

### 3. 벌채 후 조림신청을 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질의** 벌채를 하고 난 부지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국가에서 조림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나 조림 신청을 하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국고보조조림은 벌채가 우선적으로 선행된 후에 국고보조조림 신청에 따라 조림 대상지 선정,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이 결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조림에 대한 대상지 선정, 조림 사업비, 보조금 지급 결정 여부 등은 본 사업을 실제 실행하고 있는 임야 소재 시·군 산림부서에서 결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지원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 산림담당부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042-481-4183)

## 05. 숲가꾸기사업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화된 산림에 대한 기술적·생태적 시업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환경적 가치를 증진</li> </ul>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가꾸기를 원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에게 사업비 지원 ※ 숲가꾸기에는 조림지 사후관리(풀베기, 덩굴제거)도 포함</li> <li>● 산주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산림조합, 산림법인 등에 사업을 발주하여 실행</li> </ul>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 50%, 지방비 50%</li> </ul>
선정기준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경영계획상 숲가꾸기 계획이 반영된 임지</li> <li>● 대리경영, 협업경영구역 안의 산림</li> <li>● 인공조림지와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 및 기타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li> </ul>
신청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산주동의) → 심사·결정(시·군·구) → 통보(산주)</li> </ul>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서 1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li> </ul>
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산림자원과 숲가꾸기 담당 · 042-481-4105, 4157</li> </ul>

## 1. 숲가꾸기 사업 후 5년 동안 산의 나무를 벌채 할 수 없나요?

**Q.질의**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사정이 있어 나무를 벌채하려고 하는데 숲가꾸기사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조금 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보조금 반환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답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재산처분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벌채는 임목을 수확하여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숲을 가꾸어 주는 단계인 숲가꾸기의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임업자산의 기준 내용연수’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2항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반환 기간 5년’을 감안할 때, 숲가꾸기 보조사업 대상 임지에서 5년 이내에 벌채를 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042-481-4157)

## 2. 산주가 자력으로 심은 조림지에 풀베기 보조사업이 가능하나요?

**Q.질의** 산주가 직접 자력 조림을 실행한 임지에 풀베기 보조사업이 가능한지?

**A.답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계획·설계를 작성하거나 산림사업을 실행할 경우에는 국비 또는 지방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주가 직접 자력 조림을 실행한 산림이라도 위 관련 지침에 따라 산림 사업을 실행할 경우 보조사업으로 추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대상지 선정 여부는 해당 시·군·구의 사업물량,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042-481-4157)

### 3. 숲가꾸기 사업에도 하자기간이 있나요?

**Q.질의** 숲가꾸기 사업에도 하자기간이 있나요?

**A.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금액, 납부시기, 예치기간 등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단서 조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숲가꾸기 사업의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또는 미납부에 대한 결정은 사업 시행기관인 시·군·구에서 최종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042-481-4157)

4. 숲가꾸기 패트롤로 지원해 주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Q.질의** 숲가꾸기 패트롤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숲가꾸기 패트롤은 전국 산림에서 발생하는 산림피해 등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원대상을 산림내로 한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지원대상은 산림내로 한정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 대지안에 있는 주택지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것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산림청에서는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통해 전국 산림에서 발생하는 산림피해 및 산림 내 민원 등 긴급사항을 처리하여 생활권 주변 숲을 변화시키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구현하고자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 각 1개단(5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패트롤의 업무범위는 국유림관리소 관할 구역내 국유림을 대상으로 하나 사유림(대지 등 토지를 포함)의 경우 주거지, 농경지 주변 등 생활권 주변 산림 피해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042-481-4157)

5. 숲가꾸기 사업 후 제거목에 대한 임내정리를 해주나요?

**Q.질의** 임산물재배를 위한 숲가꾸기(숙아베기, 임내정리)를 신청하였는데, 숲가꾸기사업 후 제거된 나무를 임내에 정리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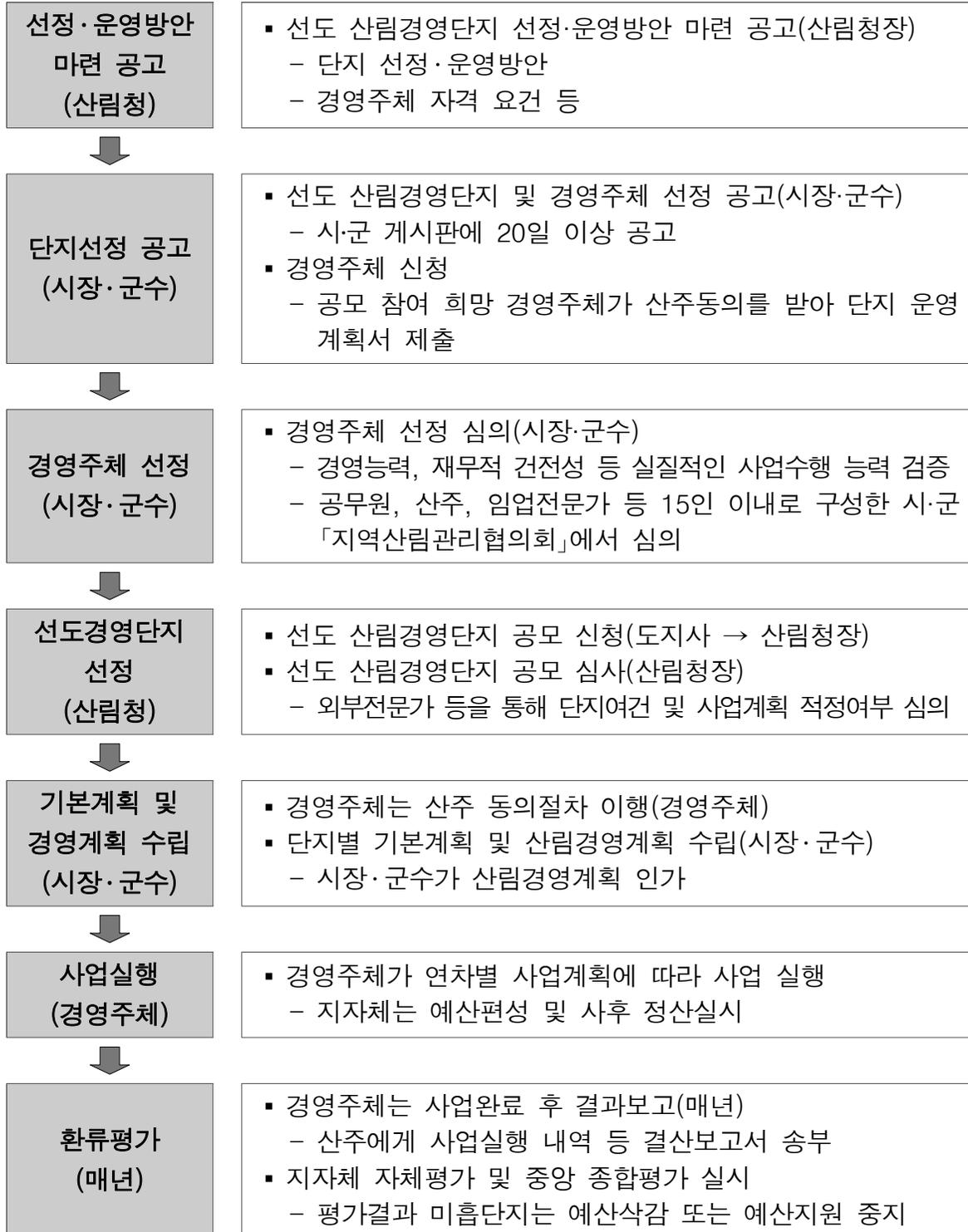
**A.답변**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244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요령을 적용하고 있으며, 본 지침에서 정하는 숲가꾸기사업 산물의 처리방법으로 수집하지 않는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키고, 산물을 토사유출 방지, 경관 유지,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의 사유로 임내에 정리할 경우에는 현지여건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신청한 숲가꾸기 사업에 임내정리 작업여부는 산림 경관, 재해발생우려 등의 산림현황을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042-481-4157)

## 06. 선도산림경영단지 선정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의 규모화 및 재정투자 집중을 통해 사유림 경영 성공 모델을 개발·확산</li> </ul>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주의 참여와 전문경영인에 의한 민간 자율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임도시설 등 포함</li> </ul> </li> <li>◎ 장기 경영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산림경영 및 관리</li> <li>◎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림경영 면적의 규모화</li> </ul>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 70%, 지방비 30%</li> </ul>
선정기준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림육성단지 중 임목축적, 임도밀도 등 경영여건이 우수하고, 단기간 내에 주벌수확이 가능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목축적 : 전국 평균 임목축적 이상</li> <li>- 임도밀도 : 전국 평균 임도밀도 이상</li> <li>- 면적기준 : 1,000ha 이상으로 단지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li> </ul> </li> </ul>
신청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선정 공고(산림청) → 경영주체 선정(시장·군수) → 선도산림경영단지 선정(산림청)</li> </ul>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서 1부(단지 경영계획, 연차별 투자 계획 등)</li> </ul>
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산림자원과 자원정책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4181</li> <li>• 042-481-4044</li> </ul> </li> </ul>

## 사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운영 절차



## 1.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왜 하는 것인가요?

**Q.질의**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왜 하는지?

**A.답변** 우리나라 산림은 숲은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로 접어들고 있는 과도기로 향후 10년 이후 본격적인 목재생산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유 규모가 영세하고 부재산주 비율이 높아 산림경영의 매력도가 낮습니다.

※ 평균 사유림 소유규모 2.04ha, 부재산주 56%, 3ha미만 84.9%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경영면적을 규모화 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체계적인 산림관리체계가 절실하여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만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042-481-4044)

## 2.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Q.질의**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A.답변** 2014년부터 산림경영의 저비용·고효율을 목표로 전문 대리경영주체가 규모화한 산림경영단지에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입도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70%, 지방비 30%로, 10년간 총 140억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주체는 산림청 공고에 의해 선정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042-481-4044)

### 3.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Q.질의**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답변** 매년 산림청장이 선정 공고를 하고, 단지 내 산림소유자를 대신해 단지를 경영할 대리경영주체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계획서를 지자체를 통해 제출하면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붙임1 참조)

◆ **대리경영주체(「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
-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영리, 비영리)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042-481-4044)

## 07.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

<p><b>목 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가꾸기 등으로 발생하는 목재자원을 활용하여 목재펠릿을 생산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함으로써</li> <li>●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고유가 시대를 맞아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에 기여</li> </ul>
<p><b>내 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용, 주민편의·사회복지시설용, 산업용</li> </ul> </li> </ul>
<p><b>지원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단가 4,000천원/대 * 보급 단가는 업체별로 상이</li> <li>- 보조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li> </ul> </li> <li>●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시설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단가 4,000천원/대 * 보급 단가는 업체별로 상이</li> <li>-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li> </ul> </li> <li>●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한도 2억/대 - 보조율 : 국비 30%, 자부담 70%</li> </ul> </li> </ul>
<p><b>선정기준 우선순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펠릿보일러를 보급받은 소비자 중 보일러 고장으로 부득이 재 지원을 받아야 하는 농가</li> <li>- 집단 설치지역(1개 마을당 5대 이상)</li> </ul> </li> <li>●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시설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펠릿에 대한 홍보 및 파급 효과가 큰 시설</li> </ul> </li> <li>●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목재가공산업업체 및 임업관련업</li> <li>- 연료의 경제적 대체효과, 탄소배출 저감 효과, 지역 경제 파급 및 홍보효과, 국산원료 보급기반, 재정 건전성 등</li> </ul> </li> </ul>
<p><b>신청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용) 신청서 제출(소비자) → 신청접수 및 심의, 대상자 선정(시·군) → 대상자 선정 통보(시·군) → 보일러 제조업체 선정 및 자부담금 집행(소비자) → 보조금지급(시·군)</li> <li>● (산업용) 신청서 제출(소비자) → 심의, 대상자 선정(산림청) → 대상자 선정 통보(산림청) → 보일러 제조업체 선정 및 자부담금 집행(소비자) → 보일러 설치 및 성능검사(소비자) → 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산림청)</li> </ul>
<p><b>첨부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li> </ul>
<p><b>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목재산업과 산림바이오에너지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4201, 042-481-8879</li> </ul> </li> </ul>

## 1.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보일러는?

**Q.질의** 산림청에서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보일러인지, 종류 제한 없이 펠릿보일러이면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요?

**A.답변** 산림청에서는 주택용과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용은 가정 난방용이며, 산업용은 0.5톤이상의 스팀보일러, 20만kcal이상의 열풍기 및 온수보일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펠릿보일러를 설치하실려면 반드시 산림청에서 지정한 펠릿보일러이어야 합니다.

보급대상 보일러는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알림마당>알림> 목재펠릿 보일러 등록현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2. 수입산 펠릿을 재가공한 것도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Q.질의** 국내 우드펠릿 공장에서 수입산 우드펠릿을 재가공한 것도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수입산 펠릿도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거 목재펠릿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유통하려는 경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20조 제6항에 의거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목재펠릿을 통관 하려고 할 때 규격·품질검사를 받으시고 국내에서 특정 설비를 이용하여 재가공 하였을 경우 다시 품질검사를 받아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재펠릿은 부가세 부과대상으로 수입한 목재펠릿에 대해서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79, 042-481-4205)

### 3. 우드펠릿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나요?

**Q.질의** 우드펠릿이 친환경 연료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요?

**A.답변** 펠릿을 비롯한 어떠한 유기물도 연소시에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연소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연소'라고 하는 물리적 화학적인 현상의 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가 목재펠릿 자체와는 별개의 '보일러 연소'와 관련된 문제로 보여서 이를 '탄소배출계수'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는 각 국가가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기준을 탄소배출계수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재펠릿은 그 원료가 되는 목재(나무)가 성장하면서 이미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하지 않고 고정(Fix)시켰다는 점을 들어서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 배출집계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재펠릿과 같은 바이오매스 자원의 연소에 있어서 그것이 보일러 연소이든 발전소에서의 연소이든 간에, 연소가스 자체는 물리적으로는 배출되지만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통계에서는 제외시켜주는 예외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 화학미생물과(02-961-2792)

#### 4. 좋은 펠릿제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Q.질의** 펠릿온풍기를 사용중에 펠릿에 관한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구입할때마다 펠릿이 색깔이나 냄새가 다르고 열량도 차이가 나고 온풍기 기계에서도 이상이 생기곤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판매하는 펠릿과 일반 펠릿공장에서 생산하는 펠릿의 차이가 무엇이지 궁금하고, 또 국내 생산이 아닌 수입산을 섞어서 판매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별하여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답변**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 따라 목재펠릿 품질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조업체마다 사용하는 목재의 종류가 다르고, 같은 수종일 경우에도 지역마다 특성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품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산도 마찬가지로 수입하는 국가에 따라 품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품질이 좋은 것은 아니며, 국내산보다 품질이 더 좋은 수입산 목재펠릿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판매되는 모든 목재 펠릿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 벌금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펠릿 구매 시에는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 품질시험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79)

#### 5. 우드펠릿 수입 절차는?

**Q.질의** 우드펠릿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수입 시 산림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해야 한다면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등록절차가 있습니다)

목재생산업의 종류에는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이 있으며, 목재펠릿을 수입·판매할 경우에는 목재생산업 중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또한, 같은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목재펠릿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검사 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검사 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주)대덕분석기술연구소, 한국SGS(주)\_부산시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입니다. 따라서,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시고 목재펠릿 시료와 함께 지정된 규격·품질검사 기관에 서 검사를 받아(신청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및 별지 19호 서식을 참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18-8호, 2018.8.14.)에 적합한 제품을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 통관하셔야하며,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산림청 고시 2018-73호, 2018.8.16)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상업송장을 첨부하여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

제출된 서류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합법벌채된 목재인지에 대한 서류 검사 후 적합한 경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확인서를 발급하며, 수입업자는 동 서류를 포함하여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세관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4205)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국 임업통상팀(042-481-1804,1807)

## 08. 입목벌채·굴취

<p>입목벌채 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목벌채·굴취는 산주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직접 벌채(굴취)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벌채(굴취)를 대행하고 그 산물을 목재 산업체 및 조경수 시장으로 공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채 위탁대행 자격을 갖춘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자</li> </ul> </li> </ul>
<p>입목벌채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확을 위한 벌채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ha이상은 친환경 벌채(벌채면적의 10% 이상을 수림대 및 군상으로 존치) 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산림청 훈령 제1244호) 중 4. 수확의 친환경 벌채기준을 적용에 따라 입목을 존치</li> </ul> </li> <li>◎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 및 능선부·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굴취)를 제한</li> <li>◎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관련 별표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에 적합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채면적은 최대 50ha이내, 수종별 기준 벌기령에 적합해야 함</li> </ul> </li> </ul>
<p>입목벌채 (굴취) 인·허가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입목벌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시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 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사업착수 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li> <li>- 시·군·구청에서 현지조사를 통한 적정성 여부 확인 후 신고 수리</li> </ul> </li> <li>◎ 허가에 의한 입목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li> </ul>

<p><b>입목벌채 (굴취) 인·허가 유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물의 굴취·채취 허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목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허가(변경)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li> <li>- 시·군·구청에서는 “기준 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등의 적합성 여부 및 타 법령에 따른 제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후 7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통보</li> </ul> </li> <li>◎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동나무·현사시·이태리포플러·양버들·옻나무·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등 7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입목벌채 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청에서 검토 확인 후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보</li> </ul> </li> <li>◎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채허가(신고)의 예외로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21가지 유형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벌채 등이 가능</li> </ul> </li> </ul>
<p><b>첨부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내지 별지36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 신청서, 입목벌채·굴취신고서,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기간 연기신고서</li> <li>※ 신청서 후면 또는 하단의 첨부 서류 포함하여 제출</li> </ul> </li> <li>◎ 허가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변경사항 후면에 기재)</li> </ul>
<p><b>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생산유통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8875</li> <li>• 042-481-8881</li> </ul> </li> </ul>

## 1. 벌목한 원목을 집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Q.질의** 산 중턱 또는 꼭대기에 있는 한전 첩탑과 관련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벌목한 나무를 산밑으로 운반하는 시스템입니다. 첩탑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내지 않고는 운반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실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A.답변** 벌목한 원목을 운반하는 작업과 한전의 첩탑 건설에 자재운반과는 작업방법상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벌목한 원목의 운반작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중력에 의한 집재작업이라 하여 벌채된 원목을 수라 등을 이용하여 임도변이나 토장(원목집합장소)까지 집재하는 방법과 ② 지면끌기 작업이라고 하여 트랙터 등에 원치를 부착하여 원치의 드럼을 감아서 원목을 집재하는 방식이 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장비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③ 가선에 의한 방법으로 타워야더나 케이블크레인을 설치하여 원목을 집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후 임도변이나 토장에 집재된 원목을 트럭이나 포워더에 실어서 제재소나 원목 수요처까지 운반하여 원목의 집운재 작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를 이용하려면 장비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나 임도가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현재 임도 개설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으로 임도 개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산림경영 측면에서는 임도가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써 지금은 친환경적인 임도개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2. 기업경영림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Q.질의** 기업경영림을 경영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는 어떤 식으로 신청이 되고 확정이 되면 산주한테 받아야 하는 서류들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임산물 이용& 가공사업자에 대한 산림 소유권장) 및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 펄프업, 2. 탄광업, 3. 연간 3천제곱미터 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 4. 파티클보드 제조업, 5. 목재칩 제조업, 6. 목재펠릿 제조업 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제품 신기술을 적용하는 제조업에게 산림청장이 기업경영림의 소유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림의 소유 권장을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시행 해당 산림에 대한 사용 수익권(임야대장, 임야등기부등본, 입목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및 동의서) 및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자격에 대한 증명(사업자등록증, 연간 3천제곱미터 이상의 국내산 원자재 이용을 증명(원자재 입고내역 등))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산림청장에게 소유 권장 받은 산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산림경영 계획의 작성단위) 및 제9조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산림이 위치한 해당 지자체에서 산림경영계획서에 대하여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3. 임의 별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Q.질의**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지목이 전인 토지에 자생입목이 토지의 40% 자라고 있고 나머지 토지 60%에는 과수목(감나무등) 및 관상수(향나무)를 판매 목적의 농사용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과수목(감나무등) 및 관상수(향나무)를 별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 별채하여도 되는지?

**A.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입목& 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임목을 벌채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산림으로 형성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수목과 기타 재배용으로 토지를 활용한 것은 임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생임목으로 형성된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고 벌채하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4. 산림 내 임연부에서 벌채가 가능한지요?

**Q.질의** 산림 내 임연부에서 벌채가 가능한지요?

**A.답변** 산림에서의 벌채를 할 경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임연부는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구역입니다. 임연부는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산림 지역 방향으로 30m내외까지의 거리이며, 생태적 격리라고 판단되지 않는 5미터 미만인 임도 또는 시설물 등은 임연부에서 제외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5. 벌채 허가 절차를 알려 주세요?

**Q.질의** 산(임야)에 벌채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벌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영계획 작성을 꼭 해야 되는지요?
2. 경영계획은 목상에게 대리로 조림계획을 작성하여도 되는지요?

**A.답변** 임목벌채허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경영계획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목 벌채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임목벌채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별표2]에 명시된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6. 지목이 묘지인 곳에서의 임의벌채가 가능한가요?

**Q.질의** 지목이 묘지인 곳에서 봉분 중심점에서 10m이내는 임의벌채 사항인데 봉분 10m이내에서 임목을 굴취하는 것은 임의사항인가요? 아니면 굴취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10m이상의 임목을 벌채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A.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1호에는 분묘의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임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임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는 임의로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목을 굴취할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의 임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7. 벌채된 나무를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Q.질의** 편백나무나 참나무를 구하고자 하는데 벌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벌목이 가능하다면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면 알려주십시오.

**A.답변** 산림내 입목의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벌채를 하셔야 하며, 벌채된 원목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목재 취급업체(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제재소 등) 또는 원목생산업을 하시는 분들(목상)께 문의하여 구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편백나무는 전남지역에 한정적으로 생산되므로 순천, 남원조합 등 지역 조합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8. 입목이 집단생육하는 잡종지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Q.질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에서는 임의벌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있으며, 입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에서는 위 토지를 산림으로 보아 입목벌채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A.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로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합니다.(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1001 및 1986.12.23. 선고 86도2299 판례 참조)

따라서 잡종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산림의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림으로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9.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허가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Q.질의** 현재 임야에 리기다소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수종갱신을 위해서 벌채허가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 1)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허가 신청절차
- 2) 신청에 대한 필요한 서류
- 3) 벌채후 조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보조금관계
- 4) 임야에 대하여 벌채작업을 할 때 보조금관계

**A.답변** 산림에서의 임목의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임목벌채 허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임목벌채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벌채구역도, 벌채 예정수량 조사서, 사업 계획서,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허가권자가 이를 검토하여 7일 이내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산림에 대한 조림 보조금은 개인이나 단체별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조림비에 대하여 정산지급하고, 단체(법인)의 경우 사업비로 편성되어 사업비로 지급합니다.

벌채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다만 임목수확지에 설계 감리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임업기계화 적용 벌채지에 경우에는 설계비, 감리비, 기계화 작업로 구축비에 대하여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10. 개인이 본인임야내 참나무류를 표고자목 목적으로 입목벌채허가가 가능한지요?

**Q.질의** 본인 임야 내 참나무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임상입니다.

표고자목 목적으로 입목벌채허가를 득하려고 하는데요, 산림조합에 의뢰결과 벌기령이 25년에 도달하였다고 합니다.

- 1) 개인이 표고자목 목적으로 벌채허가를 신청하여 득할 수 있는지요??
- 2)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이나 기타 자격없이 신청이 가능한지요??

**A.답변** 입목의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별표 3의 “기준 벌기령 및 벌채·굴취 기준”에 따라 벌채허가를 하고 있으며 표고자목으로 쓰이는 참나무의 경우 (수확벌채를 할 경우), 개인산주가 벌채허가를 받을 경우, 벌기령 도달임지 (참나무 25년 또는 참나무 수종갱신지)이거나 특수용도 벌기령 해당할 경우에는 20년일 경우 가능하며, 벌채허가 및 벌채에 대한 자격기준을 별도로 없어 자가 벌채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의 적용은 표고자목 사업자 등록증이나 표고생산증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표고자목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직접 벌채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표고자목 납품계약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11. 산에 넘어진 나무를 벨 경우, 산주 동의가 필요한가요?

**Q.질의** 땀감으로 나무를 할려고 하는데 뒷산에 넘어진 나무를 그냥 베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넘어진 나무인데, 베면 안 되는지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A.답변** 산림에서의 임산물(입목포함)의 벌채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별표3의 기준별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하여야 벌채가 가능합니다. 산림내 넘어지거나 부러진 나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신고하여 벌채하여야 하므로 산림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 등을 획득하셔야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숲가꾸기 작업 중 발생한 임산물에서 가지, 잎 등을 채취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 없지만 개인 재산이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12. 5천제곱미터 이상 토지 내 입목을 벌채할 경우, 임의 벌채대상이 되는지요?

**Q.질의** 일단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지목이 전인 토지에 자생입목이 토지의 40% 자라고 있고 나머지 토지 60%에는 과수목(감나무등) 및 관상수(향나무)를 판매 목적의 농사용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과수목(감나무 등) 및 관상수(향나무)를 벌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 벌채 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산림으로 형성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수목과 기타 재배용으로 토지를 활용한 것은 임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생입목으로 형성된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고 벌채하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13. 기업경영림이란 무엇인가요?

**Q.질의** 기업경영림이 무엇이고, 지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에 따라 기업경영림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2012년 권장제도에서 지정제도로 변경됨)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3에 따라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사용수익권의 경우 입목과 토지의 소유권이 다를 경우 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해당 토지를 산림경영계획기간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이며 이를 증명할 서류를 지정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토록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펄프업, 탄광업, 연간 3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 목재칩 제조업, 목재펠릿 제조업자에게만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펄릿공장과 납품 등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적용받으실 수 없으며 기업경영림으로 지정된 경우 산림경영계획서에 따라 10년간 산림을 경영하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14. 모든 벌채 시 친환경벌채기준에 따라 실행하면 되나요?

**Q.질의** 벌채 실행방법에 있어 모두베기는 친환경벌채기준에 따라 벌채구역면적의 10% 이상을 수림대 또는 군상으로 존치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수작업은 대상지의 면적이 5ha이상일 경우 하나의 벌채구역은 5ha이내로 하고, 벌채구역과 벌채 구역사이에는 폭 20m이상의 수림대를 남겨두어야한다고 하는데, 벌기령이 지난 5ha이상의 임지를 수종갱신하려고 할때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라 벌채면적의 10% 이상을 존치하고 또한 수림대를 20m이상 남겨두어야하는지요? 벌기령이 지난 임지를 산림유실수로 수종갱신할 때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라 존치면적 10%를 남겨야 하는지요?

**A.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에 적합하여야 입목벌채가 가능합니다. 또한 친환경경벌채기준은 산림청 고시 “친환경벌채 운영 요령”(2018. 11.20.) 기준에 따라 벌채를 하셔야 합니다. 5ha이상의 기준벌기령이 지난 벌채지의 경우에는 수확벌채로 친환경벌채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벌채구역면적의 10% 이상을 수림대와 군상으로 존치하셔야 하며, 벌채구역과 벌채구역사이에는 20m 폭의 수림대를 존치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수작업은 기존에 심어진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활용하여 갱신하는 방법이므로 수확벌채를 할 경우 갱신 방법에 따라 벌채방법을 적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숲가꾸기, 피해목 제거, 유실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는 친환경 벌채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불량림, 리기다 소나무림의 수종갱신은 친환경 벌채 기준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15. 기업경영림에서 소나무 및 참나무 벌기령이 어떻게 되나요?

**Q.질의** 기업경영림 적용 벌채시 참나무와 소나무의 벌기령을 알고자 합니다.

**A.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 벌기령 및 벌채 기준에 보시면 기업경영림에 대한 소나무 기준벌기령은 30년, 참나무류는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16. 특수용도기준벌기령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질의**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를 받고 매년 개별을 실행해서

부산물로 나오는 나무는 표고 재배하고자 합니다.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해당 임야의 목재를 생산함에 있어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용도가 매매가 아닌 표고자목 등으로 직접 사용하려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17. 원목생산업 등록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Q.질의** 원목생산업 등록요건 중 기술 인력이 기술2급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별목법인의 활동영역은 지역별목업자들의 무분별한 벌목과 무책임한 사후관리로 부터 산림을 보호하여 벌목부터 조립 어린나무가꾸기 등 산림의 재순환을 처음 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관장하는 것인지요? 맞다면 산림경영 대행제도와 비슷한가요?

**A.답변** 지난 5월 24일 자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원목 생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원목생산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종은 별채량 제한이 없으며 자본금 5천만원이상, 사무실, 기술인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술2급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1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종 원목생산업의 경우 기능 2급이상 산림 경영기술자 1명이상의 기술인력 기준과 자본금 및 시설 기준을 갖추어 2013년 11월 23일까지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술2급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상의 기술인력 기준은 2015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원목생산업에 등록된 업체 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 하는 별채사업만 가능합니다. 조립, 숲가꾸기 등 전반적인 산림사업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자기자본이나 기술부족으로 산림경영이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산림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산림경영 일체를 산림조합이 대신 실행하여 주는 대리경영 제도와는 무관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18. 밭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의 임의굴취가 가능한지요?

**Q.질의** 지목이 전인 땅을 임대하여 산나물농장으로 개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한 땅에 소나무가 있기에 이를 굴취목으로 팔고자 합니다. 현재 소나무가 있는 부분은 약 5,000평방미터 미만입니다. 이런 경우 굴취 반출이 가능한지요?

**A.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임목, 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위의 임목을 굴취, 채취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굴취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에 대한 굴취 여부는 지상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이 토지와 임목을 모두 소유한 산주라면 임대인 마음대로 굴취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 분리되어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임목굴취는 임목의 반출 등을 위해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개설(산지일시 사용신고 사항)이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적합 여부 및 복구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임목의 소유권(지상권)만 가진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없이 굴취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지전용에 따른 행정절차를 득하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19. 원목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Q.질의**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원목 생산업 제1종에 등록 하고자 합니다. 기술2급이상 산림 경영 기술자 및 기능2급이상 산림 경영

기술자 각 1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두 자격을 동시에 취득 한 경우 그 한사람으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A.답변** 다수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시설)은 각각의 업종에서 규정하는 최상위 기준 하나만 충족하면 되나, 기술자격이 다를 경우 각각의 기술자격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즉, 1인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업종 모두에 종사할 수는 없으며, 각각의 자격을 갖춘 2인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20. 친환경벌채의 잔존목 표시는 노란색 페인트로 해야 하나요?

**Q.질문** 산림소유자가 원목생산업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에 대행하여 벌채할 경우, 전체 벌채면적은 15헥타이며 4개소반으로(5헥타미만) 나누어 일시에 벌채할 경우에도 잔존목에 표시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5헥타 미만이라서 잔존목은 존치하되 페인트 표시는 안해도 되나요? 잔존목 표시는 꼭 노란색 페인트로 해야 하나요? 락카, 테이프로 하면 안 되나요?

**A.답변** 4개의 소반이 연결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15ha라고 한다면 친환경 벌채 기준을 준용해야 할 것입니다. 소반으로 구획된 면적이 5ha미만일지라도 한번에 벌채되는 구역면적이 5ha 이상이라고 한다면 친환경벌채기준을 적용하셔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ha 미만의 모두베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벌채기준은 산림청 훈령 제1244호(2015. 2.27.)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친환경벌채기준”에 따라 벌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남기는 나무의 가슴높이 부분에 노란색 페인트로 락카를 둘러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락카나 테이프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21. 묘지에 있는 수목을 임의로 벌채가 가능한가요?

**Q.질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지목상 “묘지”의 토지로 향후 “묘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묘)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에 대하여 임의로 벌채(모두 베기)가 가능한지요?

**A.답변**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로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합니다.(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1001 및 1986.12.23. 선고 86도2299 판례 참조)

따라서 지목상 “묘지” 일지라도 산림으로 판단되므로 임의벌채 대상이 아니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에서 입목벌채허가를 득하시고 벌채하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22. 입목벌채는 기준별기령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Q.질의** 개인 임야에 있는 소나무, 참나무를 벌채하고 유실수를 식재하여 개인 농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기준별기령이 아직 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로 벌채를 할 수 없는가요? 기준별기령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답변** 산림내 입목을 벌채하기 위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의 나무를 모두 벌채하고 다른 수종을 심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3 “기준

별기령 및 벌채·굴취기준에 의거 입목의 평균 수령이 기준별기령(공·사유림 : 소나무 40년, 참나무 25년)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준별기령 적용을 위한 나무의 나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나무를 베어서 나이테를 보는 방법, 시·군에 비치된 조림대장으로도 확인하는 방법 및 하며, 성장추를 이용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기준별기령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23. 산림 벌목을 위한 사업자 교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Q.질의** 산림 벌목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산림청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교육일정과 장소를 알고자 합니다.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는지요?

**A.답변** 원목 생산업 교육은 현재 산림조합계통조직의 훈련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진 중입니다. 교육은 일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교육기관으로 교육생이 전화로 접수하여 교육생 수요가 일정부분 채워지면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목생산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훈련기관의 연락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화 접수 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강릉임업기계훈련원 ☎ 033-661-2925
- 양산임업기술훈련원 ☎ 055-382-7247
- 진안임업기능인 훈련원 ☎ 063-433-6884~6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24. 지목이 전이면서 자생입목이 자라고 있는 토지에서 임의벌채가 가능한가요?

**Q.질의** 지목이 전이면서 자생입목이 자라고 있는 토지에서 임의벌채가 가능한가요?

**A.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산림으로 형성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수목과 기타 재배용으로 토지를 활용한 것은 산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생입목으로 형성된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고 벌채하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25. 소유자가 여러명인 산림의 입목벌채허가시 모두가 동의해야하나요?

**Q.질의** 산림 소유자가 여러명인 산림의 입목의 벌채허가시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벌채허가가 가능한지요?

**A.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입목벌채허가시 벌채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입목의 벌채는 공유물인 산림의 처분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26. 가압류된 재산의 입목벌채허가 가능한가요?

**Q.질의** 등기부 등본상 이해관계인(가압류·가등기·(근)저당권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입목벌채허가 또는 신고할때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승낙없이 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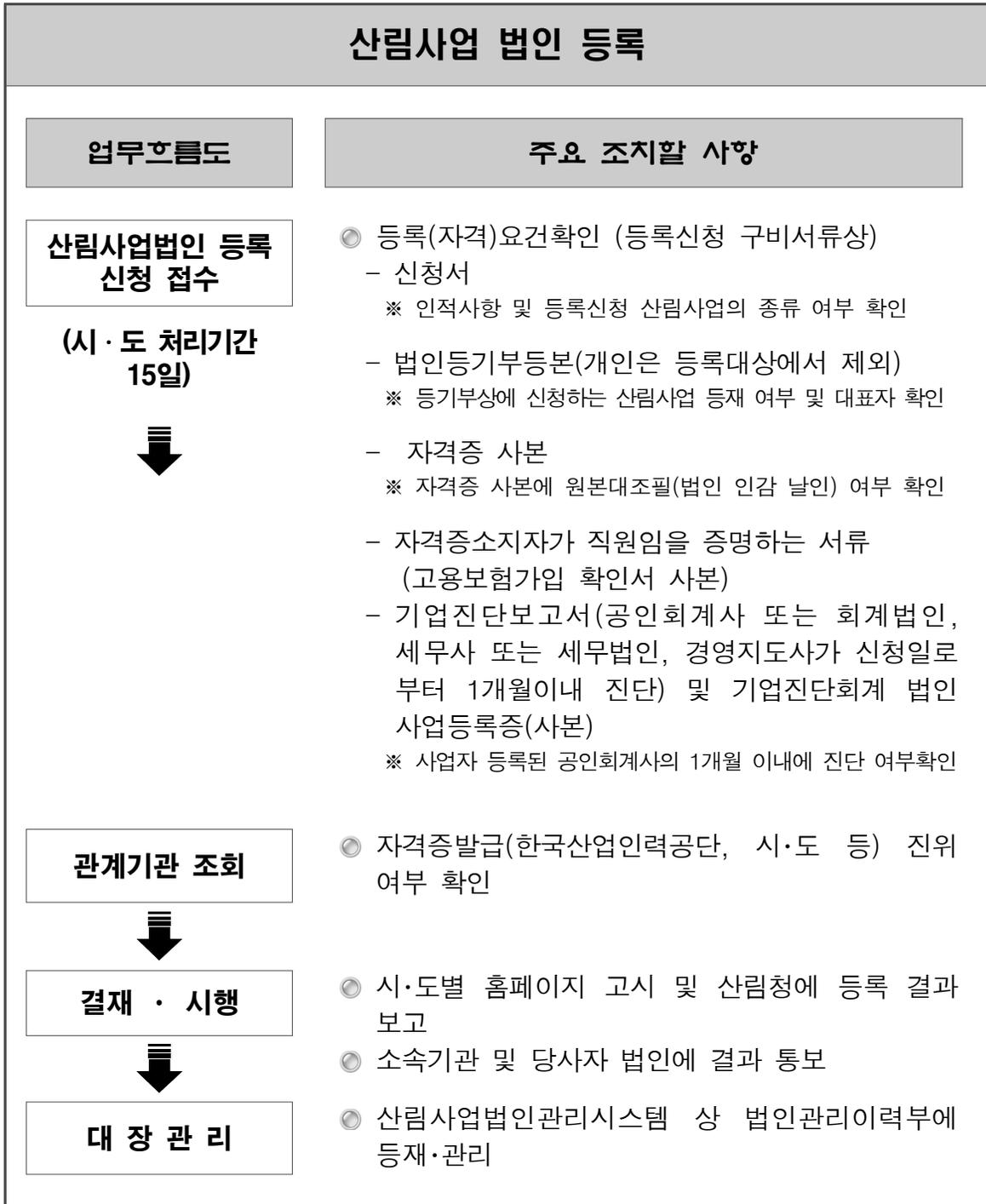
**A.답변** 입목벌채허가시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가진 사람이 요건을 갖추어 벌채의 허가를 구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가압류·가등기·(근)저당권의 사법상 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은 토지소유자의 입목벌채 등 행위에 대해 사법상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님)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가압류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등은 방해예방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8881)

## 09. 산림사업법인 등록



## 1.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Q.질의** 산림사업 입찰에 참가해서 시공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답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시행규칙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에 따라 법인 등록 시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구비(첨부)서류는 (1) 법인인감증명서, (2) 기업진단보고서,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입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재지 산림부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4188)

## 2.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자본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Q.질의**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등록기준에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억 원 이상
2.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1억 원 이상
3. 산림토목 3억 원 이상
4. 자연휴양림 등 조성 3억 원 이상
5. 도시림 등 조성 1억 원 이상
6. 숲길 조성·관리 3억원 이상

법인의 추가등록 시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비고>의 1. 나. ‘자본금 :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금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산림사업법인 등록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4188)

### 3.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등록할 경우, 필요한 자본금이 어떻게 되나요?

**Q.질의**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류를 다른 사업종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자본금을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A.답변** 산림사업법인이 사업종류를 추가할 경우 자본금은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금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사업종류 추가할 경우 자본금 요건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중 ‘비고 1. 나. 자본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4188)

#### 4.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등록할 경우, 산림기술자의 중복 인정이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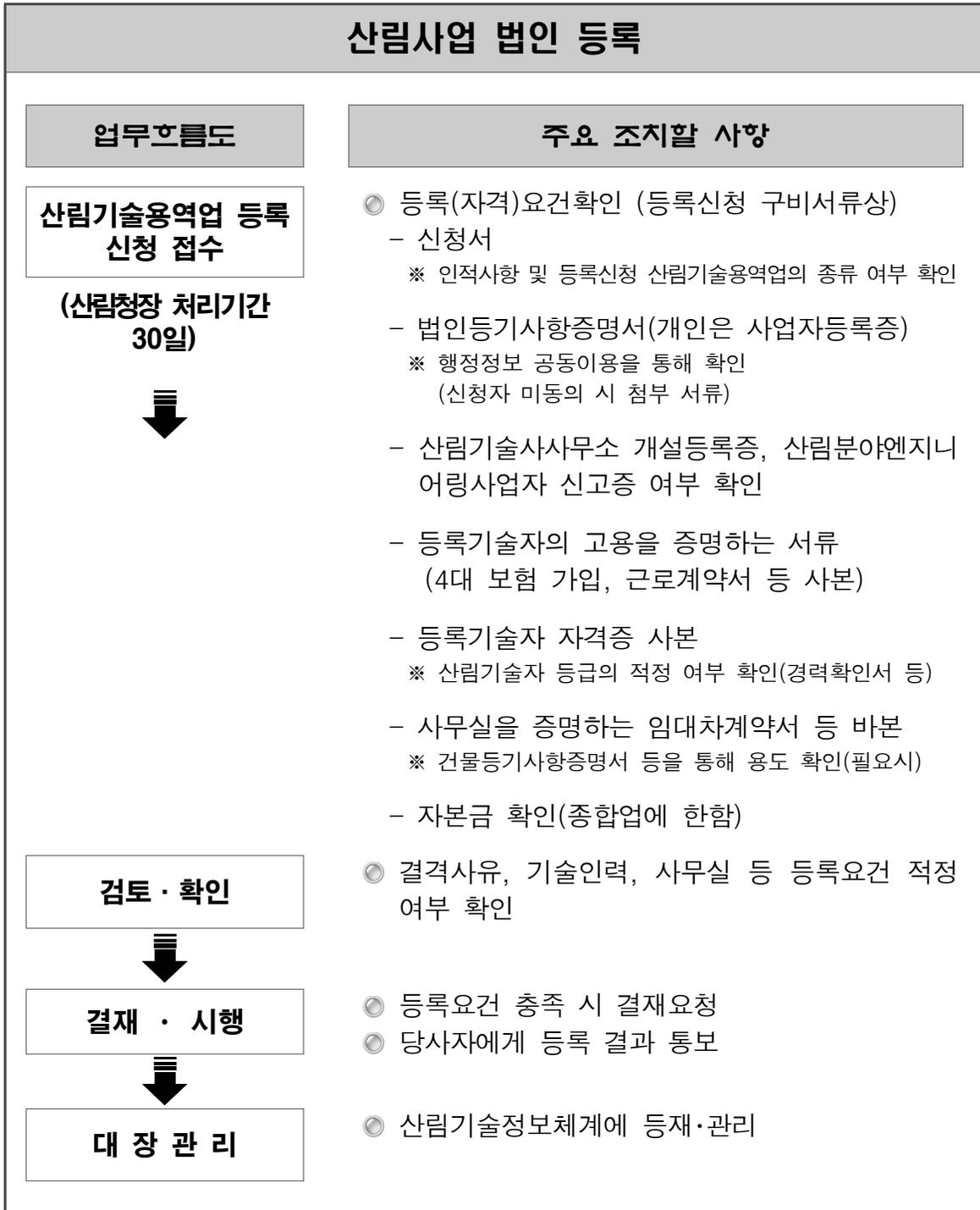
**Q.질의**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고 산림토목을 추가할 경우, 기술인력명단에 들어가는 산림기술자에 대해 중복으로 인정이 되는지?

**A.답변**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로 정하고 있으며, 비고 1. 가. “기술수준”을 보면 ‘이미 등록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경영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숲가꾸기 등을 목적으로 산림사업 법인을 등록한 후에 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산림토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는 같은 종류의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림토목 기술수준의 인력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4188)

## 10.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 1.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Q.질의** 산림기술용역업 입찰에 참가해서 용역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답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시행규칙 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구비(첨부)서류는 (1) 산림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또는 산림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2) 기술인력의 고용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게 되며, 미 동의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은 산림청장의 사무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4188)

## 2.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는데 자본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Q.질의**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등록기준에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데, 종합업의 경우만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정하고 전문업은 자본금을 필요치 않고 있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개인은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4188)

### 3. 산림기술용역업을 2개 이상 등록할 경우, 산림기술자의 중복 인정이 되나요?

**Q.질의** 산림경영과 산림생태·공학 전문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산림기술자에 대해 중복으로 인정이 되는지?

**A.답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로 정하고 있으며, 비고 1. 라. 2). 에 '2개 이상의 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나 이미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른 전문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다른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기술종류 및 기술등급이 같거나 그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1개의 전문업에 한정하여 해당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업을 등록하기 위한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1인의 산림기술자로 산림경영과 산림생태·공학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4188)

## 11. 임도시설 사업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를 설치하여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li> <li>○ 산악레포츠, 휴식공간 조성 등 공익기능 충족이 가능한 환경 친화적 시설</li> <li>○ 기존 임도의 유지·관리 철저로 임도기능 활성화 및 피해 예방</li> </ul>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도의 신설·구조개량·보수 등</li> </ul>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li> </ul>
선정기준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림·숲가꾸기, 주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li> <li>2.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임지</li> <li>3. 산불예방·병해충방제 등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임지</li> <li>4. 산림휴양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li> <li>5. 농산촌 마을의 연결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li> <li>6. 기존 임도간 연결·임도와 도로 연결 및 순환임도 시설이 필요한 임지</li> </ol> <p style="margin-left: 20px;">* 도로의 노선계획이 확정·고시된 지역 또는 다른 임도와 병행하는 지역은 제외</p>
신청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산주) → 대상지선정(시·군·구) → 임도설치계획 반영(시·도) → 확정·예산배정(산림청) → 사업시행(시·군·구)</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은 현지여건에 맞는 공법을 적용하여 피해방지 및 경관유지가 가능하도록 설계·시공</li> </ul>
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목재산업과 임도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4275</li> <li>• 042-481-4276</li> </ul> </li> <li>* 임도설치 실무상담 : 산림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li> </ul>

## 1. 임도는 누가 관리하나요?

**Q.질의** 산림에 시설되어 있는 도로를 “임도”라 말하는데, 임도의 정확한 정의와 임도를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인지요?

**A.답변** 먼저 도로(道路)라 함은 일반적으로 “도로법”에 근거하여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하며, 도로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도로를 농어촌도로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근거하여 시설되는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도로가 있습니다.

산림 내에도 여러 종류의 길(도로)이 있으며, 이 길들은 규모와 용도, 시설규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등산하는 목적으로 숲길, 등산로, 탐방로, 산책도 등의 길과, 산림 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산림 관리도로, 작업로, 반출로, 임산물반출로, 임도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도(Forest Road, 林道)라 함은 우리 청 소관 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인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속도기준, 유효너비, 종·횡단기울기, 배수시설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도의 시설 목적에 부합하도록 위 법령과 규정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따라 시설된 산림도로를 임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임도는 사업비 투자형태에 따라 보조임도와 사설임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조임도는 임도시설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90%)를 정부예산(국비+지방비)을 투입하여 개설된 임도를 말하며, 사설임도는 임도시설 사업비를 산주가 전액 투자하여 개설된 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임도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이 관리하고, 사설임도는 임도를 개설한 개인 산주가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유림에 시설된 임도는 산림청(국유림관리소 등 소속기관)에서 지속적인 보수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도는 임업 기계화 작업을 촉진하여 목재 등 임산물의 생산성을 증진하고, 산불진화, 병해충의 방제, 산악사고 구조 등 긴급한 산림재난에 도움을 주며, 산림휴양·치유, 레포츠, 산촌소득증대 등 산림복지서비스에도 기여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임도 개설을 통해 벌채 등 산림사업 비용이 약 30% 감소하고, 임도를 활용하여 목재를 생산하는 기계장비 투입 시 인력에 의한 목재수집에 비하여 약 70%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 산림청에서도 임도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4276)

## 2. 주택 진입로로 임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Q.질의** 주택개설 등 특정사업 또는 특정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한 진입로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임도는 타용도로 전환되는 개발사업이 아닌 산지의 일부분으로서, 사업 후 타용도로 전환되는 도로법 상의 도로와는 차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와 같이 국도 또는 지방도로결정 고시(또는 공고) 등의 절차가 아닌, 사업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청)에서 임도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임도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세부기준”의 마목 15)에는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도를 진입로로 활용하여 산지 내 특정한 시설은 가능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4276)

### 3. 임도 출입을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질의** 임도의 입구 및 출구에 차단기 등으로 통제하고 있는 임도를 간혹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A.답변**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예방기간(가을철(11.1-12.5), 봄철(2.1-5.15))에는 일부 산림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시적으로 입산통제구역으로 정하고 산림 내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병해충 피해방지와 유전자 보호림 등 중요한 산림지역의 보호를 위해 입산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산통제구역의 산림 내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도를 차단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4276)

### 4. 임도에서 산악오토바이를 탈 수 있나요?

**Q.질의** 임도를 활용하여 승마, 산악오토바이 또는 산악자동차 등의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임도(Forest Road, 林道)는 산림 내 도로로서 산림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Infra-Structure)입니다. 즉, 임도를 활용하여 조림, 숲가꾸기와 목재생산 등의 산림자원을 육성·이용하고, 산불, 산림병해충 및 산사태 등의 각종 산림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휴양·치유와 레포츠 활동, 산촌소득증대 등 산림복지서비스에도 기여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임도를 활용한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레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민유림)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국유림)이 “테마임도”를 지정

하고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테마임도는 산림휴양형과 산림레포츠 형으로 구분하며, 현재 전국 158개소 1,624km를 테마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레포츠는 전국 42개소 589km를 지정하여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등의 활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도 내 ATV(4륜 모터사이클)과 산악자동차(산악 오픈카) 등의 활동을 위해서는 임도가 위에서 설명드린 다양한 활동과 이용이 병행되는 산림 내 도로임을 감안하여, 사전 임도시설 관리 주체인 시군청의 산림부서(국유임도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여 안전관리 등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4276)

## 5. 임도 설계는 누가 할 수 있나요?

**Q.질의** 임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자, 설계 및 감리자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는지요?

**A.답변** 임도는 사업비 투자형태에 따라 보조임도와 사설임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조임도는 임도시설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90%)를 정부예산(국비+지방비)을 투입하여 개설된 임도를 말합니다. 사설임도는 임도시설 사업비를 산주가 전액 투자하여 개설되는 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조임도를 개설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이 발주자(발주기관)가 되며, 사설임도는 임도를 개설하는 산주가 사업발주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된 임도의 시공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자와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림토목”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된 자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도사업의 설계 및 감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산림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042-481-4276)

## 12. 산림경영계획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 등에 대한 장기간의 종합계획인 산림 경영계획 작성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 및 임업경쟁력 강화</li> </ul>
경영계획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림면적·수종별 본수 등 조림에 관한 사항</li> <li>○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등 숲 가꾸기에 관한 사항</li> <li>○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벌기령) 등에 관한 사항</li> <li>○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경영상 필요한 사항</li> <li>※ 산림경영계획 기간 : 10년 단위로 수립</li> </ul>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li> <li>○ 지원단가 : 19,874원/ha(국비50%, 지방비50%)</li> <li>○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산주</li> <li>-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li> </ul> </li> </ul>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경제림육성단지, 독립가·임업후계자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② 임업진흥촉진지역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④ 기타 산림</li> </ul>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경영계획 미작성 산림 및 기간만료 년도 도래 산림소유자 파악(시·군)</li> <li>○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시·군)</li> <li>○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보조금 신청(산림소유자)</li> <li>○ 보조금 교부(시·군)</li> </ul>
신청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산주) → 대상지선정(시·군) → 취합·조정(시·도) → 예산 확정·배정 (산림청) → 산림경영계획작성 사업 발주(시·군) →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송부(시·군 → 산주))</li> </ul>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산주</li> </ul>
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경영지원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4191</li> <li>• 042-481-4195</li> </ul> </li> </ul>

## 1. 임차인도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가능한지요?

**Q.질의** 산림소유자로부터 임야사용에 대한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자도 산림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유림의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죽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소유자로부터 임야사용에 대한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자는 산림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죽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는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정도로 산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

## 2. 소득사업으로만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가능한지요?

**Q.질의** 소득사업으로만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제13조 규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산림자원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숲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17.12.12개정)

따라서, 산림경영계획서에는 계획기간인 10년 사이에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기간 중 실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벌기령 미달한 산림의 벌채, 기실행으로 실행주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업 등), 원칙적으로 위 각 호의 사항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소득사업만 대상으로 한 산림경영계획인가는 산림경영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에서 산나물, 조경수 등 재배의 경우(50cm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에 해당하고 조건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재배의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이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산림경영계획의 취지와 산지일시사용신고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산림소득사업만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

### 3. 소득사업 품목이 바뀌면 변경인가 대상인지요?

**Q.질의** 소득사업 품목이 바뀌면 변경인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답변** (벌채나 굴취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 변경인가 없이 가능)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벌채나 굴취를 수반하지 않는 산림소득사업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 변경 이행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변경인가 없이 가능합니다.

(벌채나 굴취를 수반할 경우 변경인가 대상) 다만,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각 종류별로 생태적 특성(생태, 생장 등)이 달라 품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산지의 이용계획, 작업종 등 현지 산림상태에 대한 산림을 경영하려는 목표가 변경되어 입목벌채 등의 장소·양 및 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

#### 4.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자격증이 필요한지?

**Q.질의**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 산림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13조 제2항은 "산림 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산림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작성하는 경우에도 산림자원법령에 정하는 산림경영계획 작성(수립) 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기준에 부합한 지 여부는 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인 및 판단하게 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

#### 5. 임야면적이 1ha인 경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가능한지요?

**Q.질의** 사유림 경영면적이 1ha인 경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답변**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예규)[별표]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에서는 소반구획은 최소 1ha 이상으로 구획하되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0.1ha 이상으로 기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ha 이상으로도 구획하여 산림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

### 13. 대리경영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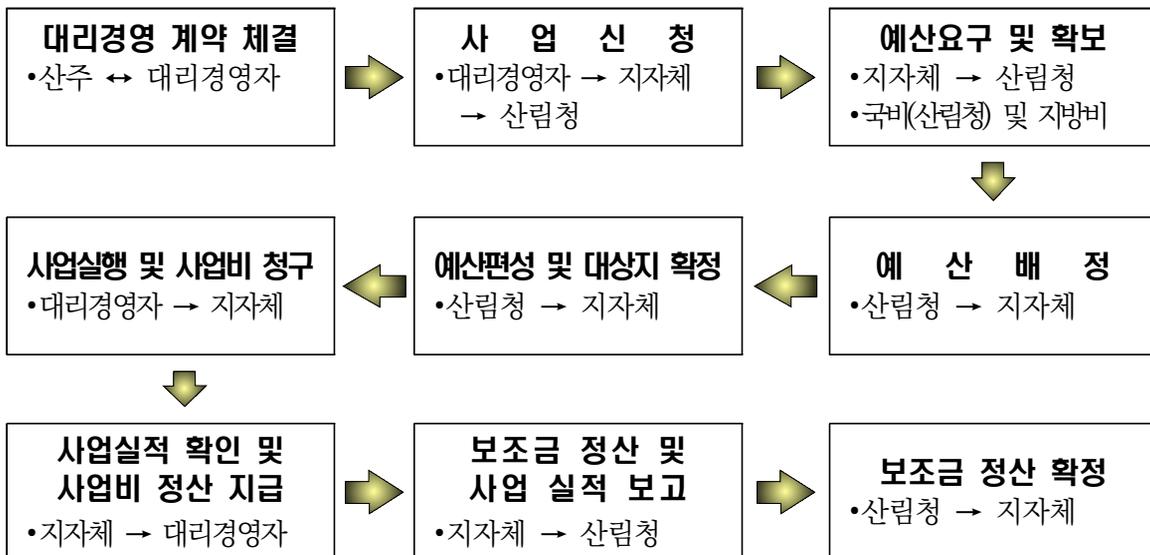
개념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경영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임</li> <li>◎ 영세산주 및 부재산주의 방치된 산림을 대리경영을 통하여 사유림경영을 활성화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 경제적·공익적 기능 증진</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의 작성</li> <li>◎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 및 감독</li> <li>◎ 보조금의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li> <li>◎ 산림보호예찰, 임목 생육상황 파악 등 일반관리활동</li> <li>◎ 산림경영관련 기술·정보 및 자금의 제공 등</li> <li>◎ 기타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li> </ul>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소유자와 대리경영 계약을 체결한 산림</li> </ul>
실행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li> <li>◎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임업분야 대학,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li> </ul>
대상지역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사업을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림을 대상으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임지를 선정 (기업림은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임업진흥권역</li> <li>② 임업용산지</li> <li>③ 기타 대리경영을 희망하는 산림</li> </ol> <p style="margin-left: 20px;">*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급적 집단화 되도록 선정</p> </li> </ul>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경영사업계약은 원칙적으로 산림소유자와 대리경영자 간에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산림소유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li> <li>◎ 계약기간은 산림경영의 효과를 감안하여 10년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li> <li>◎ 대리경영사업계약으로 인하여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권(매매, 담보제공, 양도, 상속 등)을 제한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시 첨부서류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야도, 신분증</li> </ul> </li> </ul>

<b>산림 사업 실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목벌채 등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량산출, 판매예상액, 판매·알선 및 대금정산 방법 등을 알려 줌</li> <li>● 사업계획과 사업결과를 알려 줌</li> <li>● 산림사업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수령을 대행해 줌</li> </ul>
<b>담당기관(부 서) 및 연락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산림조합담당</li> <li>• 042-481-4155</li> <li>• 042-481-4156</li> </ul>

1. 대리경영 추진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Q.질의** 대리경영을 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2014. 6.13)」에 따라 대리경영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진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56)

## 2. 대리경영자 중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은?

**Q.질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A.답변** 대리경영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은 함께 열거된 임업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지방산림청장,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 정도의 자본과 기술을 갖추어서 산림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에 산림사업법인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법인의 정관, 목적, 업무 태양, 자본, 기술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56)

## 14. 산림사업종합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귀산촌인창업자금) 안내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용자기간(년)		이자율 (%)	'19 대출규모	
	거치	상환			
계				117,360	
<input type="checkbox"/> 산림사업종합자금				87,860	
<국고 용자>				50,000	
① 산림경영 기반조성	숲가꾸기	10~20	5~15	1.0	500
	임도시설	20	15	1.0	
	전문임업인육성	10~20	10~15	1.0~2.0	
② 사립휴양시설 조성	사립자연휴양림	10	10	3.0	1,000
	사립수목원	10	10		
	사립수목장림	10	10		
③ 산양삼 생산	10	5	2.0		1,900
④ 해외산림자원개발	10~25	3	1.5		4,700
* 조정분	-	-	-		600
<이차보전>				37,860	
① 단기산림소득지원	3~5	2~7	2.0		28,860
② 조림용묘목생산	2	2	2.0		1,200
③ 목재이용 활성화지원	목재이용·가공 시설	3	7	3.0	1,440
	국산원자재구입	3	2	3.0	4,440
	수출원자재구입	3	2	3.0	1,200
	임업기계화	3	7	3.0	360
④ 산림조합육성	단기	3	2	3.0	360
	장기	3	7		
<input type="checkbox"/> 귀산촌인 창업자금(국고용자)				2.0	20,000
<input type="checkbox"/> 임업인 경영자금(국고용자)				2.5	9,500
담당기관(부서) 및 연락처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업경영담당 • 042-481-4191 • 042-481-4192			

## 1. 산림사업종합자금이 무슨 사업이며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Q.질의** 산림청에서 산림사업종합자금이라는 용자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서 어떤 절차로 신청할 수 있나요?

**A.답변**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장기·저리의 정책융자금을 지원하여 산림사업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임가소득 증대 및 임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용자사업입니다. 용자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장기·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의 신용과 담보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니 사업 신청 전 반드시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산림조합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전국 지역산림조합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신청자가 지역산림조합에 용자를 신청하면 산림조합에서 서류심사 및 용자심의회를 거쳐 대출 적격자로 선정이 되면 대출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외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전자북>2019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2)

## 2. 임야매입자금은 아무나 지원이 가능한가요?

**Q.질의**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중 임야매입자금이 있는데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A.답변** 임야매입자금은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귀산촌인 창업자금 등 2가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사업은 장기수의 조림·육림사업 및 유실수, 조경수생산, 사립휴양시설 조성, 단기산림소득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 지원되는 자금으로 독립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임업인이라 하더라도 선발된 후 최근 3년 이내에 보수 교육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기타 임야매입자금 지원 제한 사항이 많으므로 임야매매 계약 전 해당 지역 산림조합과 충분한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용자금리는 1.0%, 용자기간은 20년 거치 15년 상환(단기산림소득사업의 경우 용자금리 2.0%, 용자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용자한도는 독립가는 최대 3억원,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은 최대 2억원입니다.

- \* 임야매입자금 대출절차 : 해당임야에 대해 대출기관과 협의(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 등) → 임야매입 계약 → 대출신청서 제출(대출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 대출기관 용자심의회(대출자 선정) → 대출금 지급(잔금 : 매도자, 계약금 : 대출자에게 입금) → 사업추진
- \* 임야매입의 제한사항 해당여부, 임야매매가와 대출가능금액의 차이, 대출금 지급시기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2)

### 3.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내용과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Q.질의**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중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이 있던데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귀산촌하여 임업분야 창업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임업인과 귀산촌인에게 용자금을 지원하여 초기 자본난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귀산촌 하신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조건은 금리 2.0%, 거치 5년, 상환 10년입니다.(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의 경우 연령기준 적용하지 않음)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분야와 산림복지서비스분야 창업 및 주택구입 신축 시 지원되며 귀산촌 지역 산림조합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전자북>2019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2)

#### 4. 임업인 경영자금 지원내용과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Q.질의**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중 단기성 융자사인 임업인 경영자금의 지원내용과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임업인 경영자금은 대출기간 2년의 단기성 대출사업으로 임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그리 2.5%로 대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이후 별도의 사업실적을 증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지원받으시는 임업인들의 부담이 적은 사업입니다. 지원자격은 임업분야에 종사하는 임업인으로서 산림경영, 임산물(목재 포함) 생산·이용·가공·유통·보관, 토지 임차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전자북>2019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2)

## 15. 임업인 관련 세제 지원현황

세목	감면내용	관련조문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에 따라 새로 조립한 산림과, 채종림, 산림보호구역으로 그가 조립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의 벌채, 양도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 세액 감면</li> </ul>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지 소재지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경영한 보전산지는 경영 기간에 따라 10/100~50/100 양도소득세액 감면</li> </ul>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양도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5/100 세액 감면</li> </ul>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상속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전산지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에 따라 새로 조립한지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포함) 상속시 영농상속 재산가액 공제(5억원 한도)            ※ 영농상속자 : 만18세이상, 2년 전부터 영농(영림) 종사,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 거주</li> </ul>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8조
증여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전산지중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조립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산림보호구역 포함)로서 29만7천㎡ (조립기간이 20년이상 99만㎡)내의 산림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면제</li> </ul>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취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독립가·임업후계자)가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시 취득세 면제, 보전산지(99만㎡이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li> </ul>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세목	감면내용	관련조문
재 산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합산과세 대상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중인 준보전산지(도시지역제외)는 별도합산과세</li> </ul>	지방세법 제106조, 제10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리과세 대상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보전산지내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아 실행중인 임야(도시지역 제외. 다만 도시지역편입 2년이 안된 임야와 보전녹지지역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아 실행중인 임야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과세 대상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채종림·시험림,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임야</li> </ul>	
담당기관(부서)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업경영담당 · 042-481-4191</li> </ul>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에 따른 감면 세부내용은?

**Q.질의**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산지(토지)를 매도하려고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A.답변** '17년 12월에「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제69조의4)이 신설되었고, 제1항에는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영한 기간에 따른 감면 세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직접 경영한 기간	감면 세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20년 이상 3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30년 이상 4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40년 이상 5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50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1)

## 2. 산에서 임산물을 8년 이상 재배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Q.질의**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임산물을 8년 이상 재배하면 농지경작으로 보아 농지처럼 8년이상 자경에 해당되어 임야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A.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만 해당되고 임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한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1)

## 16. 독립가·임업후계자

### ■ 자격요건

#### ○ 독립가

구 분	자 격 요 건	선정권자
모 범	소유산림 3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100ha이상	산림청장
우 수	소유산림 100ha이상 조림실적 50ha 이상(유실수의 경우는 20ha이상)	시·도지사
자 영	소유산림 5ha이상 조림실적 유실수 3ha이상	시장·군수
법 인	(일반법인) 소유산림 3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100ha이상	산림청장
	(농업법인) 소유산림 1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5ha 이상	시장·군수

#### ○ 임업후계자

자 격 요 건	선발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독립가의 자녀</li> <li>- 3ha이상 산림소유자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또는 자매 명의 포함)</li> <li>- 10ha이상 국·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li> </ul> </li> <li>○ <u>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u></li> </ul>	시장·군수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산림청 고시 제2018 - 87호)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실류	· 식재면적 10,000㎡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식재면적 3,000㎡ 이상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	· 원목 50㎡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재배시설 1,000㎡ 이상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버섯류(툽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	· 3,000㎡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	· 3,000㎡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약초류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	· 3,000㎡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사. 수목부산물류	·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 이상에서 은행·옻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식재면적 10,000㎡ 이상에서 고로쇠나무·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아. 관상산림 식물류	·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재배시설 1,000㎡ 이상에서 자생란·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재배포지 3,000㎡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자. 그 밖의 임산물	· 3,000㎡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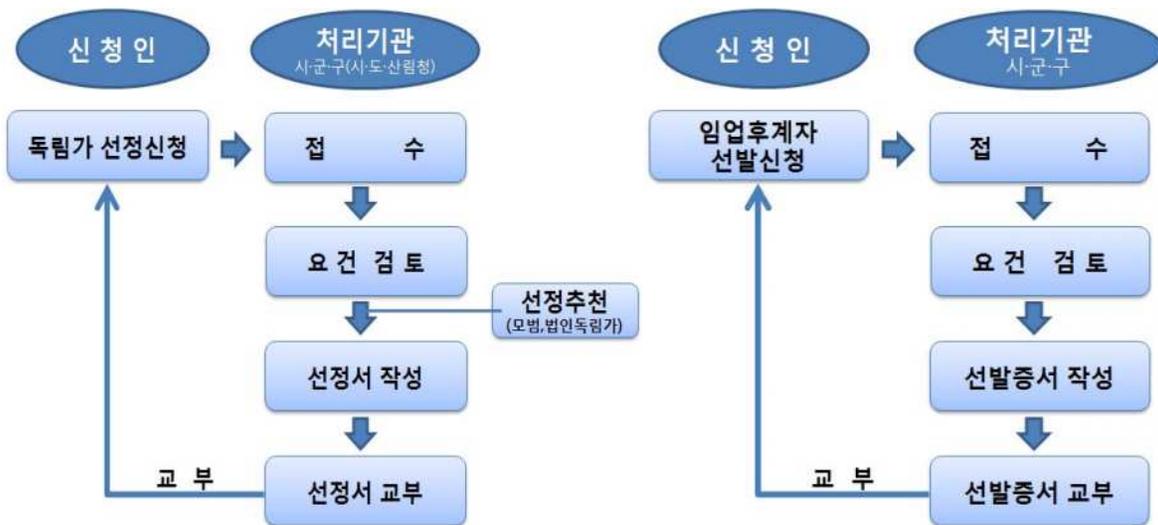
## 【 용어의 정의 】

-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가) 사업명
    - 나) 사업기간
    - 다) 사업 추진방향
    - 라) 사업비 투자계획
    - 마) 사업별 추진일정
    - 바) 생산물 판매계획
    - 사) 기대효과

■ 지원사항

-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립가와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정보제공 등의 지원

■ 선정·선발 절차



1.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Q.질의**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답변** 임업후계자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를 말합니다.

“재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있거나 5년이상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이며, 지목에 대한 구분 제한없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기준면적이상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고 공적으로 증명(세금 계산서 등)을 하시면 임업후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

## 2. 영농조합법인이 임업인에 해당되나요?

**Q.질의** 영농조합법인이 임업용 산지 내에 임산물 가공건조시설을 계획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고자 하나, 영농조합법인이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영농이란 사전적 의미로 농업경영을 의미하며, 농업경영이란 「농지법」 제2조(정의)에서 농업인이나 농림어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법 이론상으로 ‘~자’라 함은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 “예”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업인’의 범위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사안별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목적별, 유형별로 정책적 판단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야에 대한 인허가 등이 따를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임업인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법률을 적용받아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임업인의 범위에 포함 되었다고 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업인을 별도로 인정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

### 3. 임업인 신청시 임야소재지와 실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나요?

**Q.질의** 오미자 받을 구매하여 임업인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실거주지와 오미자 받의 위치가 동일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도 임업인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요?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도 임업인이 가능한지요? 임업인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A.답변** 임업인의 범위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충족이 될 경우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 되으나, 현재 재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업인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현재 약초재배를 하고 있어야 가능함.)

만약 소유하고 계신 임야가 없고, 임대를 하여 약초(오미자)를 재배하고 자 하실 경우에는 5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며, 임업인의 범위 확인 여부는 산림 경영지(재배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시면 됩니다.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업적 직업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임업인의 범위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전문임업인(독립가, 임업후계자) 선정 된 자로서 산림경영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을 경우, 국고보조금, 융자 지원 및 세제혜택 등이 있습니다.

- \* 독립가 : 산림을 5ha이상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자.
- \* 임업후계자 :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이며,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신청은 산림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산림 부서에 신청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

#### 4. 표고버섯을 재배하는데,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나요?

**Q.질의** 표고버섯 배지재배를 하고 있는데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보면 원목 50세  
제공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배지재배도 포함되는지요?

**A.답변** 톱밥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을 경우, 표고톱밥배지 재배시설 1,000제곱  
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표고톱밥 재배시설을 1,000  
제곱미터 이상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재배하고 있을 경우, 임업후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

#### 5. 임업후계자의 선정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Q.질의** 임업후계자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A.답변** 임업후계자의 선정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 요건 :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  
하는 자로서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두번째 요건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로서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산림청장이 기준고시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실류	· 식재면적 10,000㎡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식재면적 3,000㎡ 이상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	· 원목 50㎡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재배시설 1,000㎡ 이상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버섯류(툽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	· 3,000㎡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	· 3,000㎡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약초류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	· 3,000㎡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사. 수목부산물류	·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 이상에서 은행·옻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식재면적 10,000㎡ 이상에서 고로쇠나무·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아. 관상산림 식물류	·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재배시설 1,000㎡ 이상에서 자생란·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재배포지 3,000㎡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자. 그 밖의 임산물	· 3,000㎡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

## 6. 독립가도 임업인인가요?

**Q.질의** 임야에 수종갱신을 하고 잣나무를 조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업인이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독립가라는 말이 있던데, 독립가는 임업인으로 규정하는지요?

**A.답변** <임업인의 범위>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 나.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다.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 라.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 마. 밤나무 5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 바. 잣나무 1만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 사.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입니다.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잣나무를 1만 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을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업인의 인정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오니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산림부서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영독립가는 5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이며, 산림청에서는 전문임업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임업인 : 독립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따라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산림경영을 하고 계신다면 자영독립가 신청이 가능하며, 자영독립가 신청은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 구) 산림 부서에 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

## 7. 임업인의 자격 요건 중 연간 판매액 120만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Q.질의**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범위) 제3항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표고버섯)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에 대한 증빙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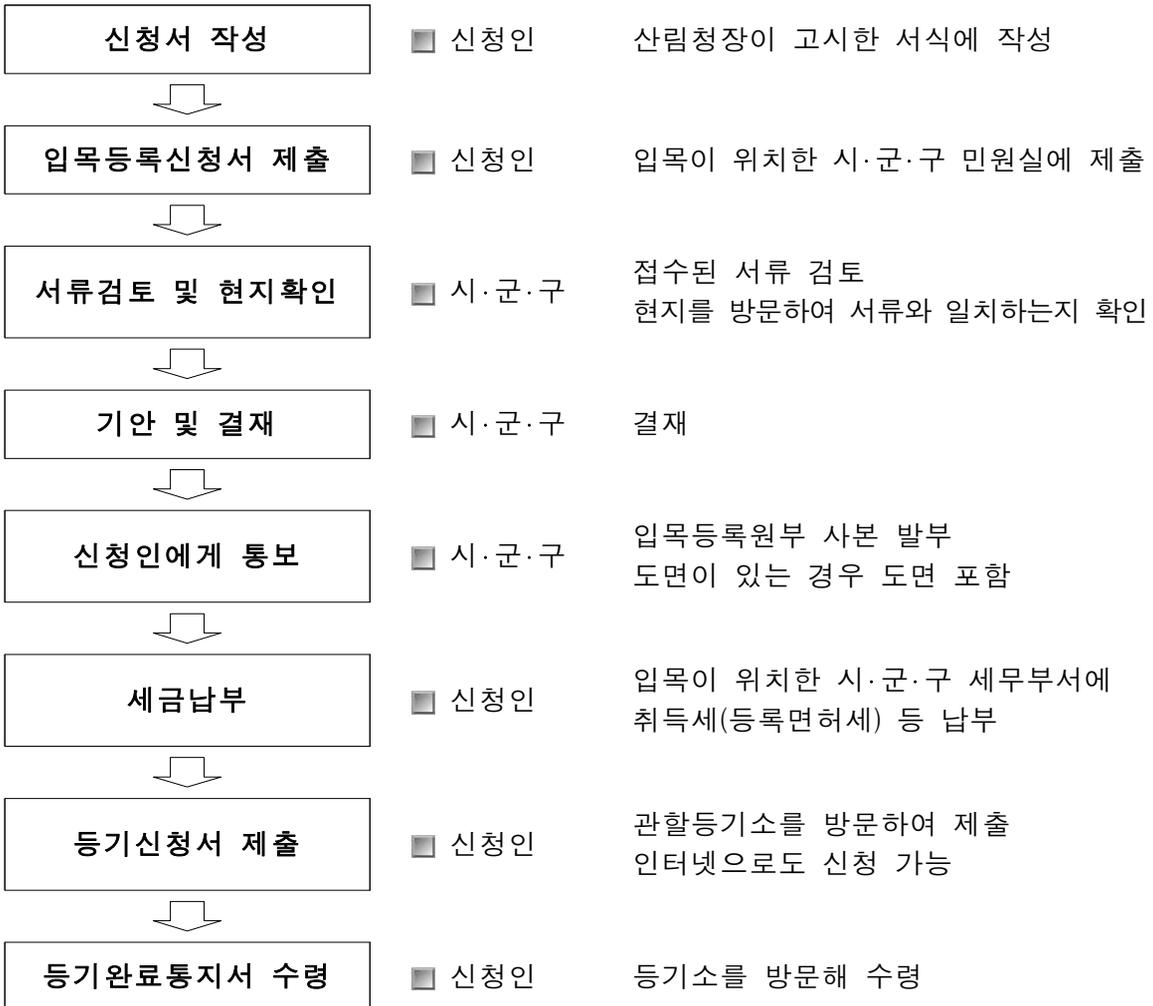
**A.답변** 표고 톱밥 재배로 120만원이상 소득이 발생하여 판매를 하였다면, 표고톱밥 재배인 경우에는 재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생산이 가능하므로 재배시설 소유자 확인, 재배시설 현장 사진(시설, 작업 등),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가 인정이 가능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

## 17. 입목등록

- **관련법률** : 입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입목등기규칙
- **입목등록** :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 현지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것
- **입목등기** :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원부」가 있어야 입목등기가 가능함

### ■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절차 ■



## 1. 입목등록 가능 수종 및 구비서류를 알려 주세요.

**Q.질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입목이라 함이 산림수종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매실, 복숭아 등 유실수도 해당되는지?

입목등록신청 시 입목소유 확인 서류의 명확한 정의(농지원부, 거래명세서 등으로 가능한지)를 해 주세요.

**A.답변** 우선 입목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 소관 법률임을 알려드리며, 입목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입목이라 함은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산림수종만이 아닌 모든 수목을 대상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부착된 수목이라면 매실, 복숭아 등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2그루이상인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화분에 심어진 분재 수나 가식된 형태(완전히 심어지지 않은 상태, 이식이 예정된 상태)의 수목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입목등록은 지방자치단체 산림(공원녹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목등록신청 시 입목소유 확인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입목등록신청서 1부
- ②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③ 법 제15조 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입목등록원부) 1부
  -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 수종·수량 및 수령
- ④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1)

## 2. 입목등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질의** 입목등기를 어떤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는 문의 드리기 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설감정기관에 수목의 수와 상태 등의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서를 받은 후 이를 첨부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답변** 먼저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의 등기는 등기된 입목이 토지와는 별도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객체임을 외부에 공시하는 것으로서, 입목등록을 한 후 입목등록원부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입목등록은 입목등기의 선행절차)

「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에서는 토지의 일부분의 범위를 정한 바는 없으며, 일부분에 대한 위치 및 지적표시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자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목등록신청서 이외에 입목등록신청 시 구비서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리 신청의 경우는 위장임장 등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입니다.

입목등기제도의 취지 및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종, 수량 및 수령(수고, 가슴높이 지름 및 분수) 등 입목의 조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목이 임야이고 대면적으로 현지 여건 상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준지 조사로 수량(㎡, 분)을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감정 평가 자료는 입목등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2)

### 3. 입목등록원부 등재 시 동의서 받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Q.질의** 등기부 등본 상 임야 소유주 갑이 입목만 별도로 을에게 매도한 경우로서, 을이 입목등록원부를 만들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갑과 을의 입목매매계약서와 입목매도자 갑이 을이 입목등록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동의서만으로 입목등록원부 등재가 가능한지요? 문제는 이 토지(임야)에 병·정 등이 압류 등 다른 법적권한을 설정해 놓은 땅입니다.

해당 임야 토지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병, 정 등에게도 동의서를 받아 와야 하는지요?

**A.답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입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입목을 조사하여 관할 소재지 시장 군수에게 입목등록 신청을 하여 입목등록원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입목의 등록은 입목을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와 별도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토지에 저당,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면 입목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저당, 압류를 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민법 제358조(저당권의효력의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수목의 소유권과 법적지상권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1)

#### 4. 조경수 입목등기 절차를 알려 주세요

**Q.질의**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조경수를 식재하는데, 입목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우선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의 등기는 등기된 입목이 토지와는 별도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임을 외부에 공시하는 것으로서, 입목의 등록 및 입목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 ① 입목의 소재와 범위가 등기부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 ② 입목에 관한 물권의 권리변동 과정 내지 태양을 진실하게 나타내어,
- ③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고객님과 같이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재배하고 있는 조경수를 입목 등록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먼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입목 등록이 가능하며,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목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입목 등록은 입목 등기를 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며, 입목 등록이 되어 있는 입목에 대해서만 입목 등기가 가능합니다.

입목등록신청시 구비서류(입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 ① 입목등록신청서 1부
- ②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③ 법 제15조 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입목등록원부) 1부
  -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 수종, 수량 및 수령
- ④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

입목의 등록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신청자가 입목등록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시장, 군수는 현장을 확인하고 난 후 신청서 내용과 대조 심사& 확인하여 신청서 발급(처리기간 : 30일)
  - 연접 지번의 수목을 신청지번으로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현장 확인 필요
- ③ 신청서 발급시 입목등록원부에 동일하게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  
(변경신청시도 동일)
- ④ 등록된 입목은 당해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사유란에 등록명의인의 성명과 그 등록일자를 기재합니다(시, 군, 구)

입목등록신청이 완료(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되면 입목 등록신청서, 입목등록원부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서 입목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1)

## 18. 임업재해 보험

<b>목 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작업 중 발생한 임업인의 신체상해·질병 및 자연재해·화재로 인한 임산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통해 임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여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에 기여</li> </ul>																				
<b>보험종류별 대상재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인안전재해보험 : 임업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질병</li> <li>○ 임산물재해보험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li> </ul>																				
<b>정부지원 보험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인안전재해보험 : 정부지원 50%, 개인부담 50% * 일부 지자체에서 0~50% 지원(약 174개 시·군·구)</li> <li>○ 임산물재해보험 : 정부지원 50%, 지자체 25~44%, 개인부담 6~25%(서울 50% 부담)</li> </ul>																				
<b>보험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인안전재해보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급부명</td> <td>일반 1형</td> <td>일반 2형</td> <td>일반 3형</td> <td>일반 4형</td> </tr> <tr> <td>보험료</td> <td>96,000원</td> <td>112,200원</td> <td>127,500원</td> <td>145,100원</td> </tr> <tr> <td>급부명</td> <td colspan="2">장애인형</td> <td>산재1형</td> <td>산재2형</td> </tr> <tr> <td>보험료</td> <td colspan="2">97,600원</td> <td>159,600원</td> <td>180,700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지자체에서 10~50% 지원</li> </ul> </li> <li>○ 임산물재해보험 : 보험가입금액 × 보험요율(5~10%)</li> </ul>	급부명	일반 1형	일반 2형	일반 3형	일반 4형	보험료	96,000원	112,200원	127,500원	145,100원	급부명	장애인형		산재1형	산재2형	보험료	97,600원		159,600원	180,700원
급부명	일반 1형	일반 2형	일반 3형	일반 4형																	
보험료	96,000원	112,200원	127,500원	145,100원																	
급부명	장애인형		산재1형	산재2형																	
보험료	97,600원		159,600원	180,700원																	
<b>가입시기 및 자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인안전재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시기 : 매년 1~12월</li> <li>- 가입자격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 일반1형·4형은 만15~87세, 일반2형·3형·장애인형·산재형은 만15~84세</li> </ul> </li> <li>○ 임산물재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품목 : 6개 품목(뚝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 오미자)</li> <li>- 가입시기 : 뚝은감 2~4월, 밤·대추 4월, 표고버섯 2~11월 (표고원목재배: 6~7월, 복분자·오미자 11월) (세부사항은 보상범위 참조)</li> <li>- 가입자격 :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임가 * 면적 : 밤 0.62ha, 뚝은감 0.1ha, 복분자 0.09ha, 대추 0.07ha, 오미자</li> </ul> </li> </ul>																				

0.05ha, 표고버섯 0.03ha 이상, 가입금액 2백만원 이상  
 ☞ 보험기간은 1년이며,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 가능

보상범위

◎ 임업인안전재해보험

급부명	일반 1형	일반 2형	일반 3형	일반 4형	장애인형	산재1형	산재2형
유족급여금	5,500만	7,500만	9,000만	1억 2,000만	7,500만	1억 2,000만	
장례비	100만					1,000만	
고도장해급여금	5,000만	7,500만	9,000만	1억	7,500만	1억	1억 2,000만
재해장해급여금	5,000만 × 장해율	7,500만 × 장해율	9,000만 × 장해율	1억 × 장해율	-	1억 × 장해율	1억 2,000만 × 장해율
간병급여금 (재해장해, 질병장해)	500만					3,000만	5,000만
휴업(임원)급여금	1일당 2만 (최대 120일)	1일당 3만 (최대 120일)		1일당 2만 (최대 120일)	1일당 4만 (최대 120일)	1일당 6만 (최대 120일)	
재활(고도장해) 급여금	500만					1,000만	3,000만
재활(재해장해) 급여금	500만 × 장해율				-	1,000만 × 장해율	3,000만 × 장해율
상해·질병치료 급여금	실제비용(최대 1천만)					실제비용 (최대 5천만)	
특정질병수술 급여금	1회당 30만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1회당 30만						

◎ 임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가입면적 (㎡)이상	가입지역	판매기간	보상재해	자기부담 비율
뽕은감	1,000	전국	2~4월중 (봄동상해 특약 : 3월까지)	(주계약) 태풍(강풍)·우박·지진피해 (특약)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10%, 15%, 20%, 30%형 중 선택
(일소피해)	1,000	전국	6~7월중	일소피해	10%
(적과전 종합위험)	1,000	전국	12월중	(적과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적과후) 태풍(강풍)·우박·집중호우	10%, 15%, 20%, 30%
밤	6,200	전국	4월중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대추	700	전국	4월중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표고버섯 버섯재배사	단·연동 하우스 300	전국	4~11월중 (표고원목재배 6~7월)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보험가입금액 (생산비)의 100% 보장형

대상품목	가입면적 (㎡)이상	가입지역	판매기간	보상재해	자기부담 비율
복분자	900	고창·정읍·순창 함평·담양·장성	11월중	(5.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10%, 15%, 20%, 30%, 40%
오미자	500	문경,상주,예천 단양,장수 인제,거창	11월중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 보험금 지급 : 보험가입금액×{피해율-자기부담률 (10%,15%,20% 등)}

**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업재해보험 담당
- 042-481-1848

1. 임업재해보험은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Q.질의** 임작업시 임업인 신체상해 및 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임업재해보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답변** 전국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농협에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임산물 재배지 필지별 내역을 말씀하시면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 재해피해가 발생하면 수령 가능한 보험금 등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농협방문 시 농지원부 또는 이장이 확인해 준 경작확인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 임업인안전재해보험 : 전국 지역농협(상담 : NH농협생명, ☎ 1544-4000)

\* 임산물재해보험 : 전국 지역농협(상담 : NH농협손해보험, ☎ 1644-8900,9000)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2. 대추나무 표준수확량 조사 및 적용 방법은?

**Q.질의** 대추나무 1그루의 표준수확량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A.답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하여 나무나이에 따라 표준수확량을 조사·산출하고 있으며 4년생부터 30년생까지의 수확표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 시 수확량 적용은 처음 1년간은 필지별 생산통계가 없어 표준수확량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후에 실제 생산량을 연차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3. 표준단가 산출은 어떻게 조사하여 적용하고 있는지?

**Q.질의** 대추나무 등 임산물재해보험 가입품목의 kg당 표준단가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여 적용하고 있는지?

**A.답변** 최근 5년간 시장가를 조사하여 최고·최저가격을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4. 대추 비가림시설의 보험가입 및 열과피해도 보상이 되는지?

**Q.질의** 대추 비가림시설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와 대추 꺾질이 갈라지는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A.답변** 대추 비가림시설은 보험가입과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을철에 호우 등으로 대추 꺾질이 갈라지는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추 나무는 재해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5. 보험금과 재해복구비가 중복지원이 되는지?

**Q.질의**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과 정부의 재해복구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A.답변**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유실·매몰·침수 등의 피해로 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는 받지 못하지만 병해충방제를 위해 지원하는 농약대는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19. FTA 직접피해보전대책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li> </ul>
대상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 중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 장관이 선정한 품목</li> </ul>
발동요건 (모두 충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내 가격 :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li> <li>② 총수입량 :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li> <li>③ FTA 체결국 수입량 :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li> </ol>
신청자격 (모두 충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li> <li>②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li> <li>③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한 자(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li> <li>④ 해당 연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li> </ol>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 업 인 : 개인당 3,500만원까지</li> <li>● 농업법인 : 법인당 5,000만원까지</li> </ul>
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업소득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4194</li> <li>• 042-481-4196</li> </ul> </li> </ul>

## 1.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무슨 사업이며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Q.질의** 산림청에서 임업인 등에게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서 어떤 절차로 신청할 수 있나요?

**A.답변**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 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들이 시·군·구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 신청 하고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6)

## 20.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품질관리

근거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11.7.25. 개정 및 시행)</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고 생산적합성조사에서 품질검사까지 재배과정을 한국 임업진흥원에서 지원·관리</li> </ul>																								
관리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67 794 704 844">품질관리 절차</th> <th data-bbox="737 794 1373 844">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67 867 704 918">생산적합성조사</td> <td data-bbox="737 867 1373 918">(진흥원) 재배전 토양, 종자, 종묘의 농약 검사</td> </tr> <tr> <td data-bbox="467 941 704 991">↓</td> <td></td> </tr> <tr> <td data-bbox="467 1005 704 1056">생산신고</td> <td data-bbox="737 1005 1373 1056">(재배자)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td> </tr> <tr> <td data-bbox="467 1079 704 1129">↓</td> <td></td> </tr> <tr> <td data-bbox="467 1143 704 1193">생산기록 확인</td> <td data-bbox="737 1143 1373 1193">(진흥원) 재배지 제초, 시비 등 관리기록 확인</td> </tr> <tr> <td data-bbox="467 1216 704 1267">↓</td> <td></td> </tr> <tr> <td data-bbox="467 1281 704 1331">품질검사</td> <td data-bbox="737 1281 1373 1331">(진흥원) 생산된 임산물의 잔류농약 검사</td> </tr> <tr> <td data-bbox="467 1354 704 1405">↓</td> <td></td> </tr> <tr> <td data-bbox="467 1418 704 1469">품질표시</td> <td data-bbox="737 1418 1373 1469">(재배자) 판매제품에 합격증표시 후 유통</td> </tr> <tr> <td data-bbox="467 1492 704 1542">↓</td> <td></td> </tr> <tr> <td data-bbox="467 1556 704 1607">생산정보 공개</td> <td data-bbox="737 1556 1373 1607">(진흥원) 검사결과 및 재배과정 공개 - 재배이력시스템</td> </tr> </tbody> </table>	품질관리 절차	세부내용	생산적합성조사	(진흥원) 재배전 토양, 종자, 종묘의 농약 검사	↓		생산신고	(재배자)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	↓		생산기록 확인	(진흥원) 재배지 제초, 시비 등 관리기록 확인	↓		품질검사	(진흥원) 생산된 임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		품질표시	(재배자) 판매제품에 합격증표시 후 유통	↓		생산정보 공개	(진흥원) 검사결과 및 재배과정 공개 - 재배이력시스템
품질관리 절차	세부내용																								
생산적합성조사	(진흥원) 재배전 토양, 종자, 종묘의 농약 검사																								
↓																									
생산신고	(재배자)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																								
↓																									
생산기록 확인	(진흥원) 재배지 제초, 시비 등 관리기록 확인																								
↓																									
품질검사	(진흥원) 생산된 임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																									
품질표시	(재배자) 판매제품에 합격증표시 후 유통																								
↓																									
생산정보 공개	(진흥원) 검사결과 및 재배과정 공개 - 재배이력시스템																								
재배이력 시스템 품질관리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정보(재배자명, 연락처, 주소)</li> <li>○ 재배이력 정보(생산신고, 생산적합성, 생산과정기록, 품질검사)</li> <li>○ 임항자료(임상, 주요수종 등 재배현장)</li> <li>○ 입지환경자료(해발고, 경사, 방위, 토성)</li> <li>○ 사진자료(재배지 현황, 작업광경, 시료)</li> <li>○ 품질검사결과(검사번호, 농약검출유무, 생산자, 생산지, 유효기간)</li> </ul>																								
검사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li> <li>○ 토지소유권 증명서류(임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li> <li>○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등본 1부</li> <li>○ 생산신고확인증(품질검사 신청시)</li> </ul>																								
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관리본부 청정임산물분석검정실 • (02-6393-2651)</li> </ul>																								

## 1. 산양삼 재배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Q.질의** 산양삼 재배신고를 어떻게 하면 신고수리가 될 수 있는지요?

**A.답변**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및 생산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생산적합성조사시 잔류농약검사기관에서 조사한 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생산적합성조사)에 따른 규정에 적합하면 한국임업진흥원의 추가조사 없이 그 검사결과를 시, 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208)

## 2. 산양삼과 장뇌삼은 다른 것인가요?

**Q.질의** 산양삼과 장뇌삼은 다른 것인가요?

**A.답변** 산양삼이란 산림청에서 소비자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해 정한 특별관리임산물로서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진흥법」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로 숲에서 자연 상태 그대로 청정하게 생산하는 삼입니다.

장뇌삼은 비닐하우스에 차광망을 설치하고 재배한 인삼 종묘를 산에 옮겨서 재배하는 삼을 농가에서 흔히 부르는 명칭으로 산양삼과는 재배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관리본부 청정임산물분석검정실(02-6393-2651)

### 3. 산삼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Q.질의**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여 생산·판매하는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야생상태의 산삼을 채집하는 (심마니)자가 채집한 산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

또한 동법에 의한 품질표시나 규격에 맞는 포장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

**A.답변**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업무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산양삼 재배시부터 유통, 판매까지의 품질관리 업무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산삼은 재배하여 유통,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산림청고시 제2017-113호(일부개정·시행 2017.12.15) 제2조(정의)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담당부서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관리본부 청정임산물분석검정실(02-6393-2651)

### 4. 산양삼 단위가격은 중량으로 결정되나요?

**Q.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려고 단위가격을 표시하려고 하는데, 산삼은 농산물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아 100g으로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뿌리로 표시하여서 판매를 해도 괜찮은지 질의 드립니다.

**A.답변** 산양삼은 통상 중량에 의하여 판매를 하지 않고 있으며, 연근에 따라 가격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208)

### 5. 산양삼 포장규격이 2019년부터 어떻게 변경되나요????

**Q.질의** 2019년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이 완화된다고 하는 데 어떻게 변경되나요? 또한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A.답변** 산양삼 생산자 및 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별관리임산물 포장규격 개선을 통해 다양한 신상품 출시를 촉진하고 관련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기존)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유통·통관 또는 판매 시 포장 규격을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로 제한  
\*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제1항
- (개선) 포장규격 기준을 삭제하고, 품질검사 합격증(7x10cm)을 부착할 수 있는 크기의 모든 형태의 포장 규격이 가능함

따라서 특별관리임산물의 수량 등에 따라 포장 용기의 크기와 모양을 달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다양한 신상품 출시를 촉진하고 관련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소규모 또는 낱개 단위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양삼 수요 확대에 기여
- \* 산양삼 수출현황 : ('16년) 29톤(4,648천\$) → ('17년) 10톤(1,511천\$)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208)

## 21. 산림복합경영

<p>목 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더불어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 도모</li> </ul>
<p>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해 숲가꾸기 실행 및 생산기반 시설비 지원</li> </ul>
<p>지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자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으로서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생산하고자 하는 자</li> <li>○ 지원비율 : (소액)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2.0%, 3년 거치 7년 상환 (공모) 국고 40, 융자 -, 지방비 40, 자부담 20%</li> </ul>
<p>신청절차</p>	 <pre> graph LR     A[신청자] -- "신청" --&gt; B[시·군·구]     B -- "심사·결정" --&gt; C[통보]     A -.-&gt;  "(음·면·동)"  B     </pre>
<p>첨부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1부, 대출신청자료 1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관련 서식)</li> </ul>
<p>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업소득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4194</li> <li>• 042-481-4209</li> </ul> </li> </ul>

## 1. 산림복합경영이 무엇인가요?

**Q.질의**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하려고 할 때 지원해준다고 들었는데, 산림복합경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답변** “산림복합경영”이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하여 산나물·특용수 재배 등을 목재생산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산지에서 소득을 창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 2.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Q.질의** 산에 나무도 가꾸고 산나물도 재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신청 자격은 또 어떻게 되는지?

**A.답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공모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자가 결정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대상자는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2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이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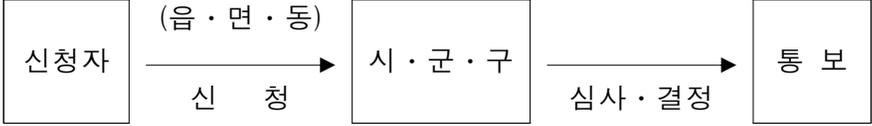
- 자격 요건 : (공모)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면적 5ha 이상  
(소액)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 비율 : (공모) 국고 40%, 융자 0% 지방비 40%, 자부담 20%  
(소액)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지원 내용 : 숲가꾸기 + 생산기반조성(관수시설, 보토울타리, 작업로 등)
- 지원 조건(사업비) : (10ha 미만) 숲가꾸기 10% 이상, 생산기반조성 90% 이내  
(10ha 이상) 숲가꾸기 15% 이상, 생산기반조성 85% 이내
- 지원 한도 : (공모) 1~5억 (2~3년 분할지원)  
(소액) 1억원 이내

이외의 세부적인 사업 신청 절차, 규모 등은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산림청 홈페이지 > 분야별산림정보 > 통합자료실 >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209, 4194)

## 22. 밤재배 지원사업

<p><b>목 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수출품목인 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li> </ul>
<p><b>내 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밤 작업로 시설 : 밤나무재배지 약제 살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路幅) 2m 내외의 작업로(作業路) 시설비 지원</li> <li>● 친환경 밤 생산지원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성페르몬, 포충등 등 시설비 지원</li> <li>● 밤나무 토양개량 : 산성화된 밤나무 임지의 토양을 개량하여 지력유지 보전 등 친환경재배기반 조성</li> <li>● 밤나무 노령목 관리 :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가지치기, 정지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지원</li> <li>● 밤 생산·방제장비 지원 : 밤 수집기, 밤 수확망 등 생산 장비 및 병해충 방제용 지상 방제장비 지원</li> </ul>
<p><b>지원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자 : 밤 생산자 또는 농업법인경영체</li> <li>● 지원 비율(국고:융자:지방비: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밤 작업로 : 20% : 20% : 20% : 40%</li> <li>- 친환경 밤 생산 : 20% : 20% : 20% : 40%</li> <li>- 토양개량 : 70% : 0 : 30% : 0%</li> <li>- 노령목 관리 : 20% : 20% : 20% : 40%</li> <li>- 밤 생산·방제장비 지원 : 20% : 20% : 20% : 40%</li> </ul> </li> </ul>
<p><b>신청절차</b></p>	 <pre> graph LR     A[신청자] -- "(읍·면·동)" --&gt; B[시·군·구]     B -- "신청" --&gt; C[통보]     C -- "심사·결정" --&gt; D[ ]     style D fill:none,stroke:none   </pre>
<p><b>첨부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1부, 대출신청자료 1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관련 서식)</li> </ul>
<p><b>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업소득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4194</li> <li>• 042-481-4196</li> </ul> </li> </ul>

1. 밤의 주요산지 등 밤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Q.질의** 주요산지와 연간 총생산량 및 시장규모, 수출입 현황 등 밤에 관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A.답변**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밤 산업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산액(억원) : ('05) 1,575 → ('10) 1,353 → ('13) 1,459 → ('14) 1,180 → ('15) 1,011 → ('16) 1,069 → ('17) 1,050

※ 생산량(천톤) : ('05) 76 → ('10) 69 → ('13) 64 → ('15) 56 → ('16) 54 → ('17) 50

◆ 주산지(생산액 기준) : 1위 부여(262억), 2위 공주(192억), 3위 청양(127억)

◆ 수출입현황

(단위 : 천톤, 천불)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물량	금액								
수출	13	32,772	11	23,195	9	17,275	8	20,203	10	24,852
수입	8	23,960	7	20,177	6	18,860	7	22,840	8	25,482

◆ 생산현황 : 전국 기준 밤 생산임가 수 10,984가구, 재배면적 16,899ha, 임업소득 13,622천원

◆ 이용현황 : 마론그랏세, 밤양갱, 밤퓨레, 당저림, 밤아이스크림, 밤스낵, 밤 음료, 밤죽, 밤샐러드, 밤파이, 밤묵, 밤떡, 밤 국수, 밤밥, 밤짬, 밤단자, 밤 막걸리, 제수용, 생과 등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6)

## 23. 호두나무 재배기술

### 호두나무 적정재배지 및 묘목생산

강원도 화천에서 호두나무를 재배하려고 합니다.  
호두나무 재배가 가능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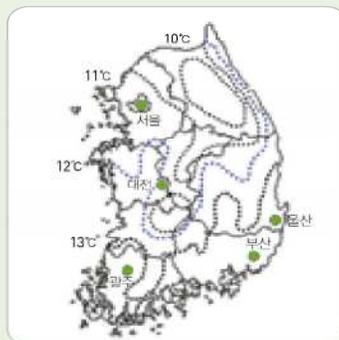
호두나무는 다른 유실수에 비해 지역적으로 재배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입니다. 너무 추우면, 내한성이 약해서 재배가 안 되고, 너무 따뜻하면 탄저병과 같은 병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호두나무의 적지는 연평균 기온이 12℃가 적절합니다.

강원도 화천의 경우 연평균 기온이 9.4℃로 호두나무를 재배하기에는 기온이 낮습니다. 또한, 이것만으로는 재배적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그 지형이나 고도 등 여러 가지 환경적 기후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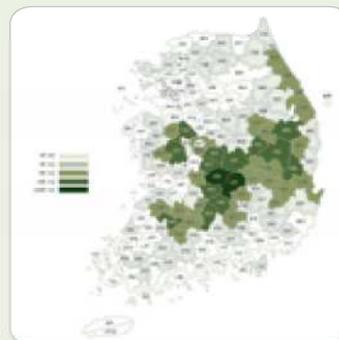
그러므로, 화천에서 호두나무를 심을 경우, 우리나라의 고유품종을 심는 것이 좋으며, 호두나무 적지는 아니지만 그 지방 고유의 토종 호두종자를 구해서 실생묘를 심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김천, 무주, 영동 지역은 호두나무 재배가 잘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호두나무도 다른 나무와 마찬가지로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서만 재배가 가능합니다.

호두나무는 우리나라 자생수종이 아니라 페르시아(지금의 이란지역)에서 도입된 나무이므로 추위에는 약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호두나무는 이러한 페르시아 호두나무와 가래나무가 자연적으로 교잡된 교잡종 호두나무이지만 그래도 역시 추위에는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두나무가 추운지역에서 자란다고 해도 생육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지 않으며, 또한 수확량도 적으므로 수익성은 없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등온선



우리나라 호두 생산량 지도

[참조 : 우리나라 임산물 생산지도, 한국임업진흥원]

호두나무 적정재배지 및 묘목생산

호두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접목묘와 실생묘 중 무엇을 심어야 하나요? 접목묘와 실생묘 식재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생묘는 종자발아로 인하여 생성된 묘목으로 종자가 아무리 우수하여도 수목의 유전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완전히 유전되지 않으므로 우수한 묘목이 생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 형질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모두 운동을 잘한다 하여도 그 자식 대에는 운동을 잘하는 자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접목에 의해 생산되는 접목묘의 경우에는 그 나무 자체가 복제되는 것이므로 수목의 유전형질 100%가 전달되므로 접목묘로 사용한 접수의 형질이 우수하면 접목묘도 우수합니다. 즉, 접목묘는 접수로 사용한 나무의 유전형질을 그대로 이어 받는 것입니다.

호두나무의 경우 접목묘는 식재 후 6~7년 정도 지나면 결실을 볼 수 있으나 실생묘는 8년에서 10년 정도 있어야 열매가 맺습니다. 호두의 수확 시기는 접목묘가 실생묘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실생묘는 접목묘와 달리 접목된 부위의 접목 불친화성 등의 피해가 없으며, 노쇠화 현상이 늦어 접목묘보다 재배 기간이 긴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호두나무 적정재배지 및 묘목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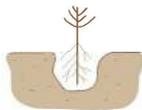
Q3

호두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심으면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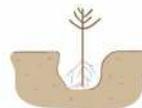
호두나무를 심을 때 심을 구덩이는 지름 2m, 깊이 1m 가량이 좋으며, 적어도 지름 1m, 깊이 80cm는 되어야 합니다. 식재 구덩이에 밑거름으로 퇴비를 넣고 약간의 흙을 덮은 후에 복합비료를 넣고 다시 부드러운 흙을 30cm 정도 덮은 후 나무를 식재합니다. 묘목을 곧게 세워 흙을 채운 후에 약간 위로 뽑아 올리듯 하면서 밟고 나머지 흙을 채우고 다시 밟아줍니다. 토양을 덮은 후에 충분히 물을 주고, 식재 후, 7일 후에 다시 물을 한 더 주면 좋습니다. 이때, 호두나무는 다른 나무와 마찬가지로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서만 재배가 가능합니다.

호두나무는 독립수이므로 다른 과수처럼 집약재배보다는 한그루씩 독립적으로 지랄 때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식재거리는 성목이 되기 전까지 5m×5m 간격으로 식재하고 성목이 된 후에는 중간 중간을 간벌하여 10m×10m 간격이 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얇음

근원부와 뿌리가 노출되어 뿌리가 건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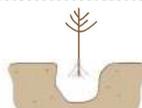
너무 깊음

근원부의 5cm 혹은 그이상이 토양표면 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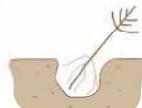
J자형 뿌리

뿌리의 형태가 J자형으로 뿌리발달이 약해짐



단근이 심함

뿌리가 15cm보다 짧아서 안됨



기울어짐

일반 것으로 뿌리와 토양이 각도가 30° 이상이면 안됨

잘못된 식재 방법들

호두나무 적정재배지 및 묘목생산

Q4 어린 호두나무는 동해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해피해는 도장묘, 또는 저습지의 식재묘가 겨울을 나는 동안 줄기 또는 가지가 고사하는 현상으로 특히, 호두나무는 심한 편입니다. 나무의 가지에 수분이 많아 겨울철의 한풍해와 봄철의 서리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해피해의 방제는 어려우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예방합니다.

- ① 저습지의 식재를 피합니다.
- ② 어린나무의 경우 퇴비시비를 충분히 하고 여름철에는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 ③ 동해피해 방지를 위해 11월 중순경 줄기에 흰색수성페인트를 발라줍니다.
- ④ 겨울철에 나무 밑동을 짚과 같은 보온재로 감싸줍니다.
- ⑤ 방풍림을 조성하거나, 방풍막을 설치하여 서북풍을 막아줍니다.



흰색 수성페인트로 칠하거나 벗짚으로 감싼 어린 호두나무와 방풍림과 방풍막

**방풍림이란?**

방풍림의 주요 목적은 나무를 바람, 모래, 가뭄, 한랭의 피해로부터 방지하고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의 속도를 감소시켜 토양수분 증발을 줄이고 토양침식과 수토보존하고 한류를 약하게 하며 온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평지 및 모래황무지에서 호두나무를 재배하는 경우, 방풍림을 설치하는 주요 목적은 바람을 막고 모래의 피해를 감소시켜서 어린나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방풍림의 수종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은 바람과 토지적응력이 강하고 성장속도가 빠르며 수명이 길고 수관이 높으며 가지가 많고 밀집하며 호두나무와 동일한 병충해가 없으며 일정한 경제가치(건재, 광재, 밀원, 녹색비료 등)가 있는 수종이어야 합니다.

호두나무 병해충 방제

호두나무에 잘 발생하는 병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그 예방법과 치료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호두나무에 많이 걸리는 병에는 탄저병이 있습니다. 호두나무 탄저병은 비교적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주로 발생하는 병입니다. 장마기간에 주로 발생하며, 비가 온 후에는 습도가 높으므로 더 잘 발생합니다. 또한 토양이 과습하거나 점토질 토양에 피해가 심한편입니다.

종실(열매)에 탄저병이 발생하면 종실에 원형 또는 타원형의 갈색병반이 나타납니다. 병든 잎은 회갈색의 둥글고 희미한 반점이 생기며 엽맥은 흑색으로 변하여 낙엽이 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탄저병은 주로 5~6월경부터 잎과 줄기에 발생하며, 6월 하순~8월 상순경에는 잎, 가지 그리고 열매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잎에 발생한 경우에는 테부코나졸 유제(25%) 2,000배액을 2주 간격으로 2~3회 살포하며, 열매에 발생한 경우에는 플루아지남 수화제(50%) 1,000배액을 2주 간격으로 3회 살포합니다.



호두나무 잎에 발생한 탄저병



호두나무 열매에 발생한 탄저병

호두나무 병해충 방제

호두나무에 잘 발생하는 충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그 예방법과 치료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호두나무의 식재 초기에 나무줄기를 가해하는 오리나무좀이 있으며 이에 의한 피해 증상과 예방법 그리고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밤나무나 참나무류 등에 기생하며, 수세가 약한 나무에 침입하여 암브로시아균을 배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암컷의 크기는 2.0~2.3mm이며, 수컷은 1.2mm 정도입니다. 1년에 2-3회 발생하며, 성충으로 월동하여 4~5월경에 수간에 구멍을 뚫고 산란합니다.

피해목은 제거하여 소각하며, 침입공에 메프유제 50~100배액을 주사기로 직접 주입하여 치료합니다.



오리나무 좀 벌레



호두나무 옆에 발생한 탄저병



오리나무 좀 피해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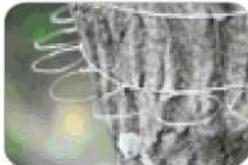
호두나무 병해충 방제

Q7

호두나무를 재배하고 있는데 청설모의 피해가 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청설모(*Sciurus vulgaris*)는 쥐목 다람쥐과에 속하는 포유류로서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매우 강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와 도서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산야에 주로 분포하며 서식하고 있습니다. 청설모는 호두, 잣 등 견과류뿐만 아니라 사과, 배, 복숭아 등과 같은 과수에도 피해를 주며, 특히 호두나무 주산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청설모 피해 방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울무를 이용한 방제

수간에 직접 울무를 설치하여 청설모를 방제하는 방법으로, 과실이 성숙되고 청설모의 활동이 활발한 7월 중순 이전에 설치



② 목책기를 이용한 방제

전기 목책기는 접촉 시 순간적으로 감전되는 원리로 청설모가 재배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③ 갓모형을 이용한 방제

함석판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갓을 만들어 청설모의 등목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예방법. 지상으로부터 약 1~1.2m 이상의 높이에 설치



④ 원통모형을 이용한 방제

함석판을 재료로 원통을 만들어 청설모가 나무에 올라갈 수 없게 하는 방법. 1.2m 이상 덮을 수 있도록 설치



⑤ 페어망을 이용한 방제

페어망을 주로 독립목이나 소수목에 적용하며, 0.8~1.0m의 높이에 어망 설치함

⑥ 직접 포획하는 방법

청설모는 2000년 유해조수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직접 포획도 가능

## 호두나무 재배기술

Q8

호두나무는 정지·전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럼 전혀 전정을 하지 않나요?



호두나무 재배에 있어서는 식재 후 정지·전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자연수간형으로 재배되어 온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정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호두나무는 교목성이어서 가지가 복잡하게 얽히어 꽃눈의 착생과 결실이 불량하여 수확량의 감소와 과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관조절은 통풍 및 햇빛을 잘 통과시켜 고품질 과실생산과 생력화, 수세유지, 병해충 방제, 경제적 수령 연장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수종인 과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하여 수세에 알맞은 결실과 과실의 질을 개량하여 상품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두나무의 재배도 과실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수관조절을 해야 합니다.

## 호두나무 재배기술

Q9

호두나무는 전정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수목은 수령에 관계없이 정전 시기는 겨울철 휴면 기간 중에 실시합니다. 하지만 호두나무의 경우는 동해피해를 입으므로 겨울철에는 전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나무의 수액은 보통 2월~3월에 유동되기 때문에 전정은 3월 말이나 4월초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나무는 봄철에 수액유동이 빨라서 2월 ~ 3월 상순경에 절단하면 수액이 유출하고 가을철의 낙엽 후에도 수액이 나오므로 3월 하순이나 4월 초순에 전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정 후 수액이 유출되면 수세를 약화시키고 절단 상처부를 손상시켜 썩어 들어가게 되는 원인이 되므로 수액이 유출되지 않는 시기를 택하여 전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 호두나무 재배기술

## Q10 호두나무의 토양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토양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력을 유지 증진시키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호두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식재된 장소에서 50~60여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나무가 자라는 동안에 수세가 강하고 호두를 계속 수확할 수 있도록 호두나무가 요구하는 토양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토양 개량 기술에 있어서는 수령에 따라서 뿌리의 발달 정도가 달라지므로 각각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어린나무인 경우에는 뿌리의 발달이 얇고 협소하게 발달되나 큰 나무는 깊고 넓게 뿌리를 형성해서 토양 관리는 달라집니다.

적극적으로 지력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고 이상적인 토양 조건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토양 환경 조건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토양관리 방법에는 초생법, 멀칭법, 청경법 등이 있습니다.

## ① 초생법

재배지에 화분과나 두과식물의 목초나 잡초를 조성하는 방법. 토양 중 유기질 증가로 토양의 단립화가 촉진되나, 호두나무와 초생간에 영양분과 수분흡수의 경쟁이 생김

## ② 멀칭법

짚이나 기타 유기물 혹은 비닐등으로 재배지의 수관밑에 덮어서 관리하는 방법. 경사지의 토양유실은 방지하며, 토양중의 유기물을 증가시킴

## ③ 청경법

재배지에 제초를 하여 지표면에 잡목이나 잡초가 없도록 깨끗이 관리하는 방법. 양분과 수분의 경합이 일어나지 않고 병충해의 유인이 적으나, 경사지에는 토양유실이 발생함

## 호두나무 재배기술

## Q11

## 호두나무에도 비료를 주어야 하나요?



호두나무는 다비성 수목으로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수목으로 비료를 많이 준 만큼 잘 자라고 수확이 많습니다. 또한, 호두나무는 심근성으로 많은 영양분을 요구하는 수종이므로 뿌리발육이 양호하도록 토양을 개량해야 합니다.

호두나무의 양분 흡수근은 수관 끝의 밑에 위치하므로 매년 흡수근이 있는 부위를 30cm의 깊이로 파고 시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비 관리에 많은 인력을 소요하므로 4년생까지는 넓혀가면서 윤상시비를 실시하고 5~6년생은 방사상시비를 매년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구덩이를 파고 충분한 퇴비를 줍니다.

비료 시비시기의 적정여부는 임목의 생장, 결실 및 화아 분화에 차이가 크며 또한 월동 중 동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호두나무의 생장주기를 감안하여 적기에 시비하여야 합니다.

호두나무는 3월 중, 하순이 되면 뿌리의 수분유동이 시작되고 4월 상순경부터 지상부의 수분유동이 시작되어 싹이 트기 시작됩니다. 따라서 영양 생장은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이에 왕성하게 자라고 9월 상순이 되면 정지합니다. 과실은 꽃이 5월 상순부터 하순까지의 사이에 개화 결실하여 7~8월에 급격히 비대하여 9월중, 하순에 채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호두나무의 대부분 양분은 4월부터 8월 사이에 소모하게 됩니다.

추비는 기비의 시비량이 부족할 때 보충하여 추가하여 시비하는 목적도 되겠으나 결실기에 달한 호두나무에서 과실의 생장에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비료로 6월 상순경 개화 결실이 끝난 한발시기가 아닌 시기를 택하여 연중 시비량의 질소비료 1/4, 칼륨비료 1/2를 시비합니다. 하지만, 추비는 과실의 생장을 위한 시비이므로 5년생까지의 어린나무에는 필요치 않은 시비입니다. 만약 어릴 때에 추비를 실행하면 월동 중에 동해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두 성분 및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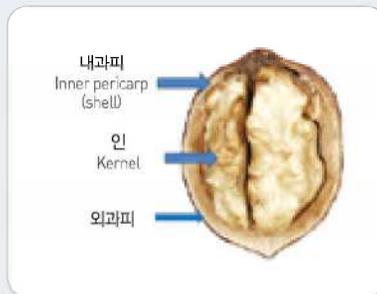
# Q12

호두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무엇인가요?



호두에는 지방, 단백질, 당질, 칼슘 등이 들어 있으며, 특히, 양질의 단백질과 소화흡수가 잘되는 불포화 지방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호두 세알씩만 먹으면, 그날 필요한 지방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성분 함량 (%)	지방	단백질	당질	수분	회분	섬유소
	59.4	18.6	14.5	4.5	1.8	1.2



호두의 구조

호두 성분 및 저장

# Q13

호두는 우리 몸에 어떻게 좋습니까?



호두는 동양에서는 폐에 좋다고 하며, 서양에서는 심장에 좋다고 하였습니다. 즉, 동의보감에 의하면 호두는 폐의 기운을 모으며, 해수, 천식을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스티븐 프랫은 그의 저서에서 호두는 심장질환 예방효과가 있으며, 일주일에 호두를 몇 알만 먹는 것만으로도 심장마비 위험을 51%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호두 성분 및 저장

Q14

호두를 수확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없지요?



호두는 9월 하순이나 10월 중순에 수확을 합니다. 청피가 균열이 생기고 전체 열매의 30%정도가 떨어지는 시기에 전체적으로 수확을 합니다. 하지만 미숙과를 수확하게 되면 청피의 분리가 힘들고 건조 후 과피색이 불량하고 속이 딱 차지 않아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호두 성분 및 저장

Q15

호두를 수확하고 나서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호두는 수확한 후 과실의 함수율이 7%이하가 될 때까지 건조하여야 보관이 용이합니다. 건조된 호두는 2~3℃의 저온저장고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일단 낱호두는 즉시 드시는 것이 좋으며, 보관용으로는 호두를 까지 말아야 합니다. 호두에는 지방이 많아 까서 보관하면 호두기름이 공기와 접촉하여 산화되므로 호두과피를 까지 말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부 록**

**호두나무 관리월력표**

구분	일반작업 내용	비 고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목용 대목양성</li> <li>• 접수채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래 또는 호두 파종</li> <li>- 건전한 1년생 가지</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채취</li> <li>• 접목 및 접목묘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도 및 습도 유지</li> </ul>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목묘 관리</li> <li>• 시비(밀거름)</li> <li>• 파종, 이식 및 조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맨아제거 및 접목묘 지주 설치</li> <li>- 잎이 피기 전</li> <li>- 파종(36립/m<sup>2</sup>), 조림(280본/ha)</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종, 이식 및 조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림 : 구덩이당 퇴비 10kg + 복합비료 130g</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종 및 이식상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수 및 제초</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베기(재배지)</li> <li>• 추비(파종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중 2~3회 실시</li> <li>- 요소(15g/m<sup>2</sup>)</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설모 피해예방(방제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중순 이전 설치</li> <li>• 독립목 : 울무, 갯, 페그물 등</li> <li>• 집단재배시 : 방목기 설치</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베기(재배지)</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확(탈피 → 세척 → 건조)</li> <li>• 재배지 정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 개체 내 청피열개 30% 이상</li> <li>- 수확 또는 낙엽 직후</li> </ul>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확(탈피 → 세척 → 건조)</li> <li>• 재배지 정리</li> <li>• 종자 저장</li> <li>• 묘목굴취 및 저장(가식) - 묘목월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엽 및 고사리 정리, 잡목제거</li> <li>- 노천대장 또는 저온저장</li> <li>- 비닐하우스 또는 움저장고</li> </ul>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 저장</li> <li>• 정지전정 및 수형조절</li> <li>• 묘목굴취 및 저장(가식) - 묘목월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형 유동 정지 및 유동 전</li> </ul>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유유제 및 석회유황합제 살포</li> <li>• 접수채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해피해 및 병해충 예방</li> <li>- 접수보관(2~4℃)</li> </ul>

구분	병해충방제 내용	비 고
1월	※ 깍지벌레(기계유유제)	12월~4월 1주 간격 2~3회 방제
2월		
3월	갈색고약병(석회유황합제)	- 깍지벌레와 공생
4월	깍지벌레	- 3회/년 발생(4~5월, 7월, 9월)
5월	탄저병(장마직전·후, 약 25일 간격) 어스랭이나방(갈색바구니 모양 고치형성)	- 탄저병방제(2~3회/년) - 어스랭이나방(1회/년 발생)
6월	탄저병, 줄기마름병, 흰불나방, 박쥐나방	- 줄기마름병(발병요인 - 동해피해) - 박쥐나방(2회/년 발생, 목질부)
7월	탄저병, 줄기마름병, 흰불나방, (박쥐나방), 깍지벌레	- 흰불나방(2~3회/년 발생)
8월	탄저병, 흰불나방	
9월	뿌리썩음병(노란버섯발생), 흰불나방, 박쥐나방, 깍지벌레	- 뿌리썩음병(배수불량 및 산성토양)
10월	(흰불나방) 뿌리썩음병(노란버섯발생)	- 뿌리썩음병 (산성토양 → 석회시비로 산도조정)
11월		
12월	※ 깍지벌레	12월~4월 1주간격 2~3회 방제

## 24. 표고재배 지원사업

<p><b>목 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소득 임산물인 표고버섯의 생산기반 시설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 생산경쟁력 제고로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li> </ul>
<p><b>내 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고생산자금 지원 : 표고목 등 표고생산자금 융자 지원</li> <li>표고재배시설 지원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관수, 냉·난방, 침수시설 지원</li> <li>톱밥배지 생산시설 지원 : 톱밥배지를 생산하는 시설 지원</li> </ul>
<p><b>지원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자 : 표고 재배자(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li> <li>지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고생산자금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li> <li>표고재배시설 및 톱밥배지 생산시설 (공모) 국고 40%, 융자 0%, 지방비 20%, 자부담 40% (소액)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li> </ul> </li> </ul>
<p><b>신청절차</b></p>	<pre> graph LR     A[신청자] -- "(읍·면·동)" --&gt; B[시·군·구]     B -- "(심사·결정)" --&gt; C[통보]     </pre>
<p><b>첨부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1부, 대출신청자료 1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관련 서식)</li> </ul>
<p><b>수범사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 공주시, 부여군, 전남 장흥군 등은 표고생산 주산단지 지정·육성하여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li> </ul>
<p><b>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업소득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4194</li> <li>• 042-481-4209</li> </ul> </li> </ul>

## 1. 표고버섯 재배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Q.질의** 표고버섯을 재배해 보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표고 원목재배에 관한 교육자료나 오프라인 교육정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산림청에서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위한 임산물표준재배지침을 마련하여 임산물 재배를 위한 각종 자료를 산림청 홈페이지 [분야별 산림정보 > 전자북 > 임산물표준재배지침(검색)]에 제공을 하고 있으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표고버섯 관련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에서 표고재배 저변 확대 및 재배기술 능력 향상, 재배임가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매월 관련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교육담당자(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031-881-0231)에게 문의하여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209)

## 2. 우리나라의 산림버섯 지원 현황을 알려주세요.

**Q.질의**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림버섯 연구 및 재배에 관한 현재 지원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산림청에서 '09년부터 현재까지 산림버섯과 관련된 연구 현황은 ① 임산버섯 우량 종균 개발('91~'10), ② 표고 신품종 개발 및 기능성 표고 재배기술('11~'15), ③ 송이 감염묘를 이용한 송이 인공생산기술 개발('07~'09), ④

침엽수를 이용한 버섯 재배기술 개발('09~'12) 등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 완료 또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표고 재배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가. 표고버섯 재배시설 및 톱밥배지 생산시설 지원

- 자격 요건 : (공모)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표고버섯 재배시설 3,300㎡/개소 이상  
(소액)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 톱밥배지 생산시설의 경우 별도 세부요건이 있으며, 사업지침서 참고
- 지원 비율 : (공모) 국고 40%, 용자 0% 지방비 20%, 자부담 40%  
(소액) 국고 20%, 용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지원 내용 : (재배시설) 재배하우스, 관수시설, 냉·난방 시설 등  
(톱밥배지 생산시설) 관수시설, 냉·난방 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등
- 지원 한도 : (공모) 산지재배 : 1~5억 / 시설재배 : 2~10억  
(소액) 1억원 이내

#### 나. 표고생산자금 지원(용자)

- 자격 요건 : 표고재배자
- 용자 조건 : 금리 연 2%, 3년 거치 2년 상환
- 지원 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임산물 지원(표고 포함) 대상품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 2)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의 세부적인 사업 신청 절차, 규모 등은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산림청 홈페이지 > 분야별 산림정보 > 통합자료실 >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209)

## 25. 조경수 생산기반 조성사업

<p><b>목 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수생산 기반조성으로 규격화된 우량 조경수 대량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li> </ul>
<p><b>내 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수생산 기반조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정시설, 컨테이너 재배시설, 토양개량 지원</li> </ul>
<p><b>지원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자 : 조경수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li> <li>◎ 지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수생산 : 용자한도 및 용자비율 80%, 자부담 20%</li> <li>- 조경수 생산시설 : 국고 20%, 용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li> <li>- 조경수 토양개량 : 국고 70%, 지방비 30%</li> </ul> </li> <li>※ 용자조건 : 연리 2%, 3년거치 7년상환</li> </ul>
<p><b>선정기준 우선순위</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친환경인증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li> <li>② 주산단지내 생산량 및 재배경험이 많은 조경수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li> <li>③ 기타 조경수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li> </ol>
<p><b>신청절차</b></p>	 <pre> graph LR     A[신청자] -- "(읍·면·동) 신청" --&gt; B[시·군·구]     B -- "심사·결정" --&gt; C[통보]             </pre>
<p><b>첨부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1부, 대출신청자료 1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관련 서식)</li> </ul>
<p><b>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업소득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4194</li> <li>• 042-481-4196</li> </ul> </li> </ul>

## 1. 조경수 재배자금에 부대시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Q.질의** 조경수는 어떠한 수종을 말하는 것이고, 조경수 생산자금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A.답변** 일반적으로 조경수는 조경용으로 식재하는 나무를 말합니다.

조경수 생산자금은 생산포지 증설(기본포지의 운영), 포지 내 보식 등 생산, 시설 지원 및 인건비, 비료대 등에 소요되는 자금(포지 매입 시 기 식재된 조경수는 사업비로 불인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수 재배를 위한 용자 지원 제도(금리: 2.0%)]

- 조경수 생산(순수용자) :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액의 80% 이내
  - \* 생산포지 증설(기본포지의 운영), 포지 내 보식 등 생산, 시설 지원 및 인건비, 비료대 등에 소요되는 자금(포지 매입 시 기 식재된 조경수는 사업비로 불인정)
- 조경수 관정시설 : 4,000천원/개소(기준단비 20,000천원/개소의 20%)
  - \* 조경수생산업에 종사하며, 재배면적이 1ha이상인 자(생산자단체 포함)에 한하여 지원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 10,000천원/개소(기준단비 50,000천원/개소의 20%)
  - \* 조경수 생산자 중에서 컨테이너 대묘 생산이 가능한 자
  - \* 컨테이너 생산이력관리가 가능하고 컨테이너 재배 생산통계를 관리 할 수 있는 자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6)

## 26.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p><b>목 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임산물의 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경쟁력 강화</li> </ul>
<p><b>내 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li> </ul>
<p><b>지원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li> <li>○ 지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li> <li>- 임산물 상품화지원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li> <li>- 임산물저장건조시설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li> <li>- 임산물가공지원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li> <li>- 임산물유통기반(차량)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li> </ul> </li> <li>※ 융자조건 : 연리 2%, 3년거치 7년상환</li> </ul>
<p><b>선정기준 우선순위</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친환경인증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li> <li>②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토지 소유</li> </ol>
<p><b>신청절차</b></p>	<pre>             graph LR             A[신청자 (시·군·구)] -- 신청 --&gt; B[시·도]             B -- 심사·결정 --&gt; C[산림청]             </pre>
<p><b>첨부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 자율사업신청서 1부, 대출신청자료 1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관련 서식)</li> </ul>
<p><b>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산물유통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4206</li> <li>• 042-481-4207</li> </ul> </li> </ul>

## 1.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 내용이 궁금합니다.

**Q.질의**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의 지원면적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A.답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임산물 생산 및 유통조직의 활성화와 규모화를 촉진하여 임산물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임산물 홍수출하방지를 통한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목적으로 1개소당 국고 12백만원 (총사업비 6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0㎡를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시설 규모를 조정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206)

## 2.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의 사업대상자가 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Q.질의**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의 사업 신청과 지원요건이 궁금합니다.

**A.답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는 공모를 통하여 사업대상자가 결정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요건은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등)로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농업인 출자 지분이 1/10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3년 이상이고 출자금은 3억원, 조합원은 1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규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2억원에서 20억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나,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 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79품목

- 수실류(14종)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8종)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짜리, 꽃송이, 복령
- 산나물류(12종)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18종) : 삼지구엽초, 삼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20종)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옷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6종)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6종)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이외의 세부적인 사업 신청 절차, 규모 등은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산림청 홈페이지 > 분야별 산림정보 > 통합자료실 > 2018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206)

## 27. 산림경영지도

산림조합은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경영기술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산림경영지도원 배치 및 운영

- 전국 142개 지역 산림조합과 중앙회에 일반산림경영지도원 711명과 산림경영전담 지도원 169명을 배치하여 산림경영 기술지도 실시
-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경영 기술지도 실시

### ■ 산림경영지도 활동

- 현지도도
  - 지도원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책임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산주 중심의 밀착지도를 통해 문제 해결
- 상담석 운영
  - 산림조합내에 상담석을 설치하여 산림경영에 대한 산주와 임업인의 궁금사항을 해소하고,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모색
- 산림경영컨설팅 행사 실시
  - 산림경영컨설팅 행사를 실시하여 산림경영에 관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 행사내용
    - 산림정책 홍보 및 새로운 임업기술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임업관련 전시·홍보행사와 산림분야별 상담 실시

■ 산림경영지도 상담전화 운영

-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상담으로 기술지도에 대한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산림경영지도 상담 전화 운영



〈산림경영지도 7개 분야〉

- ① 산림경영지도 종합상담                      ② 산림경영계획, 조림, 숲가꾸기, 대리경영
- ③ 임목수확, 임업기계, 임업면세유          ④ 임산물 생산지도          ⑤ 임산물 유통
- ⑥ 임업정책자금분야                          ⑦ 임업인교육, 기타문의

1. 산림경영지도를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Q.질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인데 산을 어떻게 가꾸어야 좋을지 현장에서 산림 경영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답변**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시·군 산림조합에 전화를 걸어 산림경영지도 신청을 하거나, 산림경영지도 상담 대표전화(02-3434-8300)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해당 산림소재 산림조합에 근무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이 직접 산에 방문하여, 산림경영 전반적인 부분을 지도해 드립니다. 또한 산림경영과 필요한 정보 안내, 행정 절차 대행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산림경영지도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Q.질의** 산림경영지도원이 하는 일을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경영계획 편성, 대리경영,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 임산물, 조경수 재배 등 다양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주·임업인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 상 사 업	세 부 현 지 지 도 사 항
▷ 산림경영계획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반영된 산림경영계획 편성
▷ 대 리 경 영	대리경영제도 홍보 및 계약체결, 사업실행 등
▷ 수 묘 생 산	소득증대 가능한 경제성 있는 묘목생산
▷ 조 림	지리적·환경적·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적지적수
▷ 숲 가 꾸 기	숲가꾸기 실행을 위한 절차 등
▷ 매 목 조 사	산림의 보호 및 개발을 위한 정확한 조사 방법
▷ 임 목 수 확	벌채실시요령, 임업기계장비 안내 및 사용요령 등
▷ 조 경	조경수 재배, 식재 및 관리요령
▷ 임 도	임도노선 선정요령, 경영의 적정여부, 임도종단경사 등
▷ 사 방	사방댐, 산지 및 야계사방 등
▷ 훼손지 복구	훼손지 복구에 대한 사업실시 요령
▷ 휴 양 시 설	휴양시설 설치 대상지 및 사업실시 요령
▷ 산 림 보 호	산불방지 및 솔잎혹파리, 재선충, 기타 병해충 등 방제
▷ 단 기 소 득	송이, 표고, 밤 등 지역여건을 감안 산주소득을 증대를 위한
▷ 임 산 물	생산, 선별, 저장, 유통 등
▷ 자 금 용 자	산림경영 개선을 위한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안내 및 신청절차 등 지도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56)

## 28. 특화품목 전문지도

### ■ 지도 품목(22품목)

- 주품목(13) : 표고, 밤, 산채, 산양삼, 뽕은감, 대추, 송이, 잣, 조경수, 오미자, 구기자, 약초류, 더덕
- 부품목(9) : 호두, 야생화, 머루, 복분자딸기, 산수유, 다래, 목이, 산딸기, 꽃송이버섯

### ■ 특화품목전문지도 활동

- 현장위주의 기술지도 실시 및 산림경영컨설팅 지도
-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 및 생산과정 확인제도에 따른 기술지도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및 지리적 표시등록 지도
- 생산자에 대한 국내외 선진임업 기술·지식·정보의 보급

### ■ 품목별 배치 현황

표고	(경기) 양주, 평택, 화성수원오산, 파주, 광주성남하남, 이천, 용인, 안성, 용진부천, 인천 (강원) 원주, 양양속초, 철원, 고성 (충북) 청주, 영동, 진천 (충남) 대전, 세종, 부여, 홍성, 아산, 서산, 금산, 예산, 태안, 보령, 서천 (전북) 진안, 임실, 남원, 부안 (전남) 광주, 곡성, 화순, 장흥, 해남, 함평, 영광, 완도 (경북) 경주, 김천, 구미, 영천, 고령, 성주, 칠곡, 예천 (경남) 부산, 통영, 김해, 거제, 양산, 사천 (제주) 제주
유실수	(경기) 연천, 포천, 가평 (강원) 홍천 (충북) 보은, 음성, 충주, 제천 (충남) 논산계룡, 천안, 공주, 천안 (전북) 완주, 무주, 장수, 순창 (전남) 순천, 나주, 광양, 영암, 장성, 진도 (경북) 구미, 상주, 경산, 군위, 청도 (경남) 밀양, 의령, 함안,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창원 (제주) 서귀포
조경수	(경기) 여주, 시흥 고양, 김포, 강화, 서울 (충북) 옥천, 괴산증평 (충남) 당진 (전북) 김제, 정읍, 공창, 군산, 익산 (전남) 여수, 무안 (경북) 대구달성, 경주, 영주 (경남) 진주
산양삼	(경기) 양평 (강원) 춘천, 영월, 평창, 화천 (충북) 단양 (전남) 화순 (경북) 의성, 봉화 (경남) 울산, 함양
산채 외	(강원) 횡성, 인제, 정선, 양구, 강릉, 삼척동해태백 (전남) 담양, 구례, 고흥, 강진, 신안, 보성 (경북) 문경, 영양, 포항, 안동, 청송, 영덕, 울릉, 울진 (경남) 창녕, 고성, 남해

### ■ 특화품목기술지원센터

- 전북지역 단기임산물 생산·유통 등 임업인 맞춤형 현지도
- 귀농·귀촌 상담, 생산자 교육, 선진지 견학, 지역축제 및 행사 순회 컨설팅 등
- 지도품목(8) : 표고, 밤, 산양삼, 오미자, 조경수, 호두, 오미자, 뽕은감, 대추  
☎ 특화품목기술지원센터 : 063) 904-5572

### ■ 문 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 02-3434-7187

1.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품목을 지도받을수 있나요?

**Q.질의**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특화품목을 지도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임산물 생산량과 임가수가 많고 고소득 유망 임산물을 특화품목으로 선정하고 기술지도 수요에 따라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는 13품목이 특화품목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특화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조합에 전화를 걸거나 산림경영지도 상담 대표전화(02-3434-8300)를 이용하시면 해당품목에 대한 각종 정보, 기술지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품목별 배치현황 ▶

품목(명)	배치 조합	품목(명)	배치 조합
총괄 (11)	중앙회(본부2/지역본부9)		
표고 (58)	파주, 양주, 평택, 이천, 안성, 용진, 인천, 화성, 광주, 용인, 원주, 고성, 진천, 제천, 청주, 영동, 대전, 세종, 아산, 서산, 금산, 예산, 태안, 보령, 부여, 서천, 홍성, 진안, 임실, 부안, 광주, 곡성, 화순, 함평, 영광, 완도, 장흥, 해남, 경주, 김천, 안동, 구미(2), 고령, 성주, 칠곡, 경주, 예천,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상, 합천, 제주, 전북(3), 버섯센터	산채 (18)	여주, 포천, 정선, 양구, 인제, 남원, 담양, 장흥, 신안, 구례, 고흥, 포항, 영양, 창녕, 고성, 남해, 하동, 합천
		감 (11)	강릉, 논산, 완주, 나주, 장성, 영암, 청도, 창원, 의령, 함안, 산청
		대추 (7)	연천, 보은, 영천, 군위, 경산, 밀양, 서귀포
		송이 (7)	양양, 안동, 문경, 청송, 영덕, 봉화, 울진
밤 (9)	양평, 음성, 충주, 공주, 청양, 순창, 순천, 광양, 전북	잣 (2)	가평, 홍천
산양삼 (10)	춘천, 영월, 철원, 화천, 단양, 화순, 의성, 울산, 함양, 전북	오미자 (6)	무주, 장수, 상주, 함양, 거창, 전북
조경수 (27)	시흥, 고양, 강화, 서울, 김포, 평창, 삼척, 청주, 괴산, 옥천, 천안, 당진, 김제, 정읍, 고창, 군산, 익산, 여수, 강진, 무안, 대구, 영주, 부산, 진주(2), 전북(2)	구기자 (1)	진도
		약초류 (1)	보성
		더덕 (1)	횡성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56)

## 29. Cyber 산림경영지원시스템 운영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통해 산림에 관심이 있는 분, 전문적으로 산림을 경영 하려는 분들을 위하여 산림경영에 대한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상담내용

- 분야별 산림경영 안내(대리경영, 산림경영계획 등)
- 임산물 생산과 유통에 대한 안내
- 산림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안내
- 임업기계장비와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안내
- 임목 수확 및 기타 안내 등

### ■ 접속방법

- 산림경영지원시스템(<http://iforest.nfcf.or.kr>) 홈페이지 접속
- 문 의 :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지원부 ☎ 02-3434-7209



Cyber 산림경영지원시스템([www.iforest.nfcf.or.kr](http://www.iforest.nfcf.or.kr))

## 1. 사이버 산림경영지원시스템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Q.질의** 사이버 산림경영지원시스템에서 산림경영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싶은데 회원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

**A.답변** 사이버 산림경영지원시스템(www.iforest.nfcf.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게시판은 “일반상담”과 “1:1 산지상담”이 있으며, 홈페이지 하단 “QUICK MENU”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의 경우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문의 할 수 있으며, 모든 지도원들이 게시된 글을 읽고 답변 할 수 있습니다. 1:1 산지상담의 경우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만 이용가능하며, 상담신청을 하실 경우 해당 지역의 지도원들에게 전달되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사이버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통해 키우고 있는 나무의 판매도 가능한가요?

**Q.질의** 사이버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조경수 등 나무의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답변** 사이버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의 “직거래장터” 중 “조경수 직거래”에서 키우신 나무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를 희망하실 경우 우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판매글을 올리시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글을 읽고 판매자와 직접 거래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이버 산림경영지원시스템에서는 조경수 뿐만 아니라 임산물 직거래도 하실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56)

### 30. 산림버섯 종균 및 배지 생산·공급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버섯종균과 표고톱밥배지를 생산·공급하여 임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 버섯종균 및 표고톱밥배지 공급안내

- 표고종균 : 증고온성(산조108호), 증온성(산조302호), 저온성(산조502호), 저온성(유지로)
- 표고톱밥배지 : 증고온성(산조701호), 증온성(참아람), 증온성(산조715호)
- 표고톱밥재배 접종원 병종균 : 증고온성(산조701호), 증온성(참아람), 증온성(산조715호)

#### ■ 표고재배 기술교육

- 교육과정

구 분	교육과정					
	현장 맞춤형 지도	순회교육	표고 초급교육	표고 전문가 양성교육	목이버섯 교육	버섯 재배교육
재배형태	원목, 톱밥	원목, 톱밥	원목, 톱밥	원목, 톱밥	톱밥	원목, 톱밥
대 상 자	재배임가	표고작목반, 희망단체	표고재배임 가 및 희망자	표고재배 임가 및 희망자	목이재배 임가 및 희망자	버섯재배 임가 및 희망자
시 기	연중	연중	월 1회	1년 과정	격월 1회	분기 1회
인 원	-	-	80명/회	40명	80명	80명
신 청	산림버섯연구센터 및 시·군 산림조합					

※ 표고초급, 전문가양성, 목이, 버섯재배 교육의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에정

- 사이버교육 : e-푸른교실(www.fmrc.or.kr)
  - 표고버섯 재배기술 플래쉬 강좌로서 재배 입문자 등에게 표고원목재배기술, 표고톱밥재배기술, 품종소개 자료 제공
- 문의처 : 산림버섯연구센터 ☎ 031) 881-0231~3

## 1. 표고버섯 재배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Q.질의** 표고버섯 재배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귀농자입니다. 표고버섯 재배 관련 교육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답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산자를 위한 교육과정은 초급반, 전문가반 과정이 있습니다. 초급반은 월1회 80명을 대상으로 8시간을 진행하며 전문가반은 연1회 40명을 대상으로 1년간 4주 정도 진행합니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산림버섯연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www.fmrc.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버섯연구센터 경영지도과(031-812-8191)

## 2. 표고버섯 종균은 어디서 구입하나요?

**Q.질의** 표고버섯 원목재배용 종균을 구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답변** 표고버섯 종균은 산림조합과 일반 종균회사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시에는 품종보호출원이나 품종의 생산판매신고가 되어있는 합법적인 종균을 구매하셔야 하며, 구입처로부터 그 품종의 재배특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야 합니다.

### ※ 산림버섯연구센터 원목재배용 종균구매방법

- 신청기간 : 1 ~ 2월
- 공급기간 : 3 ~ 4월
- 품    종 : 산조108호, 산조302호, 산조502호, 유지로, 원형느타리
- 신청방법 : 각 시·군 산림조합으로 신청(내방 및 유선)  
(산림조합 마감시 산림버섯연구센터 직접 신청(내방 및 유선))

▶ 담당부서 : 산림버섯연구센터 생산과(031-812-8160)

### 3. 표고버섯 톱밥배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질의** 표고버섯 톱밥배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표고버섯 톱밥배지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및 각 지역 분양센터 등에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배를 위해서는 구입처로부터 분양하는 형태에 따른 재배특성과 품종특성 등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야 합니다.

#### 1)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경기 여주)

품 종	재 배 시 기	주 문 접 수	신 청	분 양 시 기	비 고
산조701호	봄 ~ 가을	7월	7~12월	10월 ~ 익년 1월	
참 아 람	가을 ~ 봄	2월	2~5월	3월 ~ 5월	

\* 분양공고 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기재배자 문자 발송  
 \*\* 배지형태 : 원통형 1.3kg, 1.5kg (접종배지, 배양배지)

▶ 담당부서 : 산림버섯연구센터 생산과(031-812-8296)

#### 2) 산림조합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배지센터(전남 함평)

품 종	재 배 시 기	주 문 접 수	분 양 시 기	비 고
산조701호	봄 ~ 가을	7월 ~	12월 ~ 익년 5월	
산조715호				
참 아 람	가을 ~ 봄	1월 ~	6월 ~ 12월	
산조708호				

\* 신청방법 : 접수(분양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 계약금 납입  
 ⇨ 주문확정 ⇨ 분양일자 조정  
 \*\* 배지형태 : 원통형 1.3kg, 1.5kg (접종배지, 배양배지)

▶ 담당부서 : 함평 전남버섯배지센터(061-980-2345)

## 3) 문경시산림조합 배지센터(경북 문경)

품 종	재배시기	주문접수	분양시기	비 고
산조701호	봄~가을	7월~	12월~익년 5월	2019년 7월이후
참 아 람	가을~봄	1월~	6월~12월	2019년 7월이후

\* 신청방법 : 접수(분양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 계약금 납입  
⇨ 주문확정 ⇨ 분양일자 조정

\*\* 배지형태 : 사각형 2.5kg (배양배지)

▶▶▶▶▶ 담당부서 : 문경 버섯배지센터(054-555-2305)

## 4. 표고버섯 재배시설 관련자료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Q.질의** 표고버섯 재배시설 관련 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답변** 산림청에서는 고온피해 방지 등을 위해 표고버섯 재배시설에 대한 원목형·툽밥 배지형 표준설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목재배를 위한 시설 1~6형, 툽밥배지 재배를 위한 시설 1~6형이 있으며, 관련 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 (분야별산림 정보>통합자료실>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에서 설계도 및 시방서 등 자세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209)

## 31. 조합원 가입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며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합니다.

### ■ 조합원 가입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위임하여 대리경영</li> <li>▪ 각종 임업기술에 대한 상담</li> <li>▪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안내</li> <li>▪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각종시설물 우선이용</li> <li>▪ 선거권·의결권 등을 통한 조합운영에 직접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업자금 지원</li> <li>▪ 예금은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4% 감면</li> <li>▪ 당기순이익 발생시 이용고배당 및 출자 배당 등</li> <li>※ 출자금의 1천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li> </ul>
---	--

### ■ 조합원 가입자격(산림조합법 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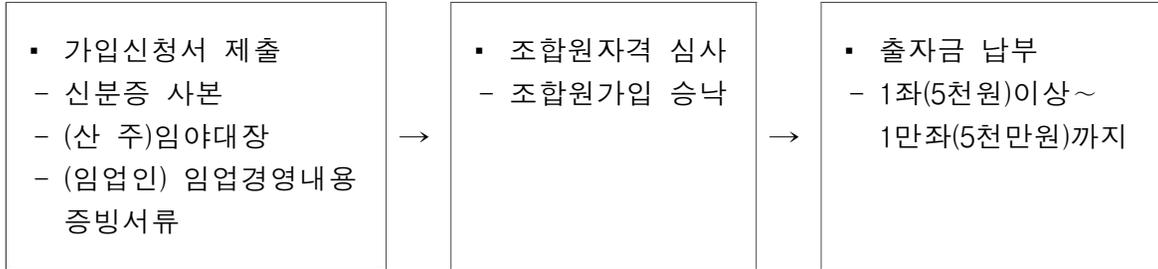
#### ○ 가입대상

- 해당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 해당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 조합원 가입 상담(대표전화 : 02-3434-8300)

#### 임업인의 범위

-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 임업종사자
-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 종묘생산자로 등록된 조림용 종묘생산자
-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등 산림부산물 재배자(300㎡ 이상)
- 대추(1천㎡), 호도(1천㎡), 밤(5천㎡), 잣(1만㎡), 표고자목(20㎡)이상 재배자 등

■ 조합원 가입절차 및 방법



1. 산림만 소유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Q.질의** 산림만 소유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A.답변** 조합원의 자격은 「산림조합법」 제18조 제1항제1호에서 “해당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산림조합정관(예) 제13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항에서는 “본 조합의 조합원은 본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법인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 중 산림소유자와 관련해서는 최소 면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56)

## 2. 타 지역에 산이 있는데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Q.질의** 산은 경기도에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에 가서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A.답변** 조합원의 자격은 「산림조합법」 제18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로서 타지역에 산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소지 산림조합의 산림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또한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산림조합의 산림조합원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림소재지와 주소지중 한 개의 산림조합의 산림조합원으로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56)

## 32. 임업인콜센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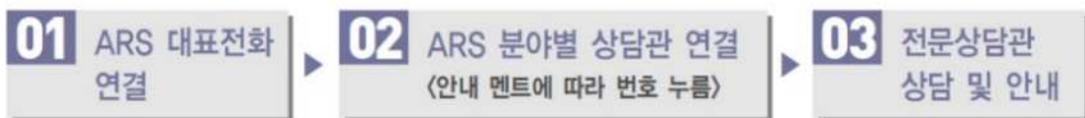
“보유 산지를 묵히고 계십니까?  
산림경영·활용, 한국임업진흥원에 물어보세요!!”

산지를 보유했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전문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려는 분들을 위하여 유선 및 산지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 해 드리고 있습니다.

###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인콜센터☎ 1600-3248

#### ○ 전화상담

- ARS 대표전화를 통한 4개 전문분야별 상담 실시



※ ARS 분야별 : 귀농·귀촌, 산림경영, 단기소득, 산지이용·휴양 및 기타

#### ○ 산주맞춤형 현장컨설팅

- 유선 상담 후 현지컨설팅 요청시 ▶ 요청고객과 전문상담관 방문일자 협의 ▶ 현지 방문을 통한 컨설팅 진행

### ■ 방문·서류상담

- 방문 또는 서류 접수 ▶ 분야별 상담 및 안내(전문상담관)

### ■ 컨설팅 내용

- 소유 산림에 대한 임황, 지황 등 기초정보 제공
-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제공
- 밤, 표고 등 소득작물에 대한 재배기술 및 정부지원 제도 안내
- 치유·휴양 및 산림관련 인·허가 정보 제공
- 귀농·귀촌 관련 정보 제공

## ■ 귀산촌준비 ■

### ○ 귀산촌에 관심을 가져라

요즘은 인터넷이 매우 발달해 있기 때문에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다양한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귀산촌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귀산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체험과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 ○ 농가방문, 전문기관 접촉

사전에 농업관련 기관이나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 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업인콜센터' 처럼 정부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관을 찾아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곳에서는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서 온라인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예비 귀농 귀산촌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 귀산촌체험

직접적인 귀산촌 체험은 자신이 귀산촌 생활에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귀산촌에 성공한 사례자와의 만남,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직접 경험을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가족동의

귀산촌을 희망하는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가족의 동의다.

선뜻 응하지 않는 가족들이 대부분이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가족들과 먼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다.

귀산촌에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가족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 작물선택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력, 품목별 출하지역, 지배 적지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고도의 영농 능력이 요구되는 작물을 선택할 경우

귀산촌의 꿈이 자칫 물거품이 되고 말 수 있다.

#### ● 기술습득

대상작물을 선택한 이후에는 한국임업진흥원 현장교육사업실에서 실시하는 예비 귀산촌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사전에 영농 기술을 확실하게 익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 ● 정착지 물색

대상작물을 선택하고 기술을 익힌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정착지를 물색해야 한다.

먼저 대상물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후보군을 정한다. 그 다음으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녀교육과 의료, 그 밖의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고려해 정착지를 물색해야 한다.

#### ● 주택농지 매입

먼저 주택과 농지의 규모를 정한 뒤,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조건에 맞아 떨어지는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면밀히 비교·검토 한 이후에 선택해야 한다. 지역 내의 원주민이나 그 지역 출신자들을 통해 자신의 판단이 정확한지 검증 받고, 재확인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 경영계획수립

여기까지가 준비과정이었다면 경영계획 수립은 본격적인 시작단계인 셈이다.

농·임산물을 생산해 수익을 내기까지는 최소 4개월에서 길게는 4~5년까지 소요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여유자금과 대상작물의 재배기간, 상품화했을 때 발생할 예상 수익, 천재 지변 등의 요소까지 모두 고려해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을 세워야 한다.

최근 품종개량이 이루어진 작물들이 많으므로 기존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 ● 정착

귀산촌 초기에 대형 농기계나 비싼 시설에 선불리 투자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대형 기계를 사용하면 작업의 효율성은 높아지나 고가일 뿐만 아니라, 조작에도 상당한 기술이 요구된다.

또, 늘 있는 고장과 사고 위험이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성공적인 귀산촌을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현지의 선배 임업인들과 친분을 쌓는 일이다. 성공적인 정착은 원주민들과의 융화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영농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

1. 한국임업임업진흥원 산림경영 컨설팅 상담내용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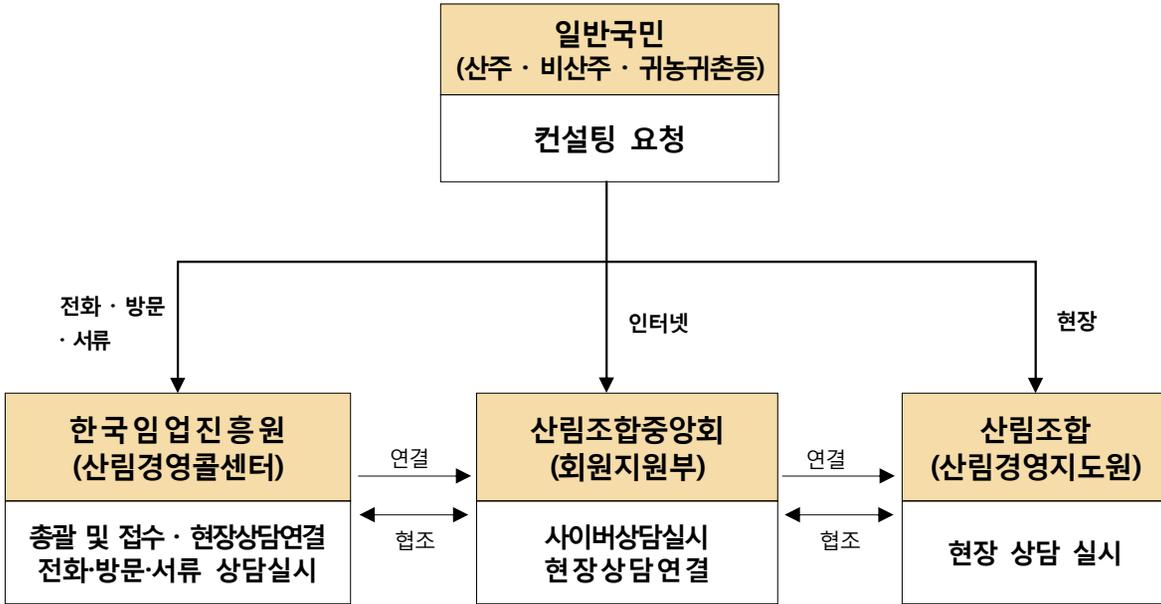
**Q.질의** 산림경영 컨설팅 분야별 상담내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답변** 산주, 부재산주, 귀농 및 귀촌예정자, 기업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정보제공, 소유 산림에 대한 임황, 지황 등 기본정보제공,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제공, 밤, 표고 등 단기소득작물 등에 대한 재배기술 및 정부지원 정책 안내, 치유, 휴양, 산림관련 인·허가 정보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2. 산림경영 컨설팅 절차가 궁금합니다.

**Q.질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답변** 산주, 부재산주, 귀농 및 귀촌예정자, 기업인 등 대상 컨설팅 운영 흐름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농·귀산촌을 하려고 합니다. 사전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정년퇴직 3~5년 전부터 귀농·귀촌하려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적인 귀촌생활의 조기정착을 위한 준비사항으로는 부부가 함께 귀촌하는 것이 조기정착의 지름길이며, 특히 임업분야는 재배기간이 산나물류 및 약용류는 2~7년, 수실류는 10년, 버섯류는 1~2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귀농 후 생활비, 영농자금 등 사전 확보하여야 하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족구성원 중 노부모, 학생 등 동반귀촌 시에는 학교, 병원 등을 고려하여 귀농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기소득품목 재배 시에는 품목선정과 재배기술 교육을 사전에 숙지하여야하며, 행정관련 허가·인가·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 산림부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업후계자 자격증 취득 및 임업장비 사용법에 관한 교육이수 및 현장실습을 통한 숙지 등 필요합니다.(ex. 포크레인, 기계톱, 예불기 등)

## 2. 아직 임야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구입방법은 무엇인가요?

- 임야를 확보하는 유형은 매입, 사인간 임차, 국유림대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인간 임대차시에는 계약기간은 최소한 20년 이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 3. 임야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어떤 임야를 구입해야 하나요?

- 소득 작물이 잘 자라는 이상적인 임야는 접근성, 방위, 해발고, 경사도, 토심, 임상 등 확인하여 구입해야 합니다.

- 접근성 : 지방도, 농로 등에서 작업로 시설 가능여부, 타인소유임야 통과 시 소유주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징구 받아 첨부하여야만 작업로 시설 가능
- 방위 : 북, 북동, 북서 > 동 > 남 > 서
- 해발고 : 400m ~ 800m가 이상적
- 경사도 : 20° ~ 25°가 우리나라 임야 평균 경사도 이므로 완경사가 좋음
- 임상 : 활엽수 임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정보다드림([www.kofpi.or.kr](http://www.kofpi.or.kr))을 접속하여 임야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귀농·귀산촌을 하여 재배품목을 선정할 때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 귀산촌하고자 할 때 소유 임야에 가장 적합한 소득 작물을 먼저 선정해야하며 다음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사전시장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성 있는 품목을 선정
  - 지속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력이 적게 들고, 수확이 용이하며, 봄, 여름, 가을 등 계절별로 생산 시기가 상이한 품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 5. 귀산촌 하려고 하는데 정책자금 및 지원 분야는 어떻게 있나요?

- 전문임업인으로 선정 되면 용자·정책자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임업인은 신지식인, 독립가, 임업후계자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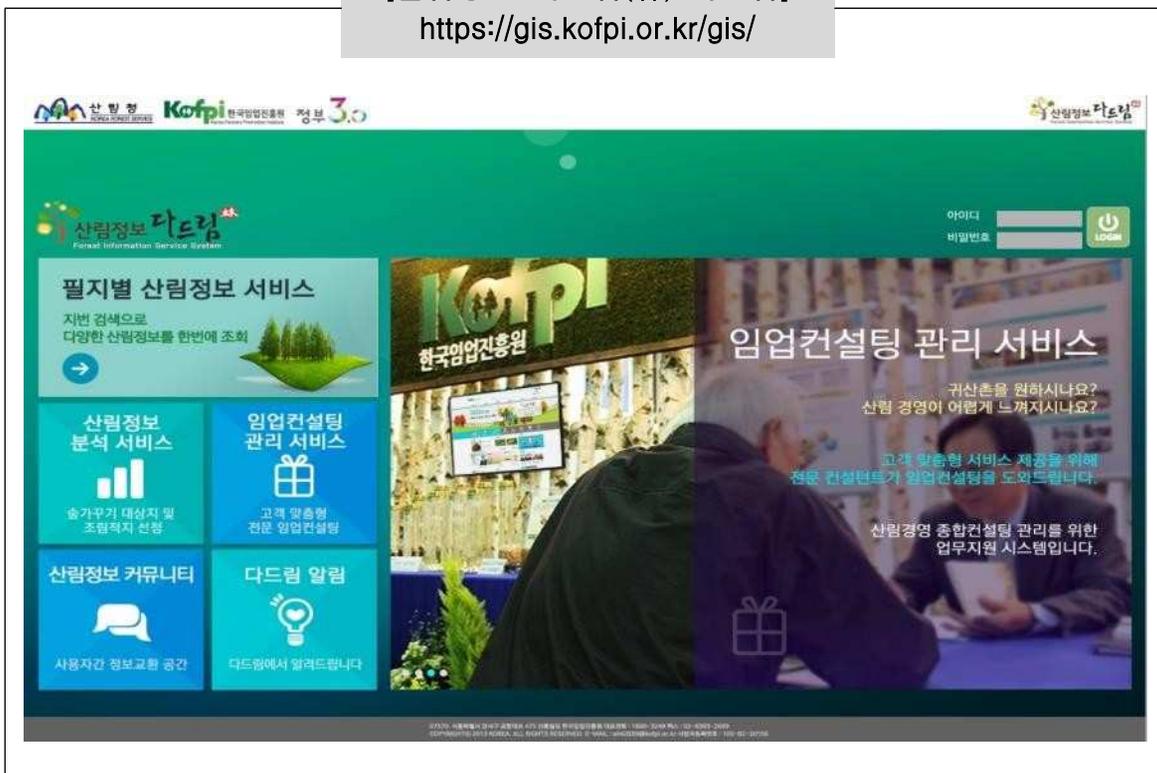
## 6. 귀농·귀촌을 하기 위한 재배기술에 관한 교육기관은 어디에 있나요?

- 한국임업진흥원 임산물 교육센터(평창, 영주, 남원, 부여, 파주)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청송군)
- 산림버섯연구센터(여주)

### 33. ‘산림정보 다드림(林)’시스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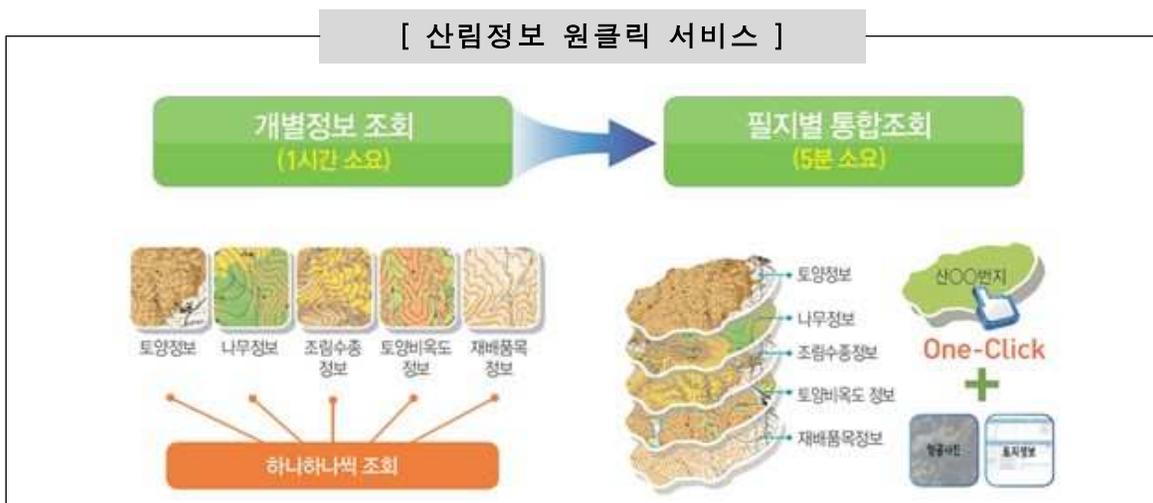
일반국민, 개인 산주, 임업인 모두가 다양한 산림정보를 필지별로 통합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에 맞는 산림의 위치를 보다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산림정보 웹 서비스입니다.

[산림정보 다드림(林) 시스템]  
<https://gis.kofpi.or.kr/g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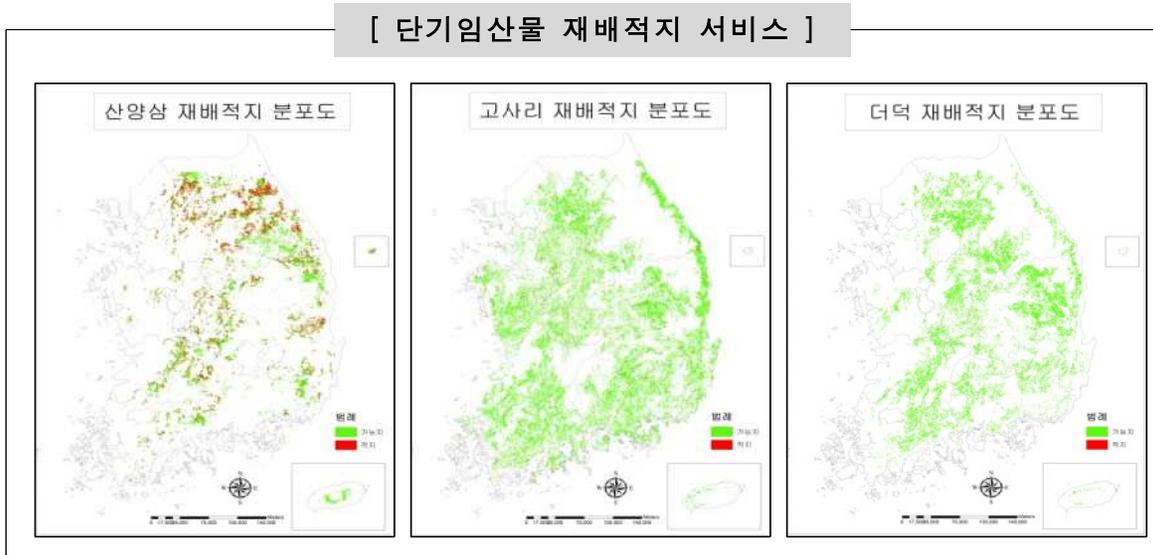


▶ 주요 내용

-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 (일반 산주 지원, 모바일 웹서비스)
  -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필지내 산림정보를 1분내 조회 가능 (지가, 임목, 지형, 토양, 적지, 통계현황 등 151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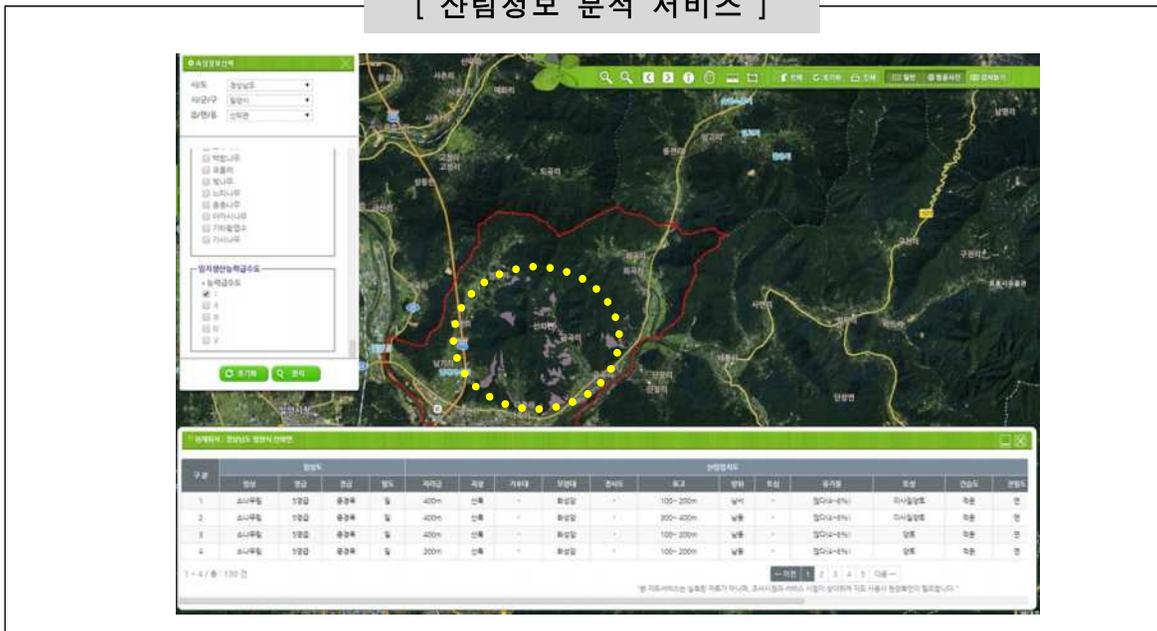
- 단기임산물 재배적지 정보 서비스 (임가소득 지원)
  - 임업인이 선호하는 산약초, 수실류, 산채류 중심으로 DB구축
  - ※ '13년 10품목 → '14년 12품목 → '15년 14품목 → '16년 16품목



○ 내게 맞는 산찾기 서비스 (임업경영활동 지원)

-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로 산림환경, 수종 등 각종 산림정보를 선택적으로 분석하여 특정조건의 산림분포를 손쉽게 확인

[ 산림정보 분석 서비스 ]



○ 임업컨설팅 관리 서비스 (컨설팅용)

- 고객이력, 사후관리, 현장기술지도 연계 등 임업컨설팅 관리업무의 전산 일원화로 고객감동 컨설팅 실현

[ 임업컨설팅 관리 서비스 ]



## [ 서비스되는 주요 산림정보 ]

유형(종수)	세 부 정 보	출 처
나무정보(4)	임상, 영급, 경급, 밀도	1/5,000 임상도(17,215도엽) 1/25,000 임상도(748도엽)
지형정보(3)	경사, 방위, 표고	산림입지토양도 1/5,000 (8,893도엽) 산림입지토양도 1/25,000 (813도엽) 임지생산능력급수도(813도엽)
토양정보(5)	토성, 토심, 건습도, 견밀도, 기후대, 임지생산력	
경영정보(137)	적정조림수종(38수종), 적정재배 품목(36품목), 재배기술(18품목), 소득분석(19종), 경제성분석(13종), 사유림정보(5종), 산림사업대상지(2종), 산림기능구분(6)	맞춤형 조림지도(763도엽) 단기임산물재배적지도(813도엽) 숲가꾸기대상지(전국), 벌채대상지(전국), 산림기능구분도(전국)
안전정보(4)	산사태위험, 임도, 등산로, 소나무류 반출입금지구역	산사태위험지도, 임도망도, 등산로지도, 소나무류 반출입금지구역도
기후정보(2)	평균기온, 강수량	
휴양정보(1)	산림생태마을정보	산림청 산림생태마을DB
해외산림(1)	북한산림자원통계정보	Global Forest Watch
토지정보(3)	소유면적, 공시지가, 토지이용현황	국토부 V-world
영상정보(3)	영상지도, 지적도, 시설명칭 (전국 약 90만개)	

## 1. 산림정보 다드림 시스템이 무엇인가요?

**Q.질의** 산림정보 다드림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는데, 산림정보에 관한 내용을 정말로 다 주는 건가요?

**A.답변** 산림분포, 지형과 토양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재배품목 등 다양한 산림정보를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맞춤형 산림정보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총 163가지의 산림정보를 필지 단위로 한번에 통합하여 간편하게 해당 필지의 산림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나무정보, 기후정보, 지형정보, 영상정보, 토양정보, 경영정보, 토지정보, 안전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담당부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정보서비스실(02-6393-2725)

## 2. 게시판 이용방법은?

**Q.질의**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을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답변** 우선 게시판에 글을 남기기 위해서는 산림정보 다드림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아 래 -

1.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산림정보 다드림 메인페이지의 하단 중앙에 있는 '산림정보 커뮤니티'를 클릭합니다.

2. 화면좌측에 '알림, 소통의 창, 개선의견' 3개의 게시판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게시판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게시판을 선택하신 후 '글쓰기'를 클릭 하시면 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정보서비스실(02-6393-2725)

### 3. 모든 필지에 대해 지도 검색이 가능한가요?

**Q.질의** 필지 주소를 입력했으나 지도가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방법은 있습니까?

**A.답변** 지도가 안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국가보안 등의 이유로 지도서비스가 제한되는 지역의 필지는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일부 필지가 누락되거나 필지가 최근 새롭게 생성된 경우 검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브이월드에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가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070-4492-091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정보서비스실(02-6393-2725)

### 4. 검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데 해결 방법은?

**Q.질의** 필지 주소를 입력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데 조회까지 소요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 캐시가 계속적으로 남아 누적되면 속도저하, 오류 등을 발생하게 합니다. 따라서 누적되는 캐시를 삭제 해주시면 좋습니다. 누적된 캐시를 삭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들어가신 후 화면상단에 [도구]→[인터넷옵션]→[검색 기록]에서 삭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정보서비스실(02-6393-2725)

## 5. 산림정보 다드림 시스템에서 귀산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Q.질의** 산림정보 다드림 시스템의 맞춤형 산림정보 제공으로 귀산촌 지원이 가능한가요?

**A.답변** 해당 필지의 지형정보, 나무정보, 토양정보, 기후정보, 적정재배품목, 적정조림 수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드림 시스템을 통해 검색된 정보를 기반으로 귀산촌을 위한 컨설팅 및 실무교육(한국임업진흥원 현장교육사업실)을 별도로 이수하여 귀산촌을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정보서비스실(02-6393-2725)

## 6. 임업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질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임업컨설팅 서비스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데 회원가입에 필요한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A.답변** 회원가입을 하는데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 임업컨설팅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시스템에 링크되어 있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하시면 즉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정보서비스실(02-6393-2725)

## 7. 생산력이 좋은 임지를 구별할 수 있나요?

**Q.질의** 산림정보 다드림 시스템에서 임지의 좋고 나쁨을 수치화한 정보가 있습니까?

**A.답변** 지형, 나무정보, 토양정보, 산사태정보, 기후정보 등 산림정보 다드림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들 각각의 요소들이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정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기준이 되는 정보를 손꼽으라면 임지에서의 생산력을 등급화한 임지생산능력급수가 기준 정보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지생산능력급수는 도시개발 기본계획 상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입니다.

▶▶▶▶ 담당부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정보서비스실(02-6393-2725)

## 8. 적정재배 품목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해결방법은?

**Q.질의** 적정재배 품목이 나타나지 않아요.

**A.답변** 단기임산물 적정재배 품목은 표고, 방위, 경사 등의 주요정보를 바탕으로 산출이 됩니다.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주요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적정재배품목에 대한 필지별 최적지와 가능지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정보서비스실(02-6393-2725)

## 9. 화면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질의** 산림정보분석서비스에서 분석을 요청하면 “code : 200 message : undefined”와 “분석결과를 요청 중” 화면만 나타나고 작동이 안 됩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을 알려주세요.

**A.답변**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요청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오류입니다.

초기화(Ctrl+F5 입력) 후 재검색하시고, 동일한 오류 발생 시에는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동일한 오류가 없도록 면밀히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정보서비스실(02-6393-2725)

## 10. 오류메시지 발생 시 해결방법은?

**Q.질의** 산림정보 다드림 시스템을 이용하는 중 갑자기 3D지도 관련 오류메시지가 뜨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답변** 3D지도보기에 필요한 플러그 설치에서 발생하는 메시지로서, 3D지도는 그래픽 카드와 관련이 있는데 지도를 보지 못해도 플러그는 설치되어 충돌되는 현상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플러그 설치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뉴 순서는 [제어판>프로그램>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Microsoft Visual C++ 2008 Redistributable - x86 9.0.30729	Microsoft Corporation	2014-10-02	602KB	9.0.30729
Microsoft Visual C++ 2008 Redistributable - x86 9.0.30729	Microsoft Corporation	2014-10-02	600KB	9.0.30729.6161
Microsoft Visual C++ 2010 x64 Redistributable - 10.0.30319	Microsoft Corporation	2014-10-02	13.7MB	10.0.30319
Microsoft Visual C++ 2010 x86 Redistributable - 10.0.30319	Microsoft Corporation	2014-10-02	11.0MB	10.0.30319
mVWorldPlugin	MLTM	2016-12-13		1.0.0.0
NVIDIA 3D Vision 드라이버 340.52	NVIDIA Corporation	2014-10-06		340.52
NVIDIA HD 오디오 드라이버 1.3.30.1	NVIDIA Corporation	2014-10-06		1.3.30.1
NVIDIA 그래픽 드라이버 340.52	NVIDIA Corporation	2014-10-06		340.52
NVIDIA 업데이트 10.4.0	NVIDIA Corporation	2014-10-02		10.4.0
Prifla EPD10	SEKIO EPSON CORPORATION	2015-03-06		1.20.0000
Prifla Printer Driver		2015-03-06		
Realtek Ethernet Controller Driver	Realtek	2014-10-02		7.50.1123.2011
Realtek High Definition Audio Driver	Realtek Semiconductor Corp.	2014-10-06		6.0.1.6458
Respert3D Viewer 1.0.0.447	ClipSoft	2016-10-19		1.0.0.447
Samsung Recovery Solution 5	Samsung	2014-10-07		5.0.0.6
Samsung Universal Print Driver 2	Samsung Electronics Co., Ltd.	2014-10-06		2.50.04.00
Sentinel System Driver(64-bit) 7.2.2	SafeNet, Inc.	2016-10-05	191KB	7.2.2
UNIERP 3.0 Client	SamsungSDS	2014-10-06		1.0.1.17
XDPluginSetup	Egis Co.,Ltd	2014-11-01	4.33MB	1.00.0001
알씨 6.71	ESTsoft Corp.	2014-10-06		v6.71
알집 8.52	ESTsoft Corp.	2014-10-06		v8.52

XDPluginSetup 및 mVWorldPlugin 설치파일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XDPluginSetup은 Internet Explorer에서 설치된 경우에 생기며,  
mVWorldPlugin은 Chrome에서 설치된 경우에 생기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  
해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정보서비스실(02-6393-2725)

### 34. 사유림 매수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현재 25.8%인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안정적 수준인 32%까지 확대</li> </ul>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수하는 산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경영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li> <li>◎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li> <li>◎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li> </ul> </li> <li>2. 제주특별자치도 곳자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등급 1~2급지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li> <li>◎ 조천·한경 곳자왈 지역 내의 산림</li> </ul> </li> <li>3. 소양강 탁수 저감을 위한 소양강 상류 지역의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구군(해안면), 홍천군(내면), 인제군(서화면 또는 가아리)의 산림 안에 있거나 산림 인근에 있으면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토지</li> </ul> </li> <li>4.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매수 청구한 사유림 우선 매수</li> </ul> </li> <li>5. 대한석탄공사 산업비림 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석탄공사 소유 임야 중 임상 및 지리적 여건이 양호한 산림 우선 매수</li> </ul> </li> <li>6. 광릉숲 생물보존권지역내 완충지역 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토지</li> <li>◎ 종장기 매수계획에 따른 1차 매수 지역 우선 매수</li> </ul> </li> </ol> </li> <li>※ 매수하지 않는 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li> <li>-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li> <li>-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li> <li>-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 승낙이 없는 산림</li> <li>-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li> <li>-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li> <li>-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li> <li>-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li> </ul>
<p><b>매수가격결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 감정평가업자(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li> <li>◎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으로서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li> </ul>
<p><b>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 및 접수 : 팔려고 하는 임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산림휴양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FAX 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를 제출</li> <li>◎ 접수기간 : 연중</li> </ul>
<p><b>기타 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곳을 추천</li> <li>◎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기관(부서)과 충분한 협의 필요</li> </ul>
<p><b>첨부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도승낙서</li> </ul>
<p><b>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국유재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4095</li> <li>• 042-481-4096</li> </ul> </li> </ul>

1.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Q.질의**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답변** 고객님의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의사가 있으시면 관할 국유림관리소(재산관리 부서)로 매도승낙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현지조사 및 공부확인 등을 통해 매수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신속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림 매수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객님) 매도승낙서 접수
2. (국유림관리소) 관련 공부 검토 및 현지조사
3. (국유림관리소) 매수 결정시 고객님에게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4. (감정업자) 감정평가업자의 가격 결정
5. (국유림관리소) 가격결정하여 고객님에게 가격 및 계약 안내문 발송
6. (고객님) 매도의사에 따라 매매계약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국유림경영과(042-481-4096)

2. 산림청 소유 임야는 매각 또는 교환이 가능한가요?

**Q.질의** 국유림 매각 및 교환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답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매각과 교환은 대상지가 준보전국유림인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매각 또는 교환 등이 필요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및 국유림의 확대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국유림경영과(042-481-4096)

### 3. 국가에서 사유림을 매수하나요?

**Q.질의** 개인 임야를 국가에 팔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알려주세요.

**A.답변**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산지를 국가에서 매수하여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산림을 경영합니다. 이를 통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흡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유림 확대 정책의 목적입니다. 사유림을 매수하는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매수하는 산림

-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 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
-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산림 등

#### 2. 매수하지 않는 산림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3.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 매수절차  
매도승낙서접수 -> 승낙서 등 서류검토 -> 현지확인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 매매협의를-> 감정평가의뢰 -> 매수가격결정 -> 매매 계약 체결 ->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계좌입금)
- 매수가격결정 방법
  - 감정평가업자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
  -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에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 4.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 문의 및 접수 : 팔려고 하는 임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휴양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FAX 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를 제출
- 접수기간 : 연중

### 5. 기타 유의사항

-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 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기관(부서)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국유림경영과(042-481-4096)

#### 4. 산림청의 임야매수기준을 알려주세요.

**Q.질의** 산림청에 산림을 매수하고 있는 기준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답변**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국유림 확대 정책으로서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사유림의 우선 매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 둘째,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
- 셋째,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 제한 산림
- 넷째, 제주특별자치도 꽃자왈 보전림으로서 조천·한경 지역
- 다섯째,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토지로서 중장기 매수계획에 따른 광릉숲 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1차 매수 지역 등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국유림경영과(042-481-4096)

## 35. 국유림 임대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 : 국가가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대부계약)주는 것</li> <li>⊙ 사용허가 : 국가가 보전국유림(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것</li> </ul>
목적(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국유림 : 공용·공공용,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산림공익 시설, 광업용, 산촌개발사업, 산나물 재배 등</li> <li>- 준보전국유림 : 대부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음</li> </ul> </li> </ul>
대부(사용허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li> <li>⊙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 기준에 적합할 것</li> <li>⊙ 사업시행에 따른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li> </ul>
대부(사용허가)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 대부(사용허가) 여부 통지</li> </ul>
대부기간 및 대부료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21조에 따른 대부(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li> <li>⊙ 대부(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5년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대부(사용)료는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용도별 요율을 곱한 금액이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율 : 농림어업소득사업용 1%, 스키장·주거용 2%, 공용·공공용 2.5%, 그 외 5%</li> </ul> </li> </ul>

## 1. 국유림을 빌려서 이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질의** 개인이 국유림을 빌려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절차 및 구비서류 등이 어떻게 되나요?

**A.답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를 받으시려면, 귀하께서 이용하실 국유림 지역과 용도를 결정하신 후 해당 국유림을 관할하고 있는 국유림관리소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관련법 검토 및 현지조사 과정을 거쳐 25일 내 대부(사용허가) 가능 여부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이용하고자 하는 국유림의 지역 및 용도에 따라 대부(사용허가)는 제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지역별 행위제한 사항 및 현지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대부(사용허가)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전국유림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에 주로 이용되며, 개인에게는 보전국유림 내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또는 약용수 종류의 재배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준보전국유림은 이용할 수 있는 용도를 법에서 따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이 없고, 현지 여건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국유림경영과(042-481-4094)

## 2. 국유림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Q.질의** 개인이 국유림을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면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국유림에서 산나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국유림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A.답변** 국유림 임대료(대부료)는 해당 국유림의 개별공시지가와 국유림 이용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 임대료는 해당 국유림의 가격에 용도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합니다. 국유림 이용 용도별 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에 5%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나, 임업소득 사업용은 1%, 주거용은 2% 요율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정합니다.

※ 임업소득사업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국유림을 이용해 재배하는 행위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국유림경영과(042-481-4094)

### 3. 국유림을 대부받아 조경수 식재 및 약초재배가 가능한가요?

**Q.질의** 국유림을 대부받아 조경수 식재 및 약초재배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사용자 변경은 가능한가요?

**A.답변** 보전국유림 내에서의 사용허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약초류의 재배는 제7호에 따라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약초류를 재배할 경우 가능하며, 준보전국유림의 대부는 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대부 등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해당 국유림의 활용현황·계획 및 현지역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국유림경영과(042-481-4094)

# 산림복지 분야





### 36.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복지소외자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li> </ul>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10만원</li> </ul>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li> <li>○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li> </ul>
신청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출 → 이용권 발급</li> </ul>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li> <li>○ 신분증 사본, 기초생활수급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증명원</li> </ul>
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산림복지서비스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8868</li> <li>• 042-481-8866</li> </ul> </li> </ul>

##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나요?

**Q.질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대해서 궁금하고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중인 바우처 제도로 1인당 1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비, 프로그램 체험비 등의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는 전국에 143개소(18.11월 기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6년 9,100명, 2017년 15,000명, 2018년 25,000명에게 발급하여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19년은 더욱 확대하여 35,000매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http://www.forestcard.or.kr))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우편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복지국 산림복지정책과(042-481-8866)

### 37. 사립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및 사설수목장림 시설 조성 안내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 내에 다양한 휴양·치유공간 및 친환경적인 수목장림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산림휴양수요 충족은 물론 보건휴양과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 도모</li> </ul>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립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및 수목장림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일부를 융자지원</li> </ul>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자 : 사립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및 사설수목장림 조성 계획 승인을 얻은 자</li> <li>지원비율 : 국고융자 설계금액의 80%이내</li> <li>융자조건 : 연리 3.0%, 10년거치, 10년상환</li> <li>융자한도 : 8억원/1개소</li> </ul>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사업량</th> <th rowspan="2">단위</th> <th colspan="3">소요자금</th> </tr> <tr> <th>총사업비</th> <th>융자</th> <th>자부담</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융자지원방법 : 자부담금 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증거서류 확인 후 사업자금 지원(사후 융자)</li> </ul>	사업량	단위	소요자금			총사업비	융자	자부담	1	개소	1000	800	200
사업량	단위			소요자금										
		총사업비	융자	자부담										
1	개소	1000	800	200										
신청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신청자</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신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해당 시·군 산림조합</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심사·결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통 보</div> </div>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내역 및 수목장림관리운영 계획 허가사항 1부, 자부담금 집행 증거서류 1부, 대출신청서 1부</li> </ul>													
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lt; 수목장림 담당 &gt; · 042-481-8868, 042-481-8866</li> <li>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lt; 자연휴양림 담당 &gt; · 042-481-4211, 042-481-4212</li> <li>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lt; 치유의 숲 담당 &gt; · 042-481-4124, 042-481-8877</li> </ul>													

## 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자연휴양림 지정이 가능한지요.

**Q.질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자연휴양림 개발이 허가가 나는지 문의드립니다.

**A.답변**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는 자연휴양림 지정을 이행한 후 시설 조성계획승인의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자연휴양림 지정은 해당 시·군에 접수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게 되며, 자연환경보전지역도 타당성평가의 요소를 충족할 경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연휴양림 지정이후 시설물 조성계획 승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4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접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권한은 시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212)

## 2. 사설 자연휴양림 조성절차가 궁금합니다.

**Q.질의** 사설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요?

**A.답변**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는 자연휴양림 지정을 이행한 후 시설 조성계획승인의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자연휴양림 지정은 해당 시군에 접수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환경부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를 첨부한 후 시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 하며,

자연휴양림 지정이후 시설물 조성계획 승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접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212)

### 3. 휴양림 내 건축물 대지면적은 무엇을 말하나요?

**Q.질의**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조성사업승인을 득한 자연휴양림내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의 범위를 산정할 때 기준에 되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 **갑 설**  
휴양림 조성사업 승인 부지 전체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하여야 함.
- **을 설**  
휴양림 조성사업 승인시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한 형질변경을 득한 부분만을 대지면적으로 하여야 함.

**A.답변** 자연휴양림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며,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3천평)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212)

### 4. 자연휴양림 내 건축물도 소방법 적용을 받나요?

**Q.질의** 자연휴양림 내 건축물(숲속의 집, 휴양관 등)도 소방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된 법규가 무엇이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자연휴양림 내 건축물(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을 신규조성 할 때에는 「소방 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관할 소재지 소방관서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212)

### 5. 자연휴양림 신규조성에 조림사업이 도움되나요?

**Q.질의** 사유림 자연휴양림(타당성조사, 지정, 조성계획) 조성 시 조림사업 시행과는 문제가 없는지요?

**A.답변** 사유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대상지가 자연휴양림구역으로서 적지인지 여부를 가늠하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타당성평가의 항목은 접근성, 경관 휴양유발인자 등 다양한 인자별로 점수를 매겨 합계점수 100점이 넘어야만 자연휴양림 대상지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조림지보다는 상층목 수령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212)

### 6. 자연휴양림에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있나요?

**Q.질의** 자연휴양림에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2018년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중 산음, 검마산자연휴양림 두 곳에서 반려동물(동물등록번호 부여된 개(犬)만 가능) 동반 이용이 가능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휴양림 외 추가로 2개소를 선정하여 금년 5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가 선정되는 자연휴양림은 국립자연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212)

## 7. 수목장림도 임업에 해당되나요?

**Q.질의** 수목장림도 임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임업의 정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수목장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림사업에 해당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복지정책과(042-481-8866)

## 8. 국립 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이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Q.질의** 수목장림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신청자격과 필요한 서류,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답변** 국유 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은 공동목과 가족목으로 구분하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목의 경우에는 최대 5위까지 안치가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추모목 선택은 불가합니다. 가족목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최대 10위까지 안치가 가능합니다. 추모목의 사용계약기간은 15년으로 3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및 관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1년 사용료	1년 관리비	비 고
가족목	A등급	20,000	13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는 추모목 1그룹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li> <li>● 관리비는 유골 3위를 기본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3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위당 1년 관리비 45,000원씩 추가됨.</li> </ul>
	B등급	16,000		
	C등급	12,000		
공동목	A등급	4,000	4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는 추모목 1그룹의 5분의1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li> <li>● 사용료 및 관리비 모두 유골 1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li> </ul>
	B등급	3,200		
	C등급	2,400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042-481-8866)나 하늘숲 추모원(031-775-6637~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복지정책과(042-481-8866)

### 38. 산촌공동체 활성화(舊 산촌6차산업화)

<b>목 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촌이 보유하고 있는 산림자원(1차)을 가공·체험·판매(2·3차)하여 낙후된 산촌의 소득을 높이고 활성화 및 역량강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창업 또는 발전·자립·화합을 지원</li> </ul>								
<b>내 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촌 컨설팅 및 산촌 6차산업 지원</li> </ul>								
<b>규모 및 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모) 24개 마을 내외(3개 권역, 권역별 8개 마을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마을 선정결과에 따라 3개 권역으로 구분</li> </ul> </li> <li>(대상) 모든 산촌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마을에 대한 신청제한은 없으나 평가 때 최초 신청마을을 우선토록 배점</li> </ul> </li> </ul>								
<b>선정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모) 24개 마을 내외(3개 권역, 권역별 8개 마을 내외)</li> <li>(평가기준) 마을의 단합과 자립의지, 사업화 아이템 및 성공 가능성 등</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20%;">항목</th> <th style="width: 70%;">평가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평가 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획평가</td> <td>참여의지, 보유자산(유·무형) 활용도, 사업계획 충실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추진 체계 등, 자부담 비율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효과평가</td> <td>자립성, 기여도, 목표의 명확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파급효과, 지속적인 기대효과, 발전 가능성 등</td> </tr> </tbody> </table>	구분	항목	평가기준	평가 기준	계획평가	참여의지, 보유자산(유·무형) 활용도, 사업계획 충실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추진 체계 등, 자부담 비율 등	효과평가	자립성, 기여도, 목표의 명확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파급효과, 지속적인 기대효과, 발전 가능성 등
구분	항목	평가기준							
평가 기준	계획평가	참여의지, 보유자산(유·무형) 활용도, 사업계획 충실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추진 체계 등, 자부담 비율 등							
	효과평가	자립성, 기여도, 목표의 명확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파급효과, 지속적인 기대효과, 발전 가능성 등							

<p><b>지원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 기획단계에서부터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을 역량과 6차산업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마을별로 차등 지원(1권역 1컨설팅)</li> <li>● (예산) 총 8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1~11월) 및 산촌 6차산업 지원 : 3개 권역으로 추진</li> <li>- 평가 결과에 따라 ① 컨설팅 지원과 ② 2년간 컨설팅+사업비를 지원(30백만원×2년~40백만원×2년)</li> </ul> </li> <li>● (자부담) 마을의 의지와 역량,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원금액의 20% 이상을 자부담토록 명시하고 자부담 비율을 평가배점에 반영</li> </ul>																		
<p><b>추진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시군 → 도) ~ 2018. 1. 26.</li> <li>● (도 → 산림청) 2018. 1. 29.~ 2018. 2. 2. (도별 3개 마을)</li> <li>● 추진절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5%;">2018.1.26.</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5%;">2018.2.2.</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5%;">2018. 3.</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5%;">2018. 3.</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5%;">2018. 11</td> </tr> <tr> <td>신청 마을·시군 → 도</td> <td>⇒</td> <td>추천도 → 산림청</td> <td>⇒</td> <td>마을선정 (임업진흥원)</td> <td>⇒</td> <td>지원규모 결정 및 지원</td> <td>⇒</td> <td>성과평가 및 환류</td> </tr> </table>	2018.1.26.		2018.2.2.		2018. 3.		2018. 3.		2018. 11	신청 마을·시군 → 도	⇒	추천도 → 산림청	⇒	마을선정 (임업진흥원)	⇒	지원규모 결정 및 지원	⇒	성과평가 및 환류
2018.1.26.		2018.2.2.		2018. 3.		2018. 3.		2018. 11											
신청 마을·시군 → 도	⇒	추천도 → 산림청	⇒	마을선정 (임업진흥원)	⇒	지원규모 결정 및 지원	⇒	성과평가 및 환류											
<p><b>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산촌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1815</li> <li>• 042-481-4245</li> </ul> </li> </ul>																		

1.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Q.질의**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전 산촌 6차산업화)'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산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1차·2차·3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산촌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산림부서)의 추천을 통해 도와 우리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임업진흥원에서 심사 및 선발을 합니다.

그 후 자체 심사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매년 초에 산림청 또는 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절차와 세부 추진계획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 시군 ⇒ 도 ⇒ 산림청(임업진흥원) ⇒ 공모선정  
 신청 추천 심사 심사2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복지정책과(042-481-4245)

2.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전 산촌6차산업화)'의 지원내용은 무엇 인가요?

**Q.질의** 마을의 발전을 위해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 인가요?

**A.답변**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산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1차·2차·3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산촌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과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마을이 보유하는 유무형의 자산과 역량을 확인하여 계획을 지원해 주는 컨설팅과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적정사업에 대하여 30~4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합니다.

2018년 부터는 산촌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다른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6차 사업자 인증, 체험휴양마을 인증,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고 안정적으로 계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년간 지원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복지정책과(042-481-4245)

### 3. 주민현장학교는 무엇인가요?

**Q.질의** 산촌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민현장학교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주민현장학교에서 시행하는 사업 내용은 무엇인가요?

**A.답변** 주민현장학교는 산촌마을의 리더(리장, 반장, 운영위원장 등)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워크숍 형태의 사업으로서, 리더들 간의 정보교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 마을 주민과 리더간 또는 리더와 리더 간의 갈등 관리, 리더의 스트레스 관리, 6차산업 등에 대한 소양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복지정책과(042-481-4245)

4. 귀산촌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Q.질의** 귀산촌 정착지원을 위해 지원해 주는 정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산림청이 귀산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정착지원 교육사업 ‘귀산촌 정착 stay’와 정착자금 융자 사업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이 있다.

우선 ‘귀산촌 정착 stay’사업은 아래와 같다.

- (목적) 귀산촌인(희망자)의 안정적 정착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실행
- (대상) 귀산촌 예정자, 귀산촌에 관심있는 일반인 누구나
- (방법) 귀산촌 희망자를 모집하여 귀산촌에 필요한 이론·정보·체험 제공
- (예산) 총 240백만원(6개 과정×40백만원)
  - 크게 관심반, 정착반, 창업반으로 나누어 운영
- 추진절차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복지정책과(042-481-4245)

그 다음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귀산촌을 희망하는 자에게 안정적으로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을 활성화
- 사업기간 : '18년
- 사업규모 : 34,000백만원
- 용자한도 : 1인당 300백만원

● 지원대상자

-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의 임업인
- 귀산촌하려는 자로서 산림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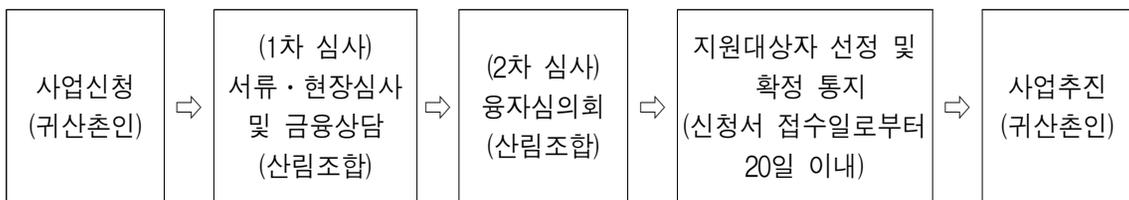
● 용자조건

사업명	금리	용자기간			용자한도	용자비율
		계	거치	상환		
귀산촌인 창업자금지원	2.0%	15년	5년	10년	300백만원	실소요액 100% 이내

● 자금용도 : 임업분야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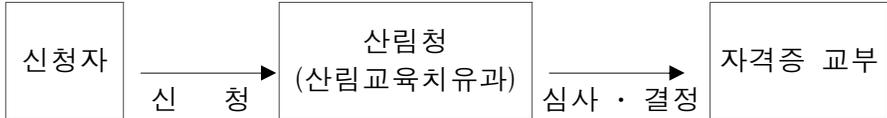
- 임산물 생산·판매·재배 등 기반조성분야 창업
- 산림복지서비스분야 창업

● 추진절차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독과 (042-481-4245)

### 39. 산림치유지도사 제도 안내

근거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12.1.15. 시행)</li> </ul>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도활동</li> </ul>
양성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산림관련 학과의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li> <li>○ 2급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산림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관련 학과의 학위가 없는 경우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년(전문학사), 또는 4년(고졸학력)의 경력이 있어야 함</li> </ul> </li> <li>2. 양성교육 :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1급은 130시간(18과목), 2급은 경우 158시간(선택과목 포함 24과목)</li> <li>3. 검증평가 : 양성기관에서 교육 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각 과정별 검증평가 실시</li> </ol>
자격증 신청	 <pre> graph LR     A[신청자] -- 신청 --&gt; B[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B -- 심사·결정 --&gt; C[자격증 교부]                     </pre>
자격증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졸업증명 또는 산림치유 관련 경력</li> <li>○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등) 자격증 및 관련 경력</li> <li>○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사, 기사 자격증</li> <li>○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양성과정 수료여부</li> <li>○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검증평가 통과여부</li> </ul>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경력 증명서, 이수증명서</li> <li>○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li> </ul>
업무담당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산림치유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4124</li> <li>• 042-481-8877</li> </ul> </li> </ul>

## 1.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취득 관련학과는 어떻게 되나요?

- Q.질의** 산림치유지도사 2급 자격 취득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보전 임상병리과(2년제) 졸업하고 의료기간에 몇년간 근무하였는데 자격이 되는지요?  
 보전2년 졸업과병원경력 2년 이상이면 가능하나요?  
 숲해설사 자격은 취득하였는데 도움이되나요?

- A.답변**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의3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학과는 의료, 보건, 간호 및 산림관련 학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과(2년제) 졸업자의 경우 전공 관련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하신 경력이 있어야 자격기준에 포함되시며, 숲해설가 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 후 숲해설가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자격기준 충족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교육치유과(042-481-8877)

## 2.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Q.질의** 산림치유지도사 2급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격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 A.답변**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에 대한 세부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치유지도사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2017년 12월 현재 16개기관)

-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1급, 2급) : 02-2164-6586(경기 부천)
- 한림성심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33-240-9490(강원 춘천)
-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61-750-5076(전남 순천)
-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62-958-7572(광주광역시)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1급) : 062-530-3873(광주광역시)
-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1급, 2급) : 043-261-2076(충북 청주)
- 동양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54-630-1036(경북 영주)
-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원(1급, 2급) : 053-819-1846(경북 경산)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1급, 2급) : 063-270-5394(전북 전주)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1급, 2급) : 02-880-9804(서울 관악구)
- 국민대학교 산림과학대학(1급, 2급) : 02-910-4810(서울 성북구)
-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2급) : 042-821-7834(대전 유성구)
- 인제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55-320-3484(경남 김해)
-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1급) : 033-250-8304(강원 춘천)
-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1급) : 055-772-0776(경남 김해)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55-751-3530(경남 진주)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교육치유과(042-481-8877)

## 참고 1. 산림치유지도사 제도 Q & A

### 1.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아무나 취득할 수 있나요?

- ☞ 산림치유지도사는 등급별 자격기준을 두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산림 관련학과의 학위가 있는 경우,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 ☞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능합니다.

### 2.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취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각 과정별 검증평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 검증평가 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의 서류의 검토하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 3. 산림치유지도사 교육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 산림치유지도사 교육은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017년 12월 현재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은 16개 기관입니다.

-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1급, 2급) : 02-2164-6586(경기 부천)
- 한림성심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33-240-9490(강원 춘천)
-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61-750-5076(전남 순천)
-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62-958-7572(광주광역시)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1급) : 062-530-3873(광주광역시)
-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1급, 2급) : 043-261-2076(충북 청주)
- 동양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54-630-1036(경북 영주)
-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원(1급, 2급) : 053-819-1846(경북 경산)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1급, 2급) : 063-270-5394(전북 전주)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1급, 2급) : 02-880-9804(서울 관악구)
- 국민대학교 산림과학대학(1급, 2급) : 02-910-4810(서울 성북구)
-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2급) : 042-821-7834(대전 유성구)
- 인제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55-320-3484(경남 김해)
-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1급) : 033-250-8304(강원 춘천)
-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1급) : 055-772-0776(경남 김해)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2급) : 055-751-3530(경남 진주)

### 4.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세부교육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교육내용 및 기간은 1급의 경우 130시간(18과목), 2급의 경우 158시간(선택과목 포함 24과목)입니다.

※ 1급 및 2급 각 과정별 교육 분야는 산림치유 대상 이해, 산림치유 자원 이해, 산림치유 실행, 기획·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교육과목을 별도로 두고 있음

5.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는?

☞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2017년 12월 현재 치유의 숲은 47개소가 조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경북 영주·예천 지역에 국립산림치유원 운영 및 전북 진안지역에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치유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 참고 2.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별표 2]

###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제3조제1항 관련)

계열	세부 계열	학 과 명
산림 (44)	산림 자원	산림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과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생태환경보전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환경임산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학과, 환경재료과학과, 산림치유학과,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환경과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산림자원학 및 조경학 전공
	원예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육종학과, 원예화훼학과, 화훼원예학과, 원예치료학과, 원예생명과학과
	조경	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플라워조경디자인과, 녹지조경학과, 녹지환경계획과, 산림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도시환경조경과, 전통조경학과
	기타	식물의학과,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농생물학과, 식물시스템과학과
의료 (12)	의학	의예과, 의학과
	한의학	한의학과, 한의예과, 한약학과, 생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재산업학과, 한약자원학과, 자연약재과학과, 한약자원개발학과, 생약자원학과
	약학	약학과
보건 (17)	보건	보건학과, 공중보건학과, 건강관리학과, 보건건강관리과, 보건관리학과, 건강증진학과, 보건환경과, 보건환경과학과
	기타	물리치료학과, 직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대체의학과, 대체치유학과, 응급구조학과, 재활보건관리과, 의생명과학과, 재활과
간호(1)	간호학과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별표 3]

## 산림치유지도사 연관과목(제3조제2항 관련)

계열	과 목 명
산림 (34)	산림휴양학, 산림치유학, 임산생명공학개론, (산림)생태학, (환경·산림)토양학, 목재화학, 원예치료학, 산림보호학, 산림자원측정학, 산림자원학, 산림경제학, 산림정책학, 산림경영학, 수목학, 조림학, (수목·식물·작물·재배식물)생리학, 조경관리학, 조경학개론, 임학개론, 산림과학개론, 원예학, (원예·식용·특용)작물학, 재배학, 조경수목, 산림환경보전, 조원식물학, 자원식물학, 산림치유인자, 수목병리, 수목해충, 조경수목관리학, 건강과도시원예, 식물학, 식물생태학
보건·의료 (27)	(공중·정신)보건학, (인체·운동·해부·임상)생리학, (인체)병리학, (인체·기능·인체기능)해부학, (인체)면역학, (한방)약리학, 정신의학, 예방의학, (식이·한약)본초학, 약용자원학, 약용식물학, 보건교육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통계학, 스포츠의학, 운동처방론, 운동치료학, 체육의기초해부생리, 식약용생물학, 대체의학론, 건강증진기획, 건강행동이론의 이해와 적용, 건강증진론, 생명보건통계학, 생약재배학, 약초와건강, 환경심리행태론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명에 '학', '(개,원,범,분,특)론', '일반', '기초', '임상', '고급', '최신', '응용', '(및)실(험,습,무)', '(및)연(습,구)', '세미나', '과제' 등과 같은 명칭이 붙는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40. 유아숲체험원 조성·등록

근거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12.7.26. 시행)</li> </ul>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대피시설, 체험학습장 등 적합한 규모와 시설을 갖춘 유아숲체험원 조성·등록</li> </ul>
등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의 식생이 다양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한 곳</li> <li>- 주변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li> <li>-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k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 도보로 접근하기 쉬운 곳</li> </ul> </li> <li>○ 규모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는 1만㎡이상</li> <li>- 참여 유아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필요 시, 화장실, 휴게시설 등을 설치</li> </ul> </li> <li>○ 운영 프로그램 및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이를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구가 적정하게 완비</li> <li>-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와 소화기 등 비상재해 대비 기구 등 완비</li> </ul> </li> <li>○ 운영인력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아숲지도사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 25명 당 유아숲지도사 1명</li> <li>※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3 참조</li> </ul> </li> </ul>
신청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0 10px;">신청서 작성</div> <div style="margin: 0 10px;">→ 신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0 10px;">해당 지방청 시·군·구</div> <div style="margin: 0 10px;">→ 현지조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0 10px;">등록증 발급 및 공고</div> </div>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신청서 1부, 조성하려는 토지·건물의 명세·현황측량도, 및 소유관계 또는 임대차관계를 증명할 서류, 운영인력 자격 증명 서류, 운영계획 및 운영규칙</li> <li>※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 운영경비의 지급능력에 관한 서류(개인) 추가</li> </ul>
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산림교육기획 담당</li> <li>· 042-481-8869, 042-481-4216</li> </ul>

## 1. 유아숲 체험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Q.질의** 현재 개인으로 자연체험 학습원을 운영중인데 유아숲 체험원 신청을 하려면 어떤부서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신청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 체험원은 조성코자 하는 해당 지자체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붙임 유아숲체험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산림녹지 관련부서)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교육치유과(042-481-4216)

## 2.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질의** 유아숲체험원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 및 인적조건은 무엇인지요?

**A.답변** 유아숲체험원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려면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준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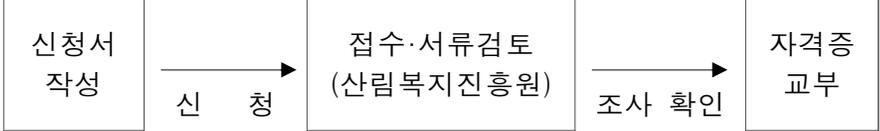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법률상에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을 보면 크게 입지조건, 규모 및 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운영인력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항목별 내용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입지조건 : 식생 다양하고 위험시설과 일정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함
- 규모 및 시설 : 규모 1ha이상 · 야외체험학습장 ·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프로그램 및 교구 :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구 준비,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구비
- 운영인력 : 상시참여인원 수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배치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교육치유과(042-481-4216)

## 41. 산림교육전문가 제도 안내

근거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12.7.26. 시행)</li> </ul>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토록 지도·교육</li> </ul>
양성과정	<p>1. 자격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해설가 :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li> <li>○ 유아숲지도사 :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li> <li>○ 숲길체험지도사 :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li> </ul> <p>2. 양성교육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공통과정과 분야별 과정을 이수</p> <p>※ 양성교육(시간) : 숲해설가(170), 유아숲지도사(205), 숲길체험지도사(145)          ※ 양성기관(개소) : 숲해설가(32), 유아숲지도사(14), 숲길체험지도사(7)&lt;참고&gt;</p>
자격증 신청	 <pre>         graph LR             A[신청서 작성] -- 신청 --&gt; B[접수·서류검토 (산림복지진흥원)]             B -- 조사 확인 --&gt; C[자격증 교부]         </pre>
자격증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전문과정 이수 및 평가점수 70점 이상</li> <li>○ 국가, 지자체,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에서 교육 실습(30시간) 실시 여부</li> </ul>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부신청서, 이수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사진 2장</li> </ul>
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산림교육전문가양성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1813</li> <li>• 042-481-1814</li> </ul> </li> </ul>

## 참고 1.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2017. 12. 20. 기준)

### ○ 숲해설가 전문과정

no.	지정번호	지정기관	대표자	지정일자	주 소
					전화/팩스
1	숲해설 - 2012-01	(사)숲연주소	남효창	2012.07.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산림비전센터 11층) 02-722-4527/02-722-4529
2	2012-02	충북숲해설가 협회	이철우	2012.07.2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길 62(2층) 043-255-2845/043-221-2845
3	2012-03	(사)한국숲해설가 협회	차기철	2012.07.2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뒀로 158 (양재동, 유창빌딩 4층) 02-747-6518/02-747-6519
4	2012-04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숲과문화 연구회	최순주 박봉우	2012.07.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정릉동) 02-910-5195/02-910-5199
5	2012-05	숲환경교육센터	최태호	2012.07.2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3번길 121(3층) 043-253-3339/043-256-3339
6	2012-06	(사)숲해설가광주 전남협회	이정학	2012.07.26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54-18 (운암동, 4층) 062-223-3279/062-233-3279
7	2012-07	(사)숲생태 지도자협회	정연정	2012.07.26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 9길 5(3층) 02-468-5591/02-469-5591
8	2012-08	경상남도산림환 경연구원 (산림연구과)	김제홍	2012.07.26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055-254-3865/055-254-3869
9	2012-10	(사)대전충남 생명의숲	김종원	2012.07.26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21번길 44, 205호 (선화동) 042-226-5355/042-226-5356

no.	지정번호	지정기관	대표자	지정일자	주소
					전화/팩스
10	2012-11	(사)춘천생명의숲 /강원녹색환경 지원센터	박명순 김영관	2012.07.26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64(3층)
					033-242-7454/0303-3442-7456
11	2012-12	(사)한국숲해설가 경북협회	반명석	2012.07.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6번길 57
					054-273-2739/054-273-2740
12	2012-13	(사)부산경남 숲해설가협회	김영복	2012.07.26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4 (동일빌딩 201호)
					051-465-2022/051-465-6022
13	2012-14	대전충남숲 해설가협회	김재복	2012.07.26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60(제일화방건물 3층)
					042-221-5412/042-221-5412
14	2012-15	(재)경상북도환경 연수원	이진관	2012.07.26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산로 336-97
					054-440-3273/054-440-3289
15	2012-16	(사)울산생명의숲	황두환	2012.07.26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12 구암문구 3층
					052-277-8280/052-277-6280
16	2012-17	(사)강릉생명의숲	홍문식	2012.07.26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188번길 22 풀씨터 3층
					033-646-5222/033-646-6044
17	2012-18	(사)태백생명의숲	이상진	2012.07.26	강원도 태백시 연지로 17(2층)
					033-552-1190/033-552-5707
18	2012-19	불교환경연대	법 일	2012.07.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402 (견지동, 신도회관)
					02-720-1654/02-720-1657
19	2012-20	환경교육연구 지원센터	박병권	2012.07.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26번길 19(3층)
					031-431-4245/031-8007-0765
20	2012-21	(사)산림문화 콘텐츠연구소	김준선	2012.07.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2길 18(4층)
					02-332-2010/02-332-5258
21	2012-22	(사)강원산림교육 전문가협회	정효남	2012.07.26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길 13-17
					033-673-0999/033-673-0999

no.	지정번호	지정기관	대표자	지정일자	주소
					전화/팩스
22	2012-23	전북생명의숲	김택천	2012.09.1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59 063-231-4455/063-244-5252
23	2012-24	영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이도형	2012.10.08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053-810-3803 /053-810-4661
24	2012-25	인천녹색연합	최용순	2012.10.3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대로 65번길 13 (태흥프라자 602호) 032-548-6274/032-548-6273
25	2012-26	상지대학교 숲해설가양성 교육원	이현규	2012.10.30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기관의 내부사정으로 교육과정 미운영
26	2013-01	꿈꾸는 숲	김영웅	2013.03.08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구둔영화체험길 47-29 031-773-9488/031-771-9255
27	2013-02	(재)천리포수목원		2013.04.05	충남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1길 187 041-672-9985/041-672-9984
28	2013-03	부산숲해설 교육협회	김상선	2013.12.06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46, 402호(수안동) 051-557-6564/051-557-6562
29	2014-01	(사)제주환경 교육센터	김경숙	2014. 2.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79번지 4층 064-759-2164/064-759-2159
30	2014-02	행복한숲	이원경	2014. 7. 2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384-63 031-511-6563/031-511-6563
31	2014-03	(사)충주숲	이명철	2014. 7.24	충청북도 충주시 계명대로 29(칠금동, 금강빌딩 4층) 043-852-2845/043-856-2846
32	2014-04	(사)광주생명의숲 국민운동	안기완	2014. 7.24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204번길 2(양동) 062-234-5540/062-434-5540

○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

no.	지정번호	지정기관	대표자	지정일자	주소
					전화/팩스
1	유아숲 - 2013-01	(사)한국숲 유치원협회	김정화	2013. 3.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407호(산림비전센터 4층)
					02-786-2846/02-783-2846
2	2013-03	(사)미래인재교육 개발원	이영애	2013.11.2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6길 1 (효자동, 2층)
					02-725-8887/02-739-3001
3	2013-04	한국영상대학교	유재원	2013.12. 6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학길 300 한국 영상대학교 유아숲연구소
					044-850-9567/044-850-9086
4	2013-05	(사)한국숲유치원 협회부산광역시 지회	채영숙	2013.12.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센텀티타워 1401호(우동)
					051-747-8647/051-747-8641
5	2014-01	(사)한국숲유치원 협회광주광역시 지회	최성호	2014. 6.17	광주광역시 북구 오문로 255
					062-262-0984/070-4015-3177
6	2014-02	(사)에코아이생태 교육연구소	장인영	2014.11.1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8-9(2층)
					02-2666-0002/02-2662-0530
7	2014-03	경북전문대학교	최재혁	2014.11.19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77
					054-630-5073/054-630-5118
8	2014-04	(사)한국숲유치원 협회대구광역시 지회/수성대학교	김은영 · 김선순	2014.12.3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길 15, 308(수성대학교 리오바관)
					053-749-7273/053-749-7279
9	2016-01	배재대학교 평생교육원	김영호	2016. 6. 7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국제교류관 5층 510호
					042-520-5278/042-520-5317
10	2016-02	(사)한국숲교육 협회	이명환	2016. 7.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45 (702호, 구월동)
					032-439-8880/032-439-8880
11	2016-03	(재)천리포수목원		2016. 9. 5	충남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1길 187
					041-672-9985/041-672-9984
12	2017-1	(사)한국숲밧줄 놀이연구회	강성희	2017. 8.7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궁촌로 6-35
					031-576-4985/031-576-4249
13	2017-2	전북대학교 유아숲지도사 양성사업단	이철로	2017. 8.7	전북 전주시 백제대로 567
					063-219-5394/063-270-2592
14	2017-3	전주기전대학	조희천	2017. 8.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267
					063-280-5215/063-231-6419

○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

no.	지정번호	지정기관	대표자	지정일자	주소
					전화/팩스
1	숲길 - 2012-01	(사)한국등산연합회	이기창	2012. 7.2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58, 602호 (화곡동)
					02-2699-3636/02-2697-5100
2	2012-03	(사)대한산악연맹 전북전주시 산악연맹	엄정용	2012. 7.2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49 (2층)
					063-221-2682/063-221-2683
3	2013-01	(사)한국트레킹연맹	김현곤	2013. 4.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404호(산림비전센터 4층)
					02-3775-3399/02-3775-3415
4	2013-02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남선우	2013. 9.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상로 67 (가양비래공원 내)
					042-672-2744/042-672-1950
5	2015-01	(사)한국산악회	장승필	2015. 5.28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13번길 9
					031-855-8848/031-855-1945
6	2017-1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박찬원	2017.11.13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033-250-7189/033-259-5697
7	2017-2	(사)대구등산학교	장병호	2017.11.1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38길 5
					053-257-8804/053-257-8803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역별 현황

○ 숲해설가 전문과정 : 32개 기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	2	0	2	2	1	1	0	5	3	3	1	1	0	3	1	1

○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 : 14개 기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	1	1	1	1	1	0	1	0	1	0	1	2	0	1	0	0

○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 : 7개 기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0	1	0	1	0	0	0	1	1	0	0	1	0	0	0	0

1.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 어떻게 하면 되나요?

**Q.질의** 숲에 관심이 많아 숲해설가, 유아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등 자격증 취득 및 향후 직업 생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걸쳐 숲해설가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답변** 먼저, 숲해설가 자격 취득에는 연령, 학력, 경력, 지역 등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숲해설가 자격을 취득하시려면 첫째, 산림청에서 지정한 숲해설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교육시간(총170시간, 공통과정 36시간, 분야별과정 134시간)을 이수하고, 이론 및 실습평가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산림교육전문가 교육과정은 양성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교육비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둘째, 다음의 경우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법률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 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 소속의 숲해설가로 선발되면 활동할 수 있거나, 산림교육 분야 협회나 단체 등에서도 숲해설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 프리랜서로 숲해설가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교육치유과(042-481-1814)

## 2. 유아숲지도사 과정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나요?

**Q.질의** 유아숲지도사 과정은 언제,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A.답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인 유아숲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은 “1.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서 유아교육 분야 대학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산림교육을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현재까지(17.12월말)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은 14개소가 있으며, 인터넷(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 → '휴양문화(숲에on))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교육치유과(042-481-1814)

## 3. 유아숲지도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Q.질의** 유아숲지도사 인증자격에 보면 교육시간이 210시간이라 적혀져 있던데, 숲해설가 자격을 취득한 후에 유아숲지도사 자격을 따려면, 또 다시 210 시간을 수강해야 하는지요?

**A.답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기준이 '15.11.18부터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산림교육전문과정(산림교육전문과정)이 단일과정에서 공통과정과 분야별과정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다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공통과정(36시간) 이수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하였으며, 교육 이수시간도 유아숲지도사는 210시간에서 205시간으로, 숲길체험지도사는 130시간에서 145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숲해설가는 동일)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교육치유과(042-481-1814)

## 42. 도시숲 등의 조성, 무궁화 진흥, 정원 조성 사업 사설수목장림 시설 조성 안내

###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숲 확대 조성 필요

**Q.질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시 내 나무를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A.답변** 산림청에서는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산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3년부터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전국에 도시숲 및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미세먼지를 숲을 통해 줄일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미세먼지 저감숲, 도시바람길숲, 산업단지 주변 환경개선 도시숲 조성사업, 옥상정원 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도시숲경관과(042-481-4225)

### 2. 도시숲 등 조성 사업이 산림사업 여부 및 사업가능 업종은?

**Q.질의** 도시숲 조성, 가로수 조성·관리 등의 사업이 산림사업인지?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업종은?

**A.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0의2호에는 도시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등을 산림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도시숲경관과(042-481-4225)

### 3. 명상숲 조성절차가 궁금합니다.

**Q.질의**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답변** 명상숲 조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초자치단체에서 익년도 명상숲 조성 대상지를 조사 및 심사(2~3월 경)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 선정(4~5월 경)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여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신청 시기나 절차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명상숲 선정 기준 및 신청서 작성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내 '도시 숲경관 사업계획'의 '명상숲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도시숲경관과(042-481-4226)

### 4. 가로수 가지치기 절차가 궁금합니다.

**Q.질의** 가로수 가지가 상가를 가려 불편한데 잘라도 되나요?

**A.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행위를 하려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자르실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로수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 계획서, 위치도, 현황 도면 등을 첨부한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승인 받으신 후 가지치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등은 가로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므로 절차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도시숲경관과(042-481-4108)

## 5. 나라꽃 무궁화를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Q.질의** 나라꽃 무궁화를 많이 심어 무궁화에 대한 관심 및 애국심을 높여 주세요.

**A.답변** 산림청에서는 무궁화 보급·확대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2016.12.2.)를 신설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 급 학교에서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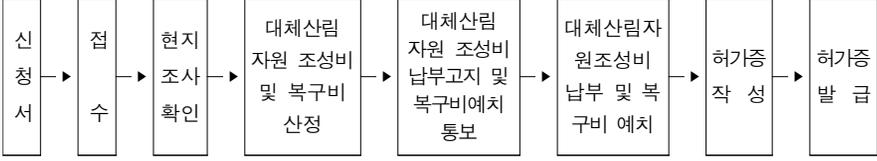
또한 생활권 주변에서 무궁화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등이 나라꽃 무궁화를 친숙하게 느끼고 나라 사랑 정신 함양 및 무궁화 체험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꽃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년 7~8월에 전국 4~5개 지역에서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궁화 확산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도시숲경관과(042-481-8833)

### 43. 산지전용허가

<p><b>목 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li> </ul>
<p><b>산지의 구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li> <li>-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li> </ul> </li> <li>●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외의 산지</li> </ul>
<p><b>산지전용 허가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전용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li> </ul> </li> <li>● 산지전용허가·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을 조림, 숲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li> </ul> </li> <li>●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것</li> <li>※ 예시)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li> </ul> </li> </ul>
<p><b>산지전용 허가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li> <li>● 인근 산림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li> <li>● 집단적인 조림지 성공지 등 형질우량 산림 등 포함되지 아니할 것</li> <li>● 토사의 유출·붕괴 방지, 자연생태적 기능 및 수원함양기능 유지</li> <li>● 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림훼손 최소화 등</li> </ul>

<p><b>신청절차</b></p>																
<p><b>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구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단가(2018년 고시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보전 4,480원/m<sup>2</sup>, 보전 5,820원/m<sup>2</sup>, 제한지 8,960원/m<sup>2</sup></li> </ul> </li> <li>◎ 산지복구비 예치 단가(2018년 고시단가)</li> </ul> <table border="1" data-bbox="472 782 1377 943"> <thead> <tr> <th>구 분</th> <th>10° 미만</th> <th>10°~20° 미만</th> <th>20°~30° 미만</th> <th>30°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산지전용(일시사용)</td> <td>52,294천원</td> <td>154,562천원</td> <td>204,280천원</td> <td>265,446천원</td> </tr> <tr> <td>토석채취·광물채굴지</td> <td>148,706천원</td> <td>277,885천원</td> <td>361,460천원</td> <td>441,169천원</td> </tr> </tbody> </table>	구 분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 이상	산지전용(일시사용)	52,294천원	154,562천원	204,280천원	265,446천원	토석채취·광물채굴지	148,706천원	277,885천원	361,460천원	441,169천원
구 분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 이상												
산지전용(일시사용)	52,294천원	154,562천원	204,280천원	265,446천원												
토석채취·광물채굴지	148,706천원	277,885천원	361,460천원	441,169천원												
<p><b>첨부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내지 별지9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서 등</li> <li>※ 신청서 후면 또는 하단의 첨부서류 포함하여 제출</li> </ul> </li> </ul>															
<p><b>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산지관리과 산지정책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4142</li> <li>• 042-481-4126</li> </ul> </li> </ul>															

## 1. 서바이벌 훈련장 조성은 산지전용허가인가요?

**Q.질의** 예비군 훈련장의 일부로서 서바이벌 훈련장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물, 엄폐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상인지 여부

**A.답변** 산림의 훼손 및 절·성토 없이 현재의 지형과 산림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영구적인 은폐·엄폐물을 일부 설치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서바이벌 훈련장은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가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국방·군사시설인 예비군 훈련장의 일부로서 서바이벌 훈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6)

## 2. 보전산지에 공장 설립이 가능한가요?

**Q.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농림지역,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인 임야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승인 신청 시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 제6호에 저촉되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0항에서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허가권자)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을 보전산지(임업용)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업용 산지에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 처리되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제6호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3. 보전산지에서 관광농원 개발이 가능한가요?

**Q.질의** 보전(임업용)산지 내 관광농원 개발 시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은 임업용 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서는 관광농원사업에 휴양시설, 음식 제공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4. 산림 내 목장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Q.질의** 구 산림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1.6.11일 토끼사육장, 관리사(66㎡), 창고(33㎡)부지 목적으로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건축물(관리사 및 창고)의 건축이 없는 상태에서 2002.4.25일 구 산림법 제9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득하였고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목장용지를 다른 용도(농가주택 등)로 사용하고자할 경우 구 산림법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제6항의 규정과 산지관리법 제21조규정을 적용하여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용도변경 승인 대상인지 여부

**A.답변** 구 「산림법」 제91조의2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복구를 완료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의 2제1항에는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산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산림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토끼사육장 등의 목적으로 2001. 6.11.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보전임지전용에 대한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면, 비록 건축물(관리사 및 창고)의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전임지전용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2002.4.25.)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대상에 해당될 것이으나, 질의내용은 용도 변경 제한기간이 경과되어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5. 과수원 대부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한가요?

**Q.질의**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을 1998.07.31.일부터 2014.12.31.까지 산업용(산지과수) 국유림 대부지로 관리(예정) 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0조에 따라 2013.06.19. 수대부자에게 교환처분된 경우 현황에 따라 지목을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에서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농림수산부 조성 51340-420(1994.08.11.)호에 따르면 개간 가능지역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은 후 과수원을 조성(지목변경수반)하거나 「산림법」에 의하여 조림형식으로 과수의 식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개간 제외지역의 산지에서는 「산림법」에 의하여만 과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림법」에 의하여 과수원을 조성한 경우에는 과수가 식재되었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을 할 수 없고 「산림법」에 의하여 임지로 관리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법」에 의하여 과수원을 조성한 경우 과수가 식재되었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을 할 수 없으며,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간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6.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Q.질의** 산지관리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우선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까지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

산지관리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는 제14조 제2항(산지전용허가 의제)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 역시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의 의제 사항일 뿐이므로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1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만 산지전용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은 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부지조성 후 방치하게 되는 경우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증가와 경관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제도로서 건축·공장 등 특정 목적사업 실행을 위하여 그 목적사업을 위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주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산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6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건축목적이면 건축

허가, 공장목적이면 공장설립 승인, 산업단지 목적이면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등 주된 행정처분을 받아야만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허가 의제제도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서, 하나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주된 인·허가를 받을때에 관련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 시) 등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로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 주된 인·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효력도 발생한다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7. 산지전용허가기준의 비탈면 수직높이는 평균 수직높이를 말하나요?

**Q.질의**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일 경우 설치하는 소단을 비탈면 하부에 시공하는 높이 3미터 석축의 천단과 연결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 설치할 수 있다면 천단의 너비를 포함하여 기준 너비는 얼마인지, 이때,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평균 수직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의2 관련 별표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제2호다목에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복구대상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라목에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미만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탈면의 수직높이 5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평균이 아닌 위치별로 5미터 미만의 간격으로 소단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석축 천단에 소단설치에 따른 안전성 문제는 허가권자가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8. 보전산지 내 탐방로는 산지전용허가로 해야 하나요?

**Q.질의** 임업용산지에 탐방로를 산지전용허가로 가능한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 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4호다목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탐방로·등산로·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경우 너비가 1미터5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휴식·대피를 위한 장소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미터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제3호에서 “산지일시사용”이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립, 숲 가꾸기, 임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목적사업 완료 후 산지로 복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 사업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9. 보전산지에서 공장부지 허가의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Q.질의** 당초 임업용산지(농림지역)에 대기·수질 5종 시설인 장류제조업 공장 목적으로 공장신설승인(산지전용의제)을 득하고 산지전용 복구준공을 득한 후(약 3년 경과) 임업용산지 해제 및 대장정리로 토지이용계획원 상 임야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고 지목은 공장부지로 변경이 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부서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관리 지역세분화 용역을 거쳐 변경을 하므로 현재 농림지역으로 남아 있는 시점에서 대기·수질 5종 시설인 동물잔재물을 재료로 한 유기질비료제조업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능 여부

당초 임업용산지(농림지역)에서 대기·수질 5종 공장 목적 허가 및 산지전용 준공 이후 임업용산지 해제 및 대장정리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임야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고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지목이 공장부지로 변경되었으나 산지전용 준공 5년이 미경과한 상태에서 민원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보고 토지를 매매한 후 (계획관리지역, 공장)부지에 대기·수질 1~4종 공장을 신청할 경우 가능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 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이란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5년간은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 당시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설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 허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준공 후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야투기와 무분별한 보전산지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될 것이고,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로는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설로는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10. 토석채취 진입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가요?

**Q.질의** 토석채취를 위한 주진입도로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토 석채취 허가 대상인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0호에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입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 설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석채취를 위한 주진입로는 토석채취허가 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일시적인 토석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11. 복구설계서 작성자와 공사 감리자가 동일해도 되나요?

**Q.질의** 임목의 굴취 벌채가 수반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및 관상수 재배를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인가를 받은 자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3년 이내 하여 신고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복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경우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는 감리를 받아야 되는데,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와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자가 동일하여도 되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가목에 “산지일시사용이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 또는 나목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면적에 대하여 복구를 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간 만료 전 최초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일시사용 기간 연장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와 복구공사의 감리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동일인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제2호에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및 관상수 재배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한 경우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12. 미복구된 산지전용허가의 재 허가가 가능한가요?

**Q.질의** A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경매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복구를 못할 경우 B가 동일한 목적으로 A가 허가 받은 지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라면, 복구 의무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초의 복구 의무(A)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며,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B에게 새롭게 복구 의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13. 임도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가요?

**Q.질의**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경우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관련 별표 3 5항 가목 및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 4 1항 다목 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산림관련법에서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 사업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산림경영을 위하여 기존 임도를 이용하여 임산물 보관창고를 본인 소유의 임야 내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임산물 보관창고가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A**답변

질의하신 사항은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임도를 이용한 임산물 보관창고 시설 설치로 판단됩니다.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임도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라목에서 산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 및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 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정시설의 진입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 외로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됨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하고, 허가권자는 타당성, 임도와 진입도로의 병행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안전도 조사 및 진출입 교통에 따른 재해발생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14. 관광농원사업이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포함되나요?

**Q.질의**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의2]제1호라목 「농어촌 정비법」제2조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 관광농원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4의2]제1호라목에서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서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15. 산지전용허가 효력 발생시점이 언제인가요?

**Q.질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추곡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의제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산지전용 허가에 관한 효력 발생시점이 추곡일반사업단지 사업계획승인인지 아니면 건축 허가인지 여부

**A.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목의 사업으로 산업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 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기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 사업, 산업단지의 기능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용지조성사업인 경우와 건축사업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며, 반드시 건축사업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어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16. 건축허가에 의제 처리된 산지전용협의의 효력이 언제까지인가요?

**Q.질의** 건축허가 신청에 의제 처리된 사항으로 산지전용허가 협의 시 산지전용 협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건축허가를(착공신고 완료) 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 후 9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로 산지전용협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7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간을 부여하며, 다만,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면적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구 「건축법」 제8조제8항에서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건축허가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함에 있어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흠결은 있으나 산지전용면적이 7,410㎡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2년임이 분명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도 해당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산지전용 기간을 스스로 9개월로 제출한 점, 산지전용허가 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본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산지전용허가 기간뿐만 아니라 허가 후 약 9년이 경과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기간을 이미 초과하였고 산지전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17.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허가할 수 있나요?

**Q.질의**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전용협의를 통한 지역 등의 지정·결정이나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여부, 채석단지의 지정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산지관리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서 산지전용허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관으로 심의·의결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행정관청에 있으며, 행정관청은 심의·의결에 의무적으로 기속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행정관청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명시적으로 반하여 행정처분을 발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합리적이고 명백하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의결 사유나 부결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처분 시의 부관(附款)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18. 농림어업인 주택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는 건가요?

**Q.질의**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는 거주용 구조로 된 주택이면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또는 신청인이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거주용 구조로 된 주택이면서 향후 농가주택 건립 후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산지전용허가지로 이전되어야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 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다른 주택보유와 상관없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 신축을 말하며, 농가주택 건립 후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를 의무적으로 산지전용허가지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19. 산업단지 내 부수적 토석반출량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Q.질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승인을 득한 지역에 토석반출량이 10만 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부수적인 토석채취허가가 신청될 경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A.답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조 목적에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한 개발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에 대하여만 의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부수적으로 채취하는 토석의 양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6)

## 20.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가 혼재된 기존도로를 진입도로로 인정해 주나요?

**Q.질의** 건물 신축부지(국방군사시설)는 공익용산지(보전녹지지역)이나(건축물연접 도로도 공익용 산지), 건축물의 진입(기존)도로가 임업용산지(기존도로의 초입부)와 공익용산지가 혼재되어 있을 때 진입(기존)도로의 인정 범위

**A.답변**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보전산지에서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 도로정비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와 이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의 진입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용산지가 보전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물 신축부지 등이 공익용산지(보전녹지지역)로 지정되어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임업용산지인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만이 인정되오며, 또한 두 경우 모두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산지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전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 개발행위 담당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21. 보전산지에서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가요?

**Q.질의**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 창고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허가한 기 허가지의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추가로 창고 목적의 산지전용신고(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 의하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임업용 산지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11호나목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 시 시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르면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이용하거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동의한 경우 등에는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업용 산지의 경우 상기 「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시장·군수 등)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서 준공검사 또는 사용개시가 이루어졌거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라면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어 기 허가지의 도로를 연결한 추가 산지전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22. 보전산지 내 사설임도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가요?

**Q.질의** 농림어업인 10명 공동지분의 임업용산지에 사설임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산림 소유자 10명이 각각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이미 개설된 사설임도를 활용하여 부지면적 660㎡미만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부대시설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신청한 경우 산지전용허가(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1호마목15)에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산지에 해당하므로, 임업용산지 내에 있는 임도 또한 임업용산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임도는 산지에 해당하므로 임도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과 함께 당해 임도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번호 06-0039 참조)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하여 절·성토면을 제외한 유효너비 3미터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진입로 개설 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을 것이나(타인 소유 산지에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경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하므로 당해 임도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하며, 그 임도가 임업용산지라면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받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23. 계획상 도로를 이용해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가요?

**Q.질의** 기 허가지의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되어 통행이 가능한 경우, 콘크리트 포장된 계획상 도로를 이용하여 동일인이 1건으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1호마목10)에서 진입로 관련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라 공장설립을 제외한 일반적인 유형의 산지전용허가의 경우에는 첫째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둘째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 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진입로를 설치 중인 경우로서 아직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통행이 가능하고 도로 관리자인 진입로를 설치한 자가 도로이용에 동의하였다면 해당 진입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 소관 행정청은 설치 중인 진입도로와 관련한 산지전용허가가 당초 허가목적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 취소될 수 있음을 산지전용허가 증에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24. 수목장림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가요?

**Q.질의** 형질변경(절·성토) 행위가 수반되는 수목장림 조성 시 법률적용

**A.답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4호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1조제2항 관련 별표1 및 별표5에서 공설 수목장림, 사설수목장림 내 보행로,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8호마목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에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설수목장림의 설치 및 조성기준,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장림 내 보행로,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형질변경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며, 그 형질변경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면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또한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25. 임도를 통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가요?

**Q.질의** 임도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우 임도구간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도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할 경우, 별도 산림훼손이 없는데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A.답변**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 및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정 시설의 진입 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외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됨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 등이 있어야 하고 (법제처 법령해석례, 안전번호 06-0039 참조), 허가권자는 임도와 진입도로를 병행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재해발생가능 여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오며, 임도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도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26. 산지경사도 작성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Q.질의** '전용하려는 산지를 100㎡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40% 이하일 것'란 규정은 면적에 대한 구성비를 적용하는지 면적에 대한 구성비와 개수에 대한 구성비를 모두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호다목4)에서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40% 이하일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한 경사도 산출은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경우, 각각의 분할지역의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에 대하여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40% 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27. 주택 부지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이 가능한가요?

**Q.질의**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신청하지 않고 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신청을 하였을 경우 산지전용협의 가능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산지를 훼손한 이후 건축 등의 목적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산지를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여 재해발생과 경관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조제6항에서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할 경우 동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신축 등 건축을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개발 행위허가를 통한 부지조성 목적의 산지전용은 허용되지 않음)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있거나, 건축부서로부터 산림관련 부서에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협의로서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서는 도시지역 내 보전산지에 대해서만 산지전용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이 아닌 보전산지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별개로 받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은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28. 농림어업인의 농가주택부지에 진입로를 포함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Q.질의** 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농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시설하고자 하는데 부대시설에는 농업용 창고가 포함되는지, 주택면적이 660제곱미터와 창고면적이 660제곱미터 각각 허가를 할 수 있는지 및 진출입로 개설을 제외한 주택 부지 안에 진입로를 포함해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어업인 주택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또한 진출입로를 제외한 주택부지 안에 별도의 진입로 설치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29. 산지에서 블루베리 재배가 가능한가요?

**Q.질의** 광주 시내의 산지 블루베리 재배용 농업용 온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하며 신청목적용 농업용 온실(비닐하우스)로 신청한 경우 비닐하우스가 농업용 온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A.답변** 블루베리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지원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기에 산지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로는 불가하고 농지로의 개간허가가 필요합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서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의 허용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30. 임업용 산지에서 현황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이 가능한가요?

**Q.질의** 목장부지 내 현황도로를 이용한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농가주택 및 축산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는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만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동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임업용산지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연결될 수 있는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업용 산지에서 농가주택 등 건축을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연결될 수 있는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3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의 입목축적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Q.질의** 소나무재선충병 등 고사목 제거에 따른 입목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산지전용 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호다목2)에서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숙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숙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50% 이하일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과 같은 병해충에 걸린 입목들의 경우에도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숙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고사된 고사목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 경우 고사된 후 입목으로 있거나 고사되어 벌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병해충 피해를 입어 입목을 벌채한 경우(고사되지 않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라면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32. 해안선으로부터 연변가시지역 산지에서 노천채굴이 가능한가요?

**Q.질의** 광업 관련자가 채굴신청한 산지는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직접 보이는 500m 이내 산지에 해당되고 습지보호구역과 접한 섬의 해안선에서 직시되는 25~4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산지에서 노천채굴 방식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요구하고 있음.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연변가시지역 산지에서 노천채굴을 하고자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요구할 경우, 이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기에 산지일시사용허가 가능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에서 “노천채굴”은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서가능 하도록 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4호에 의거 해당지역은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직시되는 500m 이내의 산지로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기에 산지일시사용허가는 불가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6)

### 33. 조림의무 미이행 임야의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가능한가요?

**Q.질의** 입목벌채허가 당시 희망 수종이 아닌 타 수종으로의 조림이 가능한지 여부

입목벌채 후 조림 의무를 미 이행(4년경과)한 임야에 대해 조림 의무 미 이행 상태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A.답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는 「산림5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벌채허가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3에서 규정하는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률상 입목벌채허가 당시 희망 수종에 대한 조림 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벌채 이후 조림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정부 보조조림의 집행기관인 시·군·구청의 산림부서에서 수종별 조림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림을 위해 벌채를 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벌채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9조제5항에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조경수 등)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25도 미만, 재배면적 3만㎡ 미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 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목벌채 후 조림 의무를 미 이행(4년 경과)한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동 임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 수리자가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의 조건·기준, 사업계획,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34. 산지의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질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건축허가(산지전용협의)를 받은 자가 건축 관계자 변경(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 : 명의변경)을 할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양도인에게 받아야 하는지 산지 소유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를 변경 받으려는 자가 당해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산지소유자로부터 당해 산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거나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양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산지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의 양도양수를 동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35. 보전산지 내 농업인 주택건립이 가능한가요?

**Q.질의** 유주택자(타 시군에 주택보유)라도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조건만 부합하다면 보전산지(임업용산지)내에 농업인 주택건립이 가능한지 여부

유주택자(타 시군에 주택보유)자라도 본인의 산지(보전산지)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서 산림을 경영하고만 있으면 농업인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농림어업인이 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 신축이 임업용 산지에서 가능하오며, 다만,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36. 임도를 활용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한가요?

**Q.질의** 보전산지에 타인 소유의 임도를 경유하여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유주택자(타 시군에 주택보유)자라도 본인의 산지(보전산지)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서 산림을 경영하고만 있으면 농업인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A.답변**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임도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라목에서 산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 및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 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정시설의 진입 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됨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하고, 허가권자는 임도와 진입도로의 병행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재해발생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37. 공동명의로의 진입도로를 이용해 산지전용이 가능한가요?

**Q.질의** 도로 개설을 위해 제출된 설계도서와 다르게(도로폭, 도로높이 등) 시공된 도로가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여 추가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여 17건의 주택을 공동으로 10명이 각각 신청하고, 동시에 10명이 각각의 지분에 동의하여 10명 공동명의로 진입도로를 신청할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 제1호마목10)에 따르면 공장 설립을 제외한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현장여건, 공사진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적사업과 신청지내 진입도로 전체를 동일인이 1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를 이용하거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동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10명이 각각의 목적사업을 위한 산지전용과 공동명의로의 진입도로개설 목적의 산지전용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38.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할 수 있나요?

**Q.질의**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의 임야(1필지)에 1975년부터 2004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시설(병원) 9개동을 신축·증축하였으며, 현재 토지의 형상은 대지의 형태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 신축 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는 증명서류(준공관련 서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고지서 등)가 없음

2013. 11월경 동일지번에 있는 건축물 9개동 중 1개동의 건축 증축(수평·수직)허가신청이 접수 된 상태며, 협의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조건으로 9개동이 건립되어 있는 부지에 대하여 산지전용 허가 가능 여부

**A.답변** 산지를 타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대체산림 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39. 계획상 도로를 이용해서 산지전용이 가능한가요?

**Q.질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계획상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협의) 가능여부  
기 허가지의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되어 통행이 가능한 경우, 콘크리트 포장된  
계획상 도로를 이용하여 동일인이 1건으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A.답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1호마목10)에서 진입로 관련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라 공장설립을 제외한 일반적인 유형의  
산지전용허가의 경우에는 첫째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둘째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 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진입로를 설치 중인 경우로서  
아직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통행이 가능하고 도로  
관리자인 진입로를 설치한 자가 도로이용에 동의하였다면 해당 진입로를 이용  
하여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 소관 행정청은 설치 중인 진입도로와 관련한 산지전용허가가 당초  
허가목적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 취소될 수 있음을 산지전용허가  
증에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40. 공장의 산지전용면적이 공장의 건축면적을 말하나요?

**Q.질의** “공장의 전용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란 공자부지의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장의 건축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란 공장목적으로 전용하려는 산지의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생산 시설이나 설비 등의 면적으로 국한되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제2호사목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과 소기업을 100분의50 이상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인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용도로 같은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다음의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41. 명의변경된 산지의 사용·수익권 증명서류를 양도인에게 받아야 하는지?

**Q.질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건축허가(산지전용협의)를 받은 자가 건축 관계자 변경(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 : 명의변경)을 할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양도인에게 받아야 하는지? 산지 소유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를 변경 받으려는 자가 당해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산지소유자로부터 당해 산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거나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양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산지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의 양도양수를 동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42.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산지전용 협의가 가능한가요?

**Q.질의**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신청하지 않고 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신청을 하였을 경우 산지전용협의 가능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산지를 훼손한 이후 건축 등의 목적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산지를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여 재해발생과 경관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조제6항에서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할 경우 동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신축 등 건축을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개발행위허가를 통한 부지조성 목적의 산지전용은 허용되지 않음)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있거나, 건축부서로부터 산림관련 부서에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협의로서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서는 도시지역내 보전산지에 대해서만 산지전용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이 아닌 보전산지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별개로 받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은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43. 산림보전지역 내 관리사 건축이 가능한가요?

**Q.질의** 산림보전지역 내에서 임야를 관리하는 관리사 또는 제각 건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면적은 국토계획법상 보전지역 내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한도 내에서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허가받은 임야개발면적  $229m^2$ , 제각건축  $18m^2$  외에 추가로 개발할 경우 허가 사항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예; 개발면적은  $229 \rightarrow 500m^2$ , 제각건축면적은  $18 \rightarrow 50m^2$  추가 허가를 득하고자 함)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임업인에 한하여 임업용 산지내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인 시설을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2호에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은 설치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상기 가)에서 정한 기준이외에 산지관리법령에서는 건폐율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제각 설치를 위하여 진입도로 편입은 불가능하며, 제각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까지 전용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44. 산림법 제정 이전 불법 전용지는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Q.질의** 산지관리법에는 불법전용지에 대한 양성화규정이 없고, 다만, 몇차례의 특별법으로 현사용 지목으로 양성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법이 최초 제정된 1962년 이전에 전용이 이루어진 건축물(부지)이나 전, 답, 과수원 등지 또한 특별법에 의해서만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에서는 제14조에 다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45. 산지에서 여러 세대의 주택허가가 가능한지요?

**Q.질의** 자연녹지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에서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자기소유의 산지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주택 1동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여러동을 건축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 규모별 세부기준 제1호11)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할 것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목적의 산지전용은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정하여 가능할 것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세대 이하로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46. 산지전용 허가지 내 업종 변경도 용도변경 대상이 되는지요?

**Q.질의** 준보전산지에서 A가 복구준공 및 공장등록[기계제조업]이 완료된 후, 사업계획 변경을 하기 위하여 A에서 B로 명의변경과 단순히 기계제조업에서 부품제조업으로 업종변경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A.답변**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건축법」에 사용승인을 얻은 날 또는 복구준공검사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제조업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당초 목적과 다르게 부품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47. 산지전용 기간 만료 이후에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Q.질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산지전용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산지전용 변경을 할 수 있는지?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신청하되,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은 기존의 산지전용기간과 연장 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산지전용의 효력은 상실되어 목적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해당 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48. 버섯재배시설과 그 가공시설을 함께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Q.질의** 같은 장소에 버섯재배사 9,900제곱미터와 선별, 건조, 포장시설 2,990제곱미터를 산지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농림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버섯재배사,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은 임업용 보전산지에서도 허용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여부는 허가권자가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저축 여부,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농림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부지면적 1만제곱 미터 미만의 버섯재배사와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설치목적의 산지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구체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49. 보전산지 내 산지전용 허가시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보전산지에 인조석의 조경시설 및 소규모 공원을 설치 하고 해당시설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관리사 및 창고용도로 활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답변**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인조석의 조경시설 및 소규모 공원, 관리자 및 창고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허용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동 시설의 설치목적으로 산지전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50. 산지전용 허가 후 선별파쇄작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질의** 산지전용 협의 후 공사 등으로 발생한 암석 등을 인근 산지에서 파쇄작업을 거쳐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산지는 생산 관리지역내 임야이며, 약 30년 가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곳에 선별파쇄를 하고자 할 때, 어떠한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A.답변** 산지관리법 제14조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상 산지는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산지구분에 따라 행위제한(할 수 있는 행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지 이외에서 불가피하게 파쇄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파쇄작업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보전산지에서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파쇄작업을 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3제3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5호에서 사업시행자가 1년 이내(산지전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에

도로공사의 부대시설인 자재적치장 설치하는 하는 행위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대시설 설치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51. 임야에 산악용 바이크 허가를 낼 수 있는지요?

**Q.질의** 산악용 레저용 바이크(ATV) 허가 관련 생산관리지역에 산악용, 레저용 바이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요?

**A.답변** 산지관리법 상 산지는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산지 구분에 따라 행위제한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3조에서 행위 제한을 두고 있으나,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상 산지구분을 알 수 없으나, 보전산지에서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산악용 레저용 바이크설치 목적의 산지전용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 준보전 산지에서는 산악용 레저용 바이크설치 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목적사업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시행 규칙 제10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기타 구체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52.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나요?

**Q.질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공익용 산지로 구분된 산지에 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나요?

**A.답변**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 &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자연휴양림의 산지, 공원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등을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익용산지는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8)

53. 불법전용산지도 산지복구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Q.질의**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경우라도 복구의무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허가권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9조제3항에 “산림청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불법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라면,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초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 54. 임야개간에서 발생한 토사를 외부로 반출이 가능한가요?

**Q.질의** 임야를 개간 목적으로 산지전용받고 개간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나요?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토사처리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간 목적으로 산지전용과정에서 나온 토사는 토사처리계획에 따라

외부로 반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산지전용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 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토사와 석재)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토석 채취허가 등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6)

### 55. 임업인이 농업용 창고를 지을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Q.질의** 임업인이 창고 330㎡를 지으려고 할 때, 신고만 해도 되는 것인지?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3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 지역, 조건 제6호에서 「건축법」에 다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로서 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가공시설을 농림어업인이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지면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따라서 산지관리법상 산지구분을 알 수 없으나, 농림어업인 등이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농업용창고는 산지전용신고로도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56. 산지에서의 작업로와 진입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Q.질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에서 말하는 3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진입로]와 4호임도, [작업로]에서 진입로와 작업로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산지관리법상 진입로와 작업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전적인 의미로 진입로란 특정시설의 들어가는 길이라 정의하고 있고, 작업로란 임산물의 생산·관리를 위하여 산림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57. 산림경영관리사가 가설건축물인가요?

**Q.질의** 「건축법」에는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가설건축물 신고를 병행 하라고 하는데 건축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이중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이 산지관리법에 우선하는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6조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하고자 하는 산림경영관리사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야 산지전용의 효력이 발생 됩니다.

다만, 시설하고자 하는 산림경영관리사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58. 산지전용 허가기간 및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Q.질의** 산지전용허가 기간 및 효력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건축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을 경우 개별적으로 산지전용 효력을 취소할수 있는지요?
2. 만일 건축허가만 살아있고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복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지전용허가만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3. 개발행위 허가에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판단하였을때 기간연장을 기간 만료후에 다시 해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지전용 허가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추후 기간연장이 되지 않고 재허가만 가능한 것인지요?
4. 건축허가는 살아있고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복구명령을 할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일 복구명령에 대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뿐 만 아니라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산지를 복구하여야하고,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 16949판례). 질의하신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도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소멸되어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59. 농가주택 신축은 산지전용 신고(허가) 대상인지요?

**Q.질의** 임야 (실제 현황지목 : 전)을 구입하여 그동안 귀농귀촌 교육도 받고, 농지원부도 만들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하고 열심히 농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 보유중인 임야에 주택부지(655m<sup>2</sup>)를 전용하여 32평 규모의 주택을 짓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임야 전용시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 또한 농업인으로 주택 신축시 대체산림조성비 100% 감면 대상인지?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5호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부지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인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이오나, 질의하신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산지에 66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하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100%감면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60. 부지 내 임야와 농지가 있을 경우, 임야경사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질의** 사업부지에 임야와 농지가 있을 경우, 경사도 산정기준이 임야만 단독으로(농지를 제외한 경사도산출) 산출한 결과로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다목2)에 의하면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35도) 이하일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상 평균경사도는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평균경사도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61. 본인 소유의 임야가 아니더라도 주택건축이 가능한가요?

**Q.질의** 도시계획이 완료된 주거지역 내 임야입니다. 본인소유가 아니더라도 주택 건축이 가능한가요?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1호마목11)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인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62. 산지전용허가 시 경사도 및 임목조사 작성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Q.질의** 산지전용 협의 단독주택 신축부지 조성하기 위해 신청면적 1,000㎡으로 신청할 때 경사도 및 임목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르면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제출대상에 포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63. 임야가 사유지라면 임의로 개발이 가능한가요?

**Q.질의** 사유지라면 마음대로 산림을 개발하고 훼손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산지관리법상 산지는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산지 구분에 따라 행위제한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64. 임야에 개인묘지 설치가 가능한가요?

**Q.질의** 개인 임야가 장사등에 관한 법률상 분묘설치에 위배되지 아니한 토지이며 산지 관리법상의 산지전용제한 및 일시사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분묘의 설치가 적법한 토지일 경우, 개인묘지 설치는 관할청에 신고만으로 산지관리법의 전용등에 대한 관련법상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답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르면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산지관리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 번호 08-0115 참조)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인묘지 설치의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65. 공장허가지를 다른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Q.질의** 기존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임야를 공장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를 변경협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 관계 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은 보전산지에서 목적사업을 위해 산지전용을 받은 경우 최소한 5년간은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 당시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준공 후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근린생활시설 등) 등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야 투기와 보전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시설은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66.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적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Q.질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련 실시계획 인가시 산지전용 면적이 30만㎡가 넘어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받았으나 현재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산지전용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건지, 받아야 된다면 증가면적만 받는건지 아니면 전체면적(증가분 포함)을 받는건지, 또한 조망분석도 새롭게 받아야 되는건지 질의합니다.

**A.답변**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풍력발전시설, 궤도시설은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제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호 라목5)에서 산지전용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는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받는 것이므로, 당초 산지전용허가(협의)의 변경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산지전용허가(협의)의 변경인 경우에도 허가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경으로 인해 산지전용면적이 증가하여 5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67. 공익용산지에서 목공예실 건축이 가능한지요?

**Q.질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공익용산지에서 어민회관, 목공예실 등의 건축이 가능한지요?

**A.답변**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는 공익용산지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유아숲체험원·산림박물관·산악박물관·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용산지에서 산림공익시설인 목공예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이 가능할 것이나, 마을회관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은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68. 자기 땅이 아닌 산지에 지은 건물도 산지전용을 받을 수 있나요?

**Q.질의** 1960년도에 단독주택을 지어서 현재까지 지목변경없이 이용중이나,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상태입니다. 산지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치해 있던 단독주택이고 추가로 산지에 대한 토지 형질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이미 산지가 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A.답변**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1호마목11)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정 이전에 건축물 신축시 산림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지전용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지전용 및 준공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이오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받아야 하오며,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이 단독주택인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자기소유의 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69. 임업인이 버섯재배사를 설치할 경우, 산지전용신고 대상인가요?

**Q.질의**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임업인으로서 소유 임야에 1만제곱미터 미만의 부지면적으로 버섯재배사를 설치하려면 산지전용신고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별표3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서 영구시설이라 함은 “비닐하우스 형식의 버섯재배사”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3 제1호에서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로서 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은 산지전용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3의3 제1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로서 별표3 제1호의 시설 중 산지일시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2백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로서 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은 산지전용신고로 가능할 것이나, 비닐하우스 구조의 버섯재배사는 임산물 등을 생산하기 위한 간이공작물로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70. 산지에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Q.질의** 산은 일부 준보전산지이고 일부는 임업용산지입니다. 산양삼 등 식재한 재배지에 동물 및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서 주변으로 철책선을 치려고 하는데 이런것도 산지전용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산양삼등 더덕을 심고 그 재배지 안에 모노레일처럼 임산물을 운반하고자 모노레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철책선이나 모노레일을 산지일시사용신고시 사업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신청할수 있는지 아니면 그에 맞는 산지전용을 별도로 받아서 설치해야 하는지요?

**A.답변** 산지관리법상 산지는 보전산지(공익용, 임업용)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에서는 행위제한을 두고 있으나, 준보전산지에서는 별도의 행위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전산지에서는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산지관리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인 산양삼을 재배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울타리(철책)를 포함한다면 산지일시사용신고로도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71. 초지조성하는 경우도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는지요?

**Q.질의**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의 조항이 초지조성허가신청에 합당한지 법률해석을 부탁드립니다.

**A.답변**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산지전용허가가 있는 때에는 허가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18조의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지조성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초지 조성 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72. 원지형으로 보존하는 산지는 산지전용 허가면적에서 제외되나요?

**Q.질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원지형으로 보존하는 산지는 실제 건축물이 입지하지 않는 부지이므로, 산지전용 허가면적에서 제외되나요?

**A.답변**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시 원형으로 존치되는 산림은 산지전용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73. 산림보호구역 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Q.질의** 산림보호법11조에 보면 농가주택 등의 시설도 산림보호구역의 해제사유가 되는데, 누구나 자기소유의 산지인 산림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짓고 싶으면 산림보호구역 해제 신청만 하면 농가주택 지을 수 있는 건가요?

**A.답변**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에서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4)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이 농가주택 개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내 산지에서 농가주택 개량이 아닌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없으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목적 사업을 위한 산지전용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74. 묘지이장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상 허가대상인가요?

**Q.질의** 임야에 있는 묘지를 이장을 하는데 장비(포크레인 등)의 진입으로 고사목 일부 제거 및 수풀정리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상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설치 허가를 통하여 지목이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산지전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목이 묘지로 변경되지 않은 임야인 경우 묘지이장을 위하여 형질변경이 발생한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75. 철탑 진입도로로 임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Q.질의** 송전철탑 진입도로로 사유지 임도를 사용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에 관청에 임도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 및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정 시설의 진입 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외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됨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 등이 있어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번호 06-0039 참조)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76. 산지전용 받은 후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Q.질의** 공장 준공 후 다른사항은 변경없이 건축부분(공장)만을 별도로 사용하고자 용도 변경 승인신청하였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이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방법은?

**A.답변**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 변경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시설물)의 일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오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용도변경 승인 면적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77.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에 산림조사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Q.질의**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공사중에 추가면적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산림 조사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면적 확대 등)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면적 확대와 같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산림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78. 공동소유의 산지에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Q.질의** 단독주택건설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경우 본인소유의 토지에 한하여 허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공유자(2인 이상)가 있을 경우,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주택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단독주택건설 및 진입도로조성 목적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진입도로 조성계획 토지(임야)가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토지가 아닐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규모별 세부기준 제1호 마목 1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정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정될 것이며, 공동소유 산지일 경우에는 공동지분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자기지분에 한하여 자기명의로 단독주택 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입로의 경우 자기소유의 산지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인 소유의 산지라도 사용수익권(동의)을 받아 단독주택 목적의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79. 산지전용허가 없이 분묘 이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Q.질의** 지목은 임야인데 임야 내 묘지가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묘지 이장 하여 지번이 다른곳 인근 임야에 묘지 조성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A.답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설치 허가를 통하여 지목이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산지전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목이 묘지로 변경되지 않은 임야인 경우 묘지이장을 위하여 형질변경이 발생한다면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에서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허가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80. 입목축적조사 대상에 고사목이 포함되나요?

**Q.질의** 입목축적조사 대상 산지에 서 있는 생리적인 고사목(늙어 죽은 나무), 병해충 고사목, 재선충병 고사목이 입목축적조사 대상에 포함(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호다목2)에서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숙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숙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50% 이하일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발생·숙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숙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자연적으로 고사된 고사목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자연 고사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자연적 또는 병해충 등으로 인하여 고사된 후 벌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병해충 피해를 입어 입목을 벌채한 경우(고사되지 않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라면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81. 농업용관리사는 건물의 바닥면적 기준으로 지으면 되나요?

**Q.질의** 농업용관리사는 건물의 바닥면적 기준으로 지으면 되나요?

**A.답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3제3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 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1호나목에서 농림어업인이 공익용 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이고,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로 설치하는 농업용관리사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일것이란 부지면적이 아닌 건물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82. 공동명의 산지에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한가요?

**Q.질의** 산지법에 단독주택은 본인소유에 한하여 가능한 걸로 아는데, 본인 A지분 면적만큼 단독주택 나머지 B지분은 소매점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건물 신축이 가능한가요?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1호나목11)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및 소매점의 목적으로 함께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축조는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정하고 있어 공동소유 산지일 경우에는 공동지분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단독주택 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83. 임야에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으면 지목변경이 가능한가요?

**Q.질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상의 기존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데 기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도 정상적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시간이 경과되어 산지전용 및 지목변경 등에 대한 자료가 없고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신축 시 산림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지전용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지전용 및 준공관련 서류 등)가 있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지전용을 받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제한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84. 산지전용허가 시 목적사업이 2개인 경우, 용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Q.질의** 임야에 작물재배사 및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목적사업은 작물재배사 이나 태양광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목적에 태양광을 기입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작물재배사가 주이기 때문에 작물재배사만 목적에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태양광까지 같이 목적에 기입을 해야 되는지요?

**A.답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산지전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사를 설치한 후에 지붕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지를 다른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 목적사업이 있을 것이며, 이는 산지를 이용하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작물재배사가 주목적이며 산지전용허가는 작물재배사 및 태양광시설로 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85. 숲가꾸기 대상지에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조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Q.질의** 숲가꾸기사업 실시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역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숲아베기 별채전 입목축적을 환산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령에 대해 질의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10월에 접수하였고 산림경영기술자가 현장조사를 같은해 1월에 조사.작성(생장률반영)한 산림조사서를

인정해 줄수 있는지요?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에서 제외 하였던 무입목지 면적을 별채전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생장율을 반영한 산림 조사서 제출이 가능한지요?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 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허가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조사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며, 조사·작성된 시점은 산림조사서 작성 완료일을 기준으로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입목의 생장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임을 알려드리오니 생장률을 적용한 입목축적 산정시 입목의 생장기간은 7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전체 산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86. 공동소유 임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Q.질문**

지목은 임야이고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공유지 이기 때문에 이번 허가에 앞서 서로의 위치를 확정된 후에 한 명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허가를 진행하면 되는지요?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1호마목11)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및 근생 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축조는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정하고 있어 공동소유 산지일 경우에는 공동지분자의 동의를 받아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여 단독주택 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3)

### 87. 산림조사서 작성주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질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서류인 산림조사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

상기내용에서 기술2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는

- 1)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휴직상태)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회사에 소속된 기술자(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 2) 회사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시 사업의종류에서 업태나 종목은 어떤것이 되어야 하는지요?(꼭 법인회사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도 가능한지요?)

**A.답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중 “산림조사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88. 민자도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나요?

**Q.질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시설 중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방식에 관계없이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의 2-마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보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을 100%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A.답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시설 중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관계법률 및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 제3호사목에 해당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 감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시점에서 기부채납 후 임대·운영될 수도 있고, 임대·운영 후 기부채납될 수도 있으나, [별표5] 제3호사목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히 10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89. 산지전용허가 소멸지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가능한가요?

**Q.질의** 산지전용지의 당초 허가자와 산지전용허가 소멸(취소)후 신규 허가자가 다를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타당성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는 경우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던 자는 「산지관리법」 제19조2 규정에 의하여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신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90. 공장허가취소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이 가능한가요?

**Q.질의** 최초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 후 원상복구 없이 공장신설승인(산지전용의제)을 득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였으나 금번 공장신설승인(산지전용의제) 지역을 다시 토석채취허가를 득함에 따라 공장신설승인 이전 토석채취로 산림이 이미 훼손된 상태에서 공장신설승인 이후 산림을 추가로 훼손한 것이 없으므로 동일 지역에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득한 경우 공장신설승인 당시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기간 만료 등이 된 경우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석채취허가 지역에 공장신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추가적인 형질변경 행위 없이 산지전용허가가 취소 또는 기간 만료 되었고, 해당 산지에서 다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면, 공장신설을 위한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기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환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91. 공용시설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나요?

**Q.질의** 지자체장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치되는 공공시설용지(도로, 공원, 공공청사<파출소> 등)의 경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대상인지와 산림복구비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도로법」에 의한도로, 공용청사, 공원 시설 등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라도 사업부지 내 시설되는 도로 등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에 대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무상귀속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택지개발 조성인 경우라도 동 조성사업 부지 내 시설하는 도로 등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경우에 시설주체 및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목적으로 전용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사오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용 또한 면제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9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지복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Q.질의** 산지관리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한 후 원형녹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임야는 부지 공사

실시하였으며, 증권기간만료에 따라 복구비 재예치 통지를 하였으나 복구비에 대하여 현금 또는 증권으로 다시 예치하지 않은 상태임.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초과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규정에 의하여 당초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부를 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A.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취소,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등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은 형질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고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후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상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급액이 있는 경우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이미 형질변경이 된 경우로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는 형질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고 환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전면적이 형질변경이 되었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상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인·허가 보증증권으로 예치된 복구비에 대하여는 증권기간만료 이전에 복구비를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보증서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면적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간에 최소 6개월 이상의 보증기간을 더하여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기간연장을 할 경우 반드시 법령에 규정된 보증기간을 더한 보증서가 예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9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인 택지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Q.질의**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별표5의 제4호 나목 15호의 감면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혁신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에서 규정하는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기준 및 혁신도시 내 상업용지, 산업용지, 종교용지는 ‘택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5]제3호더목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택지”란 이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호에서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 종교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 등을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2]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에서는 주택용지와 공공시설용지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질의한 상업용지, 산업용지, 종교용지중 종교용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2]의 주택건설용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상업용지 및 산업용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2]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한 상업용지, 산업용지, 종교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택지”에 해당하고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5]제3호더목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94. 명의변경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 받을 수 있나요?

**Q.질의** 동일지역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받은 자 공동명의로 2인과 제3의 1인을 포함한 공동명의로 3인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8항에 따라 동일인으로 보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 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환급 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가 되기 전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명의변경 등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차감하여 환급받은 자는 당초의 수허가자인 공동명의로 2인이었으며,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명의로 3인으로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전체지역에 대하여 동일한 권원 가지고 있고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지역을 개인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95. 목적사업을 포기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이 가능한가요?

**Q.질의** 산림형질변경(허가면적 전체에 대하여 벌채 및 절·성토 평탄작업과 진입로 개설하였음)은 하였으나 목적사업 포기하고 산림으로 적지복구하여 복구준공하였을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금12,002,320원)를 수허가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하되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건과 관련해서는,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지역의 형질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차감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전체 면적에 대해 형질변경되었다면 설령 복구하였다할지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수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9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면적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하나요?

**Q.질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적 산정 시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만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의한 공장기준면적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 및 [별표5]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비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5]제2호사목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의 건축면적(연면적)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장기준면적률을 적용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97.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이 가능한가요?

**Q.질의**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가 '임업용 산지'에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5]에 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 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례(안건번호 13-0026, 09-0378)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3항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를 배제하고 있지 않는 이상 부담금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 판매시설물중 농협의

재산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법령해석례(안건번호 07-0326, 07-0289)에서도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를 배제하고 있지 않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해석례에서와 같이 부담금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98.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이 가능한가요?

**Q.질의** 버섯재배사 건립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산지에 대하여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농조합법인으로 산지전용변경허가가 수리된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5] 제3호마목의 농림어업인등에 해당되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는 산지전용 등의 허가취소 및 기간만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이 되는 용도로의 변경 등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질의사항은 신청자에 대한 변경으로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99. 산지전용 변경허가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환급되나요?

**Q.질의** 공장건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였고, 공사 중 제조시설 면적의 축소로 복구준공검사 이전 소기업에 해당되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 대상인지 여부

복구준공검사 이전 감면되는 용도로 확정이 되었으나 환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환급은 복구준공검사 이후라도 가능한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서는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득하고 이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 사용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득함이 없이 산지관리법 제42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5조의2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이 불가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100. 형질변경된 면적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환급되나요?

**Q.질의** 2007.5.28.일자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복구비를 납부하고 단독주택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형질변경을 하고 2008.12.31. 기간만료 되어 2010.02.19일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하여 최초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하여 환급하지 않고 추가로 차액분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고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최초 산지전용허가 시 납부한 복구비를 이용하여 2011. 12.22.일부터 대집행 복구를 하였음.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환급대상인지 여부

**A.답변** 현행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기간만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질변경된 면적의 비율만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2007.7.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칙<제8283호,2007. 1.26> 제5조에서는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질변경된 면적의 비율만큼 차감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한다는 규정은 2007.7.27.일 이후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7.5.28.일자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법령시행 이전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형질변경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급대상이며, 2010.2.19.일자 산지전용허가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지 전면적에 대하여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형질변경이 되었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형질변경된 면적의 비율만큼 차감하고 환급하되 복구여부를 확인하고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101. 공장설립 변경승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환급되나요?

**Q.질의** A업체는 소기업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고 산지전용허가 및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여 부지조성 공사완료 후 B업체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B업체는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건축공사 중 제조시설면적 축소로 다시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아 B업체가 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대조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서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아 소기업에 해당되고,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5] 제2호사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아 소기업에 해당하고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5]제2호사목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해당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102. 산지의 농지조성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나요?

**Q.질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조성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제2호가목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밖에 농지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호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란 농어촌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의 농업생산기반개발사업,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제2호가목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개간을 통한 농지확대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103. 농지로 이용중인 산지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이 가능한가요?

**Q.질의** 농지로 이용 중인 산지를 산지전용 할 때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하여 농지부서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기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는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에 대하여도 “산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에서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해석례(안건번호 06-0016)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01두7985(2002.7.26.)]에서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제4호에서,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5항 소정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례의 경우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산지”에 해당하여 산지전용이 발생한 경우이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104. 산지전용 재허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Q.질의** 공장설립 또는 건축인허가 등 주된 행정처분의 허가기간은 공장일 경우 4년 이내에 완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일 경우 허가1년 이내 착공계만 제출하면 별도의 허가 기간이 없음.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하며 허가기간 내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이때 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지 못하여 기간만료 되었을 경우(주된 행정처분은 유효함) 산지관리법 개별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따로 신규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따로 받아야 할 경우 주된 인허가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현 단가로 새로 부과하고 납부 확인 후 기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환급해야하는지 아니면 현 단가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외 금액을 추가로 부과해야하는지 또는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부과 대상이 아닌지의 여부

**A.답변**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법제처 법령 해석례(안건번호 11-0183)에 따르면 산림으로 복구해야 될 산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는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를 환급할 경우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2 제8항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 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없으며, 동일지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105. 복구완료된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Q.질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내용중 “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은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거쳐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를 말하는 건지?

상기규정에 의거 허가기간이 만료된 산지전용허가지(훼손됨)에 대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디에 속하는 건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8항에서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고 환급 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급받은자(A)가 아닌 다른 사람(B)이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해도 되는지? 해당사항이 안될시 B가 그 산지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하였을 경우 A가 환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A가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산지복구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라고 했는데 산지의 복구여부를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사항으로 볼 경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2제9항은 무슨 뜻인지요?

A.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 형질변경된 면적의 비율만큼 차감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질변경지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는

환급하여야 할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 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복구를 명한 경우 산지의 복구여부를 확인한 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의 복구명령을 한 경우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거쳐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을 통지하여야 하며, 전면적이 형질변경된 경우에는 환급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2제9항에서는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이나 납부하고 사업을 완료하고 산지복구준공검사를 받았거나 산지전용허가 기간중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이 되었으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완료하여 산지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감하여 환급 받은 사람(A)이 아닌 다른 사람(B)이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차감하여 환급받은 사람(A)이 10년 이내에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에서는 복구여부를 확인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산지관리법」 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7항에서는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금액을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복구할 능력이 없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지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하므로 복구준공검사를 한 이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에 관하여 통지를 하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10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Q.질의** A라는 업체가 우리시에 공장설립승인을 위하여 2011년 9월경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협의 득하고 이후 2013년 9월경 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허가면적 감(25,362㎡ → 8,043㎡)으로 산지전용(변경)협의를 득하고 감된(기허가지) 면적에 B~D업체가 각각 신규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현재 현장은 입목벌채만 수반된 상태임]

- 1) 이때 신규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B~D업체는 A라는 업체에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구비 등 기 허가권에 대한 양도양수 가능 여부?
-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의거 감된 면적(17,319㎡)에 대하여 형질의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다 하였는데 형질의 변경된 면적이란 입목벌채를 포함하여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님 입목벌채만으로도 형질의 변경된 면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A.답변**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에 따른 면적 감소 지역에 대하여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의 양도양수는 불가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한 권리의무 등의 승계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명의변경 등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시 가능한 사안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의 승계는 산지전용허가 사항에 대한 승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만 시행된 채 허가취소, 허가기간의 만료 등이 된 경우로서 주변여건, 토지의 형상, 지형 등을 고려하여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라 복구명령 등을 하였을 때에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복구여부 확인 등을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107. 용도변경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Q.질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공장에 대하여 경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아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공장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감면 받은 경우로 판단되므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시설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비율이 낮게 될 경우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108. 지목상 임야인 무허가 주택부지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나요?

**Q.질의** 1966년 이전부터 주택들이 존치하고 있고, 수목 등 일체의 조림현황이 없는 산 일원에 지목이 임야인 부지 내 건축물대장 등재 주택 4채 및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주택 8채가 있어 이중 무허가주택 8채를 정리하고 지목을 현황과 같은 대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인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포함)는 대체산림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같은 법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5]에서는 산지전용 목적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비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고 미리 내야 할 것입니다.

지목을 현황과 같은 대지로 하고자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109. 농지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나요?

**Q.질의**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로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 현실화 되어 양성화된 토지가 사후에 단독주택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 승인 신청 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신고된 산지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의하여 농지로 산지전용 및 지목변경 조치를 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지전용이 이루어진 것이며, 전용이후 목적사업을 5년 이내에 변경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승인을 받으려는 자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안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었으나, 산지전용 등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전(田)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아니기에 「산지관리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는 「농지법」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110. 산지복구 준공검사 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Q.질의** 공장설립 목적의 산지전용협의지가 공장부지만 조성해 놓은 상태로 기간만료 및 목적사업 미완료로 공장승인이 취소 되었으며, 산지전용기간도 만료되어 협의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도록 하여 복구준공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의 규정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형질변경된 면적”이라 함은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산림이 훼손된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9항에서 형질변경한 지역에 대하여 복구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산림으로 환원된 것이 아니고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나무를 심는 등 복구를 한 것이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하여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111. 도로공사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나요?

**Q.질의** 도로공사를 위하여 일시적 산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인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신고와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산지관리법에서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대상에 제외되어 있으나,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사오니 이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112. 형질변경 없이 공장설립 인허가가 취소될 경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Q.질의** 산지전용이 의제 처리되어 공장설립승인을 득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에 공장설립승인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건축허가 착공을 못한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 재결되어, 목적사업을 위한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인·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기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규정에서와 같이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설립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당초 산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오며, 산지전용허가는 받았으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가가 취소되었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을 환급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113. 마을회관 조성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이 가능한지요?

**Q.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에 따라 준보전산지의 토지로 토지 또한 군소유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인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됩니까?

**A.답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 및 별표5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마을회관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공공용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11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시점은 언제인가요?

**Q.질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의 결정시점이 궁금합니다.

**A.답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단가의 결정시점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시점의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산지전용변경허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허가 시점에서 변경된 면적 즉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는 변경시점의 단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게 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115.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어느 기준에 따라 부과하나요?

**Q.질의** 국도건설공사를 위한 공사용 가설사무실 설치에 따른 진입도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받았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부과항목이 어느항목 법에 따라 부과하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답변**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5조 산지전용신고 및 제15조의2제2항 산지일시사용 신고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11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복구비의 납부기준이 궁금합니다.

**Q.질의** 실시계획인가 후 몇년이 지나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산지복구비 산출기준년도를 언제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A.답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인.허가 시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단가를 적용하여 납부를 하여야 하며, 산지복구비에 대하여는 매년 재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금년도의 복구비 예치단가를 적용하여 예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117. 산지전용허가자의 명의를 변경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대상이 되는지요?

**Q.질의** 산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각 호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1. 당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시행사인 A에게 환급되는지, 변경된 사업 주체인 B에게 환급되는지요?
2. 당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시행사인 A에게 환급된다면, 변경된 사업 주체인 B에게 환급되도록 하기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 또는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요?

**A.답변** 산지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산지 전용허가를 받도록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14조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에 대하여는 산지전용 허가 변경신고 시 명의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도록 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 규정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를 통하여 명의를 변경한 경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환급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명의를 변경한 자에게 환급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118. 산지복구 준공검사 이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이 되면, 환급이 되나요?

**Q.질의** 산지전용 허가된 임야 매입 이후에 마무리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지 복구 준공검사 이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이 될 때에는 환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A.답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의2제6항제3호에서는 법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 검사를 하기 전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행정처분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 없이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의2 제9항에서는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119. 농업용 창고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나요?

**Q.질의** 농업인으로서 보전관리지역에 산지전용허가하여 농업용창고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의3]에서 농업인주택의 감면항목은 있으나, 농업인(용)창고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 또는 면제해야 된다는 항목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농업용창고를 산지전용하고자 할 경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감면또는 면제가 된다는 법적 조항을 알려주세요.

**A.답변**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3에서 농축수산물의 창고에 대하여는 공익용산지가 아닌산지에서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업경영면적 및 산림경영면적에 따라 창고의 규모를 3천제곱미터 또는 1천제곱미터로 산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림 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축수산물의 창고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2)

### 120.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복구준공검사가 가능한가요?

**Q.질의** 도시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된 지역에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처리된 건으로 목적 건축물 없이 기반시설(오수, 우수, 법면부 복구 등)만을 완료한 상태에서 산지복구준공검사가 가능한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목적사업(건축)을 완료한 경우에 사업부지 외의 비탈면에 대한 복구를 실시하고 복구준공검사 완료 후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로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 받은 전체 지역을 산지로 복구하고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 121. 불법전용산지의 산지복구의무자는 누구인가요?

**Q.질의** 아래와 같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산지로의 복구(건축물 철거 등)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 1) 행위자와 복구의무자가 같을 경우 불법전용산지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3항 및 동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여부
- 2) 행위자와 복구의무자가 다를 경우(소재불명 등) 복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복구의무자

**A.답변** 1) 항에 대한 회신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허가권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 제3항 및 제5항을, 복구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9조제3항에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불법산지전용한 산지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항에 대한 회신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허가권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를 한 자가 복구의무자가 될 것이며,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에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산지의 현재 소유자에게도 복구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 122. 진입로를 산지복구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Q.질의**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허가권 분리)를 득한 후 진입로를 포함하지 않은 부지(수허가자 : D씨)가 산지관리법 제42조에 의거 먼저 목적사업 준공검사를 득하였고, 그 후 진입로를 포함한 부지(수허가자:A씨)가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에 의한 효력 상실된 상태로,

산지관리법 제39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전면적(진입로 포함)을 산지 복구해야 하나, 진입로를 포함하지 않은 부지(수허가자:D씨)가 먼저 목적사업 준공검사를 득하였고 그 후 수허가자 D씨는 산지전용허가 준공검사의 지목을 대지로 바꾸었고 대지를 출입에 쓰이는 진입로를 산지복구에서 일부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로 복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준공된 대지의 출입에 사용되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새롭게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 123. 진출입로가 미준공된 경우 건축부지의 복구준공 승인이 가능한가요?

**Q.질의** 진출입로가 미준공된 상태에서 건축부지의 복구준공승인 가능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진입도로에 대하여 사용동의를 받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실제 통행이 가능한 상태(당초 허가받을 당시 실제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허가기준으로서 검토된 경우에 한할 것입니다) 이면서, 아울러 기 받은 사용동의를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동의 받은 진입도로의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복구준공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 124. 산지전용허가지에 순환골재를 성토용 복구재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Q.질의**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및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여 부지를 조성하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순환골재”를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 보아 산지전용허가지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에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 “별표 5-2”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서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 채움재로 재활용 가능한 유형에 한하여 토석채취지 복구용 토석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생산된 순환골재는 복구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125. 기존 토석채취허가지를 재허가 받은 경우 복구의무면제가 가능한가요?

**Q.질의** A업체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기간만료된 지역 일부를 B업체에서 포함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A업체 일부지역에 대하여 복구의무면제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6호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 등을 계속 사업부지로 사용하여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8 토석채취허가기준제3호에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이상일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복구의무 면제되는 면적을 제외한 신규로 편입되는 채취면적이 5만㎡이상인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 126. 공소시효 완성된 경우의 불법산지전용지를 복구해야 하나요?

**Q.질의** 불법으로 산지에 건축된 미등재 건축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되어 사법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산림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 또는 산지일시 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사법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불법산지전용(건축물을 포함)한 자에게 산지를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 127. 산지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서 규정한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얼마인가요?

**Q.질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비탈면(절토면)의 수직높이 15미터는 산지전용허가 후 건축물 신축에 따라서 형성된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산지전용허가 후 건축물 신축에 따라서 형성된 비탈면의 수직높이 중 허가부지 내 높이까지만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건축주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비탈면(절토면)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으로 형성되자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허가부지 내 비탈면(절개면)의 수직높이를

15미터 이하로 맞추었으나, 실제로 형성된 비탈면(절개면)의 수직높이는 불법 훼손을 포함하여 15미터 이상일 경우 비탈면(절개면)의 수직높이가 실제로 형성된 높이인지 아니면 허가부지 내 높이인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비탈면(절개면)의 수직높이 15미터는 산지전용목적사업의 실행으로 인해 형질변경된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불법훼손으로 형성된 비탈면까지 허가면적에 포함시켜 변경허가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수직높이를 포함하여 15미터 이하가 되어야 하며, 해당 불법훼손지역을 「산지관리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복구하는 경우라면 수직높이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 128. 산지복구 시 형질변경 없이 조경수의 추가식재가 가능한가요?

**Q.질의** 산지전용허가지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6미터이나, 상단부 1미터 부분은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조경수를 추가 식재하여 존치하는 계획이 복구설계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제2호가목에서 산지전용의 경우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질변경 없이 조경수를 추가 식재하려는 부분도 산지전용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수직높이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질의하신 경우는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 129. 지목이 임야인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해야 하나요?

**Q.질의** 보안림 내 지목이 임야인 농지를 임의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원래상태로 복구할 경우, 농지인 밭으로 복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림으로 복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A.답변** 「농지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으므로 산림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산지였던 토지를 산림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로 사용하다 다시 임의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복구는 농지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으로 복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 130. 토석채취지 복구를 위한 토석채취허가 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해야 하나요?

**Q.질의**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한 추가 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복구를 위한 추가 산림훼손부분에 대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석채취허가지 산지복구비를 보증하고 있는 보증회사에서 복구를 위한 추가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도 복구보증을 포함한다면 별도 복구비 예치없이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한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3항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 게 발급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석채취지역의 복구를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미리 복구비를 예치한 후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131.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나요?

**Q.질의**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 “제1항에 따라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이하 생략)”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해서도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 132.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건축감리로 대체할 수 있나요?

**Q.질의** 학교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건축감리 및 토목감리와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복구공사 감리를 건축감리 및 토목감리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제1항에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 건축감리 및 토목감리는 해당 법률에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구공사감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 133. 건축물이 있는 산지전용 취소지의 복구 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나요?

**Q.질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끝나 같은 필지에 1회의 재허가를 득한 상황에서 허가기간이 끝나 취소지 복구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취소지 복구를 진행 중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을 철거하고 완전히 복구해야 하는지 여부

**A.답변** 산지전용허가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면 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의3 규정에 따라 허가면적 전체를 복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복구지내에

건축물이 있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이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134. 골프장 부지에 추가 편입되는 산지를 원형존치 규정에 제한을 받나요?

**Q.질의** '03.5.14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고시이후 '04.12.9 골프장사업승인을 받아 산지 복구준공('07.8.17)된 구역 내 원형지역과 연접지역에 추가로 대중제 9홀 골프장, 콘도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시 산지를 추가 편입함에 있어 산지복구준공 이후 편입된 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별표1의3 6호)에 의거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이상 원형존치 규정에 제한을 받는지 아니면 합산하여 적용하는지와 원형보전비율을 각각 적용하는지 여부

**A.답변** 질의한 사업지는 '03.5.14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이후 사업이 종료되어 '07.8.17 산지복구 준공되었고 현재 골프장을 운영 중에 있는 사업지와 신규면적을 추가하여 관광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아울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의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대상에 해당되고, 조성계획과 관련해서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로 조성해야 하는 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관련 별표 1의3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변경허가(협의), 용도변경 승인 시에 검토되는 허가기준입니다.

그런데 산지복구 준공이후 상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 5년 이내의 기간에 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용도변경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업지는 '07.8.17 산지복구 준공되었고 현재 목적사업대로 골프장을 운영 중에 있는 사업지로 5년이 경과되어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부지를 포함하여, 추가로 편입하고자 하는 부지 (대중제 9홀 골프장, 콘도 숙박시설 등) 전체를 사업계획 부지를 기준으로 원형 존치 대상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26)

### 135. 산지복구 의무자와 토지소유주 중 산지복구는 누가 하나요?

**Q.질의** 복구 의무자가 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관할 관청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된 복구비를 청구하여 대항복구토록 요구하는 경우에 대항복구를 하지 않고 토지주가 자진하여 토지주 명의로 복구설계승인을 득하고 복구기간 동안 복구비를 예치한 후 자력 복구할 수 있는 지

● **갑설**

산지전용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복구 의무자에게 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으므로 복구 의무자 명의로 복구를 이행하거나 토지소유자 명의로 자진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복구 의무자에게 복구 동의를 받아 복구하여야 한다

● **을설**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었으나 복구 의무자가 자진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복구 의무자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 복구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채무보증으로 연계되어 토지소유자가 관여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자진복구를 이행할 경우 복구 의무자의 동의 없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복구를 이행할 수 있다

**A.답변**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구 의무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 136. 개인 간 합의서에 의해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나요?

**Q.질의**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5항에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개인간에 복구비 예치금 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면 복구비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복구비가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통해서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수허가자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예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 137. 공소시효가 지난 불법산지전용지에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Q.질의** 불법산지전용지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지난 임야에 대해서도 복구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A.답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산림청장등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한 자에게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동법 제53조에 따라 벌칙인 사법처리는 공소시효가 있으나 행정조치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 138. 산지복구설계서 변경만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가요?

**Q.질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석회석을 채광하던 중 허가기간 만료 및 기간연장 불허로 산지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광산개발 당시 계단조성 및 하향식 채취를 하지 않아 채광사면이 30미터 이상 조성되어 허가 만료된 산지에서 광물이 포함된 토석을 채취(발파)하여 복구지에 토사대용으로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구설계서 변경만으로 채취가 가능한 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0조제1항에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광을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내에서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채취하여 복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복구 용도 외에 외부로 반출하기 위하여는 별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6)

## 139. 산지복구비 예치는 언제 해야 하나요?

**Q.질의**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내용중 토사유출방지 등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데 미리의 의미와 복구비 예치시기는?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할 때 실제로 의미와 복구비 예치 시기는?

**A.답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 전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관할청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등을 하는 때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해당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가권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실제로 산지형질변경에 착수하기 전에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예치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 140. 고령토 광산 복구비는 광물채굴지 복구비로 산정하면 되나요?

**Q.질의** 고령토 광산개발은 평지에서 채굴하므로 복구비 산정기준을 토석/광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산지전용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되는 지

● **갑 설**

산지개발의 경우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후 산지의 복구를 위해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복구비를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매년 적정복구비 및 복구기준을 고시하여 일괄 적용하므로 현재 부과되는 토석/광물 기준 복구비 부과는 적법함

● **을 설**

고령토 광산 또한 “토석/광물” 기준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마땅하나 복구내용을 보면 일반 광물과 채취방법이 다르고 복구방법도 단순하므로 일반 산지전용기준 복구비를 부과하여야 마땅함

**A.답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에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토 채취를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고시한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141. 산지복구공사 시 재활용토사를 사용할 수 있나요?

**Q.질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 완료 후 지반에서 최저 25~50미터 구덩이가 있는 절토 상태에서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사업장에 재활용토사를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에 “산림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석채취허가지를 복구할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한 토석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142. 산림훼손이 없는 허가지가 있을 경우, 산지복구준공검사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Q.질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훼손하지 않는 경우, 복구준공검사 대상인가요?

**A.답변**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2조제1항에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복구를 완료한 경우에 복구준공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훼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143. 산지전용허가지의 소유주가 바뀐 경우, 산지복구의무자는 누가 되나요?

**Q.질의** 해당임야는 허가가 취소되었고 현재 경매로 인해 소유주가 바뀐 상태일 경우 복구의무는 당초 수허가자에게만 있는것인지 아니면 산지관리법제51조 규정을 적용해 현재 경매로 임야를 취득 한 현 소유주에게 복구명령을 통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답변**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2조제1항에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144.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법인가요?

**Q.질의** 산지복구 공종 및 공법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A.답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제1항에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및 복구계획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변경 허가신고 및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산지관리법 제54조에 따른 처벌 및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 145. 산지복구기준 중 소단설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Q.질의** 산지복구기준에 의하면 5m 높이마다 1m의 소단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3미터 높이의 비탈면에 2m 구조물(옹벽,자연석, 석축등)을 설치하고 1m를 법면처리할 경우에도 1m의 소단을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답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제2호 다목에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옹벽을 포함한다)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3미터이고 구조물을 2미터 설치하고 법면을 1미터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단을 조성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현지여건, 토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146. 다른 법률에 감리규정이 있으면 산지복구감리를 안 해도 되는지요?

**Q.질의** 산지관리법 제40조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와 관련하여 후단에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의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2항에 감리계약서를 첨부토록하여 감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40조의 2 다른법률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된 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에 감리규정이 있으므로 산지복구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A.답변**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제1항에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6)

147. 일반측량업체에서도 산지복구설계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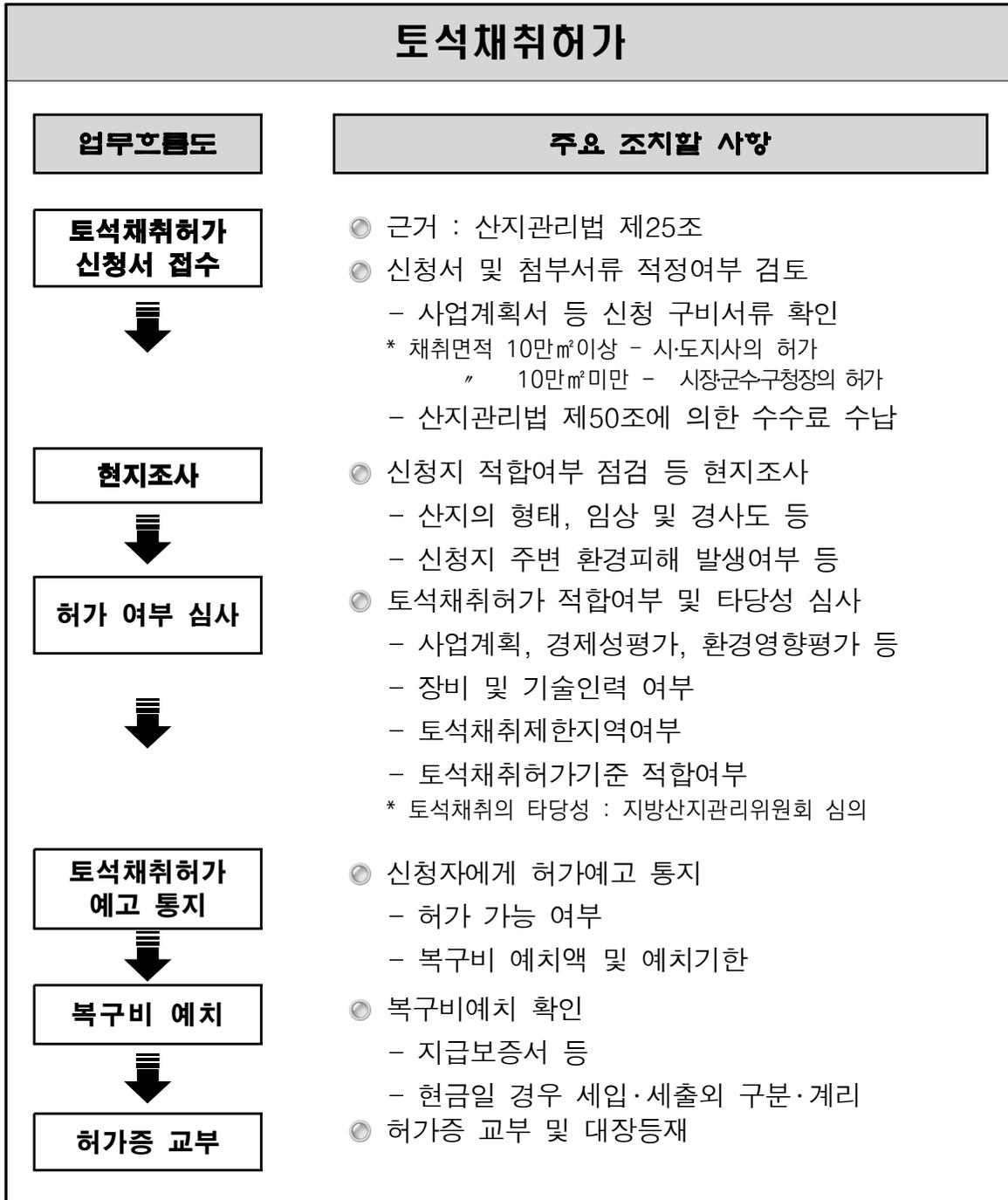
**Q.질의** 사업자등록증 종목 산림복구설계로 되어 있고, 산림공학기술자 직원을 보유한 일반측량업체에서 복구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3호에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에 따른 복구 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복구설계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산림공학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라 하더라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기술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지복구 설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 44. 토석채취허가



1.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토석채취허가 신청지에 대해 주민 동의를 안 받아도 되나요?

**Q.질의** 토석채취허가 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항에 의거 “가옥·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m 이내의 산지인 경우 주민 등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토석채취허가 득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사항으로 간주하고 주민 등의 동의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A.답변** 추가되는 면적이 당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라면 주민 등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석채취허가 할 수 있을 것이나, 추가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거 환경보전방안을 검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면적 증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보전방안 검토 및 재협의를 완료된 경우에는 주민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6)

2. 굴진채광 중 발생한 토석을 활용할 수 있나요?

**Q.질의** 「광업법」에 의하여 규석채광인가를 받아 굴진채광으로 채굴 중 발생한 광물을 광물원석 형태로 광물을 사고파는 제3자에게 판매 후, 제3자가 크락샤 등을 설치하여 부순 자갈형태로 이를 골재로 공급 시 「산지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A.답변**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채취하는 광물은 그 용도가 정하여져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 채광계획을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업용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상 부수적 토석에 대하여 크락샤를 설치하여 쇄골재용 석재를 생산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6)

### 3. 사법처리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토석채취 변경허가가 가능한가요?

**Q.질의** 1차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상 의무(복구설계서 승인)가 진행중이며, 2차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사법처리(경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석채취변경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위반사업장에서 토석채취변경허가서 등 접수 시 채굴량이 포함되는 지 여부와 사업부지내의 인접 토석채취장 채석 계획선까지 토석채취 변경허가 등의 서류가 접수될 경우 토석채취변경허가 등의 가능 여부 및 기존 승인된 복구설계서(1차 복구명령)의 복구의무면제 가능 여부

당초 허가면적의 변경이 없는 지하 채석계획선의 변경이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A.답변** 불법 토석채취를 하여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동일 산지에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불법 토석채취에 따른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지, 취소 및 복구명령 등의 이행 여부는 별개로 하고, 행정청은 동 위반사항에 대한 검찰 조사나 처분 또는 법원의 판단이 종료된 후에만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법처리 중에는 검찰의 지휘 또는 협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채취량은 허가량에는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에 “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6호 “산림청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연접한 지역에 다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 등을 계속 사업부지로 사용하여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일부를 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3항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1호, 2014.12.31. 시행 이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제7호에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당초 허가받은 기간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2014.12.31. 이후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인 경우에는 토석채취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6)

#### 4. 토석채취 시 지방산림관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Q.질의** 「산지관리법」 제28조의 토석채취 허가기준의 부합, 불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방산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계규정상 시장·군수가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산지관리법」 제28조의 토석채취허가기준에는 부합하나 허가기준 이외에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 생활환경피해 등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다 하여 지방산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불허가 처분할 때에 하자있는 행정처리인지 여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지방산림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토석채취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산림관리위원회의 심의는 그 신청내용이 「산지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28조의 토석채취 허가기준에는 부합하나, 허가기준 이외에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 생활환경 피해 등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다 하여 지방산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91누13083, 1992.09.25. 선고, 2013두765, 2015.11.26.선고) 에서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 진정이 있다 하여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됩니다.

토석채취허가권자가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6)

5. 산지전용허가지에서 발생한 부수적 토석을 공사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나요?

**Q.질의**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해 산지전용협의를 받은 자와 관계가 없는 자가 산지전용허가구역 내에서 선별·파쇄하여 공사용으로 재활용코자 할 경우 토석채취허가·신고 없이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가목에서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은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없이토석채취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생산하여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토석채취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되는 토석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하며, 산지전용허가지내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골재채취법」에 의한 선별파쇄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석채취허가를받고자 하는 지역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행위는 산지에서 토석을 채 취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6)

## 6. 토석채취지 내 절개사면의 기울기가 얼마인가요?

**Q.질의** 건축용석재가 아닌 석재를 계단식으로 채취 완료하여 소단이 발생하는 토석채취허가 신청 시 각각의 절개사면의 기울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8] 제1호나목2)세목에 따라 각각 1:0.5 이하를 충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평균기울기를 그 이하로 하고 다만,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따라 소단별로 발생하는 각각의 기울기 각도가 75도 이하면 되는지 여부

만약, 평균기울기로 한다면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로 소단이 발생하지 않는 절개사면도 위 기울기는 1:0.5이하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75도 이하면 되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8] 제1호나목2)세목에서 건축용석재가 아닌 석재를 계단식으로 채취하는 토석채취허가 신청시 절개사면의 기울기는 1:0.5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제3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서 소단에 발생하는 각각의 비탈면의 각도는 75도 이하이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로 소단이 발생하지 않는 절개사면의 기울기는 1:0.5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6)

## 7. 재해복구 중 발생하는 토석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나요?

**Q.질의** 「산지관리법」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호에서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외부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A.답변**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가 불가하나, 「산지관리법」 제25조의3(토석채취 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호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석채취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재해지역을 복구하는 것”이므로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토석은 재해복구지 사용에 한정하는 것이 산지관리 법령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6)

## 8. 채석단지 내 쇠골재용 석재의 채취 및 판매업을 임대할 수 있나요?

**Q.질의** 채석단지 내에서 공예용 및 쇠골재용 목적의 채석신고 한 업체가 사업 기간 중 회사 자금사정으로 직접 토석채취가 곤란하여 명의변경 없이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이 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는 업체에 채석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쇠골재용 석재의 채취 및 임대 가능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한 사항 중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석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에도 채석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6)

### 9. 토석채취허가 현장조사를 첨부서류로 갈음할 수 있나요?

**Q.질의**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사량이 74,000m<sup>3</sup>이 되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호 규정에 의거 「골재채취허가지 복구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접수 되었을 경우 토사처리계획에 따른 토사반입지에 대한 부분은 현장조사 없이 첨부서류(토량반입동의서, 골재채취허가증, 인감증명서)만으로 갈음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석채취 허가되어 사업추진 중 「골재채취허가 복구용 및 농경지복토용」으로 토석채취 변경신고 되었으나, 토석채취 변경신고 수리 전에 토사가 반출 되었을 경우 「산지관리법」 57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과태료 납부 시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하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 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하나, 토사처리계획 대상지의 현지조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현지조사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의거 토석채취변경신고 시 신고 내용을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토석채취변경신고가 수리된 후 토석을 반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수리 전에 반출되었다면 「산지관리법」 제57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일 것입니다.

토석채취변경신고 수리 전 토사를 반출 하였으므로 과태료 대상이나 토사처리 계획 대상지변경은 단순 신고사항이므로 「산지관리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 중지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여건, 사업계획서, 허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6)

## 10. 소송 진행 중인 사유로 토석채취허가 기간연장이 가능한가요?

**Q.질의**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토석채취 공사중지명령 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사중지명령 해제 신청거부 처분취소 소송이 계류 중(항소)인 상태에서 토석채취 기간연장허가 가능한지 여부

불가하다면 항소심 계류 중에 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25조 제4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토석채취기간의 연장 허가)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자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토석채취 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토석 또는 토사채취기간의 연장사유, 계단식 채취 등 토석채취방법 준수 여부 및 토석 또는 토사 채취로 인하여 재해발생·경관훼손이 예상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증을 발급하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기간 만료되기 10일전까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접수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되, 소송결정 여부 및 토석채취의 중단 사유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은 별도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허가기간 만료 전에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수리를 받았더라도 토석채취의 중지 등의 사유에 대한 청문 결과에 따라 토석채취를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6)

## 11. 토석채취허가 취소에 따라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요?

**Q.질의**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된 사업장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기간이 종료 되었다면 토석채취허가 취소 시에는 산지관리법 제49조에 의거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A.답변** 산지관리법 제49조 제3호에 의거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의 중지를 명령하려는 경우 미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과 같이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종료 되었다면 별도의 청문절차가 필요가 없을 것이며, 산지전용기간에 따라 복구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6)

## 12. 석재란 무엇인가요?

**Q.질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 기간 만료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경우로 토석채취허가 대상이 되는 '석재' 여부 판별 어려움

- 1)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중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쇄골재용”에 선별되지 않은 혼합골재(쇄골재+석분+토사)도 쇄골재용으로 포함되는지?
- 2) 신청자가 반출요청한 잉여산물을 6개지역 채취한 시료(약 7.7kg)에 대해 불임과 같이 체가름시험한 결과와 첨부사진으로 볼 때 토석채취허가 대상이 되는 “석재”로 볼수 있는지?

**A.답변** 본 신청지(복구지)는 2012.12.31.자로 토석채취허가 만료된 지역으로 현재 산지 복구(복구를 약 25%) 진행중에 있고 질의한 문제의 혼합골재가 복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라면 복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반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며, 복구가 완료된 후 잔량이 발생시 반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의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이면, 동 용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산물 혼합골재(쇄골재+석분+토사)도 석재의 일부일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6)

### 13. 산지전용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쇄골재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Q.질의** 지목이 임야이고 일반공업지역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공장을 짓기 위해 토목공사중 부산물로 나오는 토사석을 동 사업부지에서 건축용 쇄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지요.

**A.답변** 골재채취법에 의한 쇄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골재채취업에 등록이 완료된 자가 쇄골재용 석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면 산지전용지 내에서 쇄골재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4)

### 14. 토석채취기간 내 최대 토석채취량 기준이 있나요?

**Q.질의**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 쇄골재용 석재의 경우 75만 $m^3$ 이상 채석시 9년~1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동안(10년이하) 토석채취량은 75만 $m^3$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같은 기간동안 최대 채취할 수 있는 토석채취량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쇄골재용 석재의 경우 9년~10년이하의 기간동안 채취할 수 있는 최대 토석채취량 기준이 있는지요.

**A.답변** 쇄골재용 석재 채취기간의 결정기간 중 최대 토석채취 할 수 있는 양은 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허가기간 내 채취할 수 있는 최대 토석채취량 기준에 대하여도 규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4)

15. 토석채취허가 내 부수적인 자연석을 조경용으로 반출할 수 있나요?

**Q.질의** 토석채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석(조경용, 석축용 등)을 관계법령에 맞게 허가를 득하여 조경공사 및 일반석축, 기타용도로 사용 판매 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4)

16. 골재를 파쇄하여 허가지 밖으로 반출이 가능한가요?

**Q.질의**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공장신축부지 조성공사 중에 발생하는 토석을 건축용 골재로 선별 파쇄하여 외부판매를 할려면 어떤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 허가지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토석을 산지 전용지 내에서 쇄골재 생산을 하려면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에 등록하고 석재의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골재 선별·파쇄업장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한 골재를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장소에 관계없이 반출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4)

## 17. 채광계획인가지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선별, 파쇄할 수 있나요?

**Q.질의** 산지전용을 통한 채광계획인가 허가지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채광인가지역내 산물처리장에서 선별, 파쇄가 가능한가요?

**A.답변** 광물을 채취 후 발생하는 부수적 토석을 석재의 용도로 판매할 경우, 적치한 수량을 산정하여 토석채취(반출)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수적 토석을 산지일시 사용허가지 내에서 쇄골재 생산을 하려면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에 등록하고 석재의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4)

## 18. 산지전용 후 토사채취도 가능한가요?

**Q.질의** 산지전용을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토사물량이 5만이 넘게 나오는 경우, 산지전용과 별개로 토사채취허가를 같이 받으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A.답변** 산지전용 허가지에서 발생한 토석이 임지외로 5만세제곱미터 이상 반출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호에 의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10만세제곱미터 이상 반출시는 토석채취허가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4)

19. 광산채취 완료 후 지목변경이 가능한가요?

**Q.질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갖추어 광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취가 완료된 후 지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A.답변** 건축관련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을 받았다면 지목변경은 가능할 것이나, 부대시설을 포함한 광물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목적사업이 완료(채굴완료)되었다면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이므로 지목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4)

20. 토석채취허가지 내 파쇄기계를 설치할 수 있나요?

**Q.질의** 토석채취허가지 내에 산지의 형질 변경을 하지 않고 파쇄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석채취허가의 신청시 용도를 쇄골재, 조경석, 토목용, 조경용으로 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크락샤를 설치 쇄골재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는 토석채취허가 이전에 경제성평가를 받아야하고, 골재채취법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가능합니다. 토석채취허가 사업계획서에 토석채취허가내 크락샤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산지전용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토석채취허가시 용도를 쇄골재, 조경석, 토목 조경용으로 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니 모두 갖추어 신청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4)

## 21. 토석채취허가증에 용도 추가가 가능한가요?

**Q.질의** 기존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채취허가증의 용도의 추가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A.답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석재의 용도변경에 따른 토석채취변경신고로 가능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294)

## 22. 토석채취 허가 후 골재선별 파쇄업 등록이 가능한지요?

**Q.질의** 토목용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사석을 파쇄할 경우에 골재선별 파쇄업을 등록하고 가능한지요?

**A.답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 변경으로 토목용 석재를 쇄골재용 석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골재채취업에 등록하고 채석경제성 평가 결과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골재선별·파쇄업은 산림골재채취업과 병행하여 등록할 수 있으나 토석채취허가 기준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6)

23. 광산물을 광업 외 용도로 사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Q.질의** 토석채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석회석 광산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채광과정에서 나온 광산물 및 부산물(토석)을 산지에 쌓아 두었다가,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할 경우에 산지관리법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해당되는지?

**A.답변** 석회석 광산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채광과정에서 나온 광산물 및 부산물(토석)을 산지에 쌓아두었다가,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쇄골재용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 적용을 받아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4)

24. 산지전용 준공신청은 언제 하나요?

**Q.질의**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부지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축공사가 완료되어야지만 산지전용준공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위한 복구준공검사는 목적사업(건축공사)을 완료된 경우에 복구준공검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6)

## 25. 채광 붕괴지에 성토하는 것도 산지관리법 위반인가요?

**Q.질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운영중에 허가지외의 지반이 침하는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붕괴방지를 위하여 임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석을 성토(매립)하였습니다. 지반 붕괴지에 대하여 성토를 하여도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A.답변**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에 “산지일시사용이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 또는 나목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6)

## 26. 산업단지 감리가 있는데, 산지관리법에 의한 감리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Q.질의** 산지관리법에 허가면적이 10,000㎡ 이상이고, 복구비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감리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산업단지로 허가받은 산지면적이 80,000㎡(준보전산지) 정도이며, 별도의 감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한 감리대상 현장이 되는지요?

**A.답변**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제1항에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단지 관련 감리하는 법률에서 산지복구공사의 감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143)

## 45. 보전산지의 지정·변경지정·해제

결차	담당자	비고
산지구분 변동 요인 파악	산지구분도안 작성자	민원인 의견 제출 및 보전산지 지정요건의 소멸 및 생성
기초조사	산지구분도안 작성자	지정·변경지정·해제 대상 여부 및 필지별 내역 파악
산지구분도안 작성	산지구분도안 작성자	산지정보시스템 입력
공고열람	산지구분도안 작성자	지정시에만 공고 열람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요청	산지구분도안 작성자	공문 및 시스템 요청
산지구분도안 검토	지정권자	지침에 적합한지 및 증빙서류 검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산림청 및 중산위 심의 위원	지정권자가 산림청장일 경우 심의
고시	지정권자	시스템 및 행정 고시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 요청	산지구분도안 작성자	최종 민원 발급 부서로 통보

## 1.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Q.질의** 산림청에서 10년마다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구분을 결정고시한다고 들었는데, 지정 해제 절차가 궁금합니다.

**A.답변** 산림청에서는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매 10년마다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산지구분도를 고시하고 있으며, 현행 산지구분도는 2008.12.26.자 고시되었으므로 다음 산지구분타당성조사는 2018년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매 10년 이외에도 산지관리법 제5조 및 제6조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지정, 변경 지정 및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지구분도의 작성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 관리소장 등입니다.

보전산지의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의 행정절차는 산지구분도의 작성자(시장·군수·구청장 등)가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요청하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산지관리법」 제4조부터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8)

## 2. 보전산지의 해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Q.질의** 제6조(보전산지 변경·해제)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자할 경우, 제5조(보전산지 지정) 및 제6조(보전산지 변경·해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지침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보전산지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상기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보전산지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 제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해제 가능한지 여부

**A.답변** 상기 지침 제7조 제1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 및 변경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 전제조건이 만족되어야 보전산지 지정 해제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8)

## 3. 산지특성평가와 현장이 맞지 않을 경우, 공익용산지 해제가 가능한가요?

**Q.질의** 공익용산지로 지정이 되어 산지특성평가에 의해 4영급에 해당하는 수목이 차지하는 면적이 9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경작으로 인해 나무가 없는 토지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익용산지를 해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A.답변**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자연휴양림의 산지, 공원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등을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로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 절차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용 산지 지정해제 검토시 산지특성평가 결과 중 산지특성평가활용 지표자료(산림입지도 및 임상도를 말한다)가 현장과 불일치한 경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정·보완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정·보완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산림조합·산림분야 기술사 사무소 등 법인·단체에 소속된 기술1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조사결과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정·보완을 신청을 받은 산지구분 도안 작성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받은 내용이 현지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정·보완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현지확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산지특성평가지표 활용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8)

#### 4. 사방지는 공익용산지인가요?

**Q.질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고,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방지는 공익용산지인지, 아니면 임업용산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

용산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익용 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방지의 보전산지 지정대상 여부는 종전 「산지관리법」 제4조는 사방지를 공익용산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5.31.자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사방지가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8)

#### 5. 산지전용기간 만료된 관광단지 사업지를 보전산지로 환원해야 하나요?

**Q.질의** 사업자가 산지전용허가 승인 후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기간 지역사회개발 수요 등을 반영하여 준보전산지로 해제된 경우, 보전산지로 환원해야 하는지?

##### ● 갑 설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에 의한 임업용산지에 대하여 산림청 협의 및 임업진흥권역 해제·대체지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산지전용 허가를 득 하였으나, 사업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기간 동안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허가 기간이 만료된 건으로, 2008년 산지구분타당성평가 시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었더라도 효율적인 산지관리를 위해 보전산지로 지정해야 함

##### ● 을 설

본 건은 산림청장이 2008.12.26.(산림청고시 2008-166호) 준보전산지로 지정 고시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서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보전산지로 환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명확한 근거 없이 보전산지로 환원할 경우 그동안 많은 경비와 노력을 투자한 사업자가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A.답변** 골프장 등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승인 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만료된 건으로, 목적사업이 미실행된 산지전용지에 대한 산지의 계획적 이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산지구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사회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준보전산지로 구분된 산지라고 하더라도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계획이 종료된 경우라면 산림현황을 면밀히 검토 후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다양한 공익기능 및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보전산지로 환원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042-481-4298)



산림보호 분야





## 46. 산림분야 과태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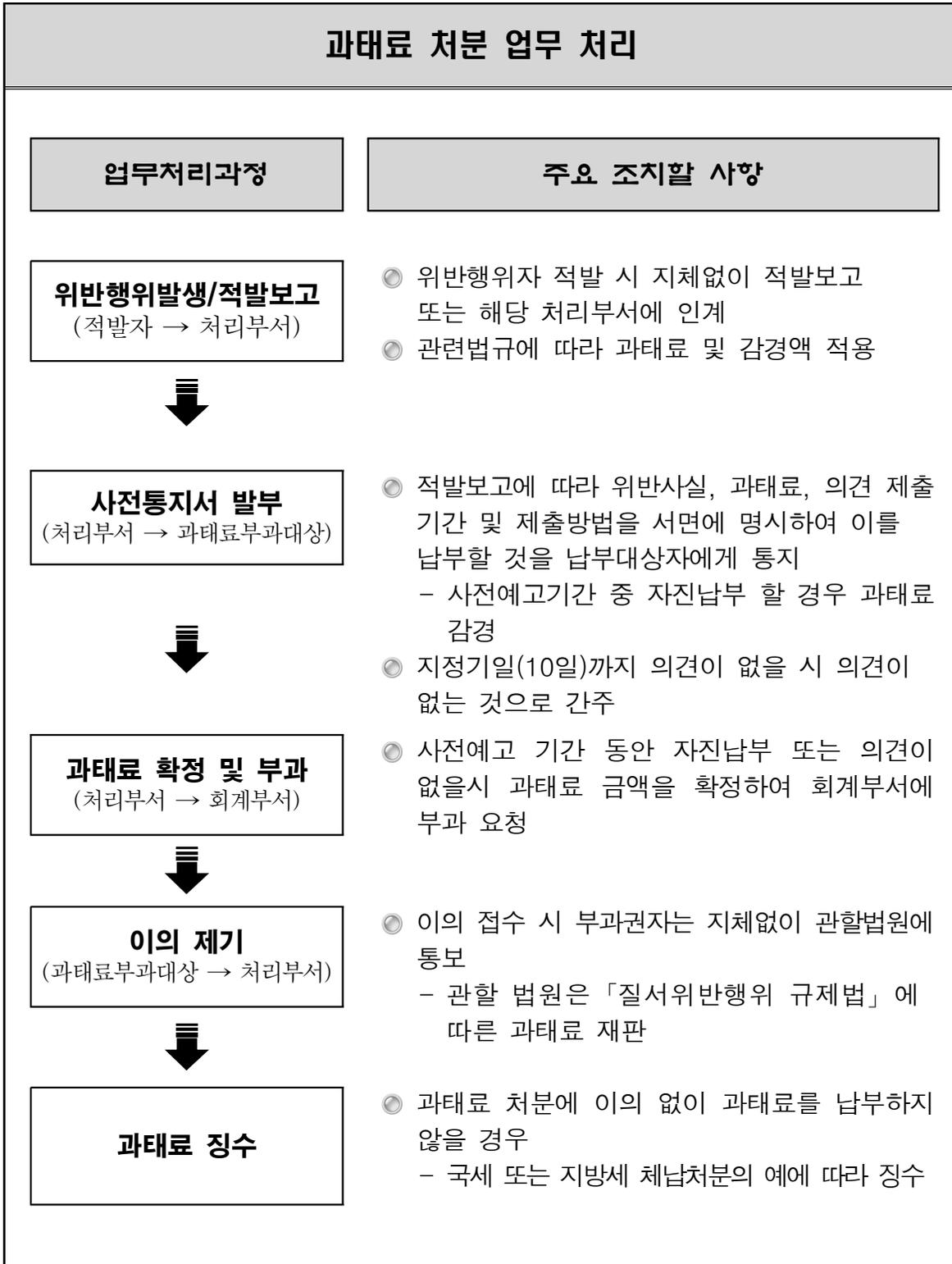
### I. 과태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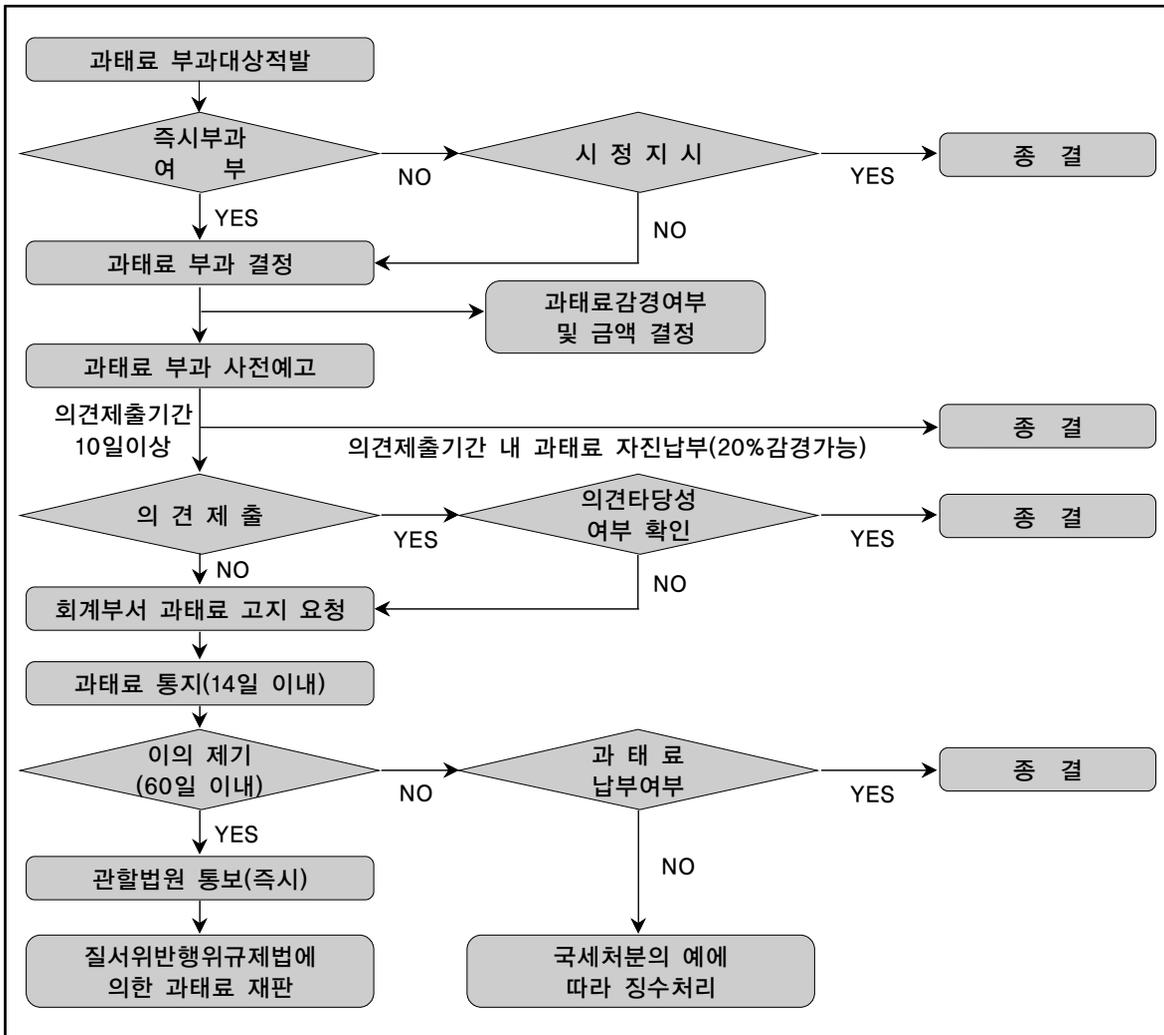
- 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하는 금전으로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임
- 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상의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애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과해지며, 재판절차가 없고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음

### II. 산림분야 과태료 부과 관련 법령

- 가.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구분하여 규정
  -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률 등
    - ※ 부과 근거(붙임 : 산림관련 법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참조)
-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의 과태료 위반법조항 이외 업무처리는 다음의 법령에 준하여 처리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행정절차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징수법

Ⅲ. 주요 업무처리 흐름도





【도표 1 : 과태료 업무처리 흐름도】

#### IV. 업무처리 절차

##### 1. 과태료 부과 대상 적발 및 부과결정

###### 가. 업무수행 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

-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정도·반복성·재해발생 등 상황에 따라 즉시 부과 결정 또는 시정조치(경고) 등을 지시, 이에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2. 적발보고서 작성요령

###### 가. 적발보고서 기재내용

● 위반자의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연락처 등

● 위반내용

- 관련 법조항 및 위반사항 및 위반 장소에 대한 주요 산 이름, 속칭명 등을 기재하고 추가로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간결하게 작성

※ 예시 : 상기자는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을 위반하여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속칭 참새골)에서 등산 중 라면을 먹기 위해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취사행위를 한 자임

● 일 시

- 위반일자 및 시분까지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날씨까지 기재

● 자인 서명날인

- 위반 내용을 확인하여 준 다음 반드시 자필 서명을 받되 글씨를 모를 경우 대신하여 기재한 후 오른쪽 엄지를 기준하여 지장날인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 부과권자(국유림관리소장)의 과태료 감경 판단 기준이 되므로 상세히 기재
- 기재사항 : 위반자의 구체적인 행위, 위반자의 동기(고의성), 위반행위의 크고 작음, 위반행위의 방치 시 초래할 수 있는 문제(산불발생 등), 위반자의 생활환경 등

나. 과태료의 부과(감경)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 적용

● 위반자가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음

● 부과권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 산정 시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위반자의 상황(기초수급대상자, 미성년자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 관련 근거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과태료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과태료 감경)

## ◇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3. 과태료 부과 시 의견진술기회 부여(사전통지)

가.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공문)으로 명시 납부할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10일 이상)의 기회 부여

※ 관련 근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

#### ◇ 사전통지 사항 ◇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4. 과태료 부과처리 요령

가. 과태료 처분에 이의없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 종결

- 자진납부의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100/20범위 내에서 감경가능

※ 관련근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나. 사전예고기간(10일) 내 의견 제출할 경우

-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조치 가능
- 제출한 의견 검토결과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과태료처분결과에 수용 또는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 미 제출 할 경우

- 과태료 부과 확정 및 회계부서에 부과요청
  -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납입 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

● 과태료 처분에 의견 혹은 이의제출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처리

※ 관련근거 : 국세징수법 제21조

5.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이의제출)

가.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권자(국유림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제1항

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수용하여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실시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제1항 ◇

**제20조 (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 (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산림관련 법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산림보호법 시행령(별표4) 2016.1.개정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법 제57조 제1항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 제5항제1호	10만원	10만원	10만원
3.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 제3항제1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4.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7조 제5항제2호	10만원	10만원	10만원
5.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 제3항제2호	30만원	40만원	50만원
6.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 제3항제2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7.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 제4항제1호	10만원	20만원	20만원
8.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 제4항제2호	10만원	20만원	20만원
9.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 제4항제3호	10만원	20만원	20만원
10. 법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법 제57조 제2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1. 산에서 취사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Q.질의** 산림 내에서 라면을 먹기 위해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취사행위를 하다가 단속반에게 발견되었다면, 즉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A.답변** 과태료는 벌금·과료(料料)와 달리 형법에서 형명이 없는 죄에 대한 행정질서 별로서 행정벌과는 달리 객관적 법규위반이 있으면 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하여 모든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반정도, 반복성, 재해발생 등 향후 초래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즉시 시정조치, 경고 등을 지시한 후 불이행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7)

## 2. 과태료 부과는 단속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한가요?

**Q.질의** 산림 내에서 불법취사 등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단속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과태료를 적발할 수 있나요? 즉 사법권이 없는 사람도 가능한 것인지?

**A.답변** 과태료는 행정벌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객관적인 법규위반행위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사법권이 없더라도 행정청에 근무하면서 국가 또는 행정청의 법규를 수행하여야 단속업무를 하는 사람(공무원 및 단속반원)은 위반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여부를 판단 행정청의 장에게 과태료 적발보고가 가능합니다.

과태료의 부과결정은 행정청의 장(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이 하게 됩니다

◇ 행정절차법 ◇

1.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7)

## 47. 산불예방 안내

### 산불예방 안내

#### ▶ 산불예방 안내

- 산림청에서는 건조기를 맞이하여 매년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2~5월, 11~12경)을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지도 확인 또는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농산 부산물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건수는 연평균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30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10만원 이하
- 산림 안에 담배꽂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산불 예방은

-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맙시다.
-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합시다.
-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맙시다.
-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을 하지 맙시다.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맙시다.

##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가능한 등산로 검색 방법

- 기 간 : 봄철(2.1~5.15),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 접속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접속 → 오른쪽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가능 등산로 안내' 팝업창 클릭 → 유의사항 열람 → 산 이름 검색 → 확인
  - 네이버 : 지도 접속 → 산 이름 검색 → 확인
- 정보 확인 방법
  - 등산로 개방구간 : '녹색'선으로 표시
  - 등산로 폐쇄구간 : '적색'선 및 '산불방지 통제구간'으로 표시.

▶ 찾아보기 방법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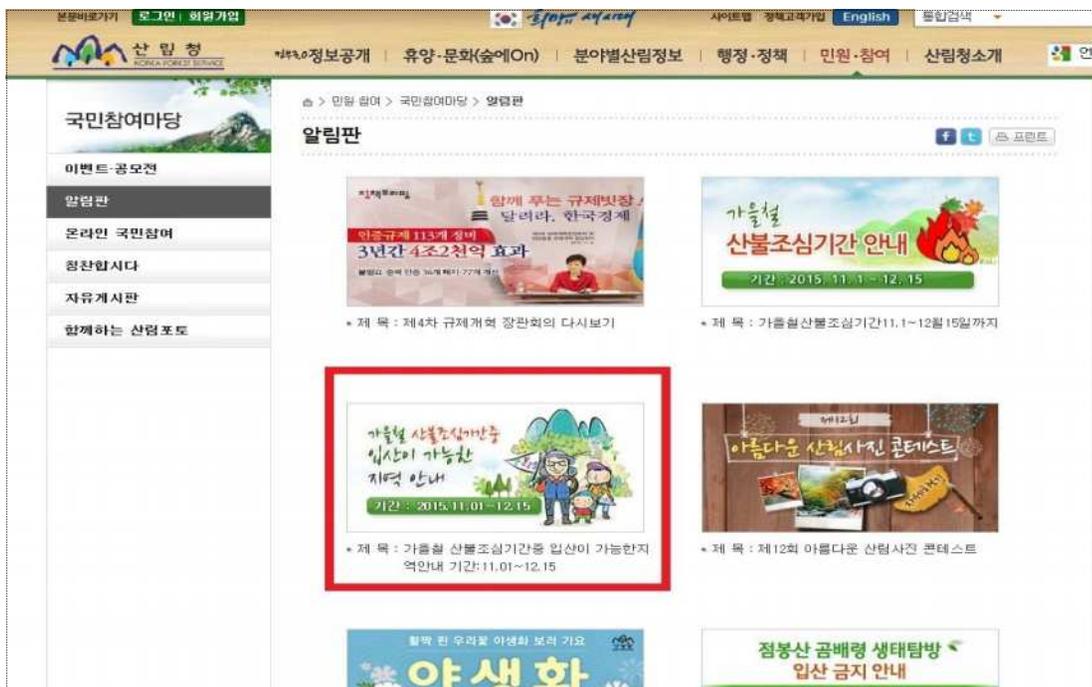
●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접속화면

① 오른쪽 중간 빨간색 박스 (팝업존) 박스 안 아래 전체보기(작은 네모) 클릭



② 팝업존 전체보기 화면

- 위에서 세 번째 빨간색 박스 “가을철 입산이 가능한 지역 안내” 클릭



③ 입산이 가능한 지역안내 클릭 화면

- 아래 검색하기 빨간 박스 클릭

201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1 ~ 12.15) 중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 안내

이 사이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통제하는 등산로 구간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지도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도 서비스 이용 전 아래사항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지도의 정보는 산을 찾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문서로 고시된 등산로 개방-통제 정보를 가공한 것입니다.
- 다만, 지도상 아직 미 반영된 일부 등산로가 있어 실제 관보-계시판 등에 공고된 문서와 일부정보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산행 계획 시에는 기관별로 고시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
- 국립공원은 일반 산림지역과 달리 등산로 통제기간이 11월 16일 ~ 12월 15일까지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통제기간	국립공원
11.16. ~ 12.15.	전국 18개 국립공원(경주-태안해안국립공원 제외) <a href="#">더보기 &gt;</a>

통제된 등산로에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산형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종합문의 :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6

입산가능 등산로 검색하기 >

④ 입산가능한 등산로 안내 화면

- 좌측 아래 빨간 박스에 해당 산이름으로 검색

\* 동일 이름 산이 함께 뜨니 지역 정보를 확인 후 해당 산 클릭

2015년 가을철 등산로 통제구간 ✖ 입산통제구역 + 확대 - 축소 ↶ 초기화 □ 거리 □ 면적

범례

등산로  통제구간

명칭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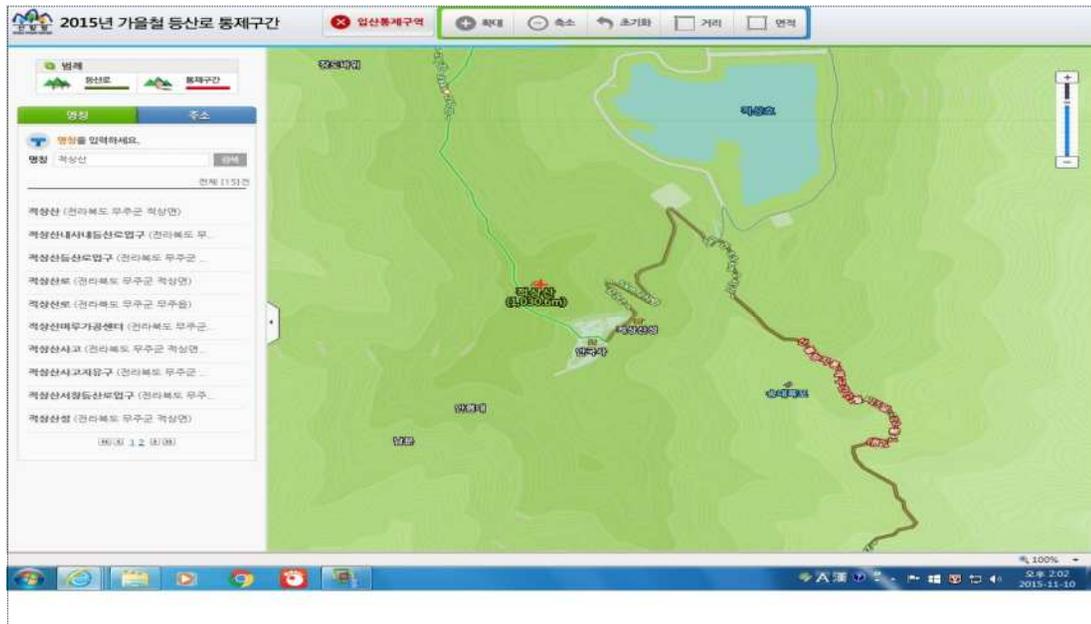
명칭을 입력하세요.

명칭 |

명칭을 검색해 주세요.

## ⑤ 명칭에 해당 산이름 적고 검색 클릭

- 산이름 검색 후 검색창 아래 여러 개소가 뜨면 해당 개소를 선택 클릭하면 우측에 지도로 표현이 됩니다. 입산가능 등산로는 녹색선으로 통제구간은 붉은 선으로 표시되면 확대해서 보시면 통제기간 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 ▶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국민행동요령

### ▶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 ▶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합니다.
-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연결된 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행동요령

### ▶ 산불예방 참여요령

- 산행 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지도 확인 또는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 성묘,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방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소각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한다.
- 산불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 ▶ 산행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대처요령

- 산불 발견시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다.

#### ▶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 산불진화 참여요령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괘이, 칼쿠리 등)와 안전장구 (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긴장한 젊은 분은 진화활동에 참여한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 1. 산불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나요?

**Q.질의** 산불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고, 이에 관한 설명을 해 주세요.

**A.답변** 산불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연소대상인 산림의 상태와 높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5종류로 구분합니다.

1. (지중화) 땅속의 낙엽, 썩은 나무줄기 등 부식층의 유기물질이 타는 것
2. (지표화) 낙엽, 풀 지표면에서 30cm 이하까지의 연료가 타는 것
3. (관목화) 조림지, 초류, 잡관목 등 180cm 이하의 연료가 타는 것
4. (수간화) 키가 큰 교목림에서 나무의 줄기가 타는 것
5. (수관화) 키가 큰 교목림에서 가지와 잎이 타는 것(주로 침엽수림)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불방지과(042-481-4253)

## 2. 산불이 계속 번져서 위험에 처했을 경우 대처요령은?

**Q.질의** 산불이 계속 번져서 위험에 처했을 경우 대처요령은?

**A.답변**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불방지과(042-481-4253)

### 3. 산불조심기간 개방 폐쇄되는 등산로 정보의 웹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Q.질의** 산불조심기간 개방 폐쇄되는 등산로 정보의 웹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A.답변** 봄철(2.1~5.15) 및 가을철(11.1~12.15) 산불조심기간 중 개방·폐쇄되는 등산로의 정보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접속 → 오른쪽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가능 등산로 안내' 팝업창 클릭 → 유의사항 열람 → 산 이름 검색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네이버 : 지도 접속 → 산 이름 검색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불방지과(042-481-4253)

### 4. 최근 10년('06~'15)간 산불 발생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Q.질의** 최근 10년('06~'15)간 산불 발생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최근 10년 평균 395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 발생현황으로 입산자 실화 157건(40%), 논·밭투령 소각 71건(18%), 쓰레기 소각 45건(12%), 담뱃불실화 및 성묘객 실화 등 기타가 122건(30%)으로 대부분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불방지과(042-481-4253)

## 5.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방식과 근무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질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방식과 근무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만18세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봄(1월)·가을철(10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을 실시합니다. 반복참여 제한과 장년층 우선선발(70%)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체력검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근무방법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기준 산불발생위험도, 지역실정과 기상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는 반드시 출동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불방지과(042-481-4253)

## 48. 사방사업

<p>목 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사태·토석류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li> <li>◎ 산지자원화 기반구축 및 경관조성, 수원함양에 기여</li> </ul>
<p>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보전사업, 산사태예방사업, 계류보전사업, 사방댐설치사업, 해안방재림조성사업, 해안침식방지사업, 산림유역관리사업, 사방댐준설 등</li> </ul>
<p>지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 70%, 지방비 30%</li> </ul>
<p>선정기준 우선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 따라 산사태·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사방사업 시행</li> <li>◎ 국토·경관보전·수원함양을 위해 필요한 지역, 민원요청지 등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행</li> </ul>
<p>신청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사업신청(시·군·구) → 조정(시·도) → 확정 및 배정(산림청)</li> </ul>
<p>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사방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4271</li> <li>• 042-481-4272</li> </ul> </li> </ul>

## 1. 산사태위험지구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Q.질의** ○○시 ○○면 ○○리 산○○번지의 일부가 산림경영계획 수립 당시 ‘산사태 위험지구’라서 별목에서 빠져 있는데, 위 번지 내 ‘산사태위험지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A.답변** 「산림보호법」 제2조제13호에서 정한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같은 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며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지역은 현재 산사태취약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2조제14호에서 정한 산사태정보체계에는 ‘산사태위험지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산사태위험지도’는 산지의 지형, 임상, 토심 등 9개 인자를 적용·분석하여 산사태 위험성을 5개 등급(1등급 : 산사태 위험 가장 높음, 5등급 : 산사태위험 가장 낮음)으로 구분한 지도를 말합니다.

산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산사태위험지도는 9개 인자만을 적용하여 제작되었으므로 산사태 예방활동(산사태취약지역 조사 등), 산사태 관련 정책·연구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지 여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사방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Q.질의**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A.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사태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등으로서 산주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3. 사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매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Q.질의** 사방사업 시행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 동의서를 받는 주체 및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A.답변** 「사방사업법」 제5조 등에 따르면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서 시·도지사 등이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협의·승인 등을 받아야할 것이며,

「사방사업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는 시·도지사 등은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Q.질의**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지방도, 국도 및 고속도로 등 도로 분야 현장에서 사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종(측구공, 맹암거공, 배수관공 등) 및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종(벌근제거, 절토, 성토, 법면보호공)을 수행하여 온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및 별표2(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및 업무범위)에서 정한 산림공학기술분야 종사경력을 인정받아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A.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및 별표2(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및 업무범위)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학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산림공학기술자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관련 산림공학기술 분야의 업무범위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설치사업, 사방사업, 산지전용,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휴양림·산촌생태마을·등산로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설계·시공, 시공지도 및 감리업무로 한정하고 있어, 주된 업무인 도로사업 분야의 현장경력은 관계법령상의 산림공학기술 분야 업무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동법 제24조에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범위로 규정한 분야에서 종사한 기간만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5. 사방댐이란?

**Q.질의** 사방댐의 기능과 효과는 무엇이며, 사방댐이 토석으로 모두 차면 어떻게 하나요?

**A.답변** 사방댐이란 산 속 계곡에 설치하는 폭 30m 내외의 작은 댐을 말합니다. 계곡의 경사도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빠른 속도의 토석류를 차단(1개소당 2,550m<sup>3</sup> : 5톤 트럭 510대 분량)하여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방댐이 토석으로 모두 찰 경우 생활권 지역의 사방댐 등 토석류의 차단이 필요한 곳 등은 준설을 실시하고, 상류 계곡의 경사도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이나, 바닥에 쌓인 토석을 퍼낼 경우 사방댐의 안전이 우려되는 곳 등은 준설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사태방지과(042-481-4271)

## 6. 사방사업 신청 절차는?

**Q.질의**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피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 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사업시행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합니다.

또한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방사업법」 제6조(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에 따라 사방사업계획을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사태방지과(042-481-4271)

## 7. 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에 해당하는지?

**Q.질의** 산지에 도로개설(토지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인공사면에 안전시설물(직접 보강 등 재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사방사업법」 제6조(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에 해당하는지요?

**A.답변** 산지에 도로개설(토지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인공사면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은 목적사업(도로개설)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주된 사업에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사태방지과(042-481-4271)

## 8.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없이 사방사업이 가능한지?

**Q.질의** 「사방사업법」 제6조(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에서 시·도지사가 사방사업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방지 지정·고시 후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방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서 사방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 지정·고시한 후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사태방지과(042-481-4271)

9. 공사비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가능여부는?

**Q.질의** 사방사업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만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계약금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현장대리인으로 2급 산림공학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비)의 규모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이라면 1급 산림공학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사태방지과(042-481-4271)

## 49.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p><b>목 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체계를 강화하고 방제 품질을 향상시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li> </ul>
<p><b>내 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 강화·집중방제·사후관리를 통한 피해 최소화</li> <li>◎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별 복합방제 추진</li> <li>◎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방지를 위한 재해저감사업, 나무주사, 피해목 벌채 등 추진</li> <li>◎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적기지원으로 성과제고</li> <li>◎ 기타 돌발해충 등에 대한 조기에찰·적기방제 등</li> <li>◎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추진</li> <li>◎ 국·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li> </ul>
<p><b>지원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제대 : 국고 100% , 방제인건비 등 : 국고 50%, 지방비 50% (강원도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병은 국비 70% 지원)</li> <li>◎ 소구역 선택베기 : 경상도에 따라 생산재 m<sup>3</sup>당 16~30천원 지원</li> <li>◎ 밤나무 항공방제 : 헬기 지원</li> <li>◎ 국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 국고 100%</li> <li>◎ 공립나무병원 및 생활권 민간컨설팅 : 국고 50%, 지방비 50%</li> </ul>
<p><b>선정기준 우선순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최우선 지원</li> <li>◎ 피해도심지역, 특정지역 및 주요경관지역 등 지원</li> </ul>
<p><b>신청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병해충 방제 : 사업신청(산주) → 대상지선정(시·군) → 취합·조정(시·도) → 확정·배정(산림청)</li> <li>◎ 민간컨설팅 : 대상지신청(수목관리자) →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시·군·구) → 컨설턴트 교육(산림청) → 컨설팅 실시(전문가)</li> <li>◎ 수목진단 서비스 : 진단신청(수목관리자) → 컨설팅(국·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li> </ul>

<p>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무단이동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나무재선충병이 1988년 부산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후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피해지역, 피해지역 연접지에서는 소나무 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단속을 통해 확산 차단</li> </ul>
<p>참나무 시들음병 방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년 최초 발생 후 '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나, '11년에 피해가 극심하였으며 '13년 인천지역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방제산물(훈증더미 등) 이동금지 및 감염목 방제에 적극 협조</li> <li>● 근원적 방제를 위해 산림소유자가 해당 시·군·구에서 입목 벌채 허가를 받아 피해지역 참나무류 입목에 대한 소구역 선택베기 실시</li> </ul>
<p>솔잎혹파리 방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도의 슈아베기 중심의 임업적 방제를 중점 실시하여 솔잎혹파리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li> <li>● 재해저감사업 산물은 가급적 수집하여 산주의 소득증대 추진</li> </ul>
<p>밤나무항공 방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농가의 자력방제가 원칙이나 종실해충에 한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1회 헬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조림지로서 평균수고 3m이상이고 급경사로 지상 방제가 어려운 지역</li> </ul> </li> </ul>
<p>생활권 수목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권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주기적인 약제방제 및 고독성 농약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 진단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국립나무병원(과학원), 공립나무병원(12개도), 수목진단센터(서울·강원·충북·전남·경상·경북·순천대학) 운영</li> <li>-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운영(5,000건)</li> </ul> </li> </ul>
<p>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방제정책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2-481-4076</li> <li>• 042-481-4038</li> </ul> </li> </ul>

## 1. 왕벚나무가 여름에 고사하는 원인이 알고 싶어요?

**Q.질의** 왕벚나무가 여름에 고사하는 원인이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수목의 고사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왕벚나무의 고사 원인은 몇 가지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식시기입니다. 작년도에 이식시기가 가을 일 경우에는 이식 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토양이 얼었다가 녹는 과정에서 뿌리가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금년도 봄에 극심한 가뭄입니다. 가뭄 시에 충분한 물 공급을 통해 건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 했을 경우 건조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식재지의 배수불량입니다. 수목 고사에 있어서 식재지의 배수불량이 많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금년과 같이 극심한 건조 후 많은 비가 단시일내에 내려서 뿌리부분에 오랫동안 물이 고여 있을 경우 잔뿌리가 썩어서 고사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식재지 주변에 고랑을 만들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가을에 뿌리 주변에 퇴비를 주어 뿌리의 활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부 산림생태연구과(02-961-2617)

## 2. 살충포집기 효과에 대한 연구자료가 있나요?

**Q.질의** 가로수 등나무에 사용하는 살충 포집기의 효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살충 포집기가 해충 뿐만 아니라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까지 죽여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연구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해충방제를 하시는지요?

**A.답변** 잠복소의 득과 실에 대해 연구된 자료는 없고 잠복소에서 월동하는 절지동물 군집에 대한 연구보고는 있습니다.

- 잠복소내에서 월동하는 거미류 군집구조의 조사연구, 1995. 한국거미연구소, 김주필, 김기준
- 가로수의 잠복소에서 월동하는 절지동물 군집의 종구성 연구, 1990. 한국거미연구소, 김주필, 이해병외1명
- 잠복소에서 월동하는 절지동물에 관한연구. 1988. 한국거미연구소, 이해병, 김주필외 2명

해충마다 생태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방제방법도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방제법은 저독성 농약을 이용하여 방제하는 화학적 방제법, 알이나 유충을 직접 잡아 제거하는 물리적 방법, 페로몬 이나 천적 등을 이용하는 친환경 방제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부 산림병해충연구과(02-961-2673)

### 3. 향나무에 나방이 많은데, 병해충명 및 방제법을 알려주세요.

**Q.질의** 6월 하순경 아파트단지내의 향나무에 나방같은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무를 흔들면 많이 날아 다닙니다. 그리고 향나무가 전체적으로 누렇게 색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병해충이며 방제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답변** 나방은 ‘향나무독나방(Parocneria furva)’으로 남한 전역에 분포합니다. 국외에는 일본, 중국에 분포합니다. 1화기 발생유충은 6월경 변태기가 되고 2화기는 7월에 부화되어 잎과 가지를 가해합니다. 성충은 7~8월과 8~9월에 연 2회 나타납니다. 암컷에 비해 수컷은 작습니다. 앞뒷날개 모두 잿빛이 도는 검은 색입니다. 앞날개에 무늬가 있으나 뚜렷하지 않습니다. 유충이 줄기 선단부의 잎과 신초의 잎을 가해하고 때로는 줄기를 가해, 고사시킵니다.

피해는 5월경과 7~8월경 2회인데 5월에는 그 피해가 유독 심하게 나타납니다. 유충의 몸길이는 20~30mm이며 머리는 황갈색이고 몸은 녹갈색이 있는 황갈색으로 배면에 암갈색의 가느다란 선 2개가 물결모양(세로)으로 나 있습니다.

아직 방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약은 없습니다. 피해가 심할 경우에 한하여 약해에 주의하면서 4월하순~5월초순(1화기), 6월하순~7월중순(2화기)에 나방류에 등록된 약제를 라벨의 사용방법에 따라 희석하여 잎과 가지에 충분히 살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전체적으로 누렇게 색이 변하는 것은 응애에 의한 피해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응애는 피해 가지를 흰 종이 위에 털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애의 피해가 심하면 되도록 연용을 피하여 밀베멕틴 유제 혹은 비펜트린 수화제를 2~3회 살포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부 산림병해충연구과(02-961-2673)

#### 4. 뱃나무 가지에 흰색물질이 생기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Q.질의** 뱃나무 가지의 흰색물질에 대한 병충해명과 방제법을 알려주세요.

**A.답변** 뱃나무 가지에 흰색물질이 생기는 것은 뱃나무 깍지벌레로 추정되며, 뱃나무 깍지벌레는 나무줄기나 가지에 모여 살면서 뱃나무를 흡즙 가해하며, 고약병을 유발시킵니다. 깍지벌레는 연 2~3회 발생하며, 성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피해가 적다면 피해가지와 줄기를 제거하거나 면장갑 등으로 문질러 없애시고, 클로르 피리포스 입상수화제(72%) 2,500배액을 10일 간격으로 2회 살포하시면 깍지벌레를 방제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부 산림병해충연구과(02-961-2673)

## 5. 참나무 해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Q.질의** 산책중 발견한 참나무 밑동에 무더기로 죽어있는 벌레들의 죽은 원인이 궁금합니다.

**A.답변** 벌레는 매미나방 유충입니다. 특히 2013년에 전국에서 국부적으로 돌발 대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가해수종은 참나무류를 비롯하여 낙엽송 등 여러 가지 활엽수와 침엽수의 입을 식해합니다. 연 1회 발생하며 알로 나무줄기에서 월동합니다. 4월 중순경 부화하여 6월 중순~7월 상순에 수관에서 나뭇잎을 말고 번데기가 됩니다. 성충은 7월 상순~8월 상순에 우화합니다. 교미한 암컷은 줄기 또는 가지에 무더기로 산란합니다.

자연생태계에는 매미나방 유충의 곤충병원성미생물로 Bt균이나 다각체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U자형으로 늘어진 개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부 산림병해충연구과(02-961-2673)

## 6. 소나무재선충 원목파쇄를 위해 인접지역으로 원목 이동이 가능한가요?

**Q.질의** 소나무 재선충 관리지역에서 별목한 원목파쇄를 위하여 같은 관할지역 같은동이며 또한 같은 소나무 재선충 관리지역으로의 운반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4(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에 의하면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 한다.

1. 별채된 감염목등을 발생지역과 연접한 지역에서 파쇄 또는 소각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이동시키는 경우.

라는 내용과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안에서 파쇄를 위하여 이동은 가능한게 아닌지요?

**A.답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령 제3조의4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발생지역과 연접한 지역이라 함은, 반출금지구역과 연접한 행정동, 리를 말하며 그 행정동, 리 또한 반출금지구역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동하려는 행정동, 리가 반출금지구역이며 감염목 등이 있는 지역과 연접해 있다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과(042-481-4069)

## 7. 소나무 솔잎혹파리 방제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

**Q.질의** 소나무 솔잎혹파리 방제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

**A.답변** 솔잎혹파리 성충은 5월 중순~7월 중순에 발생하여 솔잎에 산란합니다. 부화한 유충은 솔잎 기부로 내려가 잎 사이에서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벌레혹을 형성합니다. 6월 하순에 벌레혹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솔잎 생장이 중지되어 건전한 솔잎 길이보다 절반 이하로 짧아집니다. 유충은 9월 하순~다음해 1월(최성기 11월 중순)에 벌레혹에서 탈출하여 땅에 떨어져 흙 속으로 들어가 월동합니다. 벌레혹이 생긴 피해있는 겨울동안 황갈색으로 변하여 고사합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등록된 약제 중 나무주사용 티아메톡삼 분산성액제, 디노테퓨란 액제는 저독성이면서 효과가 우수합니다. 기타 토양처리제로 다이아지논 입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용시 반드시 농약 포장지의 사용설명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입제의 경우, 강우 시 약제가 식수원이나 농경지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살포하시기 바랍니다.

- 티아메톡삼 분산성액제 : 성충발생기 나무주사, 사용량은 농약 라벨의 나무주사 기준표 참조

- 디노테퓨란 액제 : 성충발생기 나무주사, 사용량은 나무주사 기준표 참조
- 다이아지논 입제 : 11월 하순경 토양전면처리, 사용량은 15kg/10a

▶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부 산림병해충연구과(02-961-2673)

## 8. 감나무 잎에 생긴 검은점 무늬는 무슨 병해인가요?

**Q.질의** 감나무 잎에 검은 점 무늬가 있는데 이것은 수목병의 명칭과 학명을 알고 싶습니다.

**A.답변** 감나무 둥근무늬낙엽병으로 판단되며, 한문으로 원성낙엽병, 영명으로는 circular leaf spot 입니다. 병원체는 *Mycosphaerella nawae* 입니다.

이 병은 주로 잎에 발생하며, 심하게 발생하면 잎이 조기 낙엽되어 나무 성장 및 과실 수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로 9월에 많이 발생하며, 특히 수세가 약한 나무에 피해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병원체는 낙엽 등에서 월동하기 때문에 병든 낙엽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예방적으로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시면 방제에 도움이 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부 산림병해충연구과(02-961-2675)

## 9. 황다리독나방 동정과 생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Q.질의** 황다리독나방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독나방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황다리독나방에 대한 동정 방법, 생태, 피해에 대하여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A.답변** 분포 및 피해 : 황다리독나방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 분포하면서 ‘층층나무’만 가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다리독나방은 알 상태로 월동해서 4월 중순에 애벌레가 나타나 층층나무 잎을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1령 부터 5령까지 유충기 동안 계속해서 피해가 나타납니다. 이후 5월말에는 번데기가 되고, 6월 초중순에 성충으로 우화하게 됩니다. 애벌레는 잎의 주맥만 남기고 모조리 섭식할 정도로 피해가 심하지만 나무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해충의 형태 : 애벌레시기에 몸의 색깔이 령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1령은 2mm크기의 짙은 갈색, 2령은 담갈색에 강모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4,5령기에는 짙은 흑색에 노란색 띠를 두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해충의 생태 : 번데기는 긴 타원형으로 옅은 노란색을 띠고있으며, 검은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충은 반투명의 백색을 띠며, 앞다리에는 황색의 띠 무늬를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황다리독나방은 1년에 1회 발생을 하고, 알은 약 40~50여개를 산란하며, 유충기간은 19일, 번데기 기간은 7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부 산림병해충연구과(02-961-2673)

## 10. 나무의사 자격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Q.질의** 나무의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나무의사가 하는일, 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A.답변** 나무의사제도는 2018년 6월 28일 산림보호법 개정(16.12.27)·시행(18.6.28)에 따라 시행된 제도입니다. 산림청은 아파트, 가로수, 공원 등의 생활권 수목의 예방과 치료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무의사’국가자격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나무의사는 말 그대로 나무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진단·치료하는 나무 전문 의사입니다.(산림보호법 제21조의 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

말합니다.) 나무의사가 되는 과정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하시면 됩니다. 양성기관과 세부 교육과정, 응시 자격요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산림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실제로 나무에 예방과 치료를 시행하는 전문가인 수목치료기술자도 나무의사제도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목치료기술자가 되고자 하신다면 양성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양성기관 자체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에 대해 진단·처방과 예방, 치료를 수행하고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만을 수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작물을 제외하고 산림은 물론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까지 즉 모든 나무의 진단과 처방은 나무의사가 할 수 있습니다. 단, 수목의 소유주는 수목진료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나무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던 나무병원은 폐지되고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병원이 새롭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나무병원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법 시행전('18.6.28) 1년 이상 나무병원에 종사하면 법이 시행된 후 5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이 인정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042-481-4035)

## 10.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은 어디인가요?

**Q.질의**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이 어디인지 문의합니다.

**A.답변**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은 전국에 10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현황

기관명	양성과정	소재지	연락처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03동 301호	02-880-4697
(사)한국수목 보호협회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211, 광노빌딩 4층	02-967-5048
신구대학교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적푸리로 9, 신구대학교식물원	031-724-1622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459동 302호	055-772-1838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대학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53-950-5746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GnR Hub 3~4층	062-530-2080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42-821-7880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1호관 002호	033-250-7225
충청북도 산림환경 연구소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목원길 51,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043-220-6172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본부 별관 3층	063-219-5238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042-481-4035)



기타 분야





## 50. 스마트 산림재해 앱

근거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보호법 제3조('18.01.16 시행)</li> </ul>
앱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국민이 참여해 산림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산불 등과 같은 산림재해나 산림훼손 등에 대해 신고하는 서비스</li> </ul>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불, 산림훼손, 산림병해충 신고 및 처리 결과 수신</li> <li>○ 산불 발생, 산사태 예측정보 알림</li> <li>○ 산사태 예측, 산불 위험지수</li> <li>○ 현 위치 기상정보 조회</li> <li>○ 현 위치 일출/일몰 조회</li> <li>○ 산불 대처요령, 산사태 국민 행동요령</li> <li>○ 산림훼손 관련 정보</li> <li>○ 산악AWS기상정보 조회</li> <li>○ 산악 기상망 조회</li> </ul>
서비스 사용 절차	<p>플레이스투어 / 앱스토어 검색 → 다운로드 설치 → 실행(사용)</p>
대표화면	 <p>The image shows two screenshots of the 'Smart Forest Disaster' app. The left screenshot displays a map interface with a location pin, weather information for 'Daeseon-myeon Seogu-dong'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4) showing a temperature of 7.0°C and a fire risk level of '낮음' (Low). It also includes sunrise and sunset times (07:41 and 17:39) and icons for reporting various types of disasters. The right screenshot shows the app's main menu with options for reporting forest fires, forest damage, forest diseases, and forest fires, along with a '전송' (Send) button and a bottom navigation bar.</p>
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li> <li>• 042-481-4285</li> </ul>

## 1. 스마트 산림재해 앱이란 무엇인가요?

**Q.질의** 스마트 산림재해 앱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산불 신고,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산림훼손 신고 등을 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를 수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산사태 예측정보, 산불 위험지수, 일출/일몰 정보, 현 위치 기상정보 등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산불대처요령, 산사태 국민 행동요령 등을 확인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042-481-4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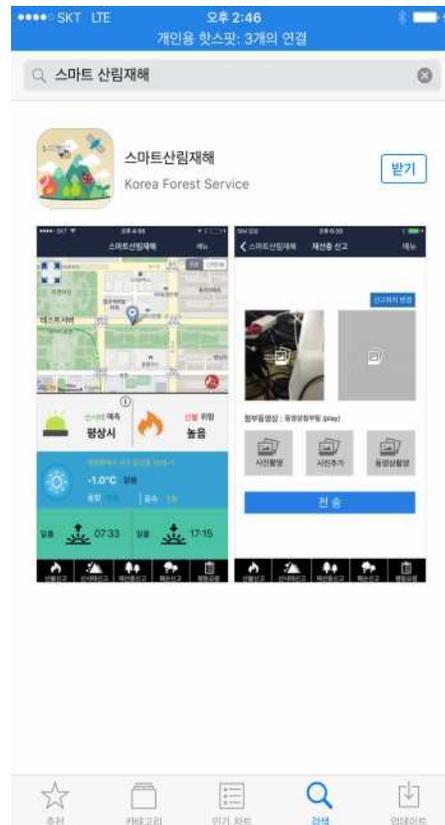
2. 스마트 산림재해 앱은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요?

**Q.질의**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사용하기 위해 어디서 다운로드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스마트 산림재해”로 검색하여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 담당부서 :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042-481-4285)



### 3. 신고 포상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Q.질의**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방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답변** 포상금 지급 방안은 관련 법적 근거에 따릅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포상금의 지급)

- 산림청장은 제19조 제5항 및 제36조 제1항 제4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산림보호법」 제48조(포상)

-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불법산지전용 및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산불관련 범법자 신고 등은 개별 규정에 따라 조치, 이미 신고 조치된 건에 대해서는 포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067)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042-481-4064)

## 51.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련 Q&A

**Q.질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A.답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기후대별, 권역별 국립수목원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기후 변화에 취약한 산림생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보전·연구를 목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활용하여 즐거움과 지식을 제공하며 운영하는 곳입니다. 특히 한국판 노아의 방주라고 불리는 시드볼트(Seed Vault)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와 산림생물들의 멸종에 대비하여 세계최초 지하터널형 산림종자연구보존 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절별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청동기견기, 백두대간 모래그림놀이, 호호호 손맛사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질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홈페이지는 네이버, 다음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라고 검색하시거나 <http://www.bdna.kr>로 직접 주소창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용은 자유관람과 예약관람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관람은 예약 없이 수목원에 오셔서 방문자센터관람 및 자유관람구역 탐방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재는 임시개원 중이므로 진입 및 커뮤니티지구(어린이정원, 모험의 숲, 식물 분류원, 약용식물원)를 도보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동절기 특별프로그램 예약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 후 참여하고 싶으신 날짜에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관람안내 및 이용안내 약관을 꼼꼼히 확인 후, 간단한 정보를 기입하셔서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대표전화(054-679-1000)를 통해 이용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질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시원에 대해 알려주세요.

**A.답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6개 주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주제원으로는 암석원, 만병초원, 백두대간자생식물원 등이 있습니다. 암석원은 수목한계선 주변에 자라는 고산식물들을 암석과 함께 자연스럽게 전시 및 보전하는 정원이며, 만병초원은 고산식물을 대표하는 상록성 진달래속 식물인 만병초를 이용하여 조성한 정원이고, 백두대간자생식물원은 백두대간에 자생하는 식물을 수집, 전시하여 현지 외 보전원 역할을 수행하는 정원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전시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Q.질의** 수목원의 숙박시설은 이용할 수 있나요?

**A.답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내에 교육용으로 운영되는 숙박시설이 있으나 임시기관 중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정식 개원 후에 교육을 위한 단체이용객 용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여행이나 휴양을 위해 숙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근 숙박시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질의** 객실에는 어떤 물품이 비치되어 있나요?

**A.답변** 객실에는 침구류, 헤어드라이기, TV, 에어컨, 냉장고, 비누, 휴지, 수건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세면도구는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 52. 국립산림치유원 관련 Q&A

**Q.질의** 국립산림치유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A.답변** 국립산림치유원은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기존 휴양림과 달리 크게 세 종류의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로마테라피를 비롯한 실내치유, 치유정원 및 치유숲길에서 이루어지는 실외치유, 그리고 국립산림치유원만의 특별한 수치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Q.질의** 국립산림치유원을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개인 고객의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 예약 날짜와 객실 종류를 선택하고 온라인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 다음, 혹은 구글에서 '국립산림치유원'이라고 검색하시거나 [www.daslim.fowi.or.kr](http://www.daslim.fowi.or.kr)로 직접 주소창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단체의 경우, 대표전화(054-639-3400)를 통해 원하시는 날짜, 객실, 시설 대관 등의 주요 내용을 상담한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산출내역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질의** 객실 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혹은 숙박시설만 따로 이용할 수 있나요?

**A.답변** 국립산림치유원은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므로 객실만 따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중 1박2일로(2인 1실 기준) 이용하실 경우, 치유프로그램 6시간, 식사 3식 등을 포함하여 125,000원입니다. 주말의 경우, 144,000원입니다.

**Q.질의** 객실 내 입·퇴실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A.답변** 객실 입실은 14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며, 퇴실 시간은 오전 11시 이전입니다.

**Q.질의** 객실에는 어떤 물품이 비치되어 있나요?

**A.답변** 객실에는 침구류, 헤어드라이기, 냉장고, 비누, 휴지, 내선전화 및 생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세면도구와 수건은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Q.질의** 치유숲길 코스에 대해 알려주세요.

**A.답변** 가장 대표적인 치유숲길로는 마실치유숲길이 있습니다. 마실치유숲길은 (구)옥녀봉휴양림 부근에서 시작되어 주치마을 부근까지 이어지는 코스이며 2km의 테크로드도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테크로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도 편리하게 숲을 접할 수 있는 무장애숲길을 말합니다. 국립산림치유원의 치유숲길은 15분부터 3시간 30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53. 기타사항

### 1. 산림보호구역 내 초크베리 식재가 가능한지요?

**Q.질의** 산림보호구역(수원1종)으로 지정된 임야내에서 입목벌채(형질변경없음)만 하고 초크베리를 식재코자 합니다. 입목벌채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어떤 허가(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만약 형질변경이 수반된다면 산지전용허가 대상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답변**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지의 경우에는 행위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초크베리 식재를 위한 입목벌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나무가 아닌 산채나 산약초를 재배하거나 굴취·채취하는 경우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067)

## 2. 보호수 지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Q.질의** 예규에 찾아보니 보호수 지정조건은 나와 있는데, 지정절차는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A.답변**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호수의 지정·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보호수가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은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의 지정 절차는 같은 법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를 준용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사유,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공고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067)

## 3. 약초채취 허가증이 별도로 있나요?

**Q.질의** 약초 채취허가증을 만들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A.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6호에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 산채나 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임의로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약초 채취에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산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유림은 해당 산주, 공유림은 공유림을 관리하는 시군(산림과) 등에,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장으로 부터 동의(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7)

#### 4. 국립자연휴양림 객실과 야영시설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Q.질의** 국립자연휴양림 객실과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예약방법이 궁금합니다.

**A.답변** 국립자연휴양림 객실과 야영시설에에서는 홈페이지(www.huyang.go.kr)와 ARS를 통해 회원가입 후 예약하는 방법입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예약>

###### □ 선착순 예약

- 비수기(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 제외)기간 중 주중에 대한 예약방식입니다.
- 휴양림 예약메뉴에서 숙박일, 기간, 지역휴양림, 시설종류를 선택해 예약 신청 후 결제를 통해 예약이 완료됩니다.
- 예약은 1일을 기준으로 5개의 시설물까지 예약을 제한하며, 사용기간은 총 3박4일까지 가능합니다.
- 예약신청은 매주 수요일 전체 휴양림 객실, 야영장 모두 09시부터 가능하며, 사용일로부터 6주 전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예시) 사용일 2019년 4월 25일, 예약일 2019년 3월 20일

※ 단, 화요일, 수요일이 공휴일이면 예약 가능합니다.

###### □ 추첨제 예약

- ①성수기(7월 15일~8월 24일) 기간 및 ②비수기(7월 15일~8월 24일 제외) 기간 중 주말(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에 대한 예약방식입니다.
- 성수기 기간에 대한 추첨은 매년 5월 중 공지합니다.
- 비수기 주말에 대한 추첨은 매년 4일 오전 9시 ~ 9일 오후 6시까지 기간에 다음 달의 주말 시설물에 대하여 예약신청 후 매월 10일 추첨 결과를 공지합니다.

- 휴양림 예약메뉴의 추천제에서 지역, 휴양림, 시설, 숙박일을 선택해 예약 신청을 합니다.
- 신청횟수는 객실과 야영시설 모두 각각 1인당 1회만 가능(해당날짜가 있는 경우 1박2일, 2박3일, 3박4일 선택가능)합니다.
- 미 신청된 객실의 경우 추천기간 종료 후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전환되어 판매됩니다.

〈ARS 예약(1800-9447)〉

- 만65세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예약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은 휴양림별로 ARS 전용 객실을 할당하여 매월 추천제 예약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성수기에도 동일하게 운영)
- 추천신청은 다음 달 시설물에 대하여 매월 4일 오전 9시 ~ 8일 오후 6시 까지 신청하며, 매월 13일 결과를 발표하고, 당첨자가 결제를 통해 예약을 확정합니다.
- 추천제 방식으로 예약을 진행하고 잔여객실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예약 진행합니다.

▣ 담당부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지원과(042-580-5544)

5.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예약 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Q.질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예약하고,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있으며, 위약금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① 비수기 위약금(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 사용 예정일 2일 전 취소 : 전액 환불

- 사용 예정일 1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불

-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불

※ 단, 결제 후 1시간 이내 취소 할 경우 전액 환불되며, 예약금 환불 시 송금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② 성수기 위약금(성수기 : 매년 7월 15일~8월 24일)

-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 사용 예정일 10일 전 취소 : 전액 환불

- 사용 예정일 9~7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불

- 사용 예정일 6~5일 전 취소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불

- 사용 예정일 4~3일 전 취소 : 사용료의 40% 공제 후 환불

- 사용 예정일 2~1일 전 취소 : 사용료의 60% 공제 후 환불

-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불

※ 단, 결제 당일 취소 할 경우 전액 환불(결제일 24:00시까지)되며, 예약금 환불 시 송금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 담당부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지원과(042-580-5544)

6. 국립수목원(광릉수목원)은 꼭 예약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한가요?

**Q.질의** 국립수목원(광릉수목원)은 꼭 예약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한가요? 현장예약은 안 되는 것인가요?

**A.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예약자 우선 입장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도 입장권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광릉 숲의 보존을 위해 1일 관람인원을 평일(화요일~금요일)은 5,000명, 토요일, 공휴일은 3,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성수기, 주말, 공휴일에는 사실상 현장입장이 어렵습니다.

예약은 방문일 31일전 저녁 12시에 열리는 것은 아시죠? 성수기에는 불과 몇 시간만에 마감이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관람인원 범위 안에서는 전화로도 가능하며 국립수목원 상담실 (☎031-540-2000)에서 예약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수목원 연구지원과(031-540-1028)

## 7. 귀속 임야대장 등재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Q.질의** 임야 귀속대장 등재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답변** 국유(귀속)임야대장 등재여부는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042-481-6302)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국유림관리과(042-481-4094)

## 8. 임상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Q.질의** 임상도가 필요한데요, 보내주실 수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혹은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답변** 임상도는 우리나라 산림의 분포현황(임종, 수종, 영급, 경급, 수관밀도)을 파악하기 위해 항공사진을 판독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제작한 산림주제도입니다. 산림청에서는 1972년부터 약6차에 걸쳐 임상도를 제작하였으며, 산림행정 업무 외에도 토지적성평가 등 각 분야 행정, 학술, 연구 업무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일반국민이 원하는 지역의 임상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산림청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에서 웹서비스하고 있으며, 수치임상도가 필요하실 경우(공공기관 또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 한함)에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문 요청시 1) 사업의 목적 및 임상도 활용계획과 2) 해당도엽명(번호)을 기입하셔서 보내주시면 확인 후 해당도엽의 수치임상도를 전자저장매체로 전달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기획조정관 정보통계담당관(042-481-4125)

## 9. 경채에 관하여 알고 싶어요.

**Q.질의** 임업직 9급 경력경쟁채용(경채) 시험은 언제쯤 있을 예정인가요?

**A.답변** 임업직 공무원 채용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채에 관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원(빈자리)이 많이 발생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산림청에서 특별한 경우에 경력경쟁채용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채 여부는 결원상황, 공채인원 임용(발령)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향후 경채시행여부(시기)를 미리 공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채는 불규칙적으로 시행되므로 공채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운영지원과(042-481-4043)

## 10. 향속림 시업이 무엇인가요?

**Q.질의** 향속림과 향속림시업의 의미와 구분을 각기 구별해서 설명해 주세요.

**A.답변** 향속림은 산림을 생물 유기체로 간주하여 자연친화적인 향속을 도모하는 산림을 의미하며, 물러 교수가 제창한 향속림사상은 임지, 임목, 지중동물, 관목, 지피 식생 등 모든 산림 유기체의 생명력이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들 유기체가 향속(계속)될 수 있도록 산림을 경영해야 한다는 사상을 말합니다.

향속림시업은 산림 유기체의 향속을 유지할 수 있는 시업으로 조림학에서는 임형 또는 작업종을 임지의 지속적 무육 능력을 기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Wagner 씨는 대상획벌림, Meyer 씨는 소면적림, Tschesberg 씨는 택벌림 시업을 강조하였으며, 이들 모두는 Gayer 교수가 주창한 임지 생산력을 유지 증진하는 작업방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물러 교수는 '건전한 산림 유기체의 향속'이라는 기본 이념 하에 시행하는 모든 산림경영 작업종을 총괄하여 '향속림시업'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속림시업은 산림 유기체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개별작업 등은 배제하고 이령림으로 혼효된 산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업 방법으로 택벌림, 이단림, 복층림, 산벌림 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들 시업이 산림 유기체의 건정성이 유지되면서 산림축적과 생장량의 양적 증가 와 목재의 질적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합자연적인 향속림시업이 되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 산림산업연구과(02-961-2823)

## 11. 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언을 해 주세요.

**Q.질의** 귀농, 귀촌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장기적으로 산림도 가꾸고 생활도 할까하여 임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A.답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도모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경제림 조성 : 불량임지, 산불·병해충피해지, 수확벌채지 등에 경제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산주의 소득 증대 기여하는 산림경영의 유형.

※ 경제수종 : 소나무 낙엽송 해송 삼나무 편백 잣나무 참나무류 백합나무 가문비 자작박달 노각 음나무 들매 물푸레 등 → 조림권장수종100여종에 따라 벌기령이 15년~60년 동안 나무를 가꾸워서 최종 수확 생산

산림경영계획수립 : 경제림 조성을 위해서는 조림, 육림, 벌채, 임도시설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인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내용

- 조림에 관한 사항 : 조림수종 면적 분수
  -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가지치기, 간벌사업
  - 벌채에 관한사항 : 개별, 택벌, 모수벌채, 수종갱신 벌채
  -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 임도, 작업로, 운재로, 산림경영관리사
  - 산림소득사업에 관한 사항 : 8종류 90개품목.
- 대리경영 제도 : 영세산주, 원거리에 거주하는 부재산주가 방치한 산림을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대리 경영을 수행하는 임업경영 방식입니다.

- 실행주체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 계약기간 : 5년이상

○ 경제림조성 시 혜택

-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 시장 군수의 인가 받아 산림사업 수행 시 사업비 지원 : ha당 매년 책정된 사업비의 90% 국고 보조 (국고 : 70% 지방비 : 20%)

- 세제혜택

- 소득세 : 조림기간이 10년이상 시 벌채, 양도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 증여세 :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받아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를 영 농자녀에게 증여시 면제.

- 재산세 :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받아 시업중인 임야.

○ 단기소득작물 재배

-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있도록 목재생산 (경제림조성)과 함께 단기소득 작물을 산림내에서 복합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지정한 품목

- 수실류(14종)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8종)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 복령

- 산나물류(12종)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18종) : 삼지구엽초, 삼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플, 마

- 약용류(20종)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율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6종)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6종)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산림 복합경영 :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산업과 단기소득 사업을 조화롭게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산림경영 기법입니다.
  - 지원기준 : 국고 지방비 각20% 용자 20% 자부담 40%
  - 용자조건 : 연리3%, 3년거치 7년상환
- 휴양림, 수목원, 삼림욕장, 숲길 조성 등 시설
  - 산림내 각종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는 산림 사업
  - 수목원조성 : 산림면적 2ha 이상,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받은 자, 지원비율(국고용자 80% 자부담 20%), 용자조건(연리3%, 10년거치 10년 상환)
  - 휴양림 조성 : 산림면적 30ha이상,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자, 지원비율(설계금액의 80% 용자), 용자조건(연리 8%, 10년 거치 10년 상환)

▶ 담당부서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지식서비스단(02-6393-2767)

## 12. 제주도의 소나무 면적을 알려주세요.

**Q.질의** 제주도의 소나무 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산림자원의 조사에 따라 산림자원조사결과인 산림통계를 5년 주기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 지역 소나무림 면적은 2015년 기준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기준 제주도지역 소나무림 면적은 “산림청 홈페이지 - 산림통계 - 임업 통계연보 - 임업통계연보(2018) - p162 주요수종별 산림면적”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15,071ha입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기획조정관 정보통계담당관(042-481-4167)

### 13. 해외영농개발자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Q.질의** 해외 이민자로 국적복원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해외영농 개발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산림청이나 농림부에 제출할 창구가 없습니다.

일단 자격이 되는지, 만약에 된다면 어떤 창구를 통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A.답변**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해외산림자원(조림 포함)을 개발하고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 복원이 안된 상태라면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신고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적복원 이후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개발사업은 한국 농어촌공사(031-420-3290), 임산물은 산림청에 해외자원개발 사업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림청 해외자원협력관 해외자원개발담당관(042-481-4089)

# 부 록





## 부록 ① 산림교육 과정 안내

### ① 산림교육원 일반인 대상, 주요 교육과정

#### ■ 산림경영교육

- 기술교육을 통해 산림을 지속적·효율적 이용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기간	기당인원	비 고 (관련자격증)
종묘실무과정	연1회	5일	30명	묘목생산 및 양묘장 관리 등
산림경영계획과정	연1회	5일	30명	산림경영관리·활용 등

#### ■ 산림자원교육

- 내손으로 목조주택, 목공품 만들기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기간	기당인원	비 고 (관련자격증)
목조주택과정	연3회	5일	35명	목조주택시공 실습 등
생활목공과정	연3회	5일	35명	생활목공품제작실습 등

#### ■ 산림소득교육

- 친환경 청정임산물 생산으로 고소득 창출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기간	기당인원	비 고
유망유실수재배과정	연2회	5일	35명	복분자·머루·헛개 등
조경수재배과정	연2회	5일	35명	조경수(삼목·접목·발아) 등
산약초재배과정	연2회	5일	35명	산약초, 산마늘, 하수오 등
야생화분재과정	연2회	5일	35명	야생화·분재실습 등
산양삼재배과정	연2회	3일	35명	산양삼

## ■ 산림기술교육

### ○ 산림관련 자격증 취득 관련 기본교육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기간	기당인원	비고 (관련자격증)
산림기사입문과정	연1회	5일	30명	산림기사
조경기사입문과정	연1회	5일	30명	조경기사
종묘실무과정	연1회	5일	30명	임업종묘기사
사방공학전문가과정	연2회	10일	30명	산림공학기술자
임도공학전문가과정	연1회	10일	30명	산림공학기술자

### ○ 전문인력 양성 교육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기간	기당인원	비고
가로수기술자과정	연2회	3일	50명	민간가로수기술자 대상 전문기술 배양
산불전문강사양성과정	연1회	10일	20명	산불방지관련 교육강사 양성
곤충산업화인력양성과정	연1회	5일	30명	곤충의 산업화 전문인력 양성
수목식별과정	연3회	5일	30명	온·난대림 수목 식별요령 및 실습

## ■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관련 교육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기간	기당인원	비고
종묘실무과정	연1회	5일	30명	묘목생산 및 양묘장 관리 등
유망유실수재배과정	연2회	5일	35명	복분자·머루·헛개 등
산약초재배과정	연2회	5일	35명	산약초, 산마늘, 하수오 등
산양삼재배과정	연2회	3일	35명	산양삼

## ■ 산림치유 및 산림문화 교육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기간	기당인원	비고
산림치유이해과정	연3회	5일	35명	산림치유 지식습득 및 체험
정원조성관리실무과정	연1회	5일	30명	정원 조성·관리 실무교육 및 견학
산림레포츠의 이해 및 활용과정	연1회	5일	30명	다양한 산림레포츠에 대한 이해와 활용정보 제공

② 한국임업진흥원 교육과정

○ 임업기술 현장교육장

교육장	영주 교육장	평창 교육장	남원 교육장	부여 교육장
과정명	산양삼반		산양삼·산약초반	단기임산물반
소재지	경북 영주시 순흥면	강원 평창군 진부면	전북 남원시 아영면	충남 부여시 은산면
교육과목	산양삼		산양삼, 곰취 등	밤·표고·산채류
교육내용	<p>(이론교육) 해당 작물별 재배·관리에 대한 생육주기별 주요 이론 해당 작물의 재배적지 선정 및 토양·환경관리법 해당 작물의 계절별 식재 후 관리법</p> <p>(실습교육) 종자, 종묘, 파종, 이식, 관리, 수확 및 품질관리 등의 전반적인 실습교육</p> <p>(기타교육) 선진지 견학, 합동 강의 및 특강, 전시회 실시 등</p>			
교육기간	매년 3월 ~ 10월(80시간, 1회/2주)			
교육인원	각 과정별 30명			
교육신청	<p>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작성 후 우편, 팩스, e-mail 접수</li> <li>교육생 선발 공지 : 개별통지</li> </ul>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양삼 등 임산물 재배 희망자 및 경험자</li> </ul>			

○ 산양삼·산약초 CEO 양성과정

교육장	산양삼·산약초 홍보교육관
과정명	산양삼·산약초 CEO과정
소재지	경북 영주시 부석면
교육과목	산양삼·산약초
교육내용	<p>(이론교육) 해당 작물별 재배·관리 고급기술 및 품질향상법  임산물 CEO를 위한 경영마인드 교육  건강관리 및 교양 등 일반소양교육</p> <p>(현장교육) 해외 등 선진지 견학 및 토론, 사업아이템 구상 및 공유</p>
교육기간	매년 3월 ~ 10월(60시간, 1회/2주)
교육인원	각 과정별 30명
교육신청	<p>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작성 후 우편, 팩스, e-mail 접수</li> <li>• 교육생 선발 공지 : 개별통지</li> </ul>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경영인(독립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li> <li>• 총동문회의 추천을 받은 자</li> </ul>

● 산양삼 재배관리사 양성과정

교육장	산양산삼·산약초 홍보교육관
과정명	산양삼 재배관리사 자격증 취득과정
소재지	경북 영주시 부석면
교육과목	산양삼
교육내용	<p>(이 론 교 육) 산양삼의 정의 및 역사적 고찰  산양삼 재배기술  산양삼의 생리·생태적 특성  고품질 산양삼 육종  산양삼 재배지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  산양삼 재배적지 선정 및 토양관리  산양삼 성분 및 효능  산양삼 가공  산양삼 산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산양삼 유통</p> <p>(자격증 시험) 산양삼 재배관리사</p>
교육기간	6월, 7월(25시간, 5주)
교육인원	각 과정별 40명
교육신청	<p>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작성 후 우편, 팩스, e-mail 접수</li> <li>• 교육생 선발 공지 : 개별통지</li> </ul>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양삼 및 단기임산물 CEO 이수자</li> </ul>

### ③ 산림청 지정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 ■ 산림경영교육

과정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복합경영의 전반적인 과정을 교육하여 산림에 대한 투자욕 고취 및 능률적인 산림경영을 유도</li> <li>⊙ 우수산양삼 생산 및 활로모색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li> <li>⊙ 남부지역 조경수의 생산량 증대 및 품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li> </ul>																								
교육대상	⊙ 산주 및 임업종사자 등 관심있는 일반인(과정별 30명)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및 면접(생략가능)</li> <li>⊙ 접수기간 : 매년 2월~3월(수시접수가능)</li> </ul>																								
교육기간	⊙ 2015년 3월 ~ 10월(프로그램참고)																								
교육프로그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교육과정</th> <th style="width: 20%;">교육일정</th> <th style="width: 15%;">교육기간</th> <th style="width: 10%;">인원</th> <th style="width: 4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귀촌산림 경영과정</td> <td>2015.03.24.~ 2015.06.23</td> <td>매주화요일 13회</td> <td>30명</td> <td>귀농귀촌, 산림복합경영, 토양관리등</td> </tr> <tr> <td>산양삼 특성화과정</td> <td>2015.03.26.~ 2015.10.22</td> <td>매주목요일 13회</td> <td>30명</td> <td>재배, 기술 가공, 품질관리 등</td> </tr> <tr> <td>산채재배 특성화과정</td> <td>2015.03.05.~ 2015.09.03</td> <td>매주목요일 12회</td> <td>30명</td> <td>재배기술, 번식방법, 종자파종 등</td> </tr> </tbody> </table> <p>※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p>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기간	인원	비 고	귀촌산림 경영과정	2015.03.24.~ 2015.06.23	매주화요일 13회	30명	귀농귀촌, 산림복합경영, 토양관리등	산양삼 특성화과정	2015.03.26.~ 2015.10.22	매주목요일 13회	30명	재배, 기술 가공, 품질관리 등	산채재배 특성화과정	2015.03.05.~ 2015.09.03	매주목요일 12회	30명	재배기술, 번식방법, 종자파종 등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기간	인원	비 고																					
귀촌산림 경영과정	2015.03.24.~ 2015.06.23	매주화요일 13회	30명	귀농귀촌, 산림복합경영, 토양관리등																					
산양삼 특성화과정	2015.03.26.~ 2015.10.22	매주목요일 13회	30명	재배, 기술 가공, 품질관리 등																					
산채재배 특성화과정	2015.03.05.~ 2015.09.03	매주목요일 12회	30명	재배기술, 번식방법, 종자파종 등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복합경영기술 향상으로 기술력 증대</li> <li>⊙ 산림경영 의지 확산 및 마인드 고취</li> <li>⊙ 교육 후 포럼 활동으로 산림복합 종사자간의 정보교류 확대</li> </ul>																								
그 외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기술정보지원</li> <li>⊙ 산림산업네트워크구축 및 운영</li> <li>⊙ 산림기술컨설팅</li> <li>⊙ 현장애로사항기술개발</li> <li>⊙ 산업체인력재교육</li> <li>⊙ 교육 수료자 대상 산림테크노포럼 운영</li> </ul>																								
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대학교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 ☎ 055-772-1835, 1818</li> <li>⊙ 홈페이지: <a href="http://fotec.gnu.ac.kr">http://fotec.gnu.ac.kr</a></li> </ul>																								

■ 충북대학교 산림과학교육센터

과정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경영교육을 제공함하여 전문임업 인력으로 양성 및 임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력 증강</li> <li>○ 귀촌귀농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최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역량을 구비하도록 지원함</li> </ul>																			
교육대상	○ 산주 및 임업종사자 등 관심있는 일반인(과정별 30명)																			
접수방법	○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및 전화접수																			
교육기간	○ 2015년 4월 ~ 11월																			
교육프로그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교육과정</th> <th style="width: 20%;">교육일정</th> <th style="width: 20%;">교육기간</th> <th style="width: 10%;">인원</th> <th style="width: 3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 산림소득 증대과정</td> <td>2015.04.02~ 2015.06.04</td> <td>매주목요일 10회 48시간</td> <td>30명</td> <td>재배기술 임산물가공유통 산림복합경영</td> </tr> <tr> <td>2. 귀농귀촌 전문과정</td> <td>2015.09.03.~ 2015.11.19</td> <td>매주목요일 11회 50시간</td> <td>40명</td> <td>재배기술 토양관리 귀농귀촌전략</td> </tr> </tbody> </table>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기간	인원	비고	1. 산림소득 증대과정	2015.04.02~ 2015.06.04	매주목요일 10회 48시간	30명	재배기술 임산물가공유통 산림복합경영	2. 귀농귀촌 전문과정	2015.09.03.~ 2015.11.19	매주목요일 11회 50시간	40명	재배기술 토양관리 귀농귀촌전략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기간	인원	비고															
	1. 산림소득 증대과정	2015.04.02~ 2015.06.04	매주목요일 10회 48시간	30명	재배기술 임산물가공유통 산림복합경영															
2. 귀농귀촌 전문과정	2015.09.03.~ 2015.11.19	매주목요일 11회 50시간	40명	재배기술 토양관리 귀농귀촌전략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경영의 중요성과 가치 인지.</li> <li>○ 기술교육.컨설팅 등의 밀착지원을 통해 산림경영에 대한 자신감부여</li> <li>○ 귀농귀촌시 여러 문제 해결로 시행착오 방지.</li> </ul>																			
그 외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기술정보지원</li> <li>○ 산림/임업기술컨설팅</li> <li>○ 산림과학세미나</li> <li>○ 심화보수교육</li> </ul>																			
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대학교 산림과학교육센터 ☎ 043-261-3448</li> <li>○ 홈페이지: www.cbfsec.org</li> </ul>																			

■ 순천대학교 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

과정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고소득품목 생산 및 재배과정을 교육하여 산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욕 고취</li> <li>○ 단기 소득사업 복합경영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li> <li>○ 귀농인을 위한 난대소득수종의 생산, 재배 및 유통과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li> </ul>																				
교육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주 및 임업종사자 등 관심있는 일반인(과정별 30명)</li> </ul>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및 면접(생략가능)</li> <li>○ 접수기간 : 매년 2월~3월 또는 과정별 수업직전(수시접수가가능)</li> </ul>																				
교육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4월 ~ 11월(프로그램참고)</li> </ul>																				
교육프로그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교육과정</th> <th style="width: 20%;">교육일정</th> <th style="width: 20%;">교육기간</th> <th style="width: 10%;">인원</th> <th style="width: 3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단기고소득 품목과정</td> <td>2015.04.04.~ 2015.06.20</td> <td>매주금요일 (견학:토요일) 8회</td> <td>30명</td> <td>재배기술, 산림복합경영, 귀농, 토양미생물 등</td> </tr> <tr> <td>복합경영 특성화과정</td> <td>2015.06.20.~ 2015.08.08</td> <td>매주금요일 (견학:주말) 5회</td> <td>30명</td> <td>임산물 가공, 품질관리, 유통 등</td> </tr> <tr> <td>퇴직자 및 귀농인을 위한 고부가가치 수종 특성화과정</td> <td>2015.09.12.~ 2015.10.24</td> <td>매주금요일 6회</td> <td>30명</td> <td>난대수종 재배기술, 토양미생물, 병해충 등</td> </tr> </tbody> </table> <p>※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p>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기간	인원	비 고	단기고소득 품목과정	2015.04.04.~ 2015.06.20	매주금요일 (견학:토요일) 8회	30명	재배기술, 산림복합경영, 귀농, 토양미생물 등	복합경영 특성화과정	2015.06.20.~ 2015.08.08	매주금요일 (견학:주말) 5회	30명	임산물 가공, 품질관리, 유통 등	퇴직자 및 귀농인을 위한 고부가가치 수종 특성화과정	2015.09.12.~ 2015.10.24	매주금요일 6회	30명	난대수종 재배기술, 토양미생물, 병해충 등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기간	인원	비 고																
	단기고소득 품목과정	2015.04.04.~ 2015.06.20	매주금요일 (견학:토요일) 8회	30명	재배기술, 산림복합경영, 귀농, 토양미생물 등																
	복합경영 특성화과정	2015.06.20.~ 2015.08.08	매주금요일 (견학:주말) 5회	30명	임산물 가공, 품질관리, 유통 등																
퇴직자 및 귀농인을 위한 고부가가치 수종 특성화과정	2015.09.12.~ 2015.10.24	매주금요일 6회	30명	난대수종 재배기술, 토양미생물, 병해충 등																	
교육이수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소득 작물의 재배, 기술력 증대 및 가공유통에 대한 지식함양</li> <li>○ 산림복합경영 의지 확산 적극적인 투자확대</li> <li>○ 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임업관련 종사자간의 정보교류 확대 및 인적자원 확보로 가공 및 유통관련 기술교환</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 및 임업기술정보지원</li> <li>○ 교육생을 위한 네트워크구축 및 운영</li> <li>○ 단기 특용수 관련 산림기술 컨설팅</li> <li>○ 현장애로사항 파악 및 솔루션제공</li> <li>○ 교육 수료자 대상 임업기술포럼 주최 및 운영</li> </ul>																				
담당기관 (부서)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천대학교 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 ☎ 061-750-3221, 3909</li> <li>○ 홈페이지: <a href="http://www.forec.org">http://www.forec.org</a></li> </ul>																				

부록 ② 산림청 규제개선 사례



1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변경 처리기간 단축

\* (근거법령)산림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지 제5호, 제11조제1항 별지 제9호('18.8.22.개정·시행)



**기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처리 20일, 변경등록 처리기간 15일 소요



**개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처리 15일, 변경등록 처리기간 10일로 단축



**효과**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전문업체의 창업 불편해소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변경 처리기간 단축

\* (근거법령)산림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18.8.22.개정·시행)



**기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및 변경등록 처리기간 30일 소요



**개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및 변경등록 처리기간 20일로 단축



**효과** 서비스업체의 부담 경감 및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 편의 증진

3 목재펠릿보일러 등록심의 처리기간 단축

\* (근거법령)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18.6.28.개정·시행)



**기존** 목재펠릿보일러의 유통을 위한 등록심사 기간을 3개월 소요



**개선** 목재펠릿보일러의 유통을 위한 등록심사 기간을 2개월로 단축



**효과** 목재펠릿보일러의 신제품 출시 기간 단축으로 기업불편을 해소



# 산림청,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 불편한 산지활용 규제 혁파

### 1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기간 전면 확대

\* (근거법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별표1의4('18.11.12.개정·시행)



**기존**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 면적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기간(3~10년)을 제한



**개선** 산지에서 임산물소득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



**효과** 낙후된 산촌지역 진흥 촉진 및 임업인 소득증대 도모

### 2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 완화

\* (근거법령)산지전용시 기준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고시)('18.2.28.개정·시행)



**기존** 현상도로가 있어야만 산지에서 농지로 전용 가능



**개선**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산지는 현상도로 없이도 농지로 전용가능



**효과** 소규모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산촌 주민 소득 향상

### 3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 사이버 교육 병행 허용

\* (근거법령)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고시)('18.9.21.개정·'19.1.1시행)



**기존**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의 이수만을 인정



**개선**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의 일정 비율 내에서 온라인 교육 병행이 가능토록 개선



**효과** 집합교육 이수를 위한 비용 절감 및 상시적 학습기회 부여





**산림청,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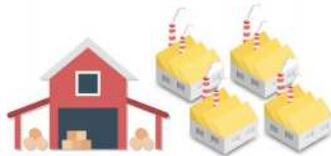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파**

**1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 (근거법령) 목재이용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18.2.21.개정, '18.8.22.시행)



**기존** 제재목의 규격·품질검사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에서만 가능



**개선** 지정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 공장 이외에도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고부가가치 전문일자리 (500명) 창출 및 검사·보관비용 등 기업부담 경감

**2 버섯중군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

\* (근거법령)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12조('18.12.개정 예정)



**기존** 버섯중군 생산업 창업은 버섯중군기능사, 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버섯중군 업무 종사한 자, 농업계 고교 졸업 후 7년 이상 버섯중군 업무 종사자



**개선** 농업계 고교를 졸업한 자의 업무경력 요건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



**효과** 고졸 취업자 창업 기회 확대

**3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

\* (근거법령) 국유림법 시행령 제10조('18.12.개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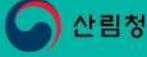
**기존**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를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과 산림조합·공공기관·대학 등으로 한정



**개선**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



**효과** 일자리확대, 산촌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산림청,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 미래 신산업 규제 혁파

### 1 기업경영리를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 (근거법령)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5조제7호(18.5.28.개정·시행)



**기존** 대상업종을 제한  
(펄프업,탄광업, 목재칩  
제조업 등 6종)



**개선** 목재제품 신기술이  
적용된 제조업을 포함



**효과** 목재제품의 신기술  
개발 및 목재 신산업  
활성화

### 2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 (근거법령)임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18.5.28.개정, '19.1.1시행)



**기존** 품목을 79개로 한정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  
등 7개 카테고리)



**개선**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카테 고리 마련  
(그 밖의 임산물' 카테고리 신설)



**효과** 낙후된 산촌지역 진흥 촉진  
및 임업인의 소득 증대

### 3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 포괄적 정의

\* (근거법령)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5항(18.5.28.개정·시행)



**기존** 일부품목만 열거됨  
(합판·단판·섬유판 등 7종)



**개선** 목재제품 전부가 포함 되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  
(목재이용법 제2조 제2호의 목재제품)



**효과**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개발에  
대한 산림분야 진입 용이

## 부록 ③

## 전국 산림조합 전화번호 &lt;나무시장 운영, 벌초대행서비스&gt;

조 합	전화번호	조 합	전화번호	조 합	전화번호
<경기> 양주지역	031-843-1668	제 천	043-643-5157	경 주 시	054-745-4811
여 주 시	031-883-7011	(금융점포)	043-643-1157	김 천 시	054-431-3151
평 택 시	031-656-8283	단 양 군	043-422-3511	안 동 시	054-858-4621
화성수원오산	031-356-5737	<충남> 대전광역시	042-638-0536	구 미 시	054-481-0727
(금융점포)	031-224-2617	(비례지점)	042-624-3671	영 주 시	054-635-4244
시흥지역	031-449-2083	세종특별자치시	044-865-2132	영 천 시	054-334-2694
(군포부곡지점)	031-689-3990	(새싹지점)	044-865-4116	상 주 시	054-532-2466
파 주 시	031-943-2227	천 안 시	041-551-7085	(금융점포)	054-533-5134
(문산지점)	031-952-8661	공 주 시	041-881-4512	문 경 시	054-555-2304
고 양 시	031-972-2008	보 령 시	041-931-9445	경 산 시	053-814-0047
(원당지점)	031-926-2008	아 산 시	041-542-3105	군 위 군	054-383-2004
광주지역	031-764-2175	서 산 시	041-665-0244	의 성 군	054-834-7101
연 천 군	031-834-0071	논산계룡	041-735-2511	청 송 군	054-872-7190
(금융점포)	031-832-9982	당 진 시	041-355-2108	(진보지점)	054-872-4081
포 천 시	031-534-7744	금 산 군	041-754-4013	영 양 군	054-682-8476
(송우지점)	031-544-6363	부 여 군	041-835-2152	영 덕 군	054-732-8300
가 평 군	031-582-2207	서 천 군	041-953-0127	청 도 군	054-371-4111
양 평 군	031-772-2144	(금융점포)	041-952-1055	고 령 군	054-954-2310
(금융점포)	031-774-7011	청 양 군	041-944-0341	성 주 군	054-933-4005
이 천 시	031-635-2269	홍 성 군	041-632-2159	칠 곡 군	054-974-0204
(창전지점)	031-631-5575	예 산 군	041-333-2501	(금융점포)	054-976-3400
용 인 시	031-338-4141	(금융점포)	041-333-2514	예 천 군	054-654-3544
안 성 시	031-675-2120	태 안 군	041-674-0400	(금융점포)	054-655-5411
(금융점포)	031-675-2122	<전북> 완 주 군	063-225-8691	봉 화 군	054-673-9713
김 포 시	031-996-2101	(중화산지점)	063-225-9511	(금융점포)	054-673-9711
(풍무동지점)	031-985-2900	진 안 군	063-433-2547	울 진 군	054-782-2249
강 화 군	032-934-2141	무 주 군	063-322-2314	울 릉 군	054-791-2550
웅진부천	032-888-3101	장 수 군	063-351-5030	<경남> 부산광역시	051-528-9148
인 천	032-466-3003	임 실 군	063-642-2501	울산광역시	052-277-7396

조 합	전화번호	조 합	전화번호	조 합	전화번호
(금융점포)	032-461-9206	남 원	063-631-2011	(서울산지점)	052-265-7396
(서인천지점)	032-584-5005	순 창 군	063-653-2347	창 원 시	055-296-3877
서 울 시	02-3431-4307	정 읍	063-570-7500	진 주 시	055-752-0409
(송파지점)	02-416-7768	고 창 군	063-563-2438	통 영	055-643-1031
(길동지점)	02-479-0040	부 안 군	063-584-3089	사 천 시	055-852-2047
<강원> 춘 천 시	033-252-1431	김 제	063-545-3215	김 해 시	055-321-5101
홍 천 군	033-433-5317	군 산	063-452-2161	밀 양 시	055-353-9983
횡 성 군	033-343-8121	(금융점포)	063-471-6252	거 제 시	055-636-2038
원 주 시	033-731-3595	익 산	063-843-1912	양 산 시	055-386-2042
영 월 군	033-373-1152	<전남> 광주광역시	062-368-7711	의 령 군	055-573-2585
평 창 군	033-333-4122	여 수 시	061-653-8646	(신반지점)	055-574-2585
정 선 군	033-563-0047	순 천 시	061-725-3812	함 안 군	055-583-2174
철 원 군	033-452-8852	(순천고흥지점)	061-834-5575	창 념 군	055-533-2257
화 천 군	033-441-3232	나 주 시	061-334-2154	(중앙지점)	055-533-0230
양 구 군	033-481-9031	광 양 시	061-762-3334	고 성 군	055-674-0735
인 제 군	033-462-2182	담 양 군	061-383-9995	남 해 군	055-863-3146
고 성 군	033-681-2052	곡 성 군	061-363-3420	하 동 군	055-883-4501
양양속초	033-672-7012	구 레 군	061-782-2802	산 청 군	055-973-4400
(속초지점)	033-635-7011	고 흥 군	061-835-2040	함 양 군	055-963-8711
강 릉 시	033-641-8851	보 성 군	061-852-3700	거 창 군	055-944-2247
(금융점포)	033-641-8853	화 순 군	061-372-6655	합 천 군	055-931-2023
삼척동해태백	033-570-8000	장 흥 군	061-862-8220	<제주> 제 주 시	064-742-4883
(동해지점)	033-522-6075	강 진 군	061-433-3399	(금융점포)	064-725-4883
		해 남 군	061-534-3101	서귀포시	064-762-4544
<충북> 청주청원	043-297-4236	영 암 군	061-473-6696	(금융점포)	064-732-7544
보 은 군	043-543-5001	무 안 군	061-453-2204	<중 앙 회>	
옥 천 군	043-732-7001	함 평 군	061-322-2646	산림경영지도 상담	02-3434-8300
(금융점포)	043-733-1911	영 광 군	061-351-2212	조합원 가입문의	
영 동 군	043-742-3961	장 성 군	061-393-2004	금융문의	02-3434-7222
(금융점포)	043-744-5851	완 도 군	061-552-3338	산림버섯연구센터	031-881-0231~3
진 천 군	043-534-2241	진 도 군	061-544-6101	임업인종합연수원	054-624-1024
괴산증평	043-833-0337	신 안 군	061-277-2433	임업기술훈련원	055-382-7247
(괴산증평지점)	043-838-9400	(하당지점)	061-287-2215	임업기계훈련원	033-662-5442
음 성 군	043-872-4181	<경북> 대구달성	053-656-0651	임업기능인훈련원	063-433-6884
충 주	043-847-4201	포 향 시	054-247-4654		